국립해양박물관

ANCIENT
DOCUMENTS

고문서 II

古書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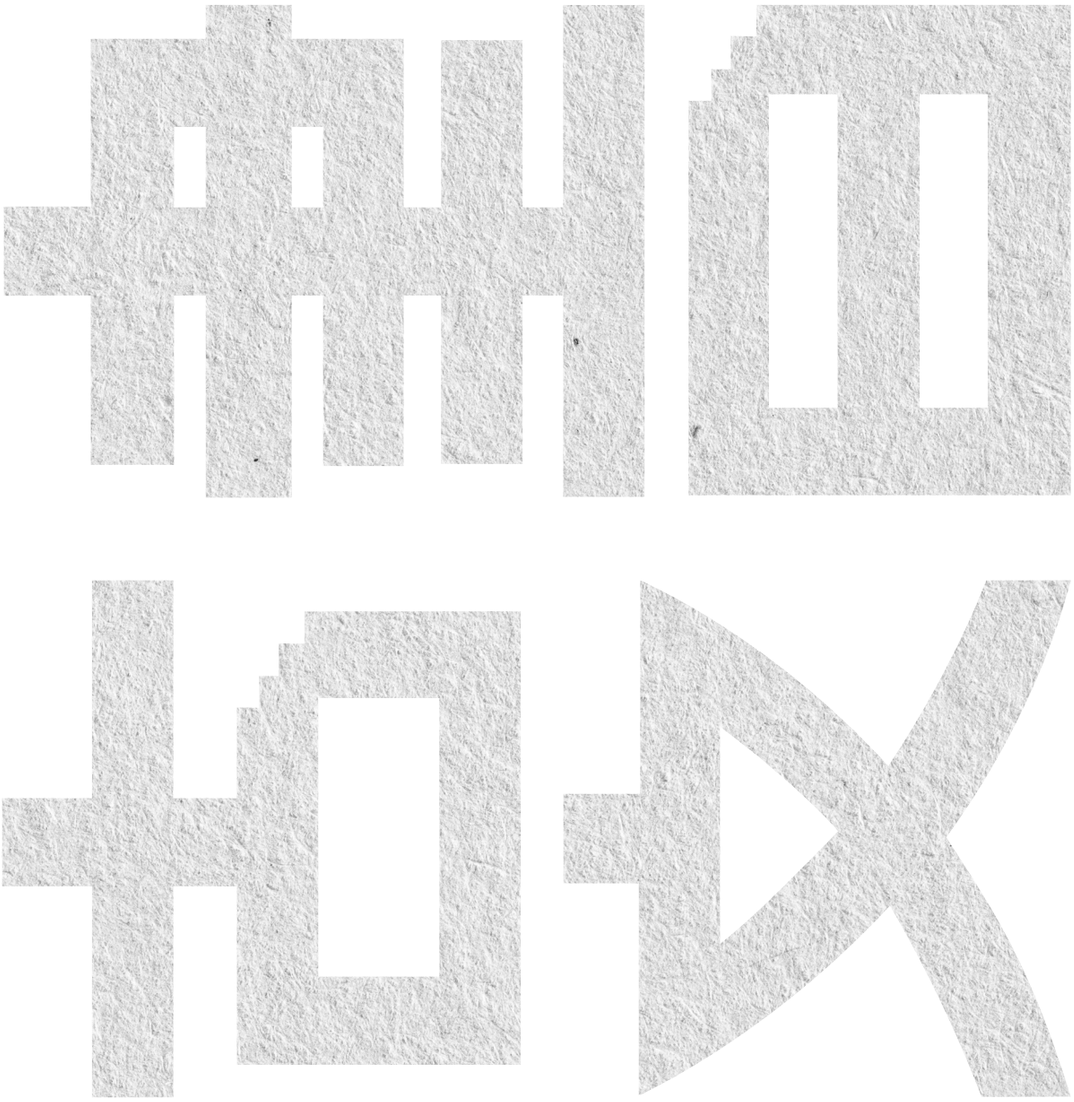

목차
CONTENTS

발간사

고문서 II 개요 8

Ⅰ. 관문서 18

1. 정조 하선장(正祖下膳狀)
2. 첩정(牒呈)
3. 보령군 염분 어전 선척 구별 성책
(保寧郡鹽盆漁箭船隻區別成冊)
4. 담양 전씨 문서(潭陽田氏文書)
5. 수군 관련 문서(水軍關聯文書)
6. 군병부(軍兵簿)
7. 충청도 병마절도사 제사
(忠淸道兵馬節度使題辭)
8. 계본(啓本)
9. 유서(諭書)
10. 경상우수영 수조홀기
(慶尙右水營水藻笏記)
11. 황해수영 우후 송종대 문서
(黃海水營虞侯宋鍾大文書)
12. 백헌총요(百憲總要)
13. 평신진지(平薪鎭誌)
14. 병학지남(兵學指南)
15. 수전방략(水戰方略)

II. 의병문서와 전쟁문학 88

16. 정응성 연보(鄭應聖年譜)
17. 통제사 조공 행장(統制使趙公行狀)
18. 호남절의록(湖南節義錄)
19. 흥덕현 보초(興德縣報草)
20. 은봉선생 문집(隱峯先生文集)
21. 만력동노문무열전(萬曆東勞文武列傳)
22. 차첩(差帖)
23. 조선군기대전(朝鮮軍記大全)
24. 조선태평기(朝鮮太平期)
25. 조선인난파지몽(朝鮮人難波之夢)

Ⅲ. 외교와 역관문서 122

26. 통신사 일본 조선인 봉행
(通信使日本朝鮮人奉行)
27. 조선잡록(朝鮮雜錄)
28. 통신사 사례 · 규정집
(通信使事例 · 規定集)
29. 역과보(譯科譜)
30. 선석고(仙石稿)
31. 동사록(東槎錄)
32. 현계근일기(玄啓根日記)
33. 엄산일기(弇山日記)
34. 우당일기(藕塘日記)
35. 석번일기(石樊日記)

Ⅳ. 어촌문서 160

36. 공옥(攻玉) – 김여휘등표해록(金麗輝等漂海錄)
37. 흑산 다물도 문서(黑山多物島文書)
38. 고현면 도마산리 구폐절목(古縣面都馬山里救弊節)
39. 고가익 처 임씨 분재기(高可翼妻林氏分財記)
40. 망단자 · 차첩(望單子 · 差帖)
41. 담정유고(潭庭遺藁) – 우해이어보(牛海異魚譜)
42. 여도만호 관문(呂島萬戶關文)
43. 보길도 완의책(甫吉島完議冊)

Ⅴ. 논고 204

담양 전씨 가문의 전개와 해골선 개발
(해군사관학교 인문학과 송기중)

Ⅵ. 부록 220

– 고문서 II 수록 관문서의 관인
– 고문서 II 수록 고문서 자료 목록
– 참고문헌

발간사

이번에 발간하는 학술총서 『고문서 II 』는 2015년에 발간한 『고문서 I 』에 이어 우리 박물관이 수집하고 관리해 온 자료 중에서 역사적 가치와 기록물로서의 중요성을 지닌 문서와 고서 자료를 엄선하여 엮은 것입니다.

고문서는 지난 세기에 살았던 사람들이 주고받은 기록으로, 당시의 생활 모습을 엿볼 수 있는 대표적인 1차 자료입니다. 이러한 자료는 연구의 필수적인 근거가 되며, 개인의 생활상과 교류관계까지 알 수 있어 역사를 입체적으로 복원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고문서와 고서는 단편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기록의 배경과 문서의 양식을 정리하는 작업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학술총서에서는 소장 문서를 관문서, 의병문서와 전쟁문학, 외교문서와 역관문서, 어촌문서로 나누어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문헌의 의미 부여를 넘어 해양 역사 연구에 관계된 지점을 모색하고, 연대기 자료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보완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우리 박물관은 해양문화 연구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학술 연구를 통해 문화가치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술 연구 활동을 통해 해양문화를 더욱 풍부하게 만드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이번 총서 발간을 위해 힘써준 학술연구팀 및 임직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립해양박물관장

김종해

일러두기

1. 이 책은 국립해양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고문서, 고서 중 조선시대 수군문서, 전쟁 관련 문서, 조선통신사 및 외교문서, 어촌 생활과 관련된 자료를 선정하여 수록한 자료집이다.
2. 기초 조사 및 분석을 위해 고서(古書)와 고문서(古文書)를 포함한 기록유산의 개념을 사용한다.
3. 자료는 제작연도, 문서종류, 크기(㎝), 수량 순으로 기재했다.
4. 자료의 규격은 가로×세로(㎝) 순이다.
5. 고문서의 분류체계는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발간한 『한국 고문서 입문 1』(2020)을 기준으로 한다.
   문서는 교령류(敎令類), 소·차·계·장류(疏 · 箚 · 啓 · 狀類), 첩·관·통보류(牒 · 關 · 通報類), 증빙류(證憑類), 명문·문기류(明文 · 文記類), 서간·통고류(書簡 · 通告類), 치부·기록류(置簿 · 記錄類), 시문류(詩文類), 외교 · 문서류(外交 · 文書類) 등으로 분류한다.
6. 책에 수록된 이미지는 국립해양박물관의 소장품이며, 외부 기관 소장 이미지는 다음 기관의 협조 하에 수록하였다.
   – 국가유산청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 국립중앙도서관
   – 남해군청
   – 삼성문화재단 리움미술관
   –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 홍주성역사관

고문서 II 개요

학계에서 논의되어 온 고문서古文書의 정의는 발급자, 수취자, 발급 목적, 제도적 효력 등의 구성요건을 갖춘 기록물에 '과거'라는 시기 설정이 더해진 개념이다. 따라서 고문서의 범주에 포함되려면 과거의 개인이나 각종 기관, 단체가 서로 주고받은 기록으로서 특정한 목적 혹은 사건을 수반해야 한다.

그러나 위에서 제시한 고문서의 요건에 부합하는 사례는 계약이나 수수收受 등 발급·수취관계가 명확한 일부 자료만 해당된다. 이러한 연유로 학계에서도 고문서에 대한 엄격한 개념 설정을 유지하면서 1차 사료로서 중요성을 가진 고기록물古記錄物 등을 고문헌학古文獻學 또는 사료학史料學의 범위에서 다루도록 제안하기도 했다(박병호 2006; 전경목 2006 등).

따라서 이번 학술총서에서는 고문서와 고서古書, 고기록古記錄을 포괄하는 고문헌古文獻의 개념을 사용하여 다양한 기록물과 연계하고자 했으며, 자료를 수집하는 현장상황과 사료적 관점을 바탕으로 '고문서古文書'의 명칭을 사용했다.

한편, 고문서의 시기적 하한에 대해서는 학계에서 다양한 견해가 있지만, 본 총서에서는 일제강점기의 시작인 1910년을 하한으로 설정했다. 이는 1910년 이후 문서의 언어와 형식이 전통시대와 크게 달라져 문서의 운영 원리가 단절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고문서가 1차 사료로서 중요한 이유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일정한 양식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기록자의 의도가 개입될 여지가 없다. 두 번째로 과거에

발생한 사건을 재구성할 수 있는 자료 중 문자로 쓴 기록물만큼 신빙성이 높은 자료는 없다. 마지막으로 문서의 양식을 통해 과거의 제도와 관습을 알 수 있어 시대적 상황과 문화, 제도에 대한 파악이 가능하다.

하지만 여러 문서의 유형이 각각의 기능과 서식을 가지고 있고, 글씨가 초서草書 혹은 이두吏讀로 기록된 것도 있어 일반 한문 사료에 익숙한 연구자나 한문에 소양이 있는 이들도 해독에 어려움을 느낀다. 또한, 특정 사건에 대한 단편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정보에 대한 전후 사정을 파악하기 어렵고, 전래된 문서는 필사본이기 많기 때문에 사료 비판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 때문에 활용이 어렵다.

학술총서에 수록된 44건의 고문서는 당시의 해양역사·해양문화를 파악할 수 있는 관문서 및 수군 문서, 의병 문서 및 전쟁문학자료, 외교문서, 어촌문서로 분류해 정리했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 총서에 수록된 주요 고문서에 대한 상세한 소개를 기술하고자 한다.

1) 관문서(官文書)

관문서는 중앙관청 및 지방관청에서 발급한 문서를 일컫는다. 문서의 발급 시기는 임진왜란 이후 종류와 수량이 급증해 19세기 말까지 집중적으로 확인된다. 관문서가 전래된 것은 왕실이나 관청에서 전래된 문서보다는 개인 소장의 문서가 많다. 이는 조선시대 관직에 있었던 이들이 자신과 관련한 관문서를 개인적으로 보관하며 후손에게 전한 것이다. 고문서의 보존과 전래는 규정이나 법규가 없더라도 조상의 흔적을 소중히 간직해야 한다는 사상을 기반으로 이루어졌다.

이번에 수록된 관문서는 조선시대 국왕 및 중앙관청에서 발급한 문서 혹은 하급 관청에서 상급 관청으로 송달한 각종 문서, 상급 관청에서 하급 관청으로 하달한 명령 문서, 조선 무관 및 수군과 관련된 임명장과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엮은 고서古書를 수록했다. 문서를 통해 왕이 신하에게 포상한 내용을 담은 문서를 비롯해 수군水軍의 임명과 군사 활동, 업무 배정 후 보고 문서와 답변 문서 등 조선 수군과 관련한 다수의 문서를 확인할 수 있어, 당시 수군의 구체적인 활동 모습에 대해 고찰할 수 있다.

문서는 수·발신자의 성격에 따라 하달 문서下達文書와 상신 문서上申文書로 나눌 수 있다. 하달 문서는 국왕 혹은 중앙정부에서 내린 포상 문서와 명령서, 관직 임명장이 있다.

대표적인 예로는 정조가 오吳에게 보낸 물품 목록인 하선장下賜狀, 무관 가문인 담양 전씨 가문을 비롯한 무관과 수군의 관직을 임명한 교지敎旨 · 차첩差帖 · 전령傳令, 전운상田雲祥이 황해도 병마절도사에 임명되며 받은 유서諭書, 신응조申應朝가 평양부윤에 임명된 후 받은 유서, 황해도 수군 소속 관원의 근무 내용 평가를 담은 포폄단자褒貶單子 등이 있다.



1790년(정조 14) 정조가 검교제학(檢校提學) 오(吳)에게 보낸 하선장

상신 문서는 신하가 국왕에게 올리는 보고 문서와 관청과 관청 간에 주고받는 문서로 나눌 수 있다. 중앙정부로 올리는 문서는 나주목羅州牧 우이도牛耳島 인근 해역에 출몰한 청나라 선박에 대한 보고를 전라도 병마절도사가 중앙관청에 올린 계본啓本, 황해도 수군 우후虞候에 임명된 관원이 부임 지역에 도착했음을 알리는 공문서인 도임장到任狀 등이 있다. 관청과 관청 간에 주고 받은 문서는 영광 군수와 해남 현감이 전라도 순찰사에게 진상물을 보고하는 첩정牒呈이 대표적이다.

이외에도 나주목에서 군역을 수행할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한 성책成冊, 충남 보령군의

염분鹽盆, 어전魚箭, 선척船隻의 수량과 과세액을 기록한 목록, 경상우수영의 수군 조련水操를 시행하는 절차를 기록한 홀기笏記, 황해도 수군 우후의 일기日記, 하기下記 등의 업무 문서, 18세기 육조六曹에 관계되는 법례를 수록한 법률 사전, 충청도 평신진平薪鎭의 지리서, 군대의 조련 방법과 수군의 훈련 방법에 대한 병서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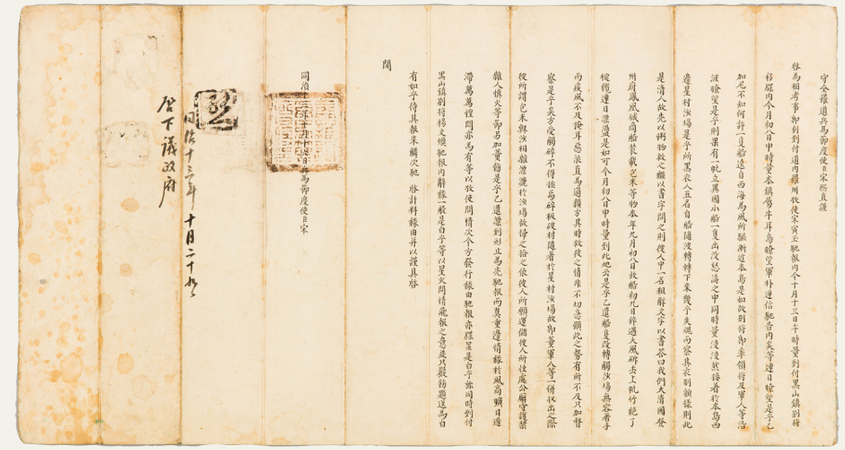

1874년(고종 11) 전라도 병마절도사 송희직이 작성한 계본

2) 의병문서와 전쟁문학

16세기 이후 조선은 여러 차례 외적에 의해 국난國難을 맞이했다. 이에 사대부를 비롯한 유생들은 의병을 일으켜 나라를 지켰다. 이후, 후손들은 의병과 전쟁에 참전한 사람들의 문헌을 정리해 문집으로 만들어 선조를 기억하고자 했다. 주로 임진왜란 때 발생한 사건이나 참전한 인물을 주제로 문서와 문집이 발간되었다.

수록된 주요 문서는 조선 후기의 무신으로 전쟁에 참전하여 왕을 보호하고, 주요 군사지역을 방어하며 공을 세운 정응성鄭應星의 연보年譜, 정묘 · 병자호란에서 세자와 왕을 호위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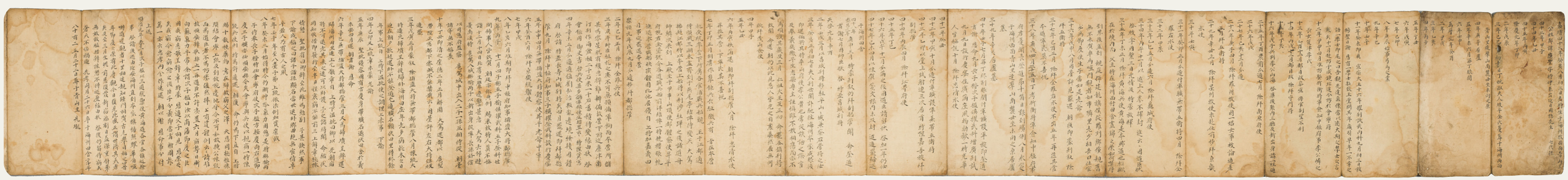

1612년(광해군 4) 조선 중기 무관 정응성의 연보

통제사 조필달趙必達의 생애를 후손이 기록한 행장行狀, 호남지역 의병의 목록인『호남절의록湖南節義錄』, 이순신의 부관으로 활약한 김연옥의 공을 추숭하기 위해 지역사회에서 힘쓴 기록인 보초報草, 조선 중기의 문신이자 호남지역 대표 의병장인 안방준安邦俊의 문집, 남해 충렬사에서 이순신의 기향제례忌享濟禮를 집행할 사람들을 임명하던 차첩이 있다.

이외에도 소장 자료 중에 국외에서 발간된 기록은 주로 임진왜란의 대표 공신인 이순신의 공적을 명나라의 시선으로 기록한『만력동노문무열전萬曆東勞文武列傳』, 통신사로 파견된 정사 조엄趙曮의 부관 최천종崔天宗이 일본인에 의해 살해당한 사건을 이야기로 만든『조선인난파지몽朝鮮人難波之夢』, 류성룡의『징비록』을 수용해 임진왜란을 연대순으로 저술한『조선군기대전朝鮮軍記大全』과『조선태평기朝鮮太平期』등이 있다.

중국은 명나라 말기 관리들의 결집력과 왕에게 충성심을 강조하기 위해 임진왜란에 참전한 이순신, 세조의 복위를 반대한 생육신 등의 사례를 가져와 열전으로 서술했다. 일본은 임진왜란의 기록을 문학화했는데, 이는 에도 막부 아래에서는 자유롭게 기록을 남기거나 간행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국가가 중심으로 발간하는 정사正史가 없었기 때문에 일본의 조선군기물은 여러 영향을 받아 조선과 있었던 국제 전쟁을 조선군기물朝鮮軍記物로서 표현했다. 조선군기물에 기록된 조선 지도와 지명, 주요 전투 등 임진왜란에 대한 연대기적 기술을 통해 근세 일본인의 시선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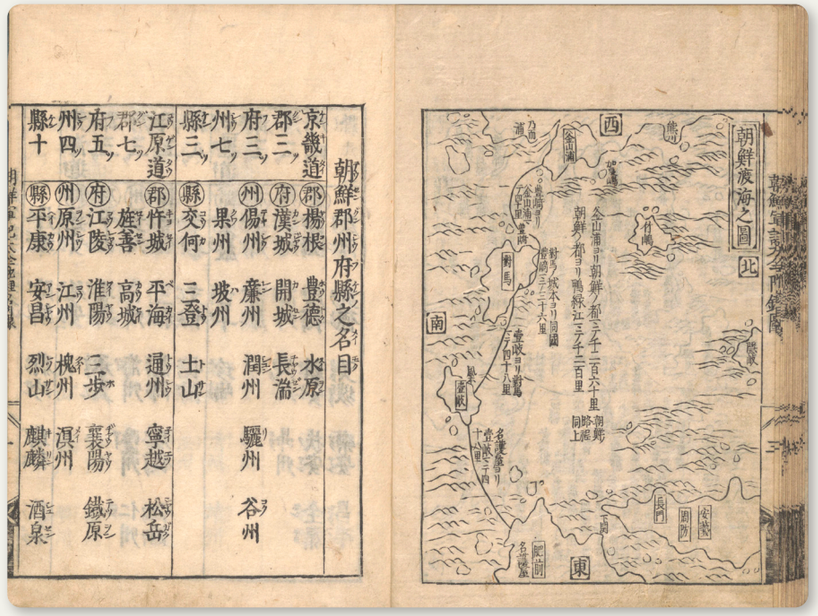

『조선군기대전』중「조선경해지도」,「조선군주부현명목」

3) 외교문서와 역관문서

외교문서는 국가 사이의 현안에 대해 외교 담당자가 상대국과 주고받은 문서라 정의할 수 있다. 전근대 동아시아의 국가교섭은 사대교린事大交隣의 방식으로 비정기적으로 파견되는 사신에 의해서만 이루어졌다. 사신은 외교 관계에서 통용되는 공문서를 들고 외교 대상국가를 방문했다. 이를 이른바 '인신무외교人臣無外交' 원칙이라 하며, 사신에게는 본국의 지침 없이는 현지에서 발생하는 변수에 대응할 수 있는 직권이 부여되지 않았다.

외교문서는 일본을 상대로 한 외교문서가 대부분이다. 16세기 임진왜란 이후 일본과 국교가 재개되면서 생산한 문서의 필사본과 통신사通信使 파견에서 생산된 문서를 소장하고 있다.

일본과의 외교문서는 양국의 최고 통치자가 대등하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서식은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조선 국왕과 막부의 쇼군 사이에는 국서國書를 교환하고, 조선의 예조禮曹를 비롯한 관서와 일본의 크고 작은 외교 주체들 사이에는 서계書契를 교환했다. 조선에서 수신한 외교문서는『동문휘고同文彙考』등 일부 자료가 전해지며, 주로 필사본이다.

통신사와 관련한 외교문서로는 통신사 일행이 일본에 도착하여, 에도까지 타고 갈 말의 운임을 지불한 내용이 담긴 봉투, 통신사가 가져온 교린交隣문서를 일본의 입장에서 정리한『조선잡록朝鮮雜錄』, 통신사 관련 사례와 규정을 엮은 성책 문서, 조선 중기 문인 선석仙石 신계영辛啟榮의 통신사 파견 당시 저술한 시문을 모은 문집 등이 있다.

타국에 가는 외교 사행을 이끄는 데 역관의 존재는 필수적이었다. 역관은 외교와 무역의 실무를 담당했고, 단순한 통역의 역할을 넘어 외교 · 통상의 전문가로 활약했다. 크고 작은 외침을 겪으면서 대외무역이 활발해졌고, 각국과의 의사소통에 필요한 외교 실무를 위해 역관의 수요가 증가했다. 외국어를 능통하게 해야 하는 직무 특성상 어릴 때부터 해당 외국어를 배워야 했기 때문에 특정 가문을 중심으로 세습하는 경향도 나타났다.

하지만 역관 개인 활동에 대한 실물자료가 많이 남아있지 않아 조선 역관의 신원이나 무역 활동을 실증적으로 밝힌 연구의 사례가 적다. 역관 활동에 대한 기록이 적은 것은 복합적인 상황이 결합되어 나타난 결과로 추정할 수 있다. 먼저, 역관은 업무 특성상 국가 기밀정보를 접할 일이 많아 추후 자신의 신변에 문제가 될 만할 기록을 남기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한, 조선 후기 이후 특정 가문이 역관직을 세습하다 보니 문중 차원에서 선조의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알려지지 않은 경우도 더러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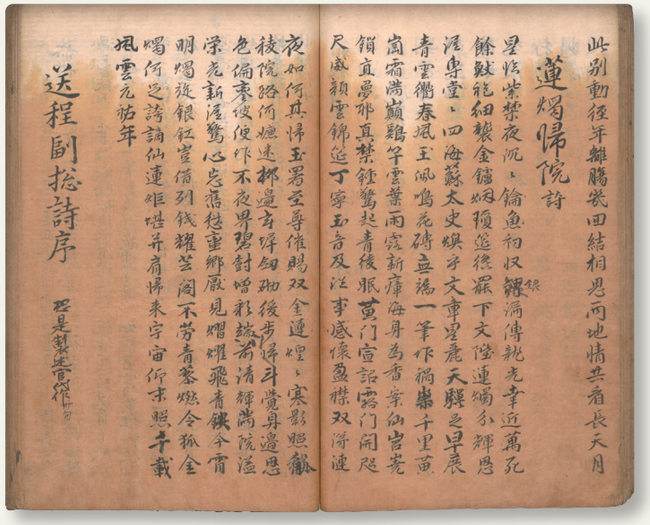

18세기 신계영의 사행 후 복귀의 내용을 담은 장시(長時) 「연촉귀원(蓮燭歸院)」

역관문서는 역관의 족보인 『역과보譯科譜』를 비롯하여 조선 후기 역관직을 세습한 천녕 현씨 가문의 일기를 소장하고 있다. 『역과보』는 조선 후기 역과 합격자의 명단을 성씨 · 가문별로 나누어 합격자의 이력을 기록한 것이다. 천녕 현씨는 250년 동안 100여 명 이상의 역과 합격자를 배출한 명문 역관가문으로 역관의 우두머리인 당상역관堂上譯官으로 임명되거나, 연행시燕行使에 파견되었다.

주요 역관 기록으로 1763년영조 39 통신사에 압물통사押物通事로 참여한 현계근玄啓根의 일기, 의과에 급제했으나 초서체에 뛰어났던 현재덕玄在德의 일기, 연행사에 다수 참여한 현탁玄鐸의 일기, 독립협회 창립총회에서 간사원으로 선출된 현제복玄濟復의 일기가 있다.

이러한 역관의 일기는 연대기 사료로서 생활일기의 성격을 가진다. 자료의 부족으로 인해 전반적인 삶의 형태를 살펴보는데 한계가 있었던 중인의 일생을 고찰할 수 있고, 사적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외교와 역관 문서를 통해 조선시대 통신사행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와 비교적 기록이 적은 역관의 개인적인 삶을 실증적으로 바라보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시대적으로 조선 후기 중인의 기록물이 간행된 것은 새롭게 부상하는 중인의 신분 의식 강화 및 신분 상승 운동 등의 사회적 분위기도 함께 알 수 있어 내용적 가치가 있다.

4) 어촌문서

소장 문서 중에는 어촌 지역의 일상을 알 수 있는 자료도 확인된다. 이를 통해 내륙 지역과 다른 어촌 주민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소장 자료 중에서 19세기 어촌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는 전남 신안군 흑산면 다물도 문서가 대표적이다.

다물도는 흑산면 인근에 위치한 섬으로 동서로 깊숙한 만이 자연 방파제 역할을 해 사람이 살기 좋은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다. 조선 후기 다물도의 주민들은 수산업에 주로 종사했다.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어획을 통해 잡은 홍어의 출납 장부 목록이다. 또한, 어촌 사회에서 분쟁으로 관청에 제출한 고소장告訴狀, 선척 · 전답 매매장부, 개인 간 거래를 나타내는 수표手標, 문기文記 등으로 조선 후기 다물도의 생활상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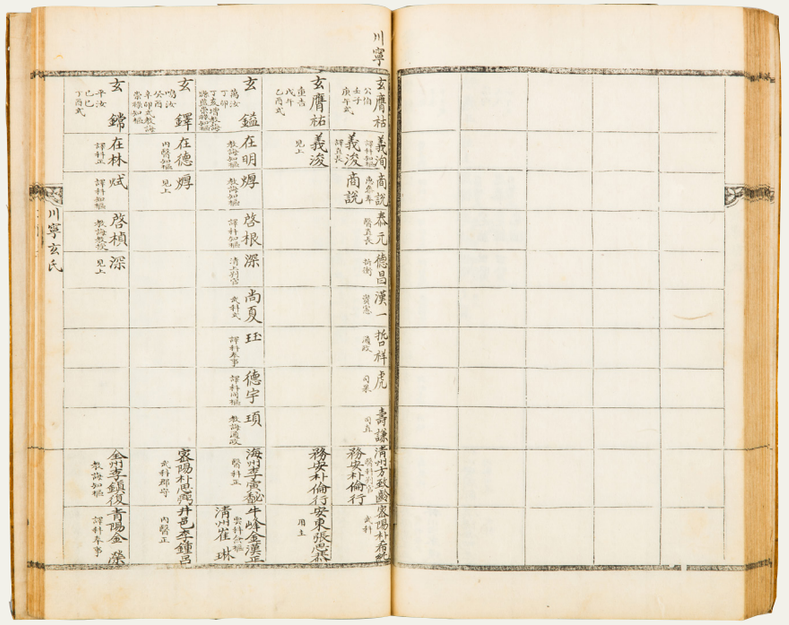

조선 후기에 발간된 『역과보』 중 천녕 현씨 역과 합격자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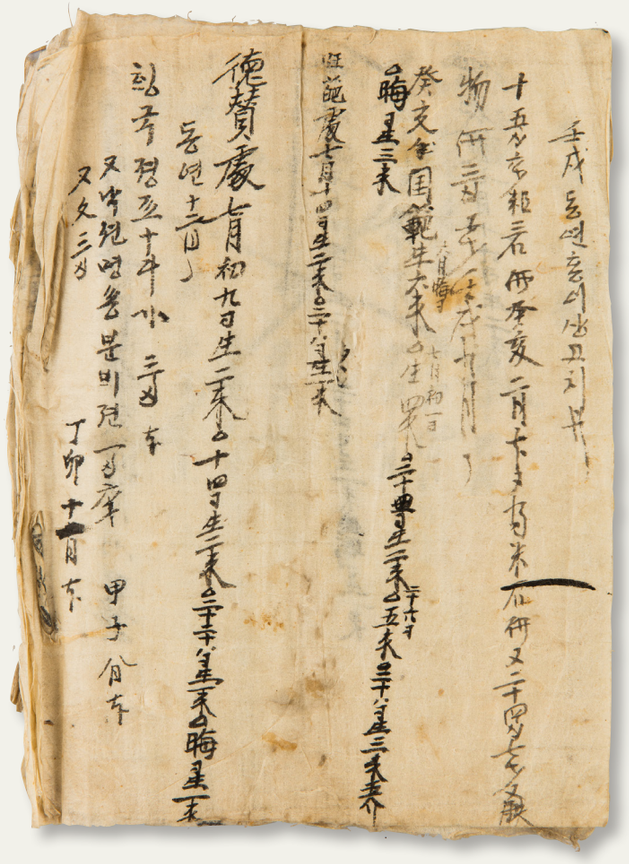

1862년(철종 13) 다물도에서 홍어를 출납한 내용을 기록한 거래장

이외에도 해남 선비 김여휘가 류큐에 표류하였다가 조선으로 돌아오는 표류기, 진해鎭海로 유배를 가게 된 김려가 작성한 우리나라 최초의 어류 연구서인 『우해이어보牛海異魚譜』, 18세기 제주도의 재산상속 분재기分財記, 전남 완도군 보길도의 어촌 구성원들과 합의한 사항을 기술하는 완의完議, 여도진呂島鎭에서 어획과 관련하여 발생한 무고誣告사건을 해결하고자 하는 관문關文, 남해 고현면 도마산리의 어촌의 폐단을 바로잡은 절목節目 등이 확인되어 다양한 지역의 어촌 사회모습을 문서로 확인할 수 있다.

문서는 개별로 존재할 때는 일회적이고 단편적인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어 한 지점만 바라볼 수 있지만, 유사한 주제로 묶이면 풍부한 사회 문화상을 파악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술총서에 수록된 고문서는 '해양'이라는 공통 주제로 다양한 영역에서 생산되었다. 이를 관문서, 의병문서와 전쟁문학, 외교문서와 역관문서, 어촌문서로 분류해 16세기 이후 해양의 일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1장

관문서
官文書

관문서는 관청 혹은 국왕이 발급자 혹은 수취자로서 제도와 관습을 작성한 문서이다.
국왕의 의견을 묻거나 처결을 요청하는 문서, 관직을 제수除授하거나 물품을 하사받은 문서,
세금을 거두기 위한 문서도 관문서에 포함된다. 관문서의 양식은 시대적 상황과 문화에 따라
일정한 서식을 갖추어 작성하며 당대의 문화와 제도를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데 사료적 가치가 크다.

1. 정조 하선장 正祖下膳狀

- 1784년정조 8 ~ 1792년정조 16
- 교령류敎令類 – 하선장下膳狀
- 33.6 x 36.0
- 각 1면, 22장

하선장은 국가의 행사나 특별한 일이 있는 경우 국왕이 신하에게 어물魚物과 같은 반찬이나 고기 등 의식주에 필요한 것을 하사하면서 함께 보낸 물품 목록이다. 하선장에는 받는 사람, 물품 및 날짜, 지급을 담당한 관원 등의 내용을 기록한다.

이 문서는 정조正祖가 검교제학檢校提學, 제학提學, 원임제학原任提學을 지낸 오吳에게 1784년, 1787년, 1790년, 1791년, 1792년에 어물, 과일, 곡식, 땔나무, 숯 등을 내린 22건을 1책으로 묶은 것이다.

문서의 수신인은 오재순吳載純, 1727~1792으로 추정된다. 오재순은 1784년부터 1792년까지 홍문관 부제학 및 제학, 규장각 제학 및 대제학을 지냈다. 오씨 성을 가진 문신 중 당시 직제가 일치하기 때문에 수신인으로 추정할 수 있다.

정조가 내린 품목은 생선류가 가장 많고, 쌀, 귤, 유자, 감 등의 과일과 땔나무, 숯 등이 있다. 어물은 생복生鰒, 광어廣魚, 소수어小秀魚, 작은 크기의 숭어, 소어蘇魚, 밴댕이를 소금에 절인 것, 석수어石首魚, 조기, 반건문어半乾文魚, 반건조문어, 소민어小民魚, 중홍어中洪魚, 생대구生大口, 뱅어白魚, 청어靑魚 등 13건이 확인된다. 품목 위에 봉사지인奉使之印[1]의 인장을 안보安寶[2]하였다. 지급을 맡은 관원은 임금의 수라상을 책임지는 수라관水刺官이다.

이처럼 하선장이 문서의 형태로 전해오는 것은 드문 경우이다. 이를 통해 18세기 후반에 귀중하다고 판단한 어물을 알 수 있고, 정조가 총애하는 문신을 대하는 방식을 알 수 있어 당시 일면을 연구하는데 많은 가치가 있다.

1) 봉사지인(奉使之印)은 '봉명사신(奉命使臣)'의 관인으로 특수한 임무 또는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일이나 관청에서 합당한 관인이 없을 때 쓸 수 있도록 하였다. 예조(禮曹)에서 다량의 봉사지인을 보관하고 있었다. 예기치 못한 일들이 발생했을 때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관인을 다수 제작해 국정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 위함이다.

2) 안보(安寶)는 임금이 옥새를 찍는 것을 뜻한다.

오재순吳載純, 1727~1792년

오재순의 본관은 해주海州, 자는 문경文卿, 호는 순암醇庵 또는 우불급재愚不及齋이다.

1772년영조 48 별시문과에 급제한 뒤 1783년정조 7 문안부사問安副使로 청나라에 다녀왔다. 영조와 정조의 총애를 받아 규장각奎章閣 직제학, 예문관과 홍문관의 대제학을 거쳐 이조판서, 병조판서,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까지 올랐다. 학문적으로 제자백가諸子百家에 통달하고, 특히 『주역周易』에 뛰어났다.

저서로 『주역회지周易會旨』, 『완역수언玩易隨言』, 『독서기의讀書起疑』, 『성학도聖學圖』, 『순암집醇庵集』이 있다.



자료제공: 삼성문화재단 리움미술관(개인소장)



봉사지인奉使之印이 안보安寶된 문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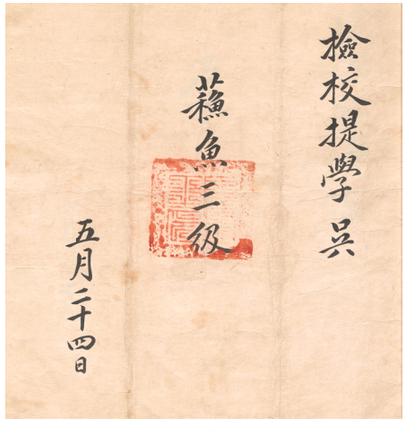

수신인: 검교제학오檢校提學吳

소어(蘇魚) 3급(級)3)
5월 24일



수신인: 검교제학오檢校提學吳

소수어(小秀魚) 1미(尾)
4월 18일

3) 급(級)은 물고기 20마리를 엮은 단위이다.



수신인: 검교제학오檢校提學吳

반건문어(半乾文魚)
9월 12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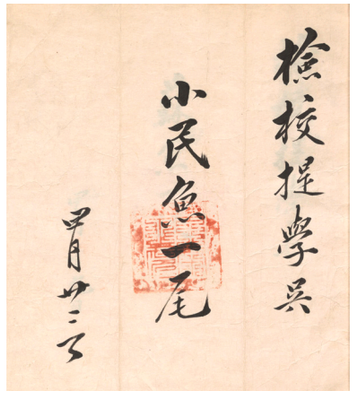

수신인: 검교제학오檢校提學吳

소민어(小民魚) 1미(尾)
4월 22일



수신인: 검교제학오檢校提學吳

석수어(石首魚, 조기) 3미(尾)
4월 17일



수신인: 검교제학[檢校提學]

중홍어(中洪魚) 1미(尾)
수라관(水刺官)
3월 12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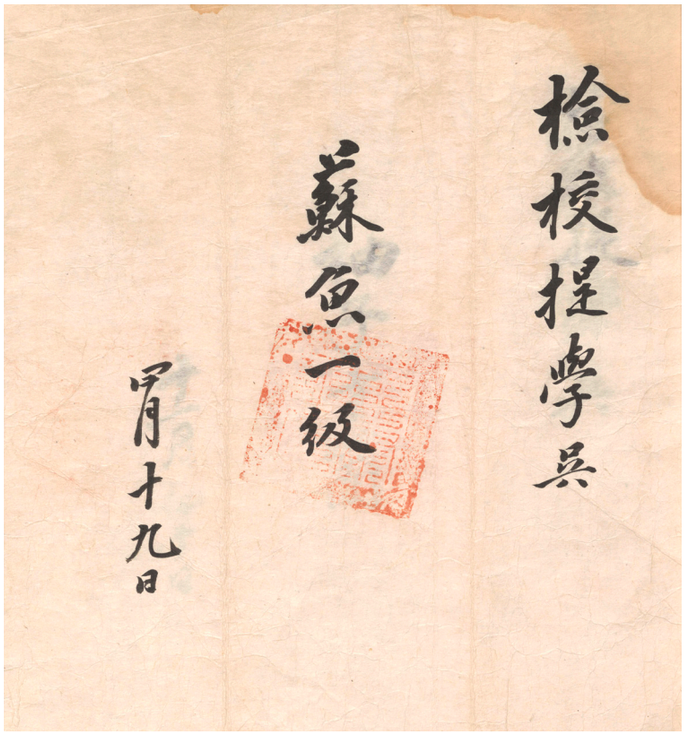

수신인: 검교제학오[檢校提學吳]

소어(蘇魚) 1급(級)
4월 19일



수신인: 원임제학오[原任提學吳]

생대구(生大口) 2미(尾)
10월 27일



수신인: 검교제학오[檢校提學吳]

백어(白魚) 20개(箇)
12월 22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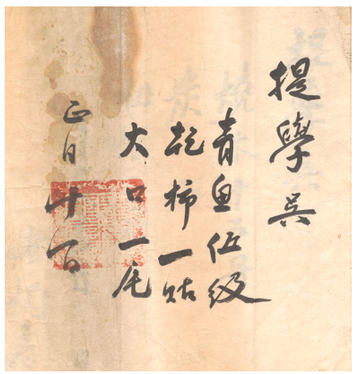

수신인: 제학오[提學吳]

청어(靑魚) 5급(級)
건시(乾柹, 곶감) 1첩(貼, 100개), 대구(大口) 1미(尾)
정월 11일

2. 첩정 牒呈

- 1880년고종 17
- 첩·관·통보류牒·關·通報類 – 첩정牒呈
- 42.1 x 34.5 외
- 각 1면, 5장

첩정은 조선시대 하급 관청이나 관원이 상급 관청 또는 관원에게 올리는 공문서이다. 문서의 작성 순서는 문서를 보내는 하급 기관을 적고 문서를 올리게 된 이유 혹은 보고 내용을 기술한다. 문서 작성자의 이름은 적지 않고, 관직명과 성씨를 기재한다. 이후 받는 상급 기관을 적고 중국의 연호로 날짜를 기재한 뒤 관인을 날인한다.

이 첩정은 진도 도호부사珍島都護府使 백白, 영암 군수靈巖郡守 민閔, 영광 군수靈光郡守 홍洪, 장흥부 겸임 해남 현감長興府兼任海南縣監 이李가 순찰사巡察使에게 보내는 문서이다.

첩정의 작성된 지역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각 지역의 진상進上에 대한 보고 내용이 적혀있다.

보고 내용은 '진상물進上物과 삭선朔膳[4]을 예리禮吏[5]에게 늦지 않게 보내겠다. 혹은 보냈다.'라는 내용이다. 첩정에서 확인되는 진상 기간은 2월에서 6월로 진상품 목록인 성책成冊도 함께 첨부했다. 연호와 보고 내용 위에 관인官印이 찍혀있다.

첩정을 통해 1866년고종 3 진도군珍島郡에서 진도도호부로 승격한 진도의 지방행정 운영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진상물 가운데 대소맥大小麥, 보리은 절기가 이르기 때문에 아직 여물지 않아서 여물기를 기다려 올려 보낼 계획'이라는 내용을 통해 당대의 생산체계와 변수에 따른 상부 보고 절차를 알 수 있다.

4) 삭선(朔膳)은 매달 초하루에 각 도에서 나는 특산물을 임금에게 바치는 일이다.

5) 예리(禮吏)는 지방 관청의 예방(禮房)에 속한 서리(胥吏)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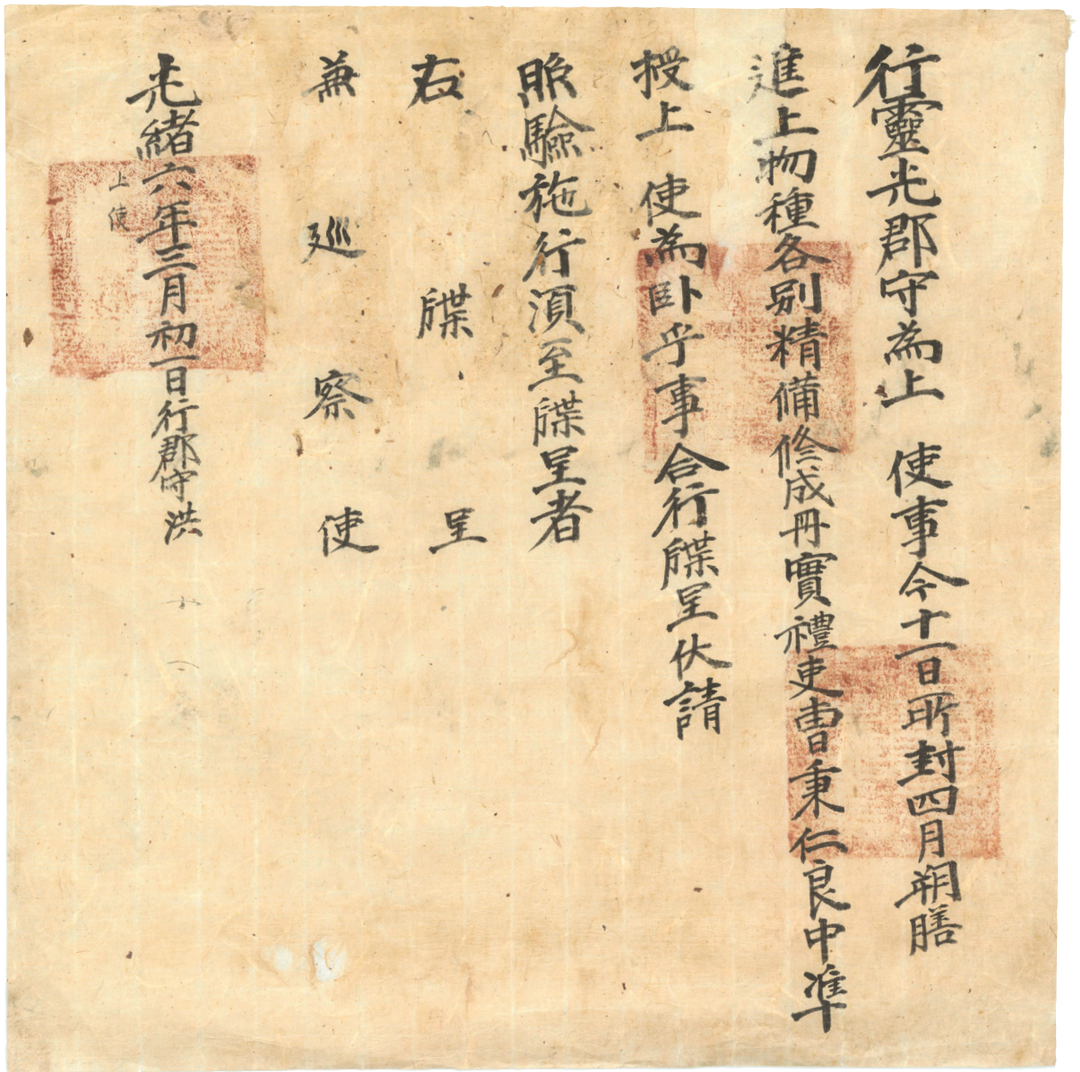
行靈光郡守爲上 使事今十一日所封四月朔膳
進上物種各別精備修成冊實禮吏書東仁良中準
授上 使爲臥乎事合行牒呈伏請
照驗施行須至牒呈者
右 牒 呈
兼 巡 察 使
光緒六年三月初一日行郡守洪

영광 군수靈光郡守 첩정牒呈

1880년고종 17 4월 1일 영광 군수 홍洪이 순찰사巡察使에 올려보낸 첩정이다. 이번 달 11월 봉납封納할 5월분 삭선朔膳 진상물進上物 가운데 대소맥大小麥은 절기가 이르기 때문에 아직 여물지 않아서 여물기를 기다려 올려보낼 계획이라는 내용이다.

영광군수의 첩정에는 직책 앞에 행行이 적혀있는데, 이는 행수법行守法 제도에 따라 품계는 높은데 관직이 낮은 경우계고직비, 階高職卑에 행을 기재했다.

장흥부 겸임 해남 현감長興府兼任海南縣監 첩정牒呈

1880년고종 17 5월 1일 장흥부 겸임 해남 현감 이李가 순찰사巡察使에 올린 첩정이다. 지금 도착한 감결甘結, 상급 기관이 하급 기관에게 내리는 지시·명령 문서은 장흥부에서 봉납捧納 할 6월분 진상물을 각별히 마련하여 성책成冊과 함께 예리禮吏 임치욱林致郁에게 올려보냈다는 내용임을 순찰사에게 보고하는 내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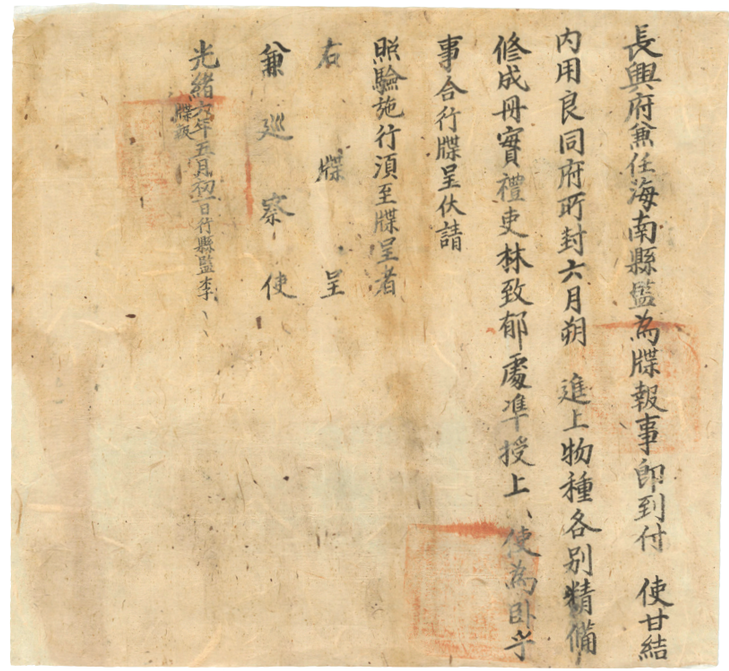
長興府兼任海南縣監爲牒報事卽到付 使甘結
內用良同府所封六月朔 進上物種各別精備
修成冊實禮吏林致郁處準授上 使爲臥乎
事合行牒呈伏請
照驗施行須至牒呈者
右 牒 呈
兼 巡 察 使
光緒六年五月初一日行縣監李

3. 보령군 염분 어전 선척 구별 성책
保寧郡鹽盆漁箭船隻區別成册

- 1899년고종 36
- 치부 · 기록류置簿 · 記錄類 – 추수기秋收記
- 8.5 x 18.6
- 각 1면, 7장

1899년 8월에 충남 보령군수 박홍양朴鴻陽이 발급한 충남 보령의 염분鹽盆[6], 어전漁箭[7], 선척船隻[8]의 수량과 과세액을 기록한 목록이다. 표지는 '충청남도 보령군 시존 염분 어전 선척 등급 일년 세전 구별 성책忠淸南道保寧郡時存鹽盆漁箭船隻等及一年稅錢區別成册'으로 제목을 기재하고 보령군의 관인官印을 날인했다. 다음 장에 '광무 3년 8월光武三年八月'라 적혀 있어 1899년 8월에 작성된 문서임을 알 수 있다.

성책成册은 내용이 많아 낱장에 기록하기 어려울 때 책의 형태로 제작되는 문서이다. 본 문서는 성책 자료 중에서도 소유한 물목과 납세액 · 수납명세를 기록한 추수기에 해당한다.

문서는 얇은 종이에 붉은 선으로 칸을 만든 공식 문서지를 사용했다. 1년 단위를 기본으로 염분, 어전, 선척 순서로 기재했다. 작성 순서는 소재지 – 규모大 · 中 · 小 – 소유자 – 수량 순이다. 마지막 장에 별도로 어염선漁塩船의 연간 세금과 을미乙未, 병신丙申, 정유丁酉, 무술戊戌의 4년간 세금의 총합을 기술했다.

이 문서는 19세기 말 보령군의 어업 · 염전업의 과세 현황을 알 수 있는 유일본으로 가치가 있다.

6) 염분(鹽盆)은 제염장(製鹽場)에서 소금을 굽는 염부(鹽釜)를 일컫는 말로, 관아나 궁방에서 소금장수에게 받던 세금을 말한다.

7) 어전(漁箭)은 대표적인 정치어업(定置漁業)으로 물속에 둘러 꽂은 나무 울타리의 형태이다. 우리나라 서남해안 연안 및 도서지역에서 발달하였다. 조선 후기 어업이 발달하면서 생산량이 증가하자 사점(私占)의 대상이 되어 세금이 부과되었다.

8) 『경국대전(經國大典)』에서 대선(大船)은 길이 42척(약 13.11m) 이상, 너비 18척 9촌(약 5.9m) 이상, 중선(中船)은 길이 33척 6촌(약 10.18m) 이상, 너비 13척 6촌(약 4.1m) 이상, 소선(小船)은 길이 18척 9촌(약 5.7m) 이상, 너비 6척 3촌(약 1.9m) 이상으로 조선(漕船)의 규모를 규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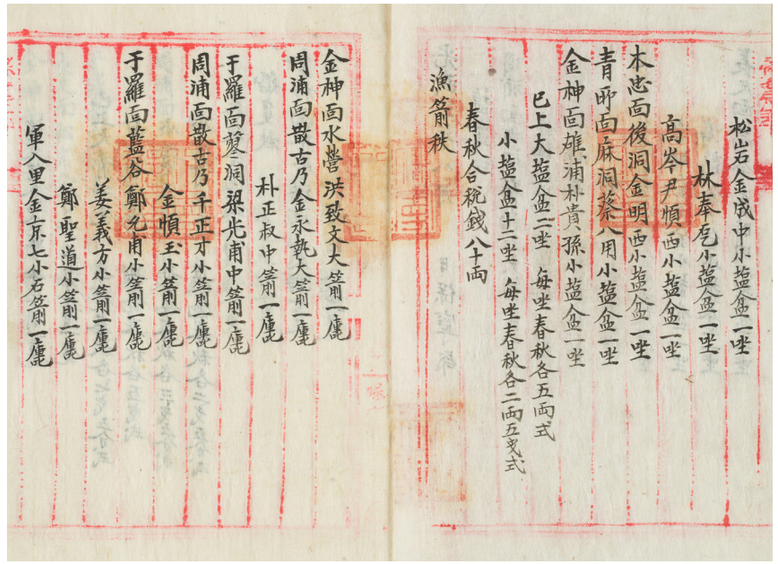

보령군 염분 · 선척 현황



보령군수지장保寧郡守之章 · 보령군인保寧郡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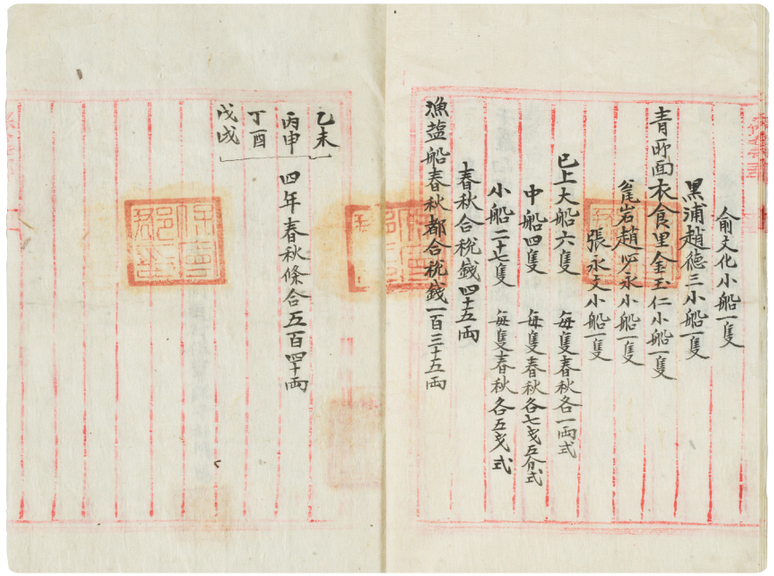

종류 (단위)	염분(坐)			어전(廛)				선척(隻)		
규 모	大	中小	小	大	中	小	小石箭[9]	大	中	小
개 소	2	1	11	2	2	5	3	6	4	27
과세액	5냥兩	·	2냥兩 5전錢	7전錢 5분分	5전錢	3전錢 5분分	2전錢 5분分	1냥兩	7전錢 5분分	5전錢
총 계	15냥兩			10냥兩				45냥兩		
어염선漁塩船	135냥兩									
4년 춘추조	540냥兩									

[표 1] 성책에 기록된 1899년 보령군의 염분, 어전, 선척의 규모, 개소, 과세액

9) 석전(石箭)은 돌발, 돌장, 석방렴(石防簾), 석제(石堤)라고도 하며, 반원형이나 'ㄷ'자형의 돌담을 쌓아 만든 어로시설이다. 경상도 · 전라도 연안에서 조수 간만의 차를 이용하여 멸치 · 고등어 · 새우 · 전어 및 작은 잡어를 잡았다.



김홍도 作, 「고기잡이」 중 어전漁箭의 모습

자료제공: 국립중앙박물관 e뮤지엄



국가무형문화재 낙화장 김영조 보유자 作, 「자염 생산 모습」

자료제공: 국가유산청

4. 담양 전씨 문서
潭陽田氏文書

- 1589년선조 22~1885년고종 22
- 교령류敎令類 – 교지敎旨, 유서諭書
- 첩·관·통보류牒·關·通報類 – 전령傳令
- 증빙류證憑類 – 호구단자戶口單子
- 각 1면, 18장

조선 후기 무관으로 관직에 종사한 담양 전씨 가문의 문서이다. 담양 전씨 가문은 고려시대에 시조인 전득시田得時가 문과 급제 후 담양군에 봉해지면서 본관을 가지게 되었다. 담양 전씨는 임진왜란 때 공적을 세워 크게 성장했고, 지속적으로 무관직에 진출하면서 충청도의 대표적인 무반가문이 되었다.

담양 전씨 가문의 문서는 총 18점으로 교지敎旨 14점, 전령傳令 2점, 유서諭書 1점, 호구단자戶口單子 1점으로 교지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관직 진출 현황은 [표 2], 상세 문서 현황은 [표 3]과 같다.

문서를 통해 조선 후기 무반가문의 관직 임명상과 변화를 구체적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전윤田潤[전협田浹] · 전운상田雲祥 등 17~18세기 임진왜란 및 조선 수군 발전에 기여한 인물의 문서가 남아 있어 가치가 높다.

분류	관직	품계	직책	인원(명)
동반	경관직	종9	참봉	1
	외관직	종6	현감	2
서반	경관직	정3	도정	1
		종9	부사용	1
	외관직	종2	병사	2
			방어사	1
		정3	첨지중추부사	1
			절제사	1
		종3	첨사	1
		정4	우후	1
		종5	판관	1
		종6	절제도위	1

[표 2] 담양 전씨 문서 중 교지에서 확인되는 관직 진출 현황

담양 전씨 문서의 종류

① 교지敎旨: 국왕의 명령을 담은 문서로 대부분 관직 임명장이다. 문서의 시작은 교지를 적고, 수취자의 이름, 국왕이 사여하는 관직 등을 적은 후 끝은 '~자者'로 마감한 뒤 발급 연월일을 적고 마무리한다. 발급 연월일 위에는 어보御寶를 찍었는데, 관직을 임명하는 문서에는 시명지보施命之寶[10]를 찍었다.

② 유서諭書: 문서의 양식은 유諭자로 시작하며, 끝은 '고유故諭: 그러므로 유시하노라.'로 마무리한다. 발급 내용 위에 유서지보諭書之寶[11] 를 찍었다.
대체로 유서는 "경卿은 한 지역을 위임받았으니 맡은 임무가 가볍지 않다. 무릇 군사를 일으켜 기미機微: 어떤 일이 일어날 징조에 대응하고 백성을 편안히 하며 적敵을 제압하는 일은 모두 평상시의 일이며, 본래 옛날 법도에 있다. 혹 나와 경이 독단으로 처리할 일이 있으면, 밀부密符가 아니면 시행하지 말라."라는 내용으로 작성된다.
유서의 전달 과정은 새로 임명된 관찰사 · 절도사 · 방어사 · 유수 등이 국왕에게 하직下直할 때에 궁궐에서 밀부 유서密符諭書와 밀부를 전달하였다. 밀부 유서는 고신告身 · 교서敎書와 매우 관련이 있으며, 임명되는 관직에 따라 각각 전달하는 문서도 달라졌다. 절도사 · 방어사에 임명된 관원에게는 먼저 고신을 전달한 후에 이어서 밀부 유서를 전달했다.

③ 전령傳令: 중앙과 지방에서 사용되었던 하달 문서로 명령서의 성격을 가진다. 문서 명칭인 전령으로 시작하며, 끝은 '의당자宜當者' 또는 '의당향사宜當向事: 기필코 해야만 하는 것을 강조'로 마무리한다.

④ 호구단자戶口單子: 3년마다 호적戶籍을 만들 때 호주戶主가 작성한 문서로 작성 당시의 연월일, 주소, 호주 및 처의 4조四祖, 가문의 이력과 소유 노비 등을 기록해 관에 2통을 제출했다. 한 통은 관에서 호적을 작성하기 위한 증빙서류로 사용했고, 나머지 한 통은 관인官印을 표시해 호주에게 다시 돌려주었다. 백성들은 돌려받은 호구단자를 보관하면서 신분 증명, 노비 소유 증명, 소송의 자료로써 이용하였다. 작성된 호구단자의 내용은 가족제도와 가족 구성원의 관계, 신분제도 등을 연구하는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10) 시명지보(施命之寶)는 시명(施命)을 내리는 교명(敎命), 교서(敎書), 교지(敎旨)에 찍는 도장이다.
11) 유서지보(諭書之寶)는 유서(諭書)에 찍는 행정용 어보이다.

세손	인물 (생몰년)	문서종류 (점)					주요 업적
		교지		전령	유서	호구 단자	
		직책					
		동반	서반				
13세	전응진 (田應震)	1 경관직: 참봉	·	·	·	·	– 담양 전씨 고문서 중 최초로 확인된 인물 – 직계 존속: **전윤**
14세	전윤 (田潤, 1554~1637)	·	2 외관직: 우후 경관직: 부사용	·	·	·	– 전협(田浹), 1583년(선조 16) 별시(別試) 병과(丙科) 206위 – 임진왜란 때 선조의 호위장으로 왕이 탄 가마와 궁인들을 호위함 – 담양 전씨 집안이 무인가문으로서 성장하게 된 계기가 된 인물 – 직계 존속: 전득우 등
18세	전시원 (田始元, 1677~1754)	·	1 경관직: 도정	1 중군	·	·	– 1702년(숙종 28) 식년시(式年試) 병과(丙科) 62위 – 직계 존속: **전운상**, 전일상, 전우상, 전천상 등
19세	전운상 (田雲祥, 1694~1760)	1 외관직: 현감	1 외관직: 병사	1 중군	1 외관직: 병사	·	– 1717년(숙종 43) 무과 급제 – 1739년(영조 15) 전라좌수사 부임 당시 방어체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특수함정 해골선(海鶻船) 고안 – 담양 전씨 집안의 무반가로서 위상을 공고히 한 인물 – 직계 존속: **전광집**, 전광국, 전광훈 등
20세	전광집 (田光集)	·	1 외관직: 첨사	·	·	·	– 훈련원 부정, 영원군수, 내금위장 등에 임명되어 영조의 측근 무장이 됨 – 직계 존속: **전익현**, 전문현, 전의현 등
21세	전익현 (田翊顯)	1 외관직: 현감	1 외관직: 방어사	·	·	·	– 선전관, 사옹원 주보 오위장, 해미현감, 안변도호부사, 법성포첨사, 용양위부호군, 철원도호부사 등 역임 – 직계 존속: **전우성(양자)**
22세	전우성 (田遇聖)	·	2 경관직: 판관, 첨지중추부사	·	·	·	– 1784년(정조 8) 정시(庭試) 병과(丙科) 20위 – 양부: 전익현, 생부: 전문현 – 직계 존속: **전경민**
23세	전경민 (田慶敏)	·	·	·	·	1	– 전우성의 아들로 관직에 진출한 기록은 확인되지 않음 – 전경민이 발급한 호구단자를 통해 담양 전씨 집안의 세거지, 재산 정도를 확인할 수 있음
23세	전세진 (田世鎭)	·	2 외관직: 절제도위, 절제사	·	·	·	– 1877년(고종 14) 정시(庭試) 병과(丙科) 15위 – 전육(田堉)의 아들 – 처 숙인조씨는 숙부인에 봉해짐
총 계		3	10	2	1	1	18 (전세진 처 숙부인 교지 포함)
		13					

[표 3] 담양 전씨 문서 현황 및 인물 주요업적

- 1589년선조 22
- 교령류敎令類 – 교지敎旨
- 61.2 x 50.0
- 1면

전응진田應震 교지敎旨

1589년 12월 전응진을 승사랑承仕郎이자 돈녕부 참봉敦寧府參奉으로 임명한 문서이다.

발급 사유는 발급년도의 좌측에 "회전영칙기십일별가會典迎勅己十一別加"라고 적고 있어 기축년己丑年 11월에 회전영칙으로 인한 별가로 승계한 것이라 기재했다.

회전영칙은 1589년 명으로 떠난 주청사奏請使가 『대명회전大明會典』에 기록된 이성계의 선조先祖에 대한 오기誤記를 고쳐 200여 년간 이어진 사건종계변무, 宗系辨誣을 해결하였고, 선조宣祖가 이러한 공이 있는 자들을 승진시킨 것이다. 별가는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 상賞의 형식으로 관원의 작위를 특별히 올려주는 것이다.

연호 위에 붉은색의 인장이 있으며, 참판參判과 참의參議, 좌랑佐郎이 서압書押하고 자신의 성명을 초서草書로 기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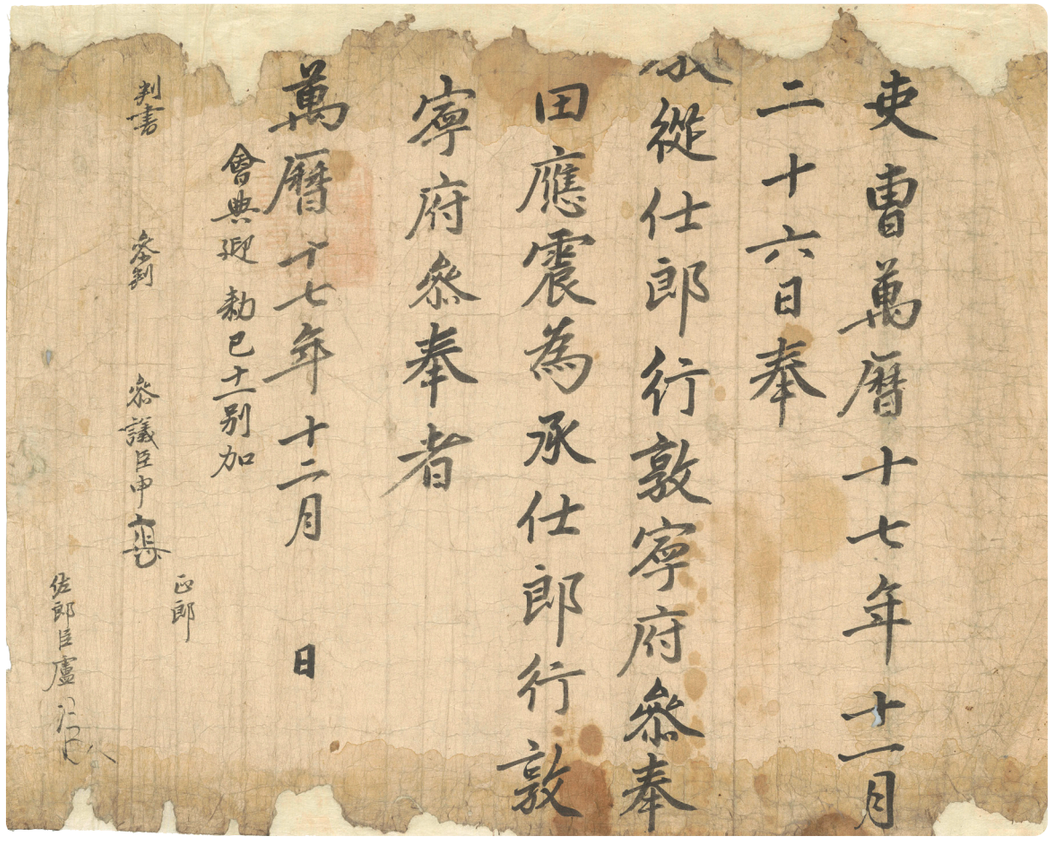

전윤田潤, 1554~1637년

전윤은 담양 전씨 14세손으로 초명은 전협田浹이었으나 개명했다. 1578년선조 11 무과 별시에 급제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 선조가 의주로 파천播遷했을 때 임진강 강가에서 왕에게 밥과 국을 바쳐 신임을 얻었고, 의주까지 선조를 호위했다.

이후 광해군이 분조를 이끄는 데 공을 세워 위성원종공신衛聖原從功臣에 책록되었고, 1618년광해군 10 인목대비에 대한 폐모론 논의가 있자 이를 찬성하기도 하였다. 관직은 조선시대 오위를 총괄하던 최고 군령기관인 오위도총부五衛都摠府 도총관都摠管까지 지냈다. 조선 후기 담양 전씨 가문이 무반가문으로 입지를 다진 계기가 된 인물이다.

- 1620년광해군 12
- 교령류敎令類 – 교지敎旨
- 75.1 x 50.0
- 1면

전윤 교지敎旨

1620년 3월 초 5일 가선대부嘉善大夫 용양위龍驤衛 사용司勇 겸 오위도총부 부총관副摠管으로 임명한 문서이다. 가선대부가 종2품인데 비해 낮은 관직인 용양위 사용 겸 오위도총부 부총관으로 임명되었기 때문에 관직명 앞에 품계가 높은데 비해 관직이 낮음을 의미하는 행行자를 붙였다.

문서 왼쪽 연호 위에 붉은 색의 시명지보施命之寶를 안보安寶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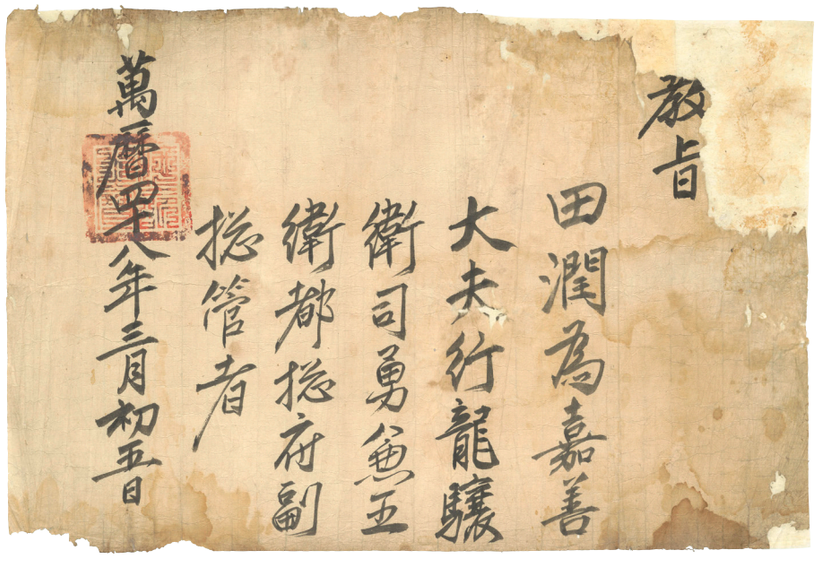

- 1721년경종 1
- 첩·관·통보류牒·關·通報類 – 전령傳令
- 57.5 x 59.2
- 1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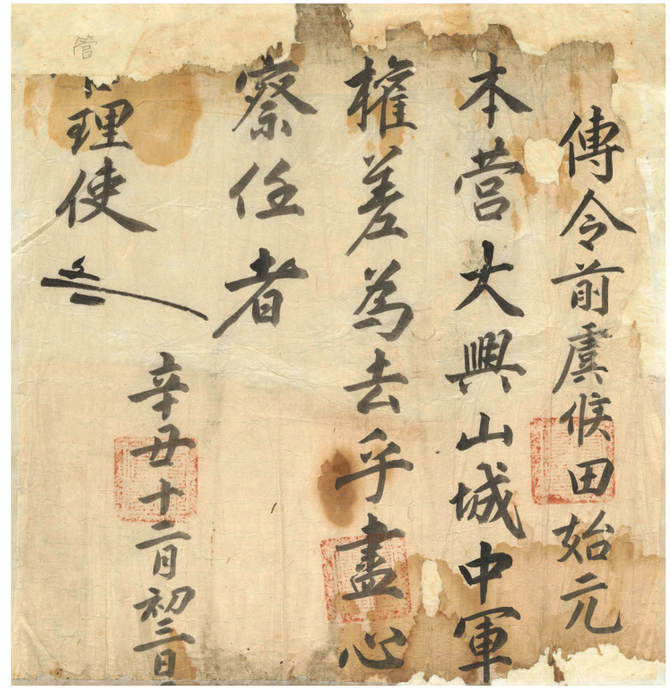

전시원田始元 전령傳令

신축년辛丑年, 1721년 12월 초삼일 우후虞候직에 있던 전시원1677~1754을 개성 대흥산성大興山城을 관리하는 중군中軍직에 임명하는 전령이다.

연호 왼쪽 위에는 ㅁ리사ㅁ理使의 서압이 있다.

전시원은 전운상田雲祥, 1694~1760의 아버지로 1702년숙종 28 식년시式年試 병과丙科 62위로 26세에 무과에 급제하였다.

전운상田雲祥, 1694~1760년

전운상은 자는 사룡士龍, 호는 자천紫泉이다. 전시원田始元의 맏아들이다. 1717년숙종 43 무과에 급제한 뒤 내외직을 두루 거쳤다. 함경도의 정평부사로 있을 때 흉년으로 인해 발생한 이재민과 질병을 앓는 사람을 보호하여 왕의 포상을 받았다. 이외에도 무비武備를 정비하고 연무청鍊武廳을 신축하고 장병을 훈련해 유사시에 대비했다.

대표적인 업적으로 1740년영조 16 전라좌수사로 부임할 당시 수군의 특수함정인 해골선海鶻船을 건조한 것이 있다. 이 시기 전운상의 동생들도 무관에 올라 담양 전씨 가문이 무반 가문으로 자리 잡는 것에 기여했다.



전운상 영정
자료제공: 홍성군 홍주성역사관
원소장자: 전택수(담양 전씨 보령공파)

전운상 전령傳令

- 18세기
- 첩 · 관 · 통보류牒 · 關 · 通報類 – 전령傳令
- 22.5 x 42.8
- 1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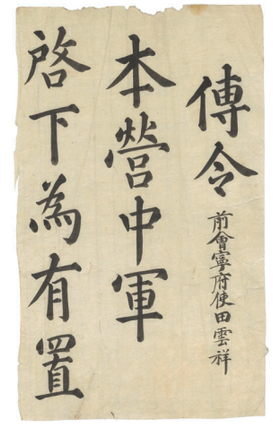

전령은 회령부사會寧府使 전운상을 본영本營의 중군中軍으로 있게 한다는 명령을 전하는 문서이다. 연호와 연월일을 기재하지 않아 정확한 발급날짜는 알 수 없다.

전운상 유서諭書

- 18세기
- 교령류敎令類 – 유서諭書
- 80.7 x 57.4
- 1면

황해도 병마절도사 전운상에게 하유下諭, 지방관에게 서울에 올라오도록 하는 임금의 명령하는 문서이다.

본 문서는 연호 및 일자가 적혀있지 않아 정확한 발급 일자는 확인할 수 없다. 다만 전운상을 1757년영조 33 8월 가선대부 황해도 병마절도사黃海道兵馬節度使에 임명한 고신告身이 확인되어 1757년 8월 이후에 유서가 발급된 것을 알 수 있다.[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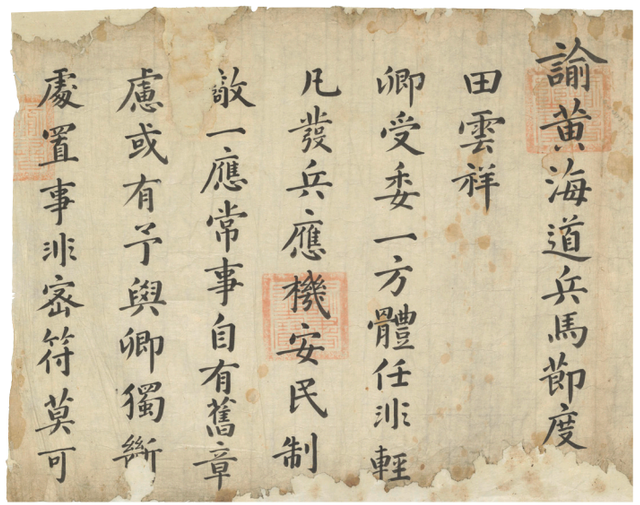

12) 충남대학교 충청문화연구소, 2015, 『홍성 담양전씨가 고문서』.

- 1746년영조 22
- 교령류敎令類 – 교지敎旨
- 75.0 x 56.0
- 1면

전운상 교지敎旨

1746년 정월에 절충장군折衝將軍 경상좌도 병마절도사慶尙左道兵馬節度使로 임명한 문서이다. 절충장군이 정3품 당상품계인데 높은 관직인 종2품 경상좌도 병마절도사에 임명되었기 때문에 관직명 앞에 품계보다 높은 관직에 임명되었다는 표시로 수守자를 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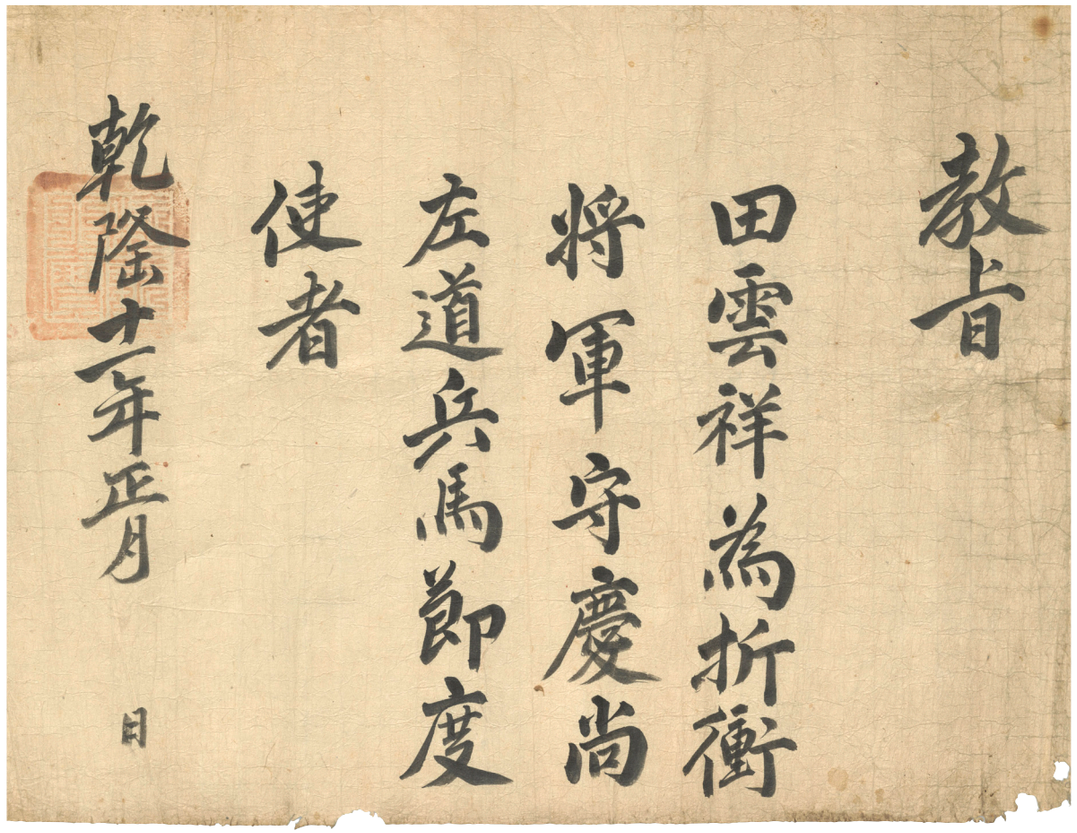

- 1799년정조 23
- 교령류敎令類 – 교지敎旨
- 72.5 x 51.2
- 1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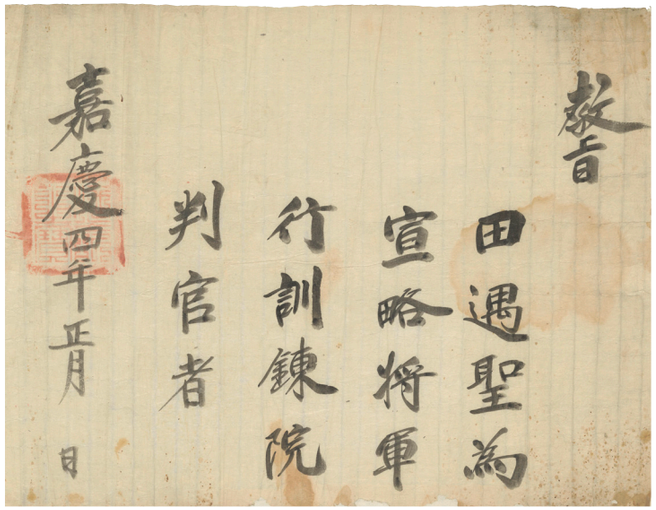

전우성田遇聖 교지敎旨

전우성1765~?은 전익현田翊顯의 양자이자 선전관宣傳官, 오위도총부 경력五衛都摠府經歷 등의 벼슬을 한 전문현田文顯, 1741~1803의 아들이다. 1784년정조 8 20세에 무과에 급제한 뒤 선전관을 역임했다.

본 문서는 1799년 정월에 전우성을 선략장군宣略將軍 훈련원판관訓鍊院判官으로 임명한 문서이다. 선략장군이 종4품 하계下階인데 비해 낮은 관직인 종5품의 훈련원판관에 임명되었기 때문에 관직명 앞에 품계보다 낮은 관직에 임명되었다는 표시로 행行자를 붙였다.

- 1831년순조 31
- 증빙류證憑類 – 호구단자戶口單子
- 79.2 x 127.0
- 1면



전경민田慶敏 호구단자戶口單子

1831년 결성현結城縣 구항면龜項面 중리中里, 現 충남 홍성군 구항면에 사는 전경민의 호구단자이다. 호주인 전경민은 발급 당시 나이가 41세로 신해년辛亥年, 1791년생이다. 가족은 아버지는 절충장군 용양위부호군첨내금위장을 한 전우성田遇聖이며, 조부는 가선대부 황해도수군절도사 겸 응진도호부사를 전익현田翊顯이다. 증조부, 외조, 외증조 등도 함께 기술되어있다.

호구단자에서 단을 바꾸어 재산을 기술했는데, 노비가 많은 것을 보아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1880년고종 17
- 교령류敎令類 – 교지敎旨
- 75.0 x 54.0
- 1면

전세진田世鎭 교지敎旨

전세진1845~?은 1877년고종 14 33세의 나이로 무과에 급제했다. 훈련원주부訓鍊院主簿, 선전관宣傳官, 남해현령南海縣令, 창성도호부사昌城都護府使, 용양위龍驤衛 부호군副護軍 겸 내금위장內禁衛將 등의 관직을 거쳤다. 담양 전씨 가문의 문서 중 가장 마지막으로 확인되는 인물이다.

1880년 7월 전세진을 진주진관晉州鎭管 남해병마절제도위南海兵馬節制都尉에 임명하는 문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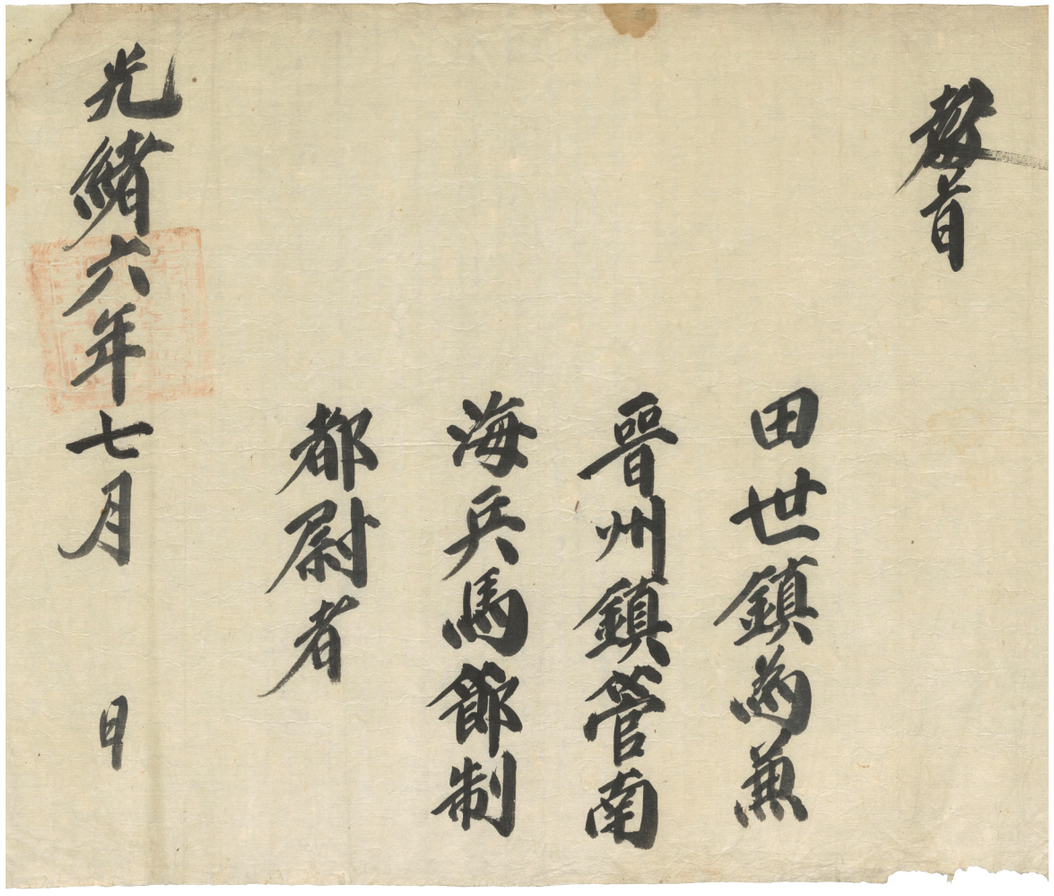

5. 수군 관련 문서 水軍關聯文書

- 1869년고종 6 ~ 1892년고종 29
- 첩 · 관 · 통보류牒 · 關 · 通報類
  – 전령傳令, 차첩差帖
- 각 1면, 12장

수군에 재직한 하급 무관의 차정첩差定帖과 전령傳令 모음이다. 하급 무관, 특히 수군의 임명 문서는 잔존 사례가 적고, 기록에 공식적으로 남기지 않아 문관에 비해 구체적인 양상을 파악하기 어렵다. 수군 관련 문서는 차정첩, 전령 등이 확인되는데, 이를 통해 수군의 임명과 발령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을 볼 수 있다.

차정첩은 발령장의 의미가 강해 주로 각 군령에서 하급 무관을 임명할 때 많이 사용되었다. 현감縣監이 발급할 때는 차정첩의 형식을 사용했으며, 직책이 있더라도 녹봉이 정해지지 않은 관직자를 임명할 때도 사용한다. 문서의 양식은 발급자, 발급 사유, 내용, 종결어[13], 수취자, 발급 시기, 관인 혹은 첩인帖印, 차첩에 사용하는 도장, 결재자 순으로 기재했다. 수취자 다음에는 '준차准此'를 기재하는데, 이는 '문서의 내용을 준수하라.'는 의미이다. 차정첩의 경우 결재자의 이름은 적혀있지 않고, 착관着官과 서압 혹은 화압花押이 확인된다.

전령은 일반적으로 국왕 및 상급 관청이 하급 관청의 관리 또는 지방관이 명령 사항을 전달하는 문서 혹은 군영의 군직 혹은 관직에 임명하는 용도로 사용되었다. 수군 관련 문서의 경우 군영의 하급 군직 혹은 실무 관원을 임명하는 용도이다. 전령의 양식은 문서명, 수신자, 본문(임명관직), 작성일자, 관인 및 서압순으로 작성된다. 수영水營의 관官 혹은 행관行官이 발급할 때는 전령의 형식을 사용한다.

13) 차정첩(差定帖)의 종결어는 "合下仰照驗施行須至帖者"이다. '첩을 내려보내기에 합당하니, 문서와 사실을 확인하여 시행하기를 바란다.' 혹은 '첩이 반드시 도달해야 한다.'는 뜻이다.

수군 관련 문서에서 확인된 관직은 군영과 관아에 근무하는 하급 실무 관직으로 기고관旗鼓官, 병선감관兵船監官, 병방군관兵房軍官, 장관장무將官掌務 등의 임명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임명문서를 받은 사람은 박학손朴學孫, 朴鶴遜, 朴學遜, 박학도朴學道, 박학권朴學權, 박학돌朴學突, 박기준朴琪俊, 朴己俊이다. 이들은 무관 급제 기록이 확인되지 않아 인물의 생애를 특정할 수 없지만, 박학손, 박학도, 박학권, 박학돌 등은 학學자를 돌림자로 사용하고 있어 형제 혹은 사촌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박학손의 경우 차정첩과 전령이 모두 존재해 현縣과 수영水營이 모두 있던 지역에서 임명장을 받은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부합하는 지역은 전라우수영이 있던 해남海南과 충청수영이 있던 보령保寧이 있다. 따라서 두 지역 중 한 곳에서 발급한 문서로 추정된다.
임명장의 발행인이 수영의 관官과 현령의 현감縣監이 임명장의 발행인으로 동시에 확인되는 사례는 많지 않아 문서적 가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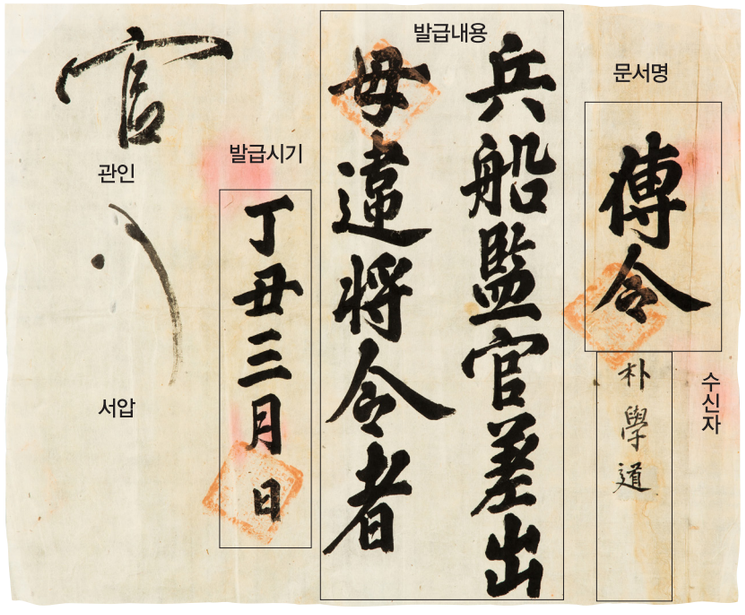

박학도朴學道 전령傳令
[정축년(丁丑年, 1877년(고종 14)) 3월 발급]
박학도를 병선감관兵船監官으로 임명하는 전령이다.[14]

14) 병선감관(兵船監官)은 병선(兵船)을 감독하는 감관으로 연안지역에 근무하던 관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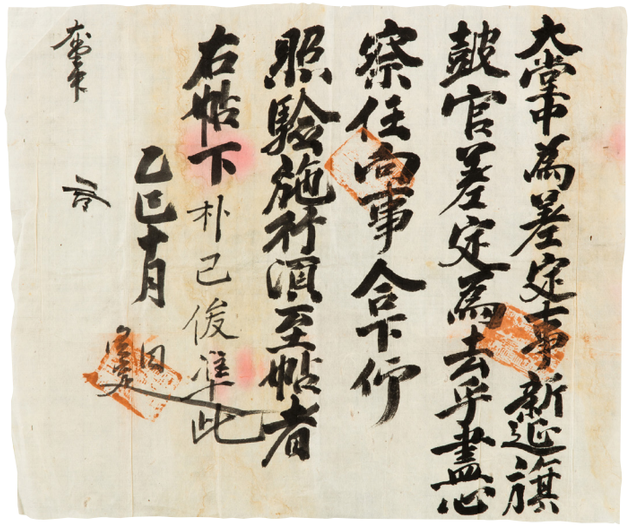

박기준朴己俊 **차정첩**差定帖

[기사년(己巳年, 1869년(고종 6)) 10월 발급]

박기준을 신연기고관新延旗鼓官으로 임명하는 차정첩이다.[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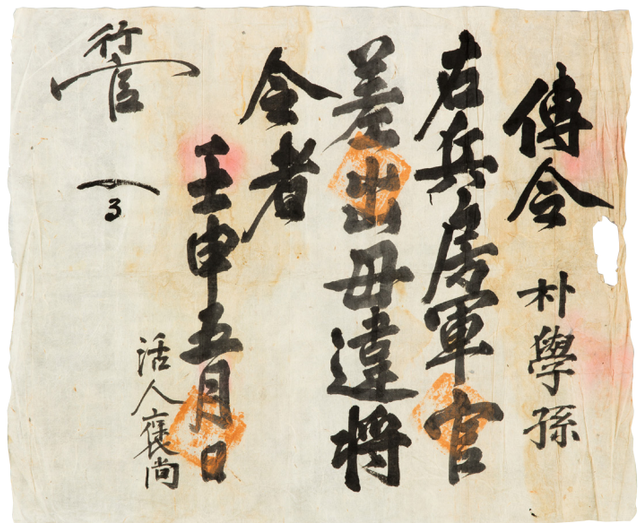

박학손朴學孫 **전령**傳令

[임신년(壬申年, 1872년(고종 9)) 5월 발급]

박학손을 우병방군관右兵房軍官으로 임명하는 전령이다.[16]

15) 신연기고관(新延旗鼓官)은 새로 도입(導入)하는 감사(監司)나 수령(守令)의 집에 가서 맞이하는 자로서 기를 들거나 북을 쳐서 신호하는 임무를 맡은 군관(軍官)이다.

16) 병방군관(兵房軍官)은 관찰사(觀察使)·병사(兵使)·수사(水使) 밑에 업무를 분담하는 하급 관료이다. 지방군은 각 도의 진(鎭)에 배치되어 진장(鎭將)을 보좌했다.



박학손朴學孫 **차정첩**差定帖

[병자년(丙子年, 1876년(고종 13)) 11월 발급]

박학손을 기고관旗鼓官으로 임명하는 차정첩이다.[17]

17) 기고관(旗鼓官)은 기를 들거나 북을 쳐서 신호하는 임무를 맡은 군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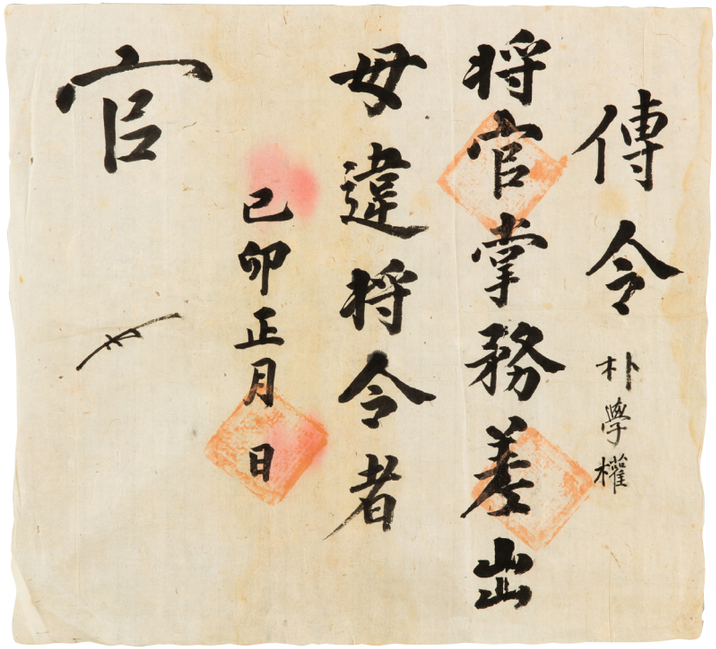
傳令
朴學權
將官掌務差出
女違將令者
己卯正月 日
官

박학권朴學權 **전령**傳令

[기묘년(己卯年, 1879년(고종 16)) 1월 발급]

박학권을 장관장무將官掌務로 임명하는 전령이다.[18]


傳令
朴學突
將官掌務差出
女違將令者
乙亥九月 日
官

박학돌朴學突 **전령**傳令

[을해년(乙亥年, 1875년(고종 12)) 9월 발급]

박학돌을 장관장무將官掌務로 임명하는 전령이다.


傳令
朴學孫
行首軍官差出女
違將令者
丙戌六月 日
行官

박학손朴學孫 **전령**傳令

[병술년(丙戌年, 1886년(고종 23)) 6월 발급]

박학손을 행수군관行首軍官으로 임명하는 전령이다.[19]

18) 장관장무(將官掌務)는 군사 지휘관 혹은 각 관아의 장관 아래에서 실제적으로 사무를 보던 실무관이다.

19) 행수군관(行首軍官)은 군관 중에서도 가장 높은 사람을 의미한다. 주로 연장자나 경력 중심으로 선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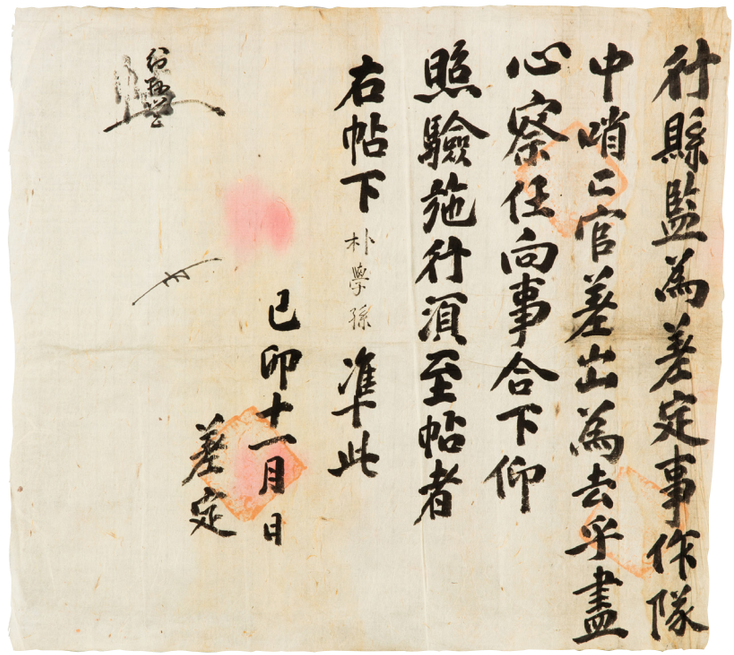
行縣監爲差定事作隊
中哨二官差出爲去乎盡
心察任向事合下仰
照驗施行須至帖者
右帖下 朴學孫
己卯十一月 日
差定

박학손朴學孫 **차정첩**差定帖

[기묘년(己卯年, 1879년(고종 16)) 11월 발급]

박학손을 작대중초초관作隊中哨哨官으로 임명하는 차정첩이다.[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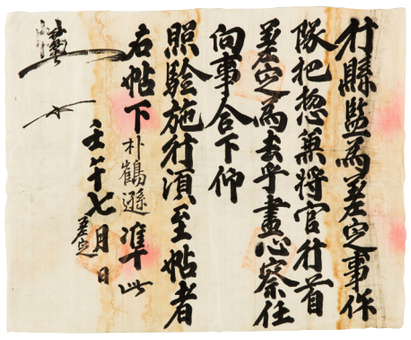
行縣監爲差定事作隊把摠兼將官行首
差出爲去乎盡心察任
向事合下仰
照驗施行須至帖者
右帖下 朴鶴遜
壬午七月 日

박학손朴鶴遜 **전령**傳令

[임오년(壬午年, 1882년(고종 19)) 7월 발급]

박학손을 작대파총겸장관행수作隊把摠兼將官行首로 임명하는 차정첩이다.[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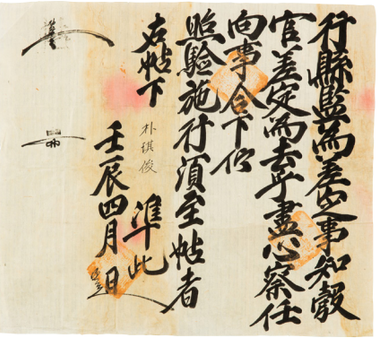
行縣監爲差定事知殼
官差定爲去乎盡心察任
向事合下仰
照驗施行須至帖者
右帖下 朴琪俊
壬辰四月 日
準此

박기준朴琪俊 **차정첩**差定帖

[임진년(壬辰年, 1892년(고종 29)) 4월 발급]

박기준을 지구관知殼官으로 임명하는 차정첩이다.[22]

20) 작대중초초관(作隊中哨哨官)은 100명 단위 부대인 초(哨)를 통솔하고, 편성된 대열을 짓는 실무를 담당한 직위이다.

21) 작대파총(作隊把摠)은 편성된 대열을 짓는 중간 지휘관으로 600명 단위 부대인 사(司)의 지휘관이다.

22) 지구관(知殼官)은 군영의 하급 군사실무를 담당한 군관으로 오랫동안 군관의 직위에 있던 사람을 임명한 관직이다. 오늘날의 준위나 상사 계급에 해당한다.

6. 군병부 軍兵簿

- 조선 후기
- 기타 – 군안軍案
- 26.2 x 37.4
- 5매

전라도 나주 지역에 거주하는 군병들을 호수戶首와 보인保人으로 편성한 군병 일람표이다. 표지에 '갑인甲寅 군병부軍兵簿'라고만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된 모든 호수와 보인들이 나주 지역에 거주하는 백성들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나주목과 관련된 군병부로 추정할 수 있다.

군병부의 기재 방식은 우선 국역이 호수인지 보인인지 구분하여 기록하였다. 보인은 호수의 종류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기재되었다. 국역 아래에는 신분을 기록하여 양인良人인지 천인賤人인지를 표기하였다. 신분 아래에는 성명을 기록하였다. 나이는 년年, 부친은 부父, 소재 군현은 계係, 거주 마을은 주住, 키는 장長, 얼굴색은 면面, 몸의 흉터는 파疤를 기록하였고 가장 마지막에는 호수와 보인이 정해진 연도를 기록했다.

군병부의 내용을 보면 군적부에 기재된 각 호수는 모두 '양良'이라고 기록하였다. 호수는 보군保軍인 경우와 마군馬軍인 경우로 나눌 수 있다. 보인은 보인保人, 자보資保, 마보馬保 등으로 나누어졌다. 성명의 하단에는 나이를 기재한다.





호수 혹은 보군

성명

나이

부친

거주 군현

마을

키

얼굴색

흉터

호수·보인 등록 연도

나이의 분포는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60세가 되면 군역이 면제됨에도 불구하고 양인 허태만許太晩의 나이는 63세라고 기록되어 있다.

부친은 '부父'로 기록했는데, 부친의 기록 여부는 해당 호수와 보인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표기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인다.

'계係'는 거주 군현을 가리키는 것으로 모두 '나주羅州'라고 기록하고 있다. '주住'에 기재된 마을의 분포를 보면 호수戶首와 보인保人이 같은 마을로 편제되지 않은 모습을 볼 수 있다.

'면面'은 대부분 얼굴이 그을린 철鐵로 표기했다. '파疤'는 몸에 난 흉터로 대부분 무無라고 하여 특별한 상처가 없다고 기록하고 있으나 보인 장귀재張貴才의 경우에는 오른손 장지에 흉터가 있다고 기록하였다.

마지막으로 호수와 보인이 된 해를 기록했다. 보인의 경우에는 보인으로 정해진 해만을 기록하였으나 호수는 보인이 된 해와 호수로 승호陞戶된 해를 기록했다. 이를 통해 호수는 보인에서 승급한 자리임을 알 수 있다.

군적부에 기재된 사항을 통해 조선 후기 군병의 편제와 이를 통한 국가의 민중 지배 양상을 알 수 있어 내용적 가치가 있다.

7. 충청도 병마절도사 제사
忠淸道兵馬節度使題辭

- 1871년고종 8
- 증빙류證憑類 – 제사題辭
- 36.4 x 69.7
- 1면

충청도 병마절도사가 이양선異樣船 6척이 서해에 출몰한 것을 충청도 관찰사忠淸道觀察使에게 보고했고, 보고한 건에 대한 답변을 담은 문서이다.

제사는 상부 기관에서 내린 문서로 상부에 보고한 사안이나 청원에 대해 하부 기관이 받은 처분 또는 판결문이다. 구성은 내용, 날짜, 발급 대상 순으로 기재된다. 끝맺음은 주로 '…向事'를 서술하였는데, 이는 '안일向事'로 발음되며 뜻은 '할 일'이라고 풀이된다. 처분 또는 판결문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독 문서가 아닌 다른 문서와 함께 발급했다.

문서의 내용은 "1871년고종 8 5월 19일 신시申時, 15~17시에 이양선이 북쪽 큰 바다에서 서해를 향해 직접 내려왔고, 형체는 희미하게 보여 추격한 후에 보고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관찰사는 "보고한 내용은 알았으며, 소근所斤, 現 충남 태안군 소원면 소근리 일대에서 요망瞭望한 2척은 내려갔으므로 다시 근심할 것이 없고, 이후로는 침략하거나 보고 하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도록 신칙申飭, 단단히 타일러 경계함 하라."고 서술했다.

원문서는 병마절도사가 국왕에 보고한 장계狀啓를 같이 동봉한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 문서는 제사 부분만 전하며, 문서 상단과 우측 부분이 결손되어 확인할 수 없다. 문서의 발급자는 관찰사로 추정할 수 있는데, 내용 중 "재영在營"이라 기재한 부분을 통해 감영監營에 있으면서 문서를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문서를 통해 당시 외적이 출몰하면 상부에 보고하던 체계와 문서 양식, 하부 기관의 보고에 대한 상부 기관의 답변 체계를 알 수 있어 서지적 가치가 있다. 또한, 1871년 4월 14일에 발발한 신미양요 직후의 분위기를 알 수 있어 역사적 가치가 있다.



8. 계본 啓本

- 1874년고종 11
- 소 · 차 · 계 · 장류疏 · 箚 · 啓 · 狀類
  – 계본啓本
- 44.8 x 70.0
- 1면

1874년고종 11 10월 16일 전라도 병마절도사全羅道兵馬節度使 송희직宋熙直, 1826~?이 작성한 계본이다. 계본은 발급 주체가 관청으로 국왕에게 보고하는 대 국왕對國王 관부문서官府文書이다.

조선 후기 계본 양식은 문서를 올리는 신하 이름을 먼저 작성하고, '삼가 계하여謹啓爲某事'로 시작하는 문서 발급 목적을 적는다. '삼가 계를 아룁니다謹具啓聞'로 내용을 마무리하고, 발급일, 보내는 신하의 서명 순으로 작성한다.

문서에 의하면 최초 보고자는 나주목羅州牧 흑산진黑山鎭에 속한 우이도牛耳島의 요망군瞭望軍 박연신朴連信이다. 우이도 인근에서 확인된 이국異國의 선박 출현을 나주 목사羅州牧使 송인옥宋寅玉에게 알렸다. 송인옥은 자신의 관할구역에서 일어난 일을 지역의 군사책임자인 전라도 병마절도사에게 보고했고, 최종적으로 전라도 병마절도사 송희직이 계본으로 정리해 국왕에게 보고했다.

작성일자 위에는 전라도 병마절도사인이 답인踏印되어 있고, 판부 오른쪽에는 계자인啓字印이 답인되어 있는데 종이를 도려내고 그 위에 찍었다.

고종은 같은 달 29일 "의정부에 계하啓下하라."는 내용의 판부判付를 내렸다. 문서의 겉면에는 전라도 병마절도사가 '청인淸人을 문정한 일下該司全羅兵使 啓本漂到淸人問情事'이라는 내용을 기재한 첨지籤紙가 첩부貼付되어 있으며 이를 내린 일자인 "갑술 시월 이십구일甲戌十月二十九日"이 기재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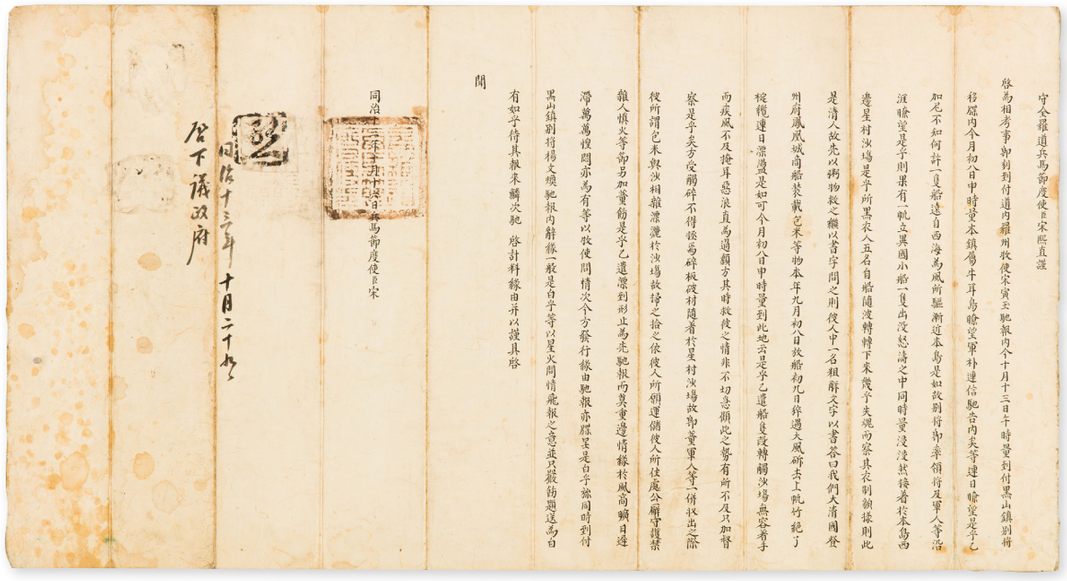

문서의 내용은 박연신의 최초 보고 내용을 주로 인용했다.

"10월 8일 이국(異國)의 배가 우이도 서쪽 성촌(星村) 모래사장에 난파하여 살펴보니 검은 옷을 입은 5명의 사람이 있었다. 의복을 살펴보니 청나라 사람으로 우선 죽을 주어 요기를 한 후 글로 써서 표박(漂迫)한 사정을 물었다. 표류한 이들은 청나라 등주부(登州府) 봉황성(鳳凰城) 사람으로 포미(包米) 등을 싣고 9월 8일 발선하였다가 9일 큰 바람이 일어 표류하게 되었고, 10월 8일 신시(申時)쯤 우이도에 도착하였다고 하였다. 우이도 동군인(董軍人) 등이 흩어진 포미를 수습하여 공해(公廨)로 옮겨 주고 이러한 사실을 보고한다."고 하였다.



『계본啓本』의 표지에 적힌
첨지簽紙와 발급일자

1489년(성종 20) 이후 일반 백성이 계본을 올리는 것을 시정해 관원이 검토한 뒤 왕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계본에 대한 회답 기한은 10일로 정해져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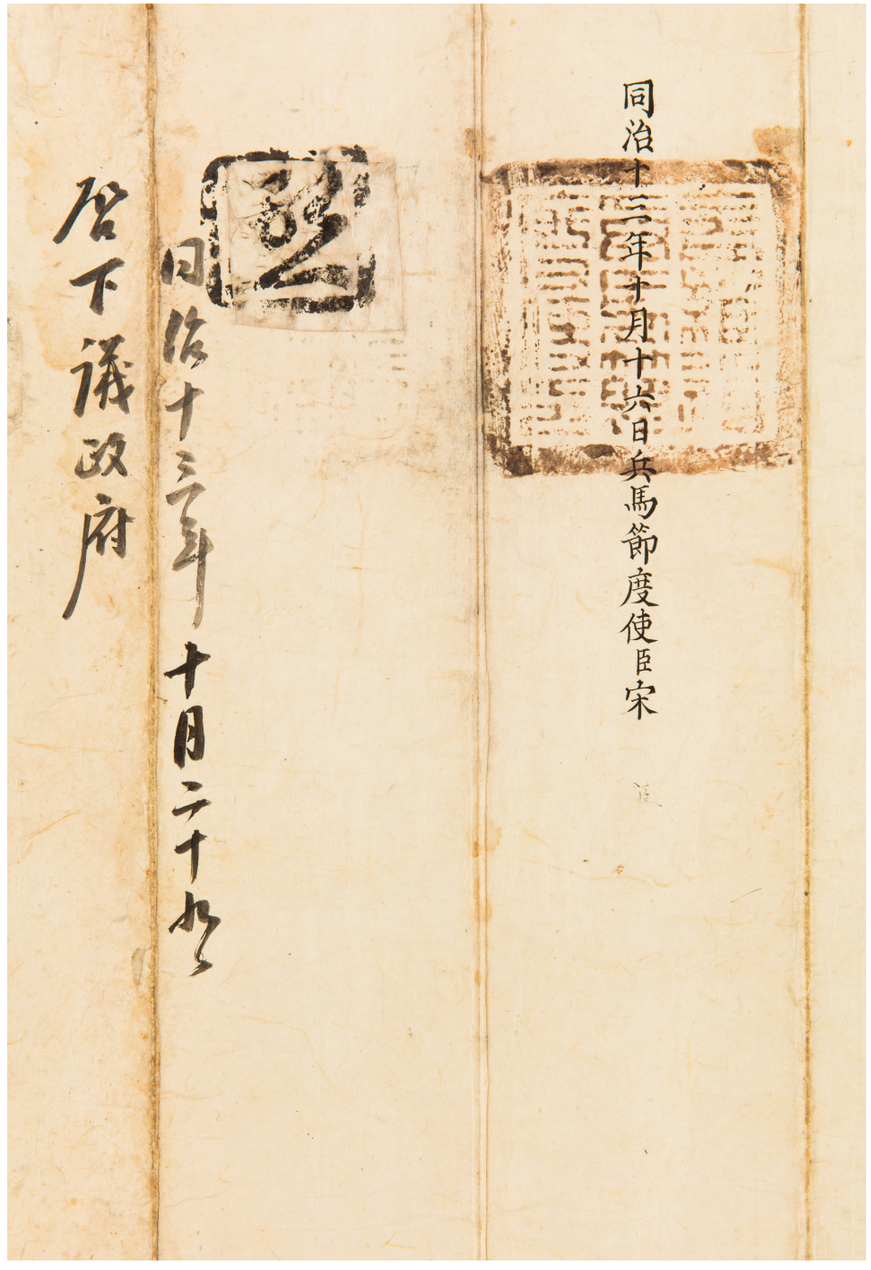

전라도병마절도사인全羅道兵馬節度使印과 '계啓'자인

9. 유서 諭書

- 1873년고종 10
- 교령류敎令類 – 유서諭書
- 92.0 x 56.1
- 1면

유서는 조선시대 국왕의 명령문서 중 하나로 담당 승지가 왕명을 전달하는 유지有旨와 달리 국왕이 직접 명령을 내리는 문서이다. 관찰사觀察使, 절도사節度使, 방어사防禦使, 유수留守 등과 같이 한 지방의 군사 지휘권을 가진 관원에게 밀부密符[23]와 함께 내린다.

유서의 문서 양식은 문서의 첫 행에 '유諭'로 시작해서 수취자의 관직 · 성명을 기재한다. 수취자의 품계가 2품 이상의 경우에는 경卿으로 기재한다. 이어서 본문의 내용을 기재하고, 본문의 마지막에는 '고유故諭'를 적는다. 본문의 다음 행에는 유서를 발급한 일자를 중국의 연호와 연월일로 기재한다. 연호 위에는 어보御寶인 유서지보諭書之寶를 안보安寶한다.

이 자료는 1873년고종 10 12월 13일 신응조申應朝, 1804~1899에게 고종이 내린 문서이다. 조선 후기까지 유서의 양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신응조를 평안도관찰사 겸 병마수군절도사 도순찰사 관향사 평양부윤平安道觀察使兼兵馬水軍節度使都巡察使管餉使平壤府尹에 임명한 후 '밀부가 아니면 함부로 군사를 움직이지 말라.'[24]는 당부를 기재했다.

23) 밀부(密符)는 유사시 긴급하게 내려지는 발병(發兵) 명령이 왕명임을 확인하기 위한 제도로, 군사를 발동(發動)하거나 간모(奸謀)에 동원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이다.

24) "卿受委一方, 體任非輕, 凡發兵應機, 安民制敵, 一應常事, 自有舊章, 慮或有予與卿獨斷處置事, 非密符莫可施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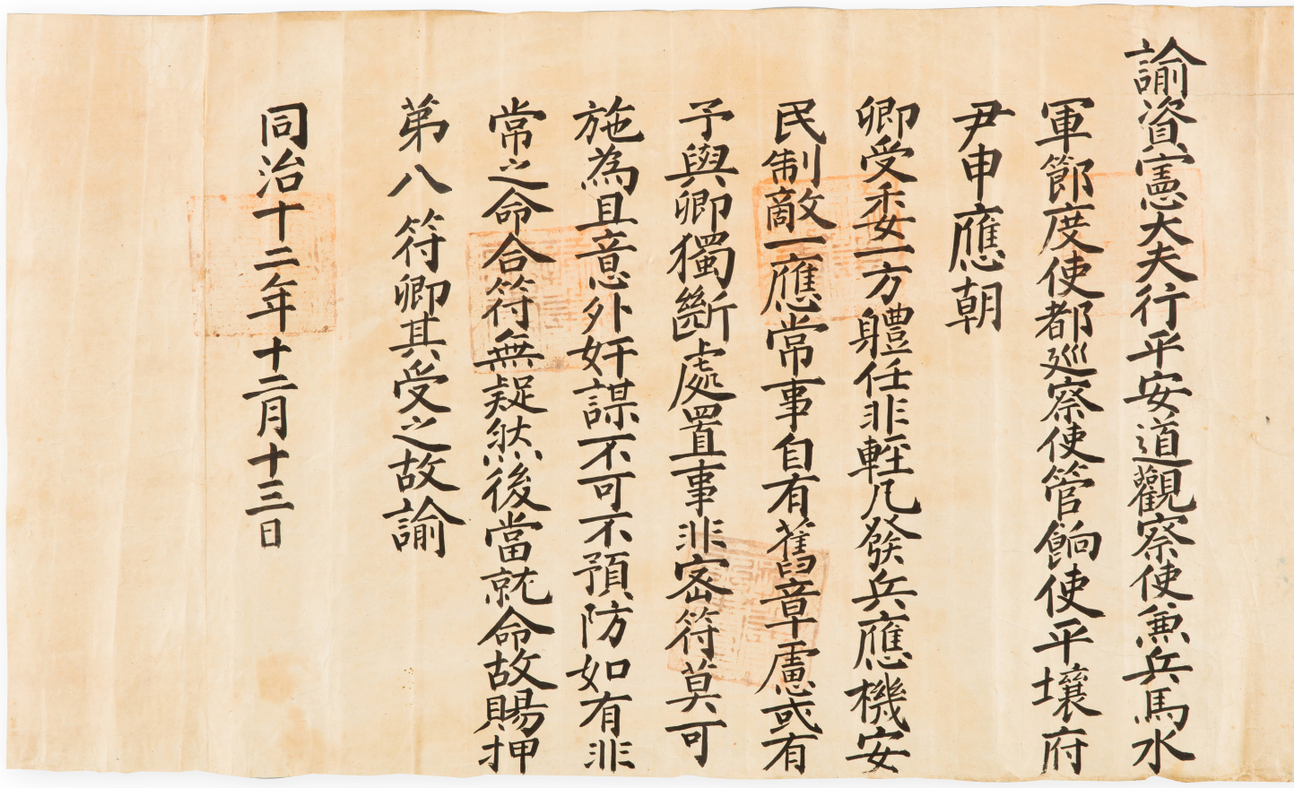

諭資憲大夫行平安道觀察使兼兵馬水
軍節度使都巡察使管餉使平壤府
尹申應朝
卿受委一方體任非輕凡發兵應機安
民制敵一應常事自有舊章慮或有
予與卿獨斷處置事非密符莫可
施為且意外奸謀不可不預防如有非
常之命合符無疑然後當就命故賜押
第八符卿其受之故諭
同治十二年十二月十三日

10. 경상우수영 수조홀기
慶尙右水營水操笏記

- 조선 후기
- 치부 · 기록류置簿 · 記錄類 – 홀기笏記
- 62.0 x 12.5
- 1책 2면

홀기는 의식이 진행되는 순서를 적은 문서이며, 첩帖의 형태로 접어서 만들었다. 경상우수영 수조홀기는 조선 후기에 경상우수영 소속 각 읍진의 군선들을 모아 수조水操, 수군 조련을 시행하는 절차와 규식規式을 기록한 문서이다.

문서 표지에 별도의 제목과 작성 연대는 표기되어 있지 않으나 본문에서 확인되는 곤양, 고성, 창원, 거제, 사천, 진주 등의 지역명을 통해 경상우수영에서 작성한 홀기인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영등포永登浦, 現 경남 거제시 장목면 구영리 일대라는 지역명을 통해 1751년영조 27 영등포진을 혁파하기 전에 작성된 수조홀기인 것으로 작성 시기를 추정할 수 있다.

문서의 앞면에는 수군 조련 절차 중에서 "기회期會"로 세병관洗兵官에서 좌기坐起할 때의 절차와 군례를 마친 후의 절차와 조치에 관한 내용을 기술했다. 각 읍진에 수령들이 모여 통제사를 맞이하는 절차가 기록되어 있다.



문서의 뒷면에는 수군 조련 절차 중에서 "점고點考"로 대장이 대기하는 좌선坐船에서 시행한다. 중군선中軍船, 부사령관이 타고 있던 배에서 포를 한 번 쏘고 징을 치면, 각 병은 무장을 풀고 휴식하고 군례를 마친 후 각 장수들은 해당 선박에서 명령을 기다린다. 중군中軍과 비장裨將, 집사執事 등이 전선戰船 및 군기를 점검하여 화약류나 이총통二銃筒에 사용한 화살인 소전小箭을 발사하고 돌아오는 절차까지 기록되어 있다. 또한, 조선 후기 통제사와 수령이 함께 진행한 수군 훈련 내용을 담고 있어, 『병학지남兵學指南』, 『병학통兵學通』, 『속병장도설續兵將圖說』 등의 문헌과 비교 · 검토를 통해 조선 후기 수군의 훈련 절차를 복원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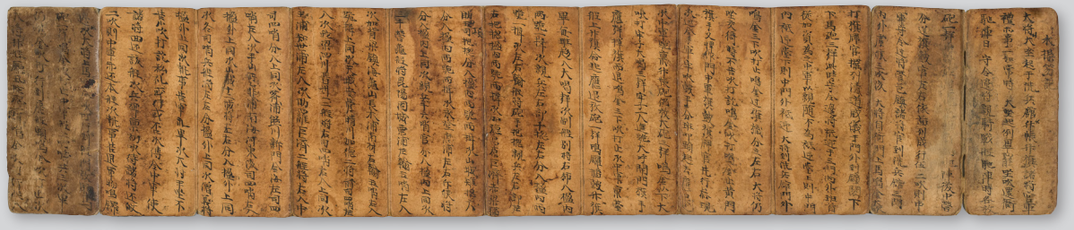

『경상우수영 수조홀기』 앞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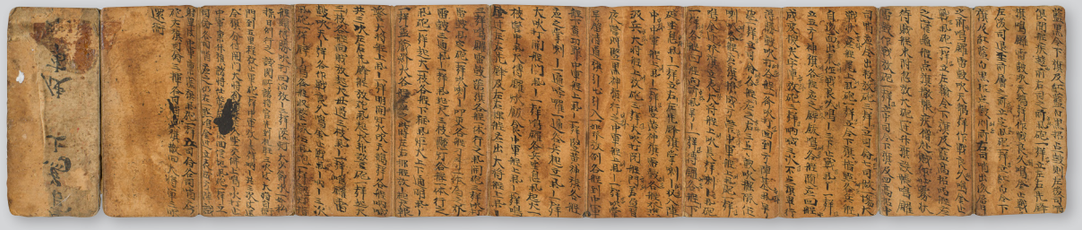

『경상우수영 수조홀기』 뒷면

11. 황해수영 우후 송종대 문서
黃海水營虞侯宋鍾大文書

1891년고종 28 황해도黃海道 수영水營에서 작성된 관문서류로, 수군절도사의 부장副將인 우후虞侯에 재직했던 송종대宋鍾大, 1864~1942가 작성한 수군영의 공문서 일괄이다.

황해도 수영은 1718년숙종 45 방어영이던 소강진所江鎭이 수영으로 승격되면서 설치되었다. 하지만 소강에 별도의 수군절도사를 파견하지 않고 인근의 옹진부사甕津府使가 수사를 겸임하게 되면서 본영本營은 옹진, 행영行營은 소강이 되었다. 따라서 황해수사는 6개월마다 근무지가 변경되었다. 바람이 잔잔해서 적선이 출현할 가능성이 높은 3월에서 8월까지는 행영인 소강所江에 머무르고, 바람이 잦은 9월에서 이듬해 2월까지는 옹진으로 이동했다. 이때 우후는 본영으로 이동하지 않고 1년 내내 행영을 지키며 수사의 역할을 했다. 황해도 우후는 1794년정조 18부터 파견되었으며, 해안 방어, 군량미 관리 등 군정 업무 전반을 관할하였다.

송종대는 자는 성율聖律이며 호는 화은化隱이다. 1885년고종 22에 무과에 급제하여 선전관宣傳官, 사복시첨정司僕寺僉正에 오르고 1891년 1월 29일자 『승정원일기』에 황해도 수군우후로 임명된 것이 확인된다.[25]

1892년고종 29 6월 총어영摠禦營의 기사장騎士將에 임명된 후 한동안 관직 이력이 보이지 않다가 1900년고종 37 11월 철도사업과 전화 업무를 전담하기 위해 궁내부 산하에 신설된 부서인 통신사通信司의 전화과 주사電話科主事[26]로 임명이 되고, 1902년고종 39 9월에는 광제원廣濟院 사무위원에 임명된 것을 끝으로 관직 이력이 확인되지 않는다.

송종대가 남긴 문서의 종류는 일기日記, 하기下記, 포폄방목褒貶榜目, 도임장到任狀, 곡물 지출 내역, 상납 영수증尺文, 노정기路程記이다. 송종대 문서는 북방지역의 수군영인 황해도 수영과 관련한 자료로, 황해도 수영과 관련한 문서는 거의 남아있지 않아 사료적 가치가 높다. 또한, 황해도 수영 기록 중에서도 수군절도사가 생산한 문서가 아니라 우후가 생산한 문서인 점에서 수영 실무자들의 생활과 활동을 이해하는 데 자료적 가치가 있다.

25) "… 宋鍾大爲黃海水虞候 …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3,005책 (탈초본 137책), 고종 28년 1월 29일 갑오 기사.

26) 전화과 주사(電話科主事)는 궁 및 왕실과 각 정부 기관의 전화 가설과 교환 업무를 담당하던 직무이다.

송종대 일기 宋鍾大日記

- 1891년고종 28 1월~5월
- 치부 · 기록류置簿 · 記錄類 – 일기日記
- 21.2 x 22.0
- 1책

『송종대 일기』는 송종대가 황해도 수영 우후에 임명된 이후 근무 시작까지를 매일 기술하고 있다. 1891년고종 28 1월 도목정사都目政事[27]의 기록을 시작으로 황해도 수영 우후로 임명된 이후의 일정을 간략하게 기재했다.

2월 10일 사은謝恩[28]을 하고, 2월 15일에 하직下直을 했다. 2월 20일에 서울에서 출발하여 22일까지 경기도 고양高陽 – 경기도 장단長湍 – 황해도 백천白川 등의 일정이 기재되었다.

기록에서 송종대와 함께 황해도 수영에 간 일행은 영리營吏[29] 1인, 마두馬頭[30] 1인, 급창及唱[31] 1인, 군노軍奴[32] 2쌍이 왔다고 기록하였다.



27) 도목정사(都目政事)는 이조 · 병조에서 관원의 성적을 조사해 이동하던 인사제도이다.

28) 사은(謝恩)은 관직에 임명된 관리가 임명장을 받고 근무 전에 왕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는 간단한 문서이다.

29) 영리(營吏)는 감영이나 군영 등에 속한 향리이다.

30) 마두(馬頭)는 사행(使行)의 수행원으로 역마(驛馬)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 사람이다.

31) 급창(及唱)은 관에서 시중드는 노비이다.

32) 군노(軍奴)는 지방 관청에 있던 심부름꾼이다.

음력 2월 26일에는 황해도 연안延安, 27일에는 황해도 해주海州, 28일에는 황해도 강령康翎, 29일에는 황해도 옹진甕津에 도착했고, 황해도 수군 행영行營이 있는 소강所江에 도착한 것은 음력 2월 30일이었다. 3월 1일부터 업무를 시작했다고 기재했으며, 수군 본영本營으로 옮긴 것은 3월 2일이고, 3일부터 본영에서의 근무가 시작되었다. 근무 시작일 이후에는 황해도 수영 관할의 수군진에서 올리는 서목書目들을 처리한 내용을 기록해 5월까지 이어진다.

일자별 기록 위에 관인을 날인한 것을 보아 관직 임명장을 받고 난 이후 공식적인 집무에 임하기 이전의 기록도 관문서로서 성격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송종대 하기 宋鍾大下記

- 1891년고종 28 5월
- 치부 · 기록류置簿 · 記錄類 – 하기下記
- 20.2 x 21.0
- 1책

하기는 지출 장부를 의미하는 것으로 관청의 재정 운영을 위해 작성된 문서이다. 지출할 때 기록해 월말이나 연말에 기관장의 수결手決을 받았다. 하기는 작성 성격에 따라 문서의 이름이 달라진다. 해마다 반드시 지출해야 되는 것을 기록하는 응하기應下記, 연도별로 비정기적인 지출하는 것을 기록하는 별하기別下記, 수입내역이 첨부된 하기가 있다.

『송종대 하기』는 월 단위로 작성된 것으로 1891년고종 28 5월에 작성하여 옹진甕津 중영中營에서 상영上營으로 올렸다. 내용에 관인을 날인해 결재를 받았다. 하기의 내용은 옹진 군영의 양고粮庫에 보관되어 있는 대소미大小米의 본색本色과 배삭전排朔錢 봉류逢留, 바친 물건을 거두어 보관해 둠 상황을 정리해 응하기의 성격이 강하다. 대미大米, 소미小米 등의 일자별 지출과 잔고 상황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노정기 路程記

- 1891년고종 28
- 치부 · 기록류置簿 · 記錄類 – 노정기路程記
- 35.2 x 18.8
- 1매

송종대가 황해도 우후로 발령 받은 후 서울에서부터 황해도 수영의 본영인 옹진甕津까지 여행한 길의 경로와 이동 거리, 일정과 일자별 숙소, 지역 등을 적은 문서이다. 공무여행을 기록하기 위해 사용한 문서이기 때문에 상세히 기술했다.

1891년에 작성된『송종대 일기宋鍾大日記』에 기재된 일자와 일자별 숙소가 동일해 일기의 초안 혹은 증빙 서류의 역할을 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관인官印이 찍혀 있어서 관문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自京城至甕津路程日字
奉命地
路程記
高陽四十里宿所
長端八十里宿所
松都中火白川八十里宿所
碧蘭驛三日留
新溪等待
平山溫井里中火三十里
甕津本營二里宿所
本營移住
日亞悅
亞營
本營
中營

옹진도임초대령대소 甕津到任初待令大小

- 1891년고종 28 3월 6일
- 소 · 차 · 계 · 장류疏 · 箚 · 啓 · 狀類 – 도임장到任狀
- 30.2 x 29.0
- 1매

『옹진도임초대령대소』는 도임장到任狀으로 지방에 부임한 관원이 근무하는 관청에 도착했음을 중앙에 알리는 공문서이다. 관직을 임명 받은 관원이 부임지역에 도착하면 도임장을 작성해 발송한 후 공무를 시작한다.

문서는 1891년고종 28 3월 6일에 작성한 것으로 송종대가 근무지인 옹진에 도착한 뒤에 상관인 황해도 수군절도사에게 올린 문서이다. 당시 황해도 수군절도사는 이태권李泰權이다. 이태권은 1890년 5월 황해수사黃海水使에 임명되었다.[33] 당시 황해수사는 옹진 부사를 겸직하고 있었고, 이태권은 황해수사를 1891년 12월까지 근무하였다.

당시 옹진에 새로 도임을 한 사람은 황해도 수군우후 송종대이므로 그가 황해도 수군절도사 이태권에게 올린 문서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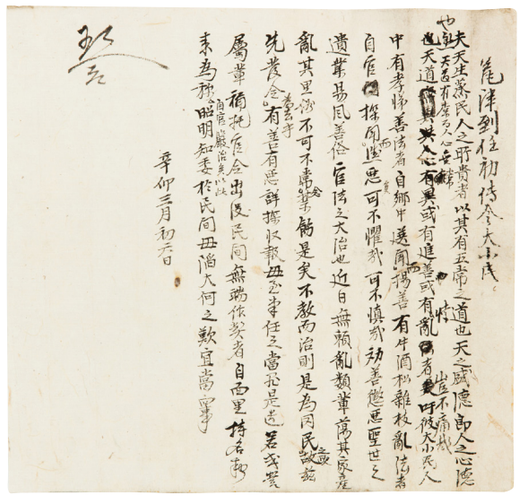
甕津到任初待令大小

33) "…兼甕津府使單李泰權…",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2,997책(탈초본 137책), 고종 27년 5월 26일 갑오 기사.

신묘십이월십오일추동등포폄방목
辛卯十二月十五日秋冬等褒貶榜目

- 1891년고종 28 12월 15일
- 소 · 차 · 계 · 장류疏 · 箚 · 啓 · 狀類 – 포폄단자褒貶單子
- 37.6 x 31.1
- 1매

『신묘십이월십오일추동등포폄방목』은 1891년 12월 15일에 작성된 황해도 수영 관내 관원들의 인사 고과 문서이다.

수군의 경우 절도사가 평가 책임자였으며, 평가 성적을 기준으로 승진과 파직 등의 인사가 이루어졌다. 포폄褒貶 등급은 하下등급을 받으면 파직, 중中등급을 연속으로 받으면 파직 대상이었다.

본 문서는 1891년 가을과 겨울의 근무 내용을 대상으로 평가한 문서로 12월에 시행된 포폄의 결과 문서이다. 평가 대상자는 황해도 수군절도사 휘하의 군관이다. 휘하에는 수군우후水軍虞候, 보좌관, 수군영장水軍營將, 지휘관, 수군만호水軍萬戶가 있다. 아직 부임을 하지 않은 용매첨사龍媒僉使를 제외하고 평가가 이루어졌으며 모두 상上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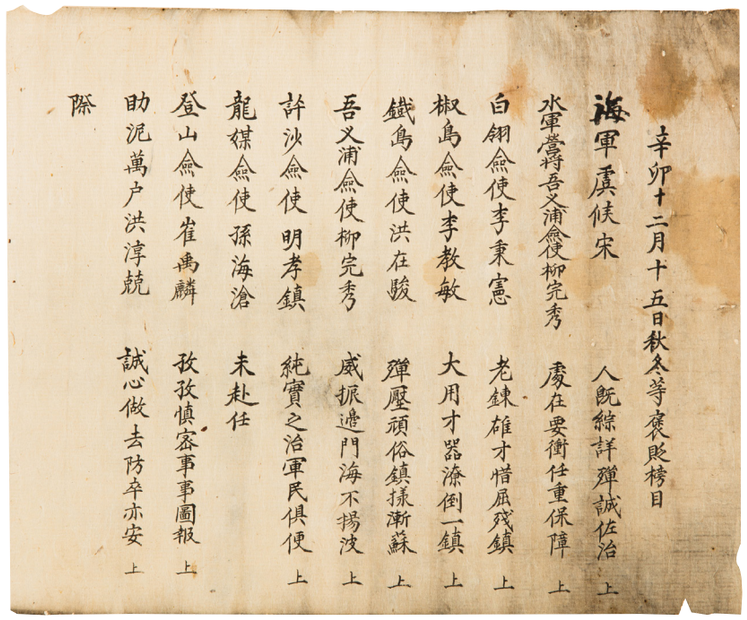
辛卯十二月十五日秋冬等褒貶榜目
海軍虞候宋 人旣綜詳殫誠佐治 上
水軍營將吾叉浦僉使柳完秀 處在要衝任重保障 上
白翎僉使李秉憲 老練雄才惜屈殘鎭 上
椵島僉使李敎敏 大用才器淹倒一鎭 上
鐵島僉使洪在駿 殫壓頑俗鎭攝漸蘇 上
吾叉浦僉使柳完秀 威振遮門海不揚波 上
許沙僉使明孝鎭 純實之治軍民俱便 上
龍媒僉使孫海滄 未赴任
登山僉使崔禹麟 孜孜愼密事事圖報 上
助泥萬户洪淳兢 誠心做去防卒亦安 上
隊

황해도 수군만호水軍萬戶는 백령첨사白翎僉使, 백령진 관할, 초도첨사椵島僉使, 초도진 관할, 철도첨사鐵島僉使, 철도진 관할, 허사첨사許沙僉使, 허사진 관할, 용매첨사龍媒僉使, 용매진 관할가 있다.

자문 尺文

- 1891년고종 28
- 증빙류證憑類 – 자문尺文
- 140.4 x 36.5
- 8매

관청에서 문서 전달 혹은 세금 상납을 한 뒤에 이를 증빙하기 위해 발급 받은 자문尺文이다. 자문은 척문이라 쓰지만 문서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한 자尺도 안되는 작은 문서'라는 의미에서 명칭이 유래되었다.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수령이나 관원이 새로 임용될 때 중앙의 여러 관서에 내는 각종 수수료와 부과금에 대한 영수증, 민간에서 지방 및 중앙의 관아에 납부한 세금이나 물품에 대한 영수증이다. 문서는 신임 관료가 새로 부임하면서 중앙관청에 낸 수수료의 영수증이다. 목판으로 인쇄했으며, 문서의 보관은 점련粘連방식으로 관련 문서를 덧붙여서 보관한다. 문서와 문서 사이에는 간인間印을 찍었다.

자문은 총 8장으로 구성되었으며, 송종대가 황해도 수군우후로 새로 임명되면서 부과된 일종의 수수료인 잡부금雜賦金을 지불하고 받았다. 조선 후기에는 수령 혹은 수령과 비슷한 지위에 임명되면 부임 전까지 중앙관청을 돌며 수수료를 내고 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이 일종의 관행이자 폐단이었다.

송종대가 받은 영수증의 발급기간을 보았을 때 가장 이른 일자는 신묘년辛卯年, 1891년 11월이다. 송종대가 황해수영 우후로 부임한 것은 1891년 1월인데, 일반적으로 관직 부임 이전에 수수료 명목의 세금을 납부하는 것과 달리 송종대는 관직 부임 이후 수수료를 중앙관청에 납부했다.

자문에서 확인된 잡부금은 필채전筆債錢34), 포진채鋪陳債35), 진하예목進賀禮木36) 등의 명목이 확인된다. 잡부금을 납부한 중앙 관청은 종친부宗親府, 이조吏曹, 승정원承政院, 한림원翰林院, 예문관藝文館 등이다.

발급 일자는 모두 황해도 수군우후 송종대가 재직했던 기간인 1891년 1월 29일부터 1892년 6월까지이다. 자문을 통해 관직 부임 시 있었던 관행과 인사제도에 대해 알 수 있다.

34) 필채전(筆債錢)은 문서를 작성해준 대가로 내는 비용으로 일명 '필묵값' 또는 '붓값'이라고 한다.

35) 포진채(鋪陳債)는 이조(吏曹)의 관료들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연회비이다.

36) 진하예목(進賀禮木)은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 조정에 모여 축하하던 자리에 내던 예물로서의 포목(布木)이다.

번호	1	2	3	4
징수 목록	– 문서를 작성해준 대가로 내는 필채(筆債)	– 관료들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연회비인 포진채(鋪陳債) – 자문(尺文)발급 수수료인 도부채(到付債)		– 승정원 당후관(堂后官)에게 일종의 연회비인 포진채 – 자문 발급 수수료인 도부채
징수가	필채 1냥(壹兩)	포진채 4냥(肆兩) 도부채 5전(伍錢)	포진채 5냥(伍兩) 도부채 5전(伍錢)	포진채 5냥(伍兩) 도부채 5전(伍錢)
해당 관청	종부(宗府, 종친부)	형조(刑曹)	승정원(承政院)	
발행 일자	임진(壬辰, 1892) 4월	신묘(辛卯, 1891) 12월	신묘(辛卯, 1891) 12월	신묘(辛卯, 1891) 12월

번호	5	6	7	8
징수 목록	– 문서를 작성해준 대가로 내는 필채 – 자문(尺文)발급 수수료인 도부채		– 관료들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연회비인 포진채 – 자문 발급 수수료인 도부채	– 자문 발급 수수료인 도부채 – 할당금 형식의 찬조금인 예목전(禮木錢)
징수가	필채 4냥(肆兩) 도부채 5전(伍錢)	필채 4냥(肆兩) 도부채 5전(伍錢)	포진채 4냥(肆兩) 도부채 5전(伍錢)	예목전 5냥(伍兩)
해당 관청	승정원	한림원(翰林院)	예문관(藝文館)	이조(吏曹)
발행 일자	신묘(辛卯, 1891) 12월	신묘(辛卯, 1891) 12월	신묘(辛卯, 1891) 11월	임진(壬辰, 1892) 4월

[표 4] 황해수영 우후 송종대 자문(尺文) 모음



12. 백헌총요 百憲總要

- 영조 연간
- 고서古書 – 법전法典
- 20.4 x 25.3
- 1책

육조六曹에 관계되는 법례法例를 수록한 책으로 행정을 맡은 수령守令이나 집법관執法官이 실무를 볼 때 편리하도록 만든 일종의 법률 사전이다. 편찬자와 편찬 시기는 모두 미상인데, 대략 영조英祖 연간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서문에서는 단일 필사본으로 기재하였으나, 여러 이본異本이 확인된다. 『백헌총요』는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소장 필사본을 국역한 것으로 원문이 책 뒤에 영인되어 실려 있다.

내용은 모두 2권으로 이루어져 있다. 권 1은 이조吏曹, 호조戶曹로 항목을 나누어 관련 내용을 수록하고, 권 2는 형조刑曹의 내용을 수록한다. 각 권에 수록된 내용들은 육조의 각 항목과 관련된 필요한 조문만을 발췌하고, 수시로 반포하던 수교受敎 등을 정리해 관리들의 직무수행에 참고가 되도록 엮었다. 여러 가지 행정 실무에 필요한 서식書式도 수록하고 있다.



해양과 관련하여 수군과 해운에 사용되는 법률 내용이 확인된다. 권 1의 호조 부분에서 해운과 관련한 것은 수세收稅, 조운漕運, 패선敗船, 외국 사신과 사신에 따른 의식과 접대 방식, 장계의 서식 등이 있다. 수군과 관련된 것은 군율軍律, 군정軍政, 성보城堡, 봉수烽燧, 병선兵船, 쇄환刷還 등의 법률 내용이 있다.

이조 부분에서는 인물에 대해 서술했는데, 이름 · 자 · 호 · 관직 경력 · 유배 경력 등의 내용, 사승私乘 및 교유관계, 주요 저술 등 객관적인 정보를 위주로 간단하게 기술했다. 형조 부분에서는 매매賣買, 매매일한賣買日限, 문기文記, 선교船橋 등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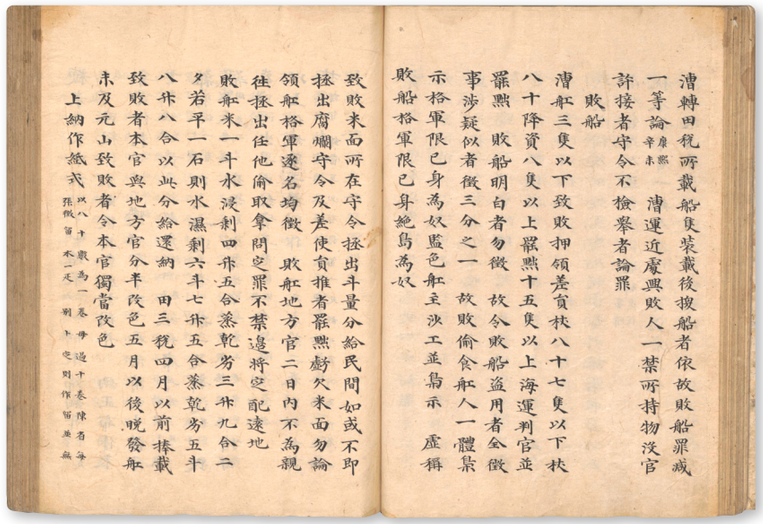

『백헌총요』 패선敗船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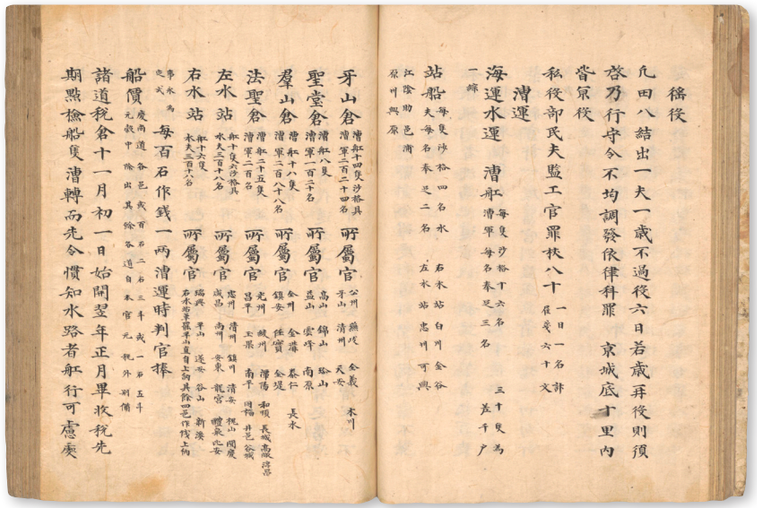

『백헌총요』 조운漕運조

13. 평신진지 平薪鎭誌

- 1836년헌종 2
- 고서古書 – 지리지地理誌
- 17.1 x 29.8
- 1책 19면

평신진첨절제사平薪鎭簽節制使 박윤묵朴允默, 1771~1849이 1836년에 저술한 진지鎭誌이다. 평신진平薪鎭은 서산군現 충남 서산시 화곡리 반곡마을 일대에 있는 충청도 북서부 해안을 수호한 진으로, 1711년숙종 37에 설치되어 1895년 고종 32까지 운용되었다.

평신진은 조운漕運의 경유지에 위치하며 삼남 지방의 원활한 양곡 수송과 왜구 방어를 관장했다. 안흥現 충남 태안군 근흥면 일대에서 경기도 풍도現 경기 안산시 단원구 풍도동까지 호송했던 양선糧船의 보호, 도서 지방의 수색 정찰과 금산禁山 일대를 보호하는 주요 임무를 수행했다. 종3품의 첨사가 관할했으며, 목장을 관리하는 겸목관兼牧官 체제를 채택했다.

『평신진지』는 평신진과 관련한 기록을 모아 현황과 함께 기술했다. 내용을 연혁沿革, 관직官職, 면리面里, 도로리수道路里數, 폭원幅圓, 명산名山, 삼세三稅, 사찰寺刹, 병선兵船, 군기軍器, 명승名勝, 물산物産, 선생안先生案, 교속校屬, 이속吏屬, 노령奴令, 군총軍摠, 효열孝烈, 공해公廨, 편액扁額, 부세賦稅, 환향還餉, 전총錢摠, 호적戶籍, 호조護漕, 수토搜討, 수조水操, 점검點檢, 조적糶糴, 금송禁松, 풍속風俗 등으로 나누어 정리했다. 이를 통해 18~19세기의 양곡의 수송 방식, 군사제도, 감목관의 역할, 이양선 출몰과 대처 양상, 수군 현황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저자 박윤묵은 시와 글씨로 이름난 여항시인閭巷詩人으로 조선 후기 여항시사閭巷詩社인 송석원시사松石園詩社의 일원이며, 규장각奎章閣에서 서리書吏로 봉직하면서 많은 서적의 간행에 참여하였다. 1835년 윤 6월에 평신진 첨사가 되었으며, 평신진에 부임한 후 선정善政을 베풀었다. 사재私財를 써서 기근을 당한 백성들을 구호하고 가난하여 혼인하지 못한 남녀들을 혼인시켜 주었다.

박윤묵의 저서로는『존재집存齋集』이 있다.『존재집』에는「평신진서平薪鎭誌序」,「평신록서平薪錄序」,「평신관부식서平薪官賻式序」 등 다수의 평신진 관련 기록을 수록했으며, 첨사의 업무와 실무 관료의 구체적인 일과와 애민시愛民詩를 수록했다.

한편, 충청 수군과 관련한 기록은 평신진 수군 군적부와 2020년에 발굴된 19세기 안흥진安興鎭 수군 군적부의 사례만 확인되어 내용적으로 희귀하다. 또한,『평신진지』는 유일본으로 추정되어 서지적인 가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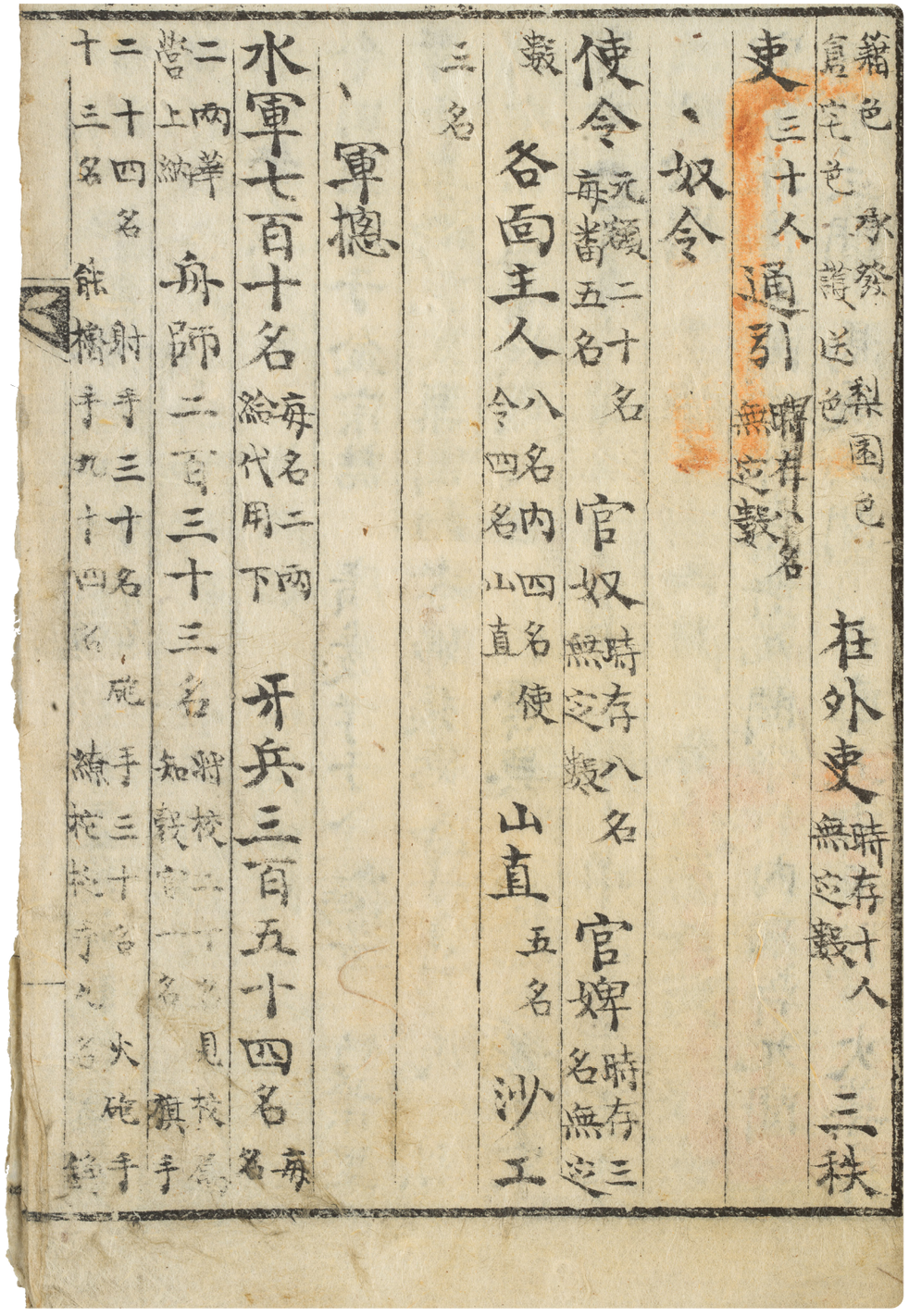

『평신진지』 중 군총軍摠, 노령奴令

군총은 평신진의 수군(水軍), 아병(牙兵), 주사(舟師) 등 평신진 병력 현황이며, 노령은 평신진의 관노(官奴)와 사령(使令)의 현황이다.



『평신진지』 중 수조水操 와 수토搜討

수조는 매년 3월, 8월에 실시하는 수군 훈련 때 평신진의 역할을 기록한 것이며, 수토는 외부의 침입자가 있는지 살핀 것을 기록한 것이다.

14. 병학지남 兵學指南

- 1798년정조 22
- 고서古書 – 병서兵書
- 23.0 x 34.5
- 1책

명나라의 척계광戚繼光이 지은 『기효신서紀效新書』에서 군대의 조련 방법에 관한 부분만 요약하여 편찬한 병서이다. 『병학지남』은 많은 이본이 전해지며 크게 세 가지 계통으로 나누어진다.

먼저, '을축중추무고개반乙丑中秋武庫開頒'이라는 인장이 찍혀 있는 판본의 '을축乙丑'을 1649년인조 27으로 해석하여 가장 오래된 판본으로 추정한다. 다른 판본은 최숙崔橚, 1636~1698의 발문이 붙어 있어 1684년숙종 10에 발간된 것으로 보는 남원판南原版이 있다. 마지막으로 1787년정조 11 정조의 명으로 발간한 장용영판壯勇營版이 있다.

우리관 소장 『병학지남』은 정조의 명에 따라 장용영판을 1798년정조 22에 복각한 것이다. 첫 장에 낙서와 함께 장서인藏書印이 있고, 「궁파출전방사도弓鈀出前放射圖」가 있다. 이는 원거리에 위치한 적에 대한 공격을 연습한 도면으로 사수와 화전수 등 포수들이 배치되어 훈련하는 모습을 기록했다. 첫 장 이면에는 붉은 글씨로 '어영청조병법진御營廳條兵法陳'이 필사되어 있다.

내용의 구성은 권 1에는 「기고정법旗鼓定法」, 「기고총결旗鼓總訣」이 실려 있고, 권 2에는 「영진정곡營陣正穀」, 권 3에는 「영진총도營陣總圖(上)」, 권 4에는 「영진총도營陣總圖(下)」, 권 5에는 「장조정식場操程式」, 「성조정식城操程式」, 「수조정식水操程式」이 실려 있다. 수군의 훈련 절차는 「수조정식」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절차는 [표 5]와 같다.

부록으로 언해가 수록되어 있다. 언해문은 근대 국어 시기의 언해 양상의 차이, 어휘나 구문의 차이를 볼 수 있다. 이는 분철표기, 중철표기 등 18세기 국어학적 특징이 나타난다.

훈련 순서	훈련명	훈련 내용
1	현조패(懸操牌)	훈련하는 패(操牌) 달기
2	발초선(發哨船)	초선(哨船)의 출발
3	열영(列營)	진영의 배열하기
4	승선청(升船廳)	선청에 오르기
5	초관기(招官旗)	관기를 부름
6	관초발방(官哨發放)	관초의 명령(포고관의 작전 명령)
7	타요정대장발방 (舵繚碇隊長發放)	타공(舵工, 키를 조정하는 사람)과 요수(繚手, 돛줄 담당), 정수(碇手, 닻 담당)와 대장(隊長)에 대해 명령하기
8	관기하지방(官旗下地方)	관기(장관, 대장, 기총)의 지휘부로 내려감
9	일체발방(一體發放)	일체로 명령하기
10	승기기조(升旗起操)	깃발을 올리고 훈련하기
11	간적선선용화기 (着賊船選用火器)	적선을 보고 먼저 화기로 공격하기
12	차용군화기(次用軍火器)	차례로 군화기를 사용하기 [빈 나무 화통, 마른 목기표창, 활쏘는 흉내, 빈 총 쏘기]
13	대선공타(對船攻打)	적선 공격하기
14	역전쇄주(力戰碎舟)	힘껏 싸워 적선을 격파함
15	정종회선(整綜回船)	선단(綜)을 정돈하여 배를 돌림
16	방영 설치하기(下方營)	본래 영이 있던 제 자리로 돌아가 징을 울려 취타를 정지시키고 방영을 형성함
17	발초급(發樵汲)	땔감과 마실 물을 구하러 병사를 보냄
18	사공죄(査功罪)	전투할 때 생겼던 득실과 이후 군령에 따라 할 것을 명령하고 합격자와 군율을 어긴 위령자를 군중앞에 발표하여 비판하기
19	수초급(收樵汲)	생활필수품을 구하러 간 병사 구하기
20	낙기현등(落旗懸燈)	깃발을 내리고 등을 달기
21	발방야요(發放夜瞭)	야간 정찰 명령하기
22	우선과(遇船過)	지나가는 수상한 배를 만남
23	우흑괴(遇黑塊)	검은 풀 더미를 만남
24	우적선(遇賊船)	적선을 만남
25	산조귀항(散操歸港)	훈련을 그만두고 귀항하기

[표 5] 『병학지남』 권 5 「수조정식」에 기록된 수군 훈련절차



장서인藏書印과 「궁파출전방사도弓鈀出前放射圖」



『병학지남』 서문과 '어영청조병법진御營廳條兵法陳'



『병학지남』 권 5 「수조정식水操程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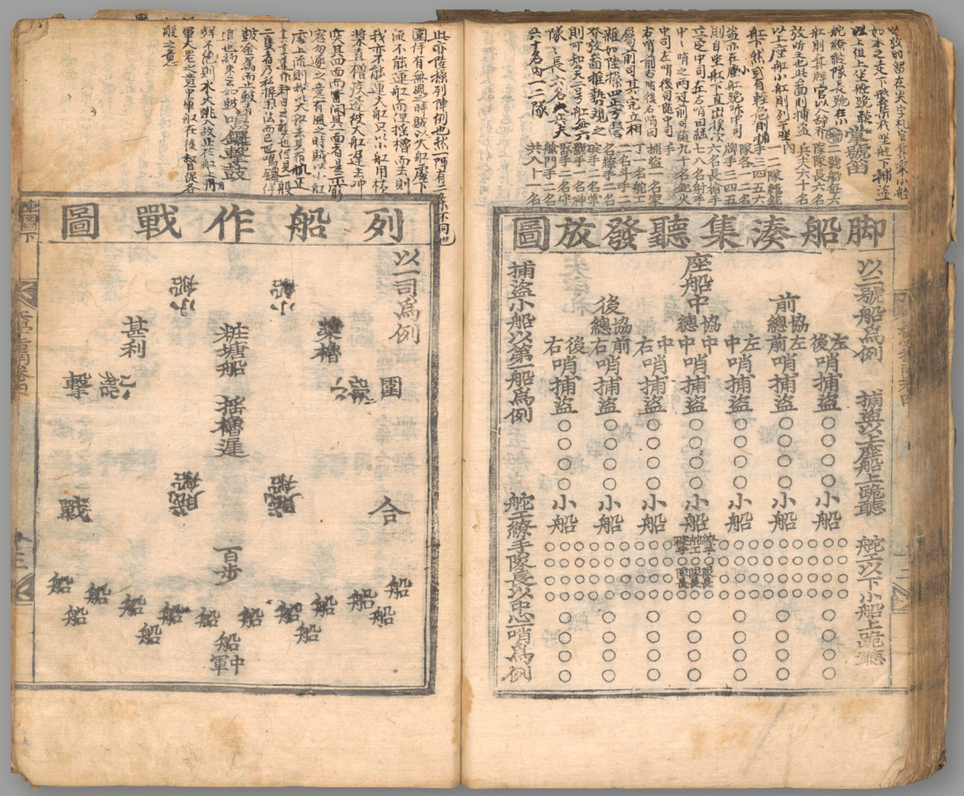

「열선작전도列船作戰圖」, 「각선태집청발방도脚船湊集聽發放圖」

15. 수전방략 水戰方略

- 1871년고종 8
- 고서古書 – 병서兵書
- 129.0 x 37.1
- 1책



1871년 신미양요 직후 서양 세력의 출몰에 대비하기 위한 조선의 수군과 전선戰船의 개량, 수전水戰에서의 방략方略을 기록한 책이다. 형태는 선풍엽장旋風葉粧이다.[37]

문서의 말미에 '무진戊辰 5월 청운동靑雲洞 장본藏本'이라 기재된 사항이 있는데, 1871년에 저술한 방략서임을 알 수 있는 구절은 "병법에 이르길 기계器械가 불리하면 승리를 얻을 수 없다고 한다. 지금 이 양적洋賊들이 창궐하는데 이들을 막을 방책이 마땅하지 않다. 양이洋夷는 바다에서 익숙하지만, 우리나라는 전쟁을 준비하는데, 바다에 익숙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금년 4월에 있었던 양적의 침입으로 변란이 일어났다."는 점을 강조한다. '금년 4월'의 서양 세력 침입은 신미양요가 발생한 1871년 4월을 가리킨다. 따라서 1871년에 지어진 방략서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수년 동안 서양의 적들이 들어오는 것이 너무 자유로운 것은 별도의 방략이 없을뿐더러 능히 이를 제어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추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점"을 지적했고, "수전의 역사를 되짚으면서 방략을 모색"하고 있다고 저술 목적을 밝혔다.

본문은 중국의 수군 제도의 역사와 고찰을 명나라를 중심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중국 광동 지방과 복건 지방에서 사용된 전선의 제도에 대하여 별도의 자세한 설명을 덧붙인다.

이후 우리나라의 조선造船에 대한 설명으로 이어지며 서양의 선박은 매우 크고 빠르게 운행하는 데 비해 우리나라의 선박은 매우 낮으며 운행 속도가 느리지만 견고해 접전接戰에서 유리하다는 점을 언급해 조선 시고려할 점을 강조했다.

37) 선풍엽장(旋風葉粧)은 여러 종이를 이어서 하나의 면으로 만든 절첩이나 경절장(經折粧)과 달리 반씩 접은 낱장들을 풀로 연결해서 펼쳤을 때 두 면씩 보이도록 만든 것이다.

이 밖에도 전선 내 군기軍器를 어떠한 방식을 배치해야 하는 문제, 대포大砲의 운영 방법, 전선 내에 있는 건물에 들어갈 포수砲手의 배치 문제, 격군格軍의 운용에 대해서도 몇 명을 부려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했다.

방략 설명 후 전선지도戰船之圖를 수록해 대선大船을 기준으로 전선의 건조 방식과 배치 인원, 운용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혁옥도革屋圖를 수록해 구조 부표의 운영과 제어, 활용에 대한 내용이 기술해 수군의 실질적인 운용과 군사의 구조 활동까지 고민했다.

『수전방략』은 신미양요 직후 조선의 수군 개편에 대한 고민을 저자가 직접 중국의 고전을 고찰하면서 당대 조선의 수군 운영이 가졌던 문제점을 지적했다. 따라서 당대의 시대상에 비추어 서양의 수군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가를 알 수 있어 가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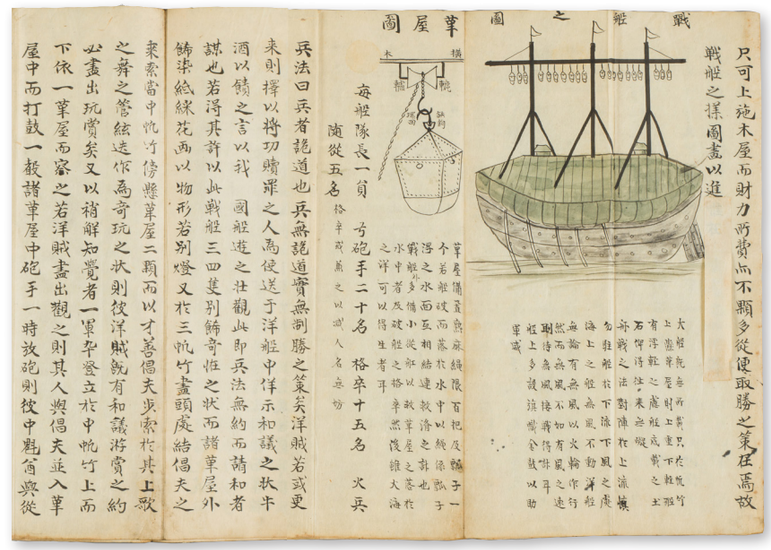

『수전방략』 중 혁실도革室圖(좌), 전선지도戰船之圖(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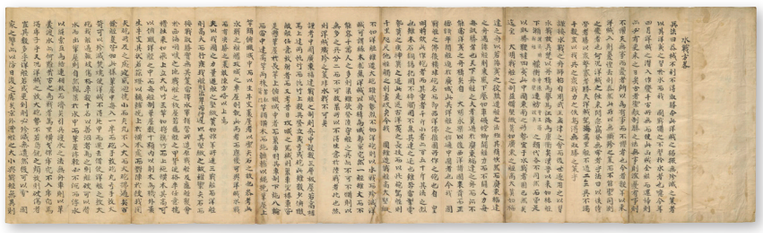

『수전방략』 앞면

2장

의병문서와 전쟁문학

국난國難이 발생할 때 관리와 유생들은 의병義兵을 일으켰고,
후대는 이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억하기 위해 문서로 남겼다.
선조를 기리기 위해 발간한 여러 문집들은 개인의 삶과 정신을 되짚어볼 수 있다.
조선 후기 국제 전쟁의 상흔傷痕은 이야기 소재가 되어 다른 나라에서 소설과 문집이 되었다.
이국異國의 시각에서 본 조선과 조선 사람들의 모습은 문서로 남아 전해졌다.

16. 정응성 연보 鄭應聖年譜

- 1612년광해군 4
- 치부 · 기록류置簿 · 記錄類 – 연보年譜
- 15.0 x 30.5
- 1책 22면

조선 중기 전라우수사全羅右水使, 전라병마절도사全羅兵馬節度使,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 등을 역임한 무신 정응성1563~1644의 연대기를 연월순으로 간략하게 적은 기록이다. 필사 경위는 미상이며, 문서에는 별도의 제목을 붙이지 않았다.

앞면에는 정응성이 태어난 1563년명종 18부터 1596년선조 29까지 기록했다. 정응성은 1563년 8월 초3일 해시亥時, 21시~23시 해주목 서면 청산리現 황해남도 해주시 신천면 일대에서 태어났고, 자字는 시중時仲이며, 본관은 연일延日이다. 1583년선조 16 무과에 급제했으며, 이듬해 4월 첨지중추부사 이인李麟의 장녀인 옹진 이씨甕津李氏와 혼인했다. 1588년선조 21에 아계 이산해鵝溪 李山海가 병조 판서가 되어 새로 과거에 급제한 사람들의 벼슬을 강론을 통해 주자고 아뢰었는데, 정응성이 『통감通鑑』을 강론하면서 수문장에 발탁되었다.

이후 정응성은 사포서주부司圃署主簿, 사헌부 감찰司憲府監察, 청하현감淸河縣監으로 승진을 거듭했다. 1592년선조 25 임진왜란 때 왜적을 공격하여 성을 지킨 공으로 선무원종공신宣武原從功臣이 되고 당상堂上으로 진급했다. 연보의 마지막에는 전쟁 중에 백성들을 진휼하고, 1595년선조 28 줄포茁浦 · 청송靑松 · 풍천豐川 부사를 역임한 내용까지 적혀있다.

뒷면에는 1612년광해군 4에는 정응성의 장남인 정해鄭楷, ?~?가 23세의 나이로 증광시增廣試 병과丙科 1위에 급제한 내용과 급제자 명단이 필사되어 있다. 이를 통해 연보가 작성된 시기를 추정할 수 있다.

『정응성 연보』는 정응성의 탄생과 관직에 재직했던 생애 절반에 대한 내용과 장남의 무과 급제와 관련된 기록이 정리되어있다. 문서를 통해 가족관계와 임진왜란에서의 활약상을 알 수 있다.



『정응성 연보』 뒷면
정응성의 장남인 정해가 증광시 병과 1위에 급제한 내용 및 급제자 명단 필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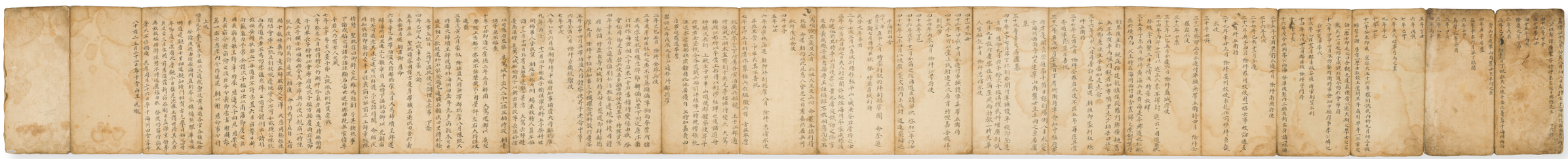

『정응성 연보』 앞면
1563년(명종 18)부터 1596년(선조 29)까지의 기록

17. 통제사 조공 행장 統制使趙公行狀

- 1789년정조 13
- 시문류詩文類 – 행장行狀
- 24.6 x 38.1
- 1책 12면

조선 중기에 무신으로 청백리淸白吏에 올랐던 조필달趙必達, 1600~1664의 사적을 기록한 행장이다. 행장은 후손들이 선조의 행실을 기록하여, 보는 이로 하여금 직접 보는 것처럼 살펴볼 수 있도록 한다. 전기傳記보다는 잡다한 내용을 피해 작성한다.

조필달의 본관은 김제金堤, 자는 행지行之이다. 1624년인조 2 무과에 급제하였으며 성품이 강직하고 청렴하였다. 1627년인조 5 정묘호란이 일어나자, 세자를 호위하였고, 병자호란 때에는 인조를 남한산성으로 호종하여 절충장군折衝將軍에 제수除授되었다. 공을 인정받아 삼도수군통제사 겸 경상우도수군절도사三道水軍統制使兼慶尙右道水軍節度使에 올랐다.

문서는 조필달의 생애를 크게 서두 – 가계 – 행적 – 지은이 순으로 저술하였다. 서두는 조필달이 삼도수군통제사 겸 경상우도수군절도사에 오른 것을 기재하고, 본관, 4대조의 이름, 관직, 부인의 이름순으로 기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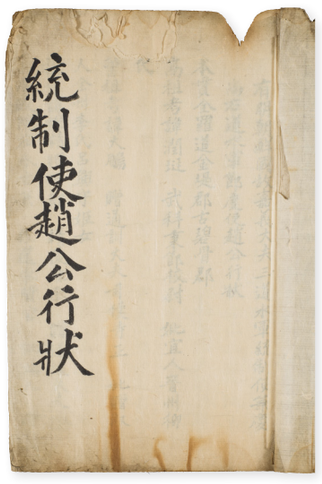
統制使趙公行狀

주요 내용은 1643년인조 21 조필달이 정주목사定州牧使로 있을 때 평안도 관찰사平安道觀察使 이후원李厚源이 대신 치적을 아뢰어 포상을 받은 내용, 이듬해 제주목사濟州牧使로 재임 중인 조필달에게 인조가 암행어사를 보내 시험하고자 한 내용이 있다.

인조는 일부러 조필달을 파직시킨 후, 어사에게 명령하여 육지에 도착하기 전에 그가 배에 실은 물건들을 불시에 조사하게 하였다.
조사 결과 배 안에서 나온 물건은 쌀 석 되 · 짚신 3켤레 · 군복 한 벌 · 장검長劍 한 자루 · 추錐 한 개뿐이라는 보고를 올리자, 인조는 기뻐하며 친필로 '만고청백우성장조필달萬古淸白于城將趙必達'이라는 휘호를 내려주었다. 이외에도 1648년인조 26 전라남도감사全羅南道監司 이시해李時楷가 그의 청렴함을 아뢰어 포상을 받은 내용도 수록되었다.

『통제사 조공 행장』은 행장에 직접 통제사라는 칭호가 들어간 문서 사례가 많지 않다는 점, 무관에 대한 실질적인 내용을 담겨 있다는 점에서 문서적 가치가 있다. 이외에도 저자 황윤석黃胤錫, 1729~1791의 저서인 『이재유고頤齋遺藁』 권 21 행장 편에도 『통제사 조공 행장』과 동일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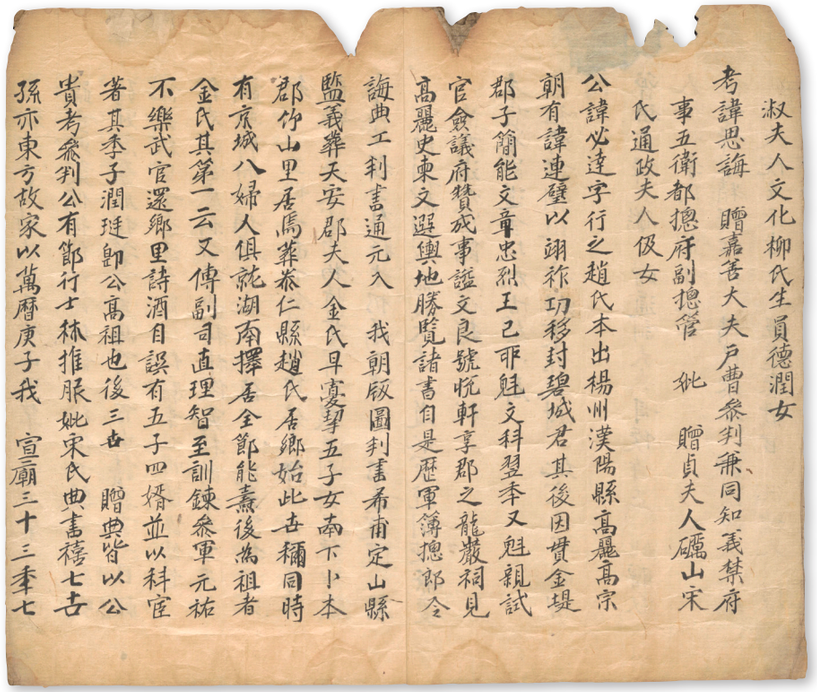
叔夫人文化柳氏生員德潤女
誨　贈嘉善大夫戶曹參判兼同知義禁府
事五衛都摠府副摠管　祀　贈貞夫人礪山宋
氏通政夫人伋女
公諱必達字行之趙氏本出楊州漢陽縣高麗高宗
朝有諱連璧以翊祚功移封碧城君其後因貫金堤
郡子簡能文章忠烈王己酉魁文科翌季又魁親試
官僉議府贊成事諡文良號悅軒享鄕之龍巖祠見
高麗史東文選輿地勝覽諸書自是歷軍簿摠郎令
誨典工判書通元入　我朝版圖判書希甫定山縣
監義孫天安郡夫人金氏早寡挈五子女南下卜本
郡仰山里居焉葬恭仁縣趙氏居鄕始此世稱同時
有京城八婦人俱就湖南擇居全節能燾後為祖者
不樂武官還鄕里詩酒自誤有五子四婿並以科宦
著其季子潤珽卽公高祖也後三世　贈典皆以公
貴考參判公有節行士林推服娩宋氏典書穡七世
孫亦東方故家以萬曆庚子我　宣廟三十三季七

『통제사 조공 행장』 중 조필달 행적

18. 호남절의록 湖南節義錄

- 1799년정조 23
- 고서古書 – 전기류傳記類
- 20.8 x 31.3
- 5권 5책

1799년 호남지역 의병장 고경명高敬命, 1533~1592의 7대손 고정헌高廷憲, 1735~?이 종성 부사鍾城府使, 現 함경북도 종성군 일대로 부임했을 때 편찬한 호남지역 의병의 전기이다. 조선 후기 국난國難이 일어났을 때 활약한 의병들의 행적을 기록해 편집하여 간행하였다.

『호남절의록』은 현재 16종의 판본이 전한다.[38] 판본에 따라 서문, 수록 인물의 수 등에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각 권에 수록된 주요 사건에서 의병장으로 활약한 인물은 동일하다. 총 1,445명의 인물이 기록되었다.

『호남절의록』의 구성은 서문 – 범례 – 총서 – 본문 순이다. 18세기 문신이자 유학자인 홍양호洪良浩, 1724~1802, 유광천柳匡天, 1732~1799, 고정헌高廷憲, 이병모李秉模, 1742~1806가 서문을 작성했다.

범례凡例는 연대순으로 오난사五難事를 저술하며, 동순제공同殉諸公, 함께 순절한 사람과 동창제공同倡諸公, 함께 의병을 일으킨 사람을 기록한다는 것, 1593년 · 1597년 · 1598년의 의병 사실은 임진왜란에 부기附記한다는 점과 참고사항을 기록했다. 총서總敍는 범례에서 제시한 조선 후기에 있었던 5개 국난의 개요를 언급한다.

본문의 내용은 권 1상上~권 4상上까지 임진왜란에서 활약한 「임진의적壬辰義蹟」을 기술했다. 이후, 이괄의 난 때 의병 목록인 「갑자의적甲子義蹟」, 정묘호란 때 의병 목록인 「정묘의적丁卯義蹟」, 병자호란 때 의병 목록인 「병자의적丙子義蹟」, 이인좌의 난 때 의병인 「무신의적戊申義蹟」 순으로 정리했다. 의병 목록에서 확인되는 주요 인물을 보필한 인물, 함께 순절한 인물, 함께 의병을 일으킨 인물을 기록했다.

38) 김동수 역, 2010, 『호남절의록(湖南節義錄)』.

권 5하下는 부록으로 을묘왜변乙卯倭變, 광해군 때의 명의 요청으로 심양에 군사를 파병할 당시 의병의 내용을 수록했다. 호남절의록의 권별 세부적인 내용은 [표 6 · 7]과 같다.

이외에도 이를 통해 16~18세기 호남지역의 전쟁사와 국난기마다 의병으로 참여한 인물과 규모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알 수 있다.



『호남절의록』「총서」 중 「임진기사」

권	제목	주요 인물(생몰년)	「동순제공사실(同殉諸公事實)」	「동창제공사실(同倡諸公事實)」
권1上	「임진의적(壬辰義蹟)」	송상현(宋象賢, 1551~1592)	조영규(趙英圭) 등 3인	–
		고경명(高敬命, 1533~1592)	고인후(高因厚)·안영(安英)·신응하(申應河)·김덕홍(金德弘) 등 26인	박광옥(朴光玉)·송제민(宋濟民) 등 35인
권1下		김천일(金千鎰, 1537~1593)	김상건(金象乾)·이종인(李宗仁) 등 27인	임전(任錪)·이광익(李光翼) 등 19인
		황진(黃進, 1550~1593)	송제(宋悌)·정명세(鄭名世)·소제(蘇濟) 등 10인	위대기(魏大器)·노흥(魯鴻) 등 6인
		최경희(崔慶會, 1532~1593)	문홍헌(文弘獻)·고득뢰(高得賚)·김예수(金禮秀)·최희립(崔希立) 등 18인	최홍재(崔弘載)·최홍(崔弘) 등 8인
		고종후(高從厚, 1554~1593)	오유(吳宥)·김인혼(金麟渾) 등 13인	김응정(金應鼎)·김대성(金大成) 등 4인
		심우신(沈友信, 1544~1593)	임두춘(林逗春)·정충훈(丁忠訓) 등 7인	–
		장윤(張潤, 1552~1593)	남응개(南應凱)·김대민(金大民) 등 3인	–
		민여운(閔汝雲, ?~1593)	–	정윤근(鄭允謹)
		최경장(崔慶長, 1529~1601)	–	김윤명(金允明)·백이신(白而信)·변공의(卞公毅)·고언장(高彦章)
총 계(명)			105	73

[표 6] 『호남절의록』 권 1 「임진의적」 수록 인물 현황

항목 \ 국난(권수)	임진왜란(권1~권4上)	이괄의 난(권4中)	정묘호란(권4下)	병자호란(권5上)	이인좌의 난(권5中)	을묘의적 정사의적 무오의적(권5下)	총 계(명)	비고
「동순제공사실(同殉諸公事實)」	323	–	–	–	–	–	323	함께 순절함
「동창제공사실(同倡諸公事實)」	434	80	20	–	–	–	534	함께 의병을 일으킴
「호종제공사실(扈從諸公事實)」	177	32	–	38	–	–	247	피난
「순절제공사실(殉節諸公事實)」	–	1	7	18	–	–	26	순절자
「수훈제공사실(樹勳諸公事實)」	–	46	6	–	51	–	103	공훈
「창의제공사실(倡義諸公事實)」	–	–	–	142	48	–	190	의병을 일으킴
「척화제공사실(斥和諸公事實)」	–	–	–	9	–	–	9	화의하지 않음
기 타	–	–	–	–	–	13	13	을묘의적 2 정사의적 2 무오의적 9
총 계(명)	934	159	33	207	99	13	1,445	

[표 7] 『호남절의록』 의병 수록 현황


湖南節義錄卷之一上
壬辰義蹟
忠烈公宋泉谷事實

『호남절의록』 권 1上 「충렬공송천곡사실忠烈公宋泉谷事實」
동래성 전투에 참전한 동래부사 송상현의 행적과 그를 보필한 인물, 함께 순절한 인물, 함께 의병을 일으킨 인물을 기록했다.


湖南節義錄卷之四上
壬辰義蹟
宗廟扈從任公事實

『호남절의록』 권 4上 「종묘호종제공사실宗廟扈從諸公事實」
종묘의 신주를 가지고 피난한 임발영任發英, 1539~1593의 행적을 기록했다.

19. 흥덕현 보초 興德縣報草

- 1821년순조 21 10월
- 첩 · 관 · 통보류牒 · 關 · 通報類 – 보초報草
- 20.5 x 30.8
- 1책

『흥덕현 보초』는 신사년辛巳年, 1821년 추정 10월 흥덕현감이 전라감사에게 올린 보고서를 책으로 엮은 것이다. 보초는 하급 관청에서 상급관청으로 보고한 문서인 보첩譜牒을 별도로 베껴놓은 것으로 참고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관청의 증빙을 받아 제작되었다.

흥덕현감은 보초의 서목書目[39]에서 '전후의 이력이 아뢴 것과 같기 때문에 양처量處하기를 바란다.'고 언급하였다. 이를 통해 상서 내용이 전라감영에 전해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흥덕현 보초』는 흥덕현現 전북 고창군 일대의 선비 이희李熙 등이 올린 상서上書의 내용을 관청의 증빙서류로 사용하기 위해 제작되었다. 당시 상서는 중앙의 조정까지 올라가지 않는 경우도 있어 필사로 전하지 않으면 유실되기 쉬웠다. 따라서 이전에 올린 상서까지 포함된 형태로 문서가 제작되었고, 이러한 사례가 잔존한 것에 서지적 가치가 높다.

보초에서 확인된 상서의 내용은 신사년에 흥덕현의 이희가 김연옥金鍊玉, 1547~1598의 임진왜란 참전 경위와 사망 과정에 대해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김연옥은 1594년선조 27 무과에 합격했으나 관직을 받지 못한 채 충무공 이순신의 막좌幕佐, 감사를 도와 곁에서 일하던 사람로 활약하다가 노량해전에서 왜군의 조총을 맞아 사망했다. 김연옥이 전투 중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은 처妻 남원 양씨梁氏는 물에 빠져 죽었으며, 아들 명언命彦은 부모가 모두 사망하자 부모를 따라 죽었다.

39) 서목(書目)은 하급 관아에서 상급 관아로 올린 보고서의 내용을 요약 · 첨부하여 상관에게 올린 문서이다.

문서를 올린 이희는 김연옥 일가의 이야기를 인용하며 "이는 임금에게 충忠을 다하고 부친에게 열烈을 다하고 모친에게 효孝를 다하는 것이니 1가家에서 3강綱을 모두 갖추었다. 가장 높은 가치인 충, 열, 효와 관계되기 때문에 마땅히 현창顯彰해야 하며, 이에 따라 김연옥의 공적을 치하해 주기를 요청한다." 고 하였다. 공적 현창에 대한 근거로 서귀西歸 이기발李起浡, 1602~1662이 직접 이들의 업적을 기리고자 직접 묘지명을 찬술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흥덕현에서 김연옥을 충신으로 인정받기 위한 노력은 『일성록日省錄』,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대체로 상서의 기록은 동일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표 8]과 같다.

사후 2세기 이상이 지나 김연옥이 추숭된 것은 조정에서 '충신忠臣 · 충가忠家 현창 사업'을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이다. 조선은 17세기 이후 양난兩難을 겪으면서 신분제에 변동이 발생했고, 질서의 안정에 예학禮學이 필요하게 되면서 '충신 · 충가 현창 사업'을 통해 군신君臣의 의리를 천명하는 정국 운영을 모색하고자 했다.

특히, 충신 현창 사업의 경우 정조 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었다. 대표적으로 임진왜란에 공을 세운 충신을 발굴하고 추존함으로써 국가적으로 유교적 이념을 제시해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 표본을 마련했다. 『흥덕현 보초』는 이러한 조선 후기 국정운영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실물 자료로 가치가 있다.



『흥덕현 보초』 발간 경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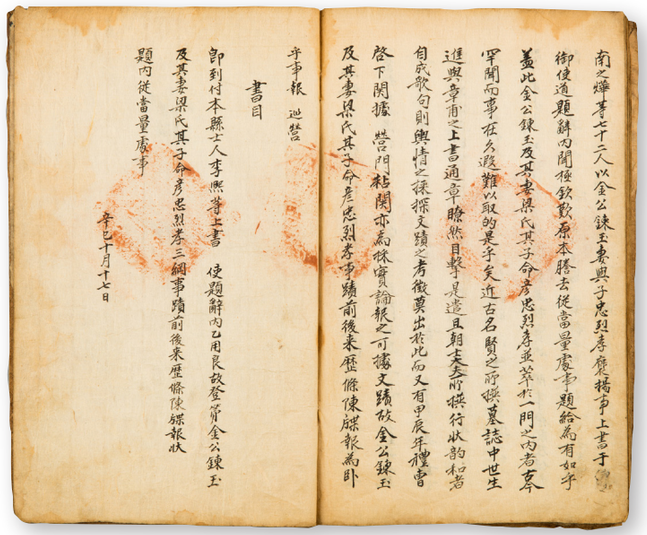

『흥덕현 보초』 흥덕현감 「서목」



『흥덕현 보초』 「상서」 중 김연옥 추숭 사유

문헌	일자	기사 내용	해제 요약
일성록	1784년(정조 8) 11월 2일자 161권	命金鍊玉褒賞置之。	흥덕현의 김오(金澳)는 자신의 조상인 김연옥의 이야기를 예조에 상언(上言)으로 올렸다.
		禮曹啓言,觀此全羅監司 趙時偉以興德 金澳。爲其七代祖鍊玉戰亡,鍊玉妻梁氏節死,鍊玉子命彦殉孝,請褒事上言,査實狀啓,則忠孝兼全,節義俱備。而但其久遠事蹟,只憑私錄傳述,褒賞之典,不可輕許。請置之,允之,又啓言,觀此平安監司 鄭民始以安淇爲其先祖穎男殉節,請褒事上言,査實狀啓,則其爲忠烈無愧古人,合施旌閭之典,而事係恩典,請上裁,從之。	
	1786년(정조 10) 2월 26일자 198권	判下上言一百五十二度于各該司。	흥덕현의 김오(金澳)는 자신의 조상인 김연옥의 이야기를 예조에 상언(上言)으로 올려 정조가 포장(褒奬)하도록 윤허했으나, 물증의 미비로 이것이 철회되었다.
		… 又啓言,泰仁幼學安錫命等上言以爲,故及第金鍊玉忠烈孝三綱之懿蹟特爲贈職旌閭事,請令稟處矣。壬辰倭亂,鍊玉則抗義捐命,其妻柳氏,夫死從死,其子命彦,忘身殉母,誠合褒尙之典,而甲辰年,因本縣金澳上言,令該道論理狀聞,則其時道臣狀聞以爲,久遠事蹟,旣無公家信筆,不可輕許云,故仍以置之,今此多士之上言,雖異於子孫之呼籲,其無可據之公家文字,前後無異,請置之,從之。…	
	1789년(정조 13) 2월 16일자 294권	判下上言一百四十七度于各該司	태인(泰仁)의 유학(幼學) 김규석(金奎錫)은 이순신 아래에서 싸워 전사한 김연옥과 효와 열을 지킨 그의 가족에 대한 공을 인정하고 다시 증작(贈爵)해 달라 요청했다.
		… 又啓言泰仁幼學金奎錫等上言以爲興德故及第金鍊玉登萬曆甲午第卽赴忠武公李舜臣之陣丁酉九月南海 露梁之戰抗義損命其妻梁氏遂赴水而死其子命彦以前主簿病蟄在家不得赴陣亦投身以從母氏鄕人名其所沈水曰全綱沼至今稱之金鍊玉及其妻與子特令贈爵旌閭云矣公家文跡無所徵信則不可遽議恩褒請置之從之 …	

[표 8] 정조 재위기간 내 『일성록日省錄』에서 확인되는 김연옥 관련 기록

20. 은봉선생 문집 隱峯先生文集

- 1864년고종 1
- 고서古書 – 문집文集
- 20.8 x 31.5
- 1책 20권

『은봉선생 문집』은 임진왜란에 조선 중기 은봉隱峰 안방준安邦俊, 1573~1654의 기록을 안방준의 5대손 안창현安昌賢이 초간본을 간행한 후 6대손 안수린安壽麟과 안수록安壽祿이 서문, 발문, 연보, 부록 등을 합편하여 간행했다.

안방준은 조선 중기의 학자로서 박광전朴光前, 1526~1597 · 박종정朴宗挺, 1555~1597 · 성혼成渾, 1535~1598에게 수학하고,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스승인 박광전을 따라 보성지역을 중심으로 의병을 일으켰다. 이후에도 정묘호란, 병자호란에서 의병장으로 활약했다.

문집의 발간은 1864년 보성군수 유건환俞建煥, 1802~?의 도움을 받아 보성 대계서원大溪書院에서 목활자로 중간重刊했다. 안방준의 종손宗孫인 안영환安永煥, 족숙族叔 안정수安廷洙, 족형族兄 안길환安吉煥, 족제族弟 안기환安琪煥 등이 참여했다.

19~20세기 초 영남 및 호남지역에서는 문집 간행이 활발히 이루어진 것은 책판의 발달로 다량의 책을 인출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책판의 존재는 조선 후기 개인의 사회문화적 권위를 나타낼 수 있는 자산으로서 역할을 했으며, 이는 거대한 문화사업에 비견되었다.[40]

문집의 내용은 임진왜란과 관련한 사료만 확인된다. 대표적으로 「임진기사壬辰記事」, 「부산기사釜山記事」, 「노량기사露梁記事」, 「진주기사晉州敍事」를 통해 전투 등 당시의 상세한 상황을 기사記事의 형식으로 기록했고, 「호남의록湖南義錄」, 「기병후봉사起兵後封事」, 「청주파적후상계淸州破賊後狀啓」 등 의병 활동 중에 조정에 글을 올리고 개인 편지를 남겼다.

「임정충절사적壬丁忠節事蹟」, 「백사논임진제장사변白沙論壬辰諸將士辨」을 통해 전쟁 중 순국한 장군들의 기록을 남기고, 임진왜란 후 여러 장군의 공적을 논했다.

40) 류준필, 2010, 「책판 제작의 사회문화적 의의」, 『대동문화연구』 70,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1. 만력동노문무열전 萬曆東勞文武列傳

- 17세기 이후庚申年. 丙午年
- 고서古書 – 전기류傳記類
- 18.7 x 28.0
- 1책 68면
- 중국明



조선朝鮮과 명明나라의 문관文官과 무관武官의 일생이 기록된 열전이다. 표지에는 '문무열전文武列傳'으로 내제에는 '만력동노문무열전'으로 제목이 기록되어 있다.

내용의 구성은 「만력동노문무열전」, 「육정열전六正列傳」으로 되어 있다. 열전의 내용은 중국의 『회남자淮南子』 등의 고사를 인용하여 임진왜란의 사건 경과 등을 서술하고, 인물의 일생을 기록하였다.
「만력동노문무열전」은 임진왜란 · 후금정벌에 참전한 인물을 저술했으며 명나라는 송응창宋應昌, 1536~1606, 이여송李如松, 1549~1598, 조선은 이순신李舜臣, 1545~1598, 김응하金應河, 1580~1619를 기록했다.

내용 중 「이충무공열전李忠武公列傳」은 충무공 이순신의 일생을 저술했다. 이순신의 본관과 자字, 고려시대부터 이어진 선대先代의 연혁, 부모의 이력 등을 차례로 기재하고, 이순신의 무관 급제 과정과 류성룡에게 능력을 인정받아 발탁된 일을 적었다.

관직에 진출한 이후에는 전라도 발포鉢浦의 수군만호로 발령된 일, 수군만호 재직 중 이용李鄘, 서익徐益 등 상사와의 갈등을 빚은 일, 녹둔도의 녹도만호로 발령받은 일 등을 기술했다. 이후 임진왜란 직전의 이순신 관직 임명 상황과 이순신 휘하의 수군 병력 현황, 임진왜란의 주요 전투와 이순신의 활약, 주변 인물에 대해 간략하게 적었다.

이순신의 사후死後에는 선조가 이순신을 선무공신宣武功臣에 추봉하고, 1643년인조 21 충무忠武의 시호를 내려 추숭한 기록을 적은 후, 이순신의 생애를 찬양하는 평가로 열전을 마무리했다. 따라서 열전은 17세기 이후에 편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녹둔도 사건1587년, 선조 20의 내용을 후대에 일부 수정한 흔적이 확인된다. 북병사北兵使, 함경북도 병마수군절도사 이일李鎰을 조산만호造山萬戶로 오기한 것을 북수진장北垂鎭將으로 고치고, 간략하게 기술했던 이순신의 부상을 고쳐서 구체적으로 적었다. 마지막에 적힌 이순신의 찬양에 대한 내용도 일부 수정이 된 것을 보아 후대의 평가가 일부 달라진 것을 알 수 있다.

이 자료는 중국의 입장에서 이순신의 일생을 정리하고 기록했다는 것에 내용적 가치가 있다. 이밖에도 생육신生六臣의 일생을 「육정열전」의 제목으로 기록한 내용도 확인된다. 이는 17세기 이후 후금으로 인해 중앙집권적 왕권이 약해지던 명나라가 왕에 대한 충성과 절개를 강조한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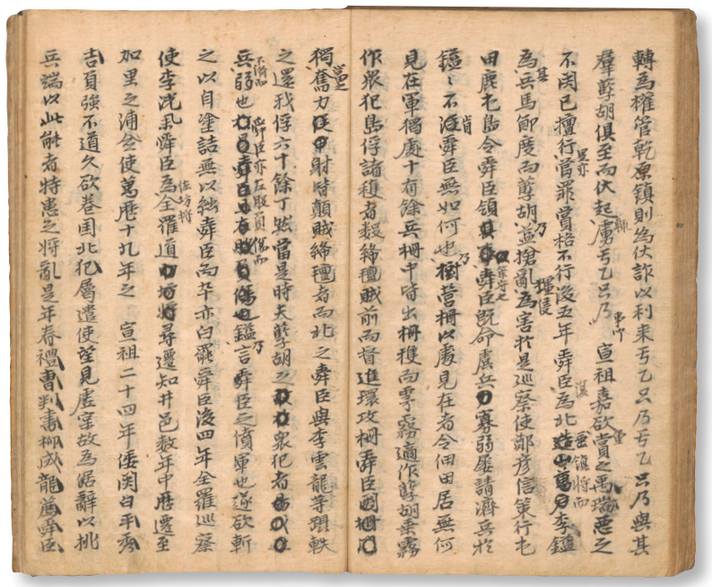

『만력동노문무열전』 중 「이충무공열전」의 〈녹둔도 사건〉 부분

22. 차첩 差帖

- 1903년고종 40, 1907년순종 1
- 첩 · 관 · 통보류牒 · 關 · 通報類 – 첩帖
- 43.6 x 40.0 외
- 각 1면

대한제국 시기 남해 충렬사에서 시행되는 충무공 이순신 기향제례忌享濟禮의 집례執禮를 임명하는 차첩差帖이다. 기향제례는 충무공의 넋을 기리고 호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제례 일자는 이순신이 노량해전에서 전사한 음력 1598년 11월 19일이다.

제사는 『주례周禮』, 『예기禮記』 등의 예법에 따라 진행된다. 제사를 주관하는 제관祭官은 초헌관初獻官, 아헌관亞獻官, 종헌관終獻官, 집례 등이 있다.

차첩의 발급인은 남해군수인데, 이를 통해 제사를 주관하는 이가 수령임을 알 수 있다.[41] 집례는 제향을 진행하는 사회자로 제사에서 홀기笏記를 읽어 절차를 집행한다. 임시로 임명되는 관직이기 때문에 차첩과 임명장의 양식을 사용해 임명했다. 내용은 주로 '전기前期 치제致祭에 참여하라'는 내용을 담는다.

한편, 남해 충렬사 기향 제례 차첩의 발급인이 곤양군수昆陽郡守인 경우가 확인되는데, 이는 당시 남해군수였던 이태영李台榮이 1907년 9월에 관직에서 물러나면서, 곤양군수가 남해군수의 직무를 대신署理하였기 때문이다.[42]

차첩에서 확인된 박두홍朴斗洪은 벼슬을 하지 않는 유생인 유학幼學이지만, 지역의 주요 인물로 추정된다. 충무공 기향의 집례로 임명되기 이전에도 남해군 사직대제社稷大祭의 집례로 임명된 적이 있기 때문이다. 지역사회에서 제관은 임시직인 만큼 특정 기간에 맞춰 임명장을 발급하고 기존에 임명된 인물이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41) 통영 충렬사 제향의 경우 매년 봄, 가을 수군통제사가 제사를 주관한다.

42) "…南海郡守李台榮…依願免本官。",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3,213책(탈초본 141책), 순종 1년 9월 2일 경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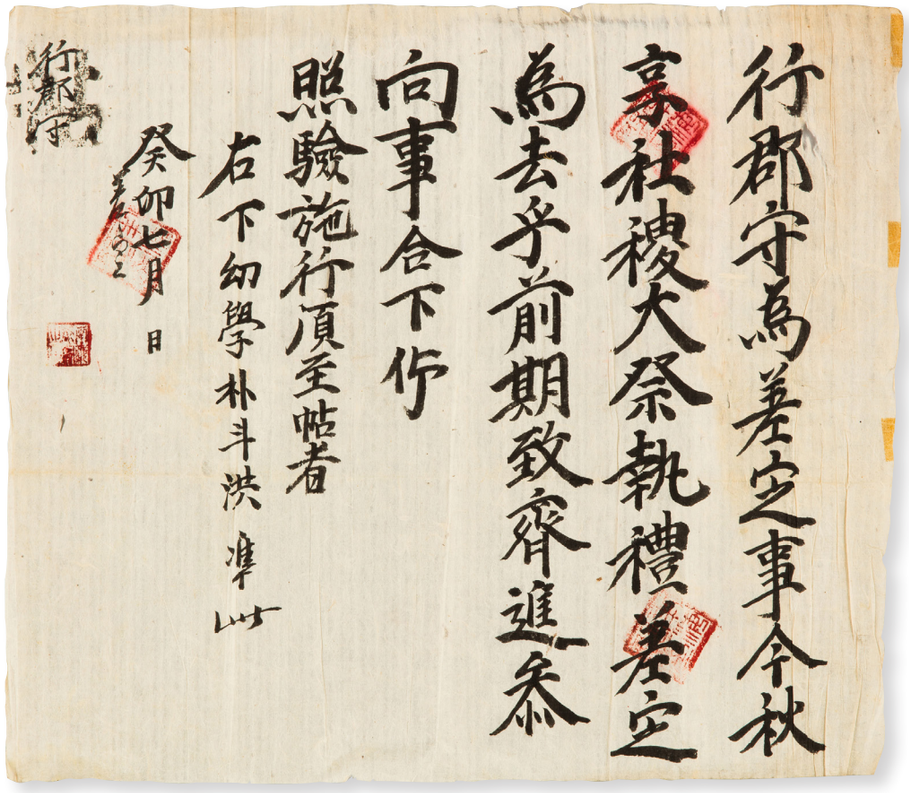

박두홍朴斗洪 차첩差帖 [계묘년(癸卯年, 1903년(고종 40)) 7월 발급]

군수가 유학幼學 박두홍을 사직대제社稷大祭 집례執禮로 임명하는 차첩이다.


行南海郡守署理昆陽郡守兩差事
忠武公忌享祭執禮差定為去乎
前期致齋進參向事合下行
照驗施行須至帖者
右帖學 朴斗洪
丁未十月 日
署理郡守

박두홍朴斗洪 차첩差帖 [정미년(丁未年, 1907년(순종 1)) 11월 발급]

남해군수南海郡守 서리署理 곤양군수昆陽郡守가 유학幼學 박두홍에게 충무공忠武公 기향忌享 집례執禮로 임명하는 차첩이다.



남해 충렬사 내 충무공 이순신 가묘

자료제공: 남해군청



남해 충렬사 충무공 이순신 기신제

자료제공: 남해군청

23. 조선군기대전 朝鮮軍記大全

- 1705년
- 고서古書 – 화고서和古書[43]
- 18.1 x 26.1
- 1책 38권
- 일본江戸幕府

『조선군기대전』은 일본, 조선, 명의 문헌의 영향을 받아 1705년 세이키姓貴, ?~?가 조선의 『징비록懲毖錄』, 일본의 『도요토미 가보豐臣家譜』, 『조선정벌기朝鮮征伐記』를 참고해 임진왜란의 전개에 대해 일본의 입장에서 기술한 것이다.

이치노세 치에코一瀨千恵子에 의하면 『조선군기대전』 서문에 「낙동산구담수보자제洛東山舊擔叟甫自題」라고 나오는 저명著名을 통해 저자인 세이키를 '교토京都에 살던 승려로 추측할 수 있다.'라고 했으며, '구담수보'라는 이름은 '이전 칼을 짊어졌던 남자'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 무사 출신이라는 추측도 가능하다고 보았다.[44]

『조선군기대전』은 서문 · 총목록 · 부록 · 목록 · 지도 · 지명 등을 별도로 간행하고, 총 목차와 상 · 하 2권의 부록 목차를 일목요연하게 싣고 있어 전체 체재를 파악하기에 유용하다.

분량은 본권 38권, 부록 상하 2권으로 총 40권이다. 권마다 3~10편씩 제목을 붙여 총 167편을 수록했다. 권별로 부산포, 한양, 평양 함락 및 명군 파견 등 중요한 사건과 이순신, 원균, 거북선 등 조선 수군의 활동을 상세하게 기록한 것이 특징적이다.

『조선군기대전』은 유사한 시기에 발간된 『조선태평기朝鮮太平記』와 함께 조선군기물의 완성작으로 평가받는다. 『조선군기대전』은 기존 군기 작품에 『징비록』의 내용을 「류성룡획반간사柳成龍獲反間事」의 제목으로 기사의 중간에 그대로 인용하고 있어 임진왜란 주요 전투의 내용, 인명, 지명 등이 일본에 구체적으로 전해지게 되었다.

43) 화고서(和古書)는 본문이 일본어로 된 인쇄자료로 에도시대가 종말하는 게이오 4년(慶応 4, 1868)까지의 고서(古書)이다.

44) 一瀨千恵子, 2008, 「文禄 · 慶長の役の伝承 – 『朝鮮軍記大全』と『朝鮮太平記』」, 『日韓相互認識』 1号, 日韓相互認識研究会, p. 74.

초반에는 주로 일본 장수의 활약을 기재했다. 조선에서 전투에 임한 가토 기요마사加籐清正, 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의 행적을 중심으로 임진왜란의 사건을 기술한다. 가토 기요마사가 주둔한 울산성蔚山城은 한 권을 부여할 만큼 상세히 기술한다.

권 10 이후에는 조선 중기의 문관 이덕형李德馨, 1561~1613, 류성룡柳成龍, 1542~1607, 무관 이순신李舜臣, 1545~1598, 원균元均, 1540~1597, 조승훈祖承訓, ?~?, 이일李鎰, 1538~1601, 고언백高彦伯, ?~1609, 이원익李元翼, 1547~1591 등의 기록이 확인된다. 이순신은 개인사, 인품과 지용智勇, 군선의 운용, 진법, 사망 등 인물을 다양한 관점으로 기술해 근세 일본인이 인식하는 이순신의 모습을 알 수 있다. 권 17 · 권 18에는 「조선인처처기의병사朝鮮人處處起義兵事」라는 제목으로 임진왜란 시기 조선인 의병이 곳곳에 일어난 일도 기록했다.

이밖에 조선에 파병 온 명나라 문관 심유경沈惟敬, 무관 이여송李如松, 일본과의 강화를 위해 명에서 파견한 사신 이종성李宗誠, 1560~1623이 도망간 이야기 등을 수록했다. 마지막에는 전쟁의 결과에 대해 서술하는데, 대표적으로 귀무덤耳塚, 조선인 포로 등의 이야기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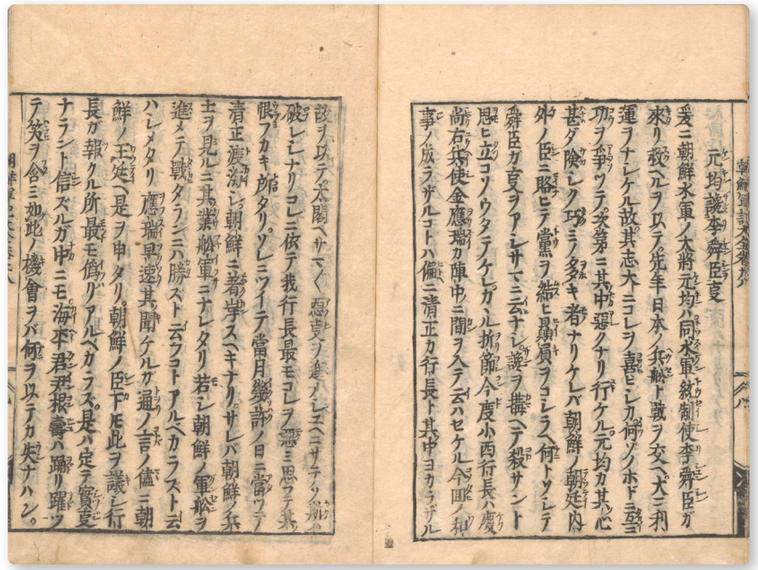

『조선군기대전』 중 원균과 이순신 기록



조선군기물朝鮮軍記物이란?

조선군기물이란 임진왜란을 총체적으로 다룬 일본문학의 한 종류이다. 임진왜란과 관련한 기록이 문학화가 된 것은 도요토미 정권과 에도 막부의 아래에서 자유롭게 기록을 남기거나 간행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식 기록물이 없고, 기록이 통제된 상황에서 정사正史와 다른 성격을 가지게 되었다.

『조선군기대전』과 『조선태평기』는 임진왜란 관련 기록류 중에서도 임진왜란 참전 무사들의 견문록 · 비망록 · 편지 · 보고서 · 일기 · 견문담 등 초기의 기록을 집대성한 서적이다. 또한, 임진왜란 당사국이었던 조선, 명, 일본 삼국의 문헌을 모두 이용해 조선과 명의 인명, 지명 및 당시 상황을 상세히 기술했다.

조선군기물에서 강조하는 3대 대첩은 1593년 벽제관전투, 1597~1598년 울산성전투, 사천전투이다. 이는 조선 측이 강조하는 3대 대첩인 1592년 1차 진주성대첩, 한산도대첩, 1593년 행주대첩과는 차이가 난다. 따라서 자국이 승리한 전투를 기록하고 패한 전투는 기억에서 지우려 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조선군기물은 명 · 청 교체의 여파와 조선과의 교류 등을 통해 임진왜란에 대한 문헌이 유입되었고, 일본 지식인들이 이를 수용하고 재해석해 자신의 작품으로 만든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근세 일본인들의 임진왜란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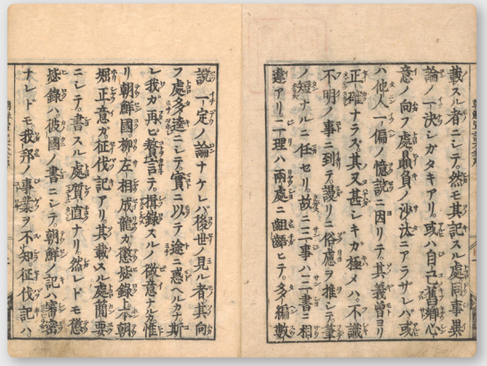

『조선군기대전』 서문
류성룡의 『징비록』 인용 언급 부분



『조선군기대전』 중 이순신의 선군船軍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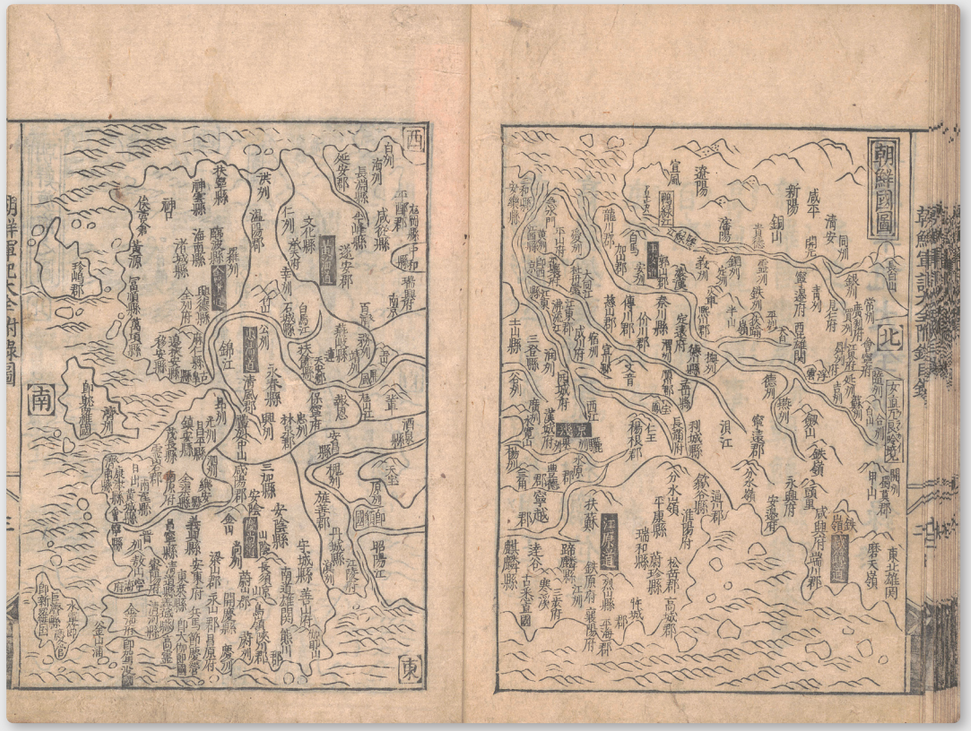

『조선군기대전』 중 조선국도朝鮮國圖
1695년 야마토야 이베에大和屋伊兵衛가 편찬한 『조선징비록』에 수록된 지도의 필사본

24. 조선태평기 朝鮮太平期

- 1705년
- 고서古書 – 화고서和古書
- 18.5 x 26.3
- 11책 30권
- 일본江戸幕府

『조선태평기』는 교토에서 활동한 작가인 바바 노부노리馬場信意, 1669~1728의 조선군기물이다. 제목은 일본의 남북조시대1318~1368를 다룬 군기물인 『태평기』에서 차용되었다. 노부노리는 1705년 저술한 『조선태평기』 이후에 1709년 『남조태평기南朝太平記』, 1710년 『북국전태평기北国全太平記』, 『주고쿠태평기中国太平記』 등의 이른바 "~태평기" 시리즈를 남겼다. 그는 평생 14건의 군기물을 간행해 에도시대 군서軍書 장르의 최대 작가로 평가받는다.[45]

『조선태평기』는 서문 · 총목록 · 본문으로 나누어 간행했으며, 분량은 총 11책 30권이다. 1책에는 평균 4~5권이 수록되어있으며, 권마다 4~12편씩 제목을 붙여 총 209편을 수록했다. 내용은 『조선군기대전』과 같이 류성룡의 『징비록懲毖錄』을 적극 수용해 임진왜란의 전체 흐름을 제시한다.

권 1~4는 조선의 유래, 조선통신사,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집권 과정 및 조선 정벌 논의, 조선지도 · 행정 등 국내 세부사항, 임진왜란 초기 전투 등을 연대순으로 저술한다.

권 5~11까지는 한반도에서 있었던 일본과 조선의 주요 전투에 관해 서술했다. 대표적으로 상주전투, 충주전투, 한성 함락, 조 · 명 연합군의 평양성전투, 벽제관전투, 행주대첩, 이순신 · 원균의 해전 등이 있다.

권 12~17은 일본과 명나라의 강화회담을 기술하고, 권 18~30권은 왜성의 축성築城, 직산전투, 울산성전투, 노량해전 등 정유재란의 주요 전투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사망 등 임진왜란의 종전을 서술했다.

45) 長友千代治, 1994, 『近世上方作家 · 書肆研究』, 東京堂出版.
日本古典文學大辭典編纂委員會, 1984b, 『日本古典文學大辭典』 5, 「馬場信意」, 岩波書店.

전체적인 내용은 같은 연도에 출판된 『조선군기대전』과 유사하다. 하지만 내용의 서술 방식과 이순신의 평가에 대한 부분에 차이점이 있다. 『조선군기대전』은 이전의 기록을 충실히 따르고, 이순신의 인품을 평가했지만, 『조선태평기』는 흥미로운 주제를 중심으로 선택해 내용을 간략하게 서술하고, 이순신을 영웅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았다.

『조선태평기』는 근세 일본인의 입장에서 임진왜란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는 자료이므로 가치가 있다. 또한, 발간 이후 꾸준히 읽힌 작품으로 동명의 인형극도 전해진다. 따라서 일본 대중에게 임진왜란에 대한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영향을 끼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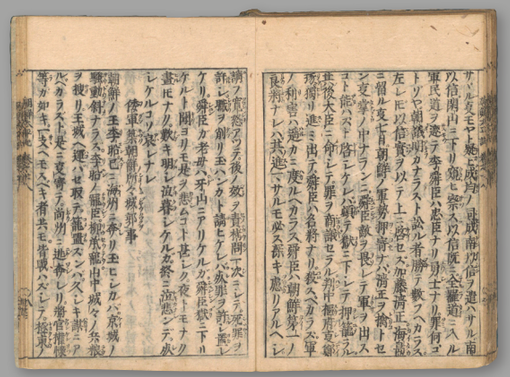

『조선태평기』 중 「왜군축조선소성곽사」



『조선태평기』 중 「등자룡이순신사」



『조선태평기』 서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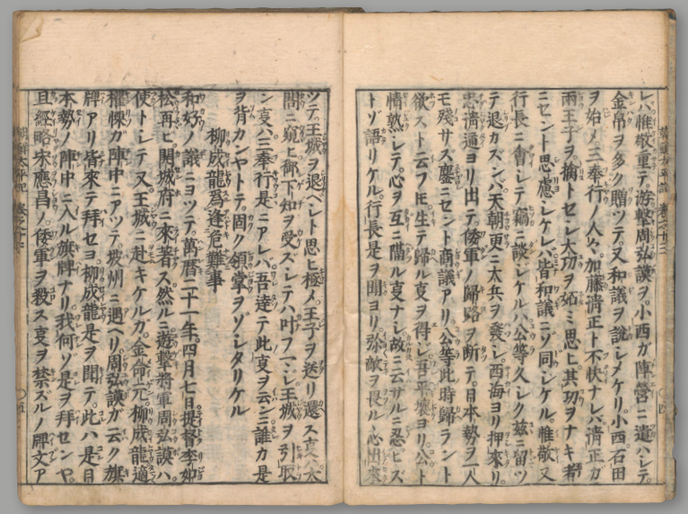

『조선태평기』 중 「류성룡위봉위난사」

25. 조선인난파지몽 朝鮮人難波之夢

- 1827년
- 시문류詩文類 – 소설小說
- 17.6 x 27.2
- 1책
- 일본江戶幕府

『조선인난파지몽』은 작자 미상의 실록체소설實錄體小說[46]이다. 제목에서 보이는 난파難波는 오사카大坂 지역을 가리킨다. 뒷 표지에는 필사의 유래가 적혀있다. 이에 따르면 1827년 6월 무렵 고마군 서군 앞의 사와노보리촌 사이토 미치쓰미巨摩郡西郡前澤登村 斎藤道積가 필사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소설의 소재는 1763년 계미통신사癸未通信使 정사正使 조엄趙曮, 1719~1777의 수행원으로 참여한 경상도 무관 도훈도都訓導 최천종崔天宗의 피살사건이다.

계미통신사는 조선과 에도막부 사이에 이루어진 11번째 사행이자 조선의 사행단이 에도江戶를 방문한 마지막 사행이다. 병자호란 이후 명 · 청 교체기에 쇼군 도쿠가와 이에미츠德川家光의 득남을 축하하는 명분으로 파견되었다.

최천종은 에도에서 의전절차를 마치고 귀국길에 오르던 1764년 4월 7일 오사카 니시혼간지西本願寺에서 쓰시마対馬島 출신 역관 스즈키 덴조鈴木傳蔵에게 피살당했다. 살해 동기는 최천종이 거울을 잃어버렸는데, 스즈키 덴조가 훔쳐 갔다고 의심하여 여러 사람 앞에서 말채찍으로 자신을 때렸기 때문이라 진술하였다.

사행원이 피해를 입은 것은 1607년선조 40 회답 겸 쇄환사로 통신사를 파견한 이래로 처음 있는 변고였다. 이는 한일 양국 간에 전쟁에 준하는 심각한 외교 분쟁을 일으킬 만한 사건이었다.



46) 실록체 소설은 사실에 공상을 섞어서 그럴듯하게 꾸민 소설의 문체이다.

하지만 사건의 동기가 스즈키 덴조가 저지른 우발적인 사건으로 바뀌었고, 원인이 조선의 사행단으로 돌아가게 되면서 사건을 공론화할 수 없었다. 또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쓰시마 측은 살해범이 쓰시마인이라는 것을 알고도 축소 · 은폐시키려 하였다.[47] 당시 사건의 처리 과정을 본 조엄은 저서인 『해사일기海槎日記』에 "쓰시마인은 망덕하다. 천리天理가 있으니 반드시 그 종묘사직을 뒤엎을 것이다."라고 기록했다.[48] 하지만 사건 발생 25일 만에 범인인 스즈키 덴조가 처형되면서 사건은 일단락되었다.

이러한 사건을 기반으로 『조선인난파지몽』의 줄거리가 만들어졌다. 줄거리는 재천창才天蒼이 덴조傳蔵의 친부를 죽이고 재산을 가로챈 뒤 신분을 바꾸고 통신사로 일본에 왔고, 사실을 안 덴조가 부친의 복수를 한다는 복수극이다.

소설에서는 최천종을 재천창으로 표기하고 있는데, 일본어 발음상 유사한 이름을 사용하면서 일어난 현상이다. 이는 논란이 있는 실화의 문예화를 금지한 당시의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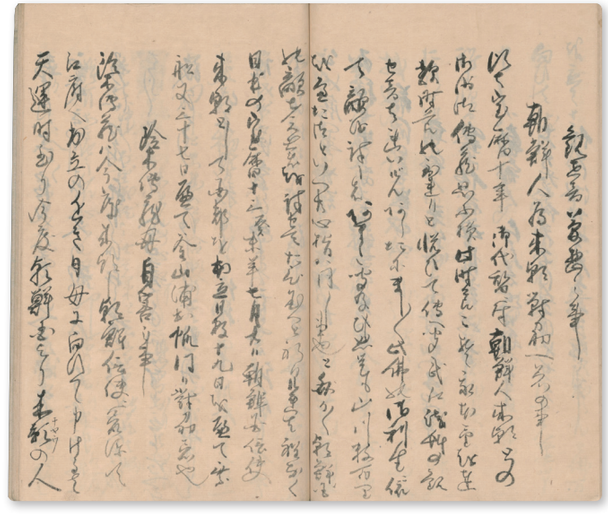

『조선인난파지몽』 중 조선인 사행 과정

47) 장순순, 2022, 「통신사의 사행록을 통해서 본 조선 지식인의 대마도 인식과 그 추이(推移)」, 『한일관계사연구』 75, 한일관계사학회.

48) 조엄, 『해사일기(海槎日記)』 권 5, 5월 2일(계축).

쇄국정책을 시행하던 18세기 일본에서 외국인이 피살당한 사건은 일본인에게 흥미로운 이야깃거리가 되었다. 이는 '도진고로시唐人殺し'라 일컫는 일본 근세문학의 한 장르가 되었다.[49]

기존 연구에 따르면 도진고로시의 작품은 크게 이국인異國人 살해, 통역관 살해, 혼혈아의 원수 갚기, 인삼 밀거래에 의한 보복 살해의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50] 이 중 이국인 살해와 통역관 살해 유형은 가부키歌舞伎, 조루리淨瑠璃 등의 연극과 인형극으로 오사카와 교토의 극장에서 18~19세기에 걸쳐 상연되었다. 가부키 작품으로는 1767년 2월 17일 상연된 〈세와료리스즈키보초世話料理鱸庖丁〉를 시작으로 1789년 오사카에서 초연된 〈간진간몬 데쿠다의 시작漢人韓文手管始〉 등이 알려져 있다.

일본 지식인과 대중에게 관심을 한 몸에 받았던 외국인의 피살사건은 쇄국 정책을 쓰던 일본에서 근세문학의 새로운 장르를 탄생시켰다. 최천종의 피살사건 이후 일본과 조선 양국 간의 관계에 불신이 강해졌으며, 이는 이후 국제정세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따라서 본 작품은 근세 일본인의 외국인 혹은 조선인에 대한 인식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과 국제정세의 변화를 반영한 작품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가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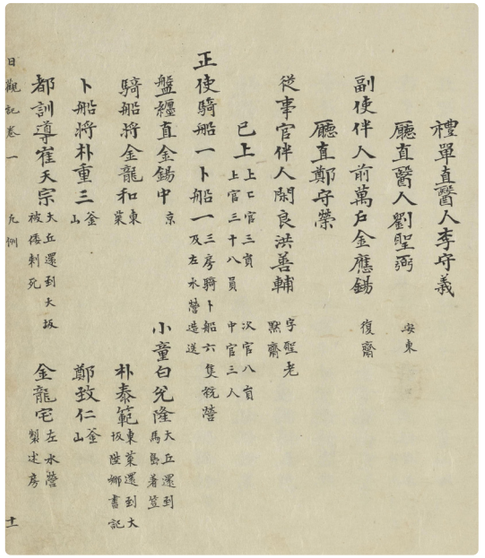

남옥의 『일관기日觀記』
「좌목座目」에 기록된 최천종
자료제공: 국립중앙도서관



『간진간몬 데쿠다의 시작漢人韓文手管始』
(1789년 作, 黒0963-0024-006)
[출처: 도쿄대학교 교양학부 국문 · 한문학부회 쿠로키 문고 소장]

49) 도진(唐人)은 외국인을 가리키며 조선인을 포함한 네덜란드인, 중국인 등이 포함된다. 당시 일본 에도 막부의 서민들은 해금령으로 인한 쇄국정책으로 외국인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 따라서 외국인을 국적에 따라 구분하기 보다 통틀어 도진(唐人)으로 칭했다.

50) 박찬기, 2001, 『조선통신사와 일본근세문학』, 보고사.

3장

외교문서와 역관문서

외교문서는 국가 사이의 현안에 대해 외교 담당자가 작성해 상대국과 주고받은 공적인 문서이다.
조선과 일본은 최고 통치자가 동등하다는 전제로 외교가 이루어져 문서양식이 동일하다.
역관譯官은 타국의 말을 전달해 외교에서 중요한 존재였지만,
사회적으로 차별을 받은 조선의 역관은 가문 안에서만 자신의 문서를 남겼다.

26. 통신사 일본 조선인 봉행
通信使日本朝鮮人奉行

- 1747년 12월~1748년 3월
- 기타 – 봉투封套
- 17.4 x 16.0
- 각 1매
- 일본江戸幕府

조선통신사는 1763년영조 39까지 12차례 파견되었다. 파견될 때마다 구성원은 모두 바뀌었기 때문에 일본 해역을 항해하기 위해서는 안내인이 필요했다. 따라서 이러한 역할을 일본에서 파견된 봉행奉行이 수행했다. 봉행은 막부 혹은 지방 다이묘大名, 지방 영주들의 가정家政을 담당하는 직함이다. 조선통신사 선단의 항해에서는 대차왜大差倭라 불렸다. 주로 왜관에 있으면서 일본 국왕사國王使 업무를 대신 처리하곤 했으며, 일본으로 항해할 때는 통신사 선단을 호위하고 항해하는 업무를 수행했다.

『통신사 조선인 봉행』은 조선통신사가 일본 각 지방을 돌면 유지들이 일정 금액을 헌납했던 봉투로 추정된다. 문서의 우측에는 봉행글자와 조선인내조朝鮮人來朝 혹은 조선인어치주朝鮮人御馳走어대명양방御大名樣方이 적혀있다. 이는 "조선인이 우리나라에 왔으니來朝 다이묘御大名께 보낸다樣方"는 의미이다. 같이 기재된 어송마부御送馬附를 통해 일본 측 안내인은 조선인들이 에도까지 타고 갈 말의 운임을 낸 것을 알 수 있다.

문서의 좌측에는 봉투의 작성인인 나카무라 세이지로中村清次郎가 전하고자 하는 내용, 연월일, 주소, 서명, 인장印章 순으로 기재했다. 봉투의 발급일자가 연향 4년延享四年, 1747년 12월, 연향 5년延享五年, 1748년 3월로 기재되어 있어, 1748년영조 24 10차 통신사행과 관련한 자료임을 알 수 있다. 10차 통신사행은 에도 막부 9대 쇼군인 도쿠가와 이에시게德川家重의 쇼군 습직을 축하하기 위해 정사 홍계희 일행 475명이 파견되었다.

봉투에 적힌 내용은 1748년 조선통신사의 사행 중 일본 측이 오사카 지역에서 접대할 내용과 관련하여 논의할 사항을 기재했다. 특히, 외부 사신의 접대와 관련하여 접대 장소와 방식, 말의 배치에 대한 탄원 내용 등 통신사 접대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언급한다.

이를 통해 조선통신사가 오사카에서의 체류 기간 동안 접대를 맡은 다이묘들이 봉행인 나카무라 세이지로에게 책임을 맡긴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각 번藩은 통신사 파견이 결정되는 순간부터 통신사 접대에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했기에 번의 재정과 지역민에게 부담이 컸다. 하지만 접대비용을 통신사가 머무는 각 번에서 부담한 것은 막부幕府의 지배체제가 중앙집권적인 것을 국내에 과시하고, 접대를 번에 위임해 효율적인 지배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또한, 일반 백성들에게는 통신사 행렬이라는 축제의 장을 제공해 막부의 정통성과 위엄을 높이는 역할을 했다.

현재까지 조선통신사가 지나간 길에서의 세부적인 접대에 대한 자료는 일본에 많이 있지만 구체적으로 정리되지 않았다. 따라서 조선통신사의 사행을 복원하는 기반 자료로 사용될 수 있어 서지적 가치가 높다.

일정	사행 과정
1747년 11월 28일	서울 출발
1747년 12월 16일	부산 동래 도착
1748년 2월 16일	부산에서 에도江戸로 출발
1748년 5월 21일	에도 도착
1748년 6월 1일	에도막부 쇼군將軍에게 국서國書와 별폭別幅 전달
1748년 6월 13일	에도에서 조선으로 귀국 일정 시작
1748년 6월 28일	오사카大阪 도착
1748년 7월 7일	오사카에서 부산으로 출항
1748년 7월 13일	부산 동래 도착
1748년 7월 30일	서울 도착

[표 9] 1748년 10차 통신사 사행 과정







27. 조선잡록 朝鮮雜錄

- 1748년
- 외교 · 문서류外交 · 文書類
  – 한국대일본 외교문서韓國對日本外交文書
- 16.1 x 23.2
- 1책 18장
- 일본江戶幕府

『조선잡록』은 조선통신사를 통해 전해진 교린문서交隣文書를 일본 입장에서 정리한 것이다. 표지에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연향 5 무진년, 조선잡록, 향보 4년 기해년 서한을 기록한다延享五戊辰年朝鮮雜錄享保四年己亥年書翰記ス'라고 적혀있다. 문서들은 모두 필사본이며, 표지와 본문의 내용을 토대로 1748년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시기를 추정해 볼 수 있다.

본문에는 1719년숙종 44 조선 국왕 숙종이 일본에 보낸 국서와 도쿠가와 요시무네德川吉宗, 1684~1751의 회답서, 1747년영조 23 조선 국왕 영조와 예조참판 이광세李匡世, 1679~?가 일본에 보낸 국서와 1748년영조 24 일본에서 보낸 회답서, 조선관명朝鮮官名, 1748년 무진 통신사 관원 성명戊辰通信使官員姓名, 1748년 2월 홍계희洪啓禧, 1703~1771가 대마도주 슈우이 타이라拾遺平에게 보낸 서한과 대마도주의 회답서, 같은 해 4월 기록, 「어반한여차격고불시도御返翰如此格故不是圖」의 피봉 형식으로 구성되었다. 본문에는 적색으로 후리가나振り仮名를 적은 기록도 남아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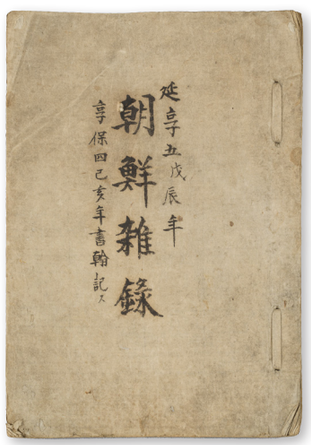

조선 후기 통신사를 통해 전해진 국서는 일본국대군日本國大君을 칭한 도쿠가와 막부德天幕府의 쇼군將軍과 조선국왕朝鮮國王 사이에서 주고받은 외교문서이다. 국서의 형식은 발신자朝鮮國王姓諱, 문서를 보낸다는 말奉書, 수신자日本國大君殿下, 본문, 결사不備, 이만 줄입니다의 뜻, 작성일자, 발신자 순으로 기재한다. 국서는 별폭別幅과 예물을 함께 보내 일본과 주고받았다.

이 자료를 통해 조선과 일본 양국이 서로 대등한 외교관계를 유지하고자 한 의지를 알 수 있다. 외교문서의 특성상 조선에서 발신한 문서의 실물은 남아있는 게 없으며, 이를 수신한 일본 측에 일부가 남아 필사본으로서 전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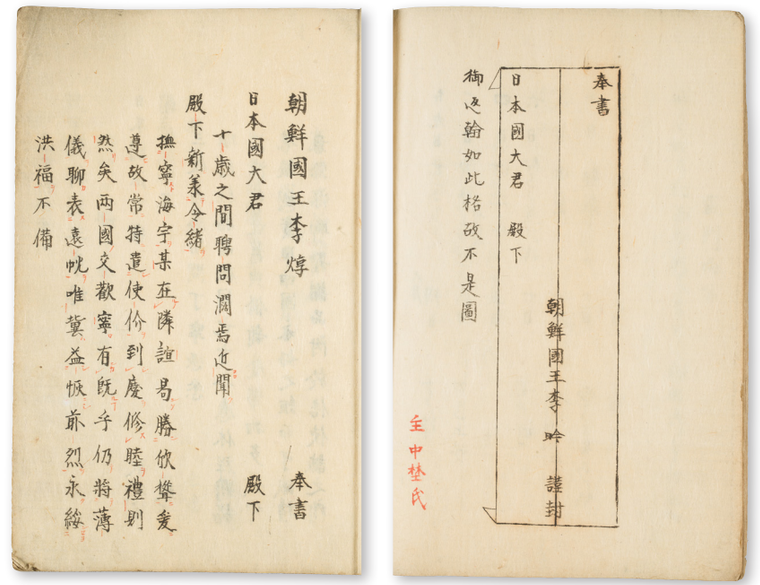

『조선잡록』 중 조선국왕 이돈李焞, 숙종 국서(좌)
조선국왕 이금李昤, 영조이 일본국에 보내는 근봉謹封 양식(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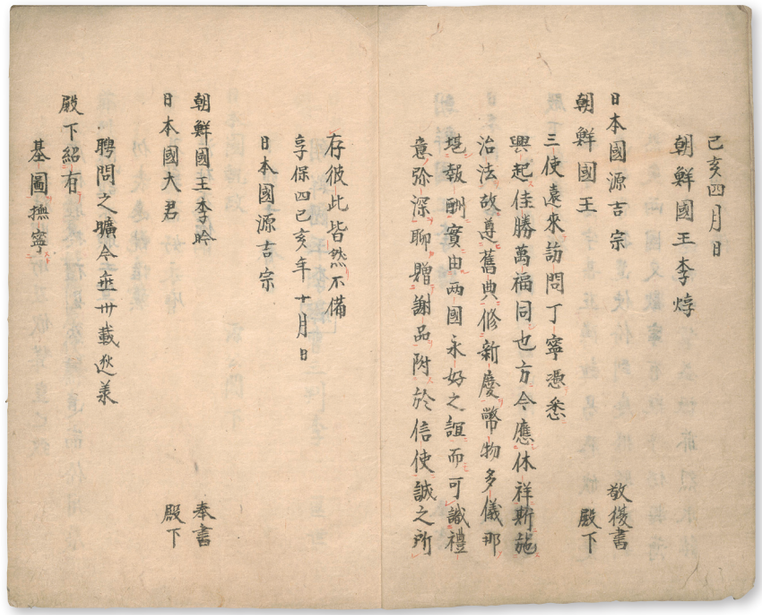

『조선잡록』 중 제8대 쇼군 도쿠가와 요시무네德川吉宗의 회답서

28. 통신사 사례 · 규정집
通信使事例 · 規定集

- 1687년숙종 13 이후
- 외교 · 문서류外交 · 文書類
  – 한국대일본 외교문서韓國對日本外交文書
- 19.3 x 27.5
- 1책 11장

조선 초 · 중기 통신사 관련 사례와 규정을 기재해 놓은 성책 문서成冊文書이다. 성책 문서는 여러 장의 종이를 묶어 서로 약속한 규칙, 규정, 절목, 사목 등을 기록할 때 사용한다.

규정집에 기재된 규정사항의 세부내용은 [표 10]과 같다. 통신通信 부분에는 당시까지 조선과 일본 사이에 사신이 오가거나 양국 사이에 일어난 중요한 사건에 대하여 기록하였다. 경자년庚子年, 1720년까지의 사실과 '금상정묘今上丁卯'라 기재되어 있는데, 숙종 대 정묘년은 1687년숙종 13이므로 문서를 작성한 시기를 알 수 있다. 통신사원액通信使員額부터는 통신사 파견을 둘러싼 여러 절차와 규정을 적었다.

현재 조선시대 통신사 관련 규정 및 사례를 확인할 수 있는 문헌으로 『통문관지通文館志』, 『증정교린지增正交隣志』, 『춘관지春官志』 등이 있다. 이들은 조선시대 통신사행 연구에 도움이 되는 자료로서 가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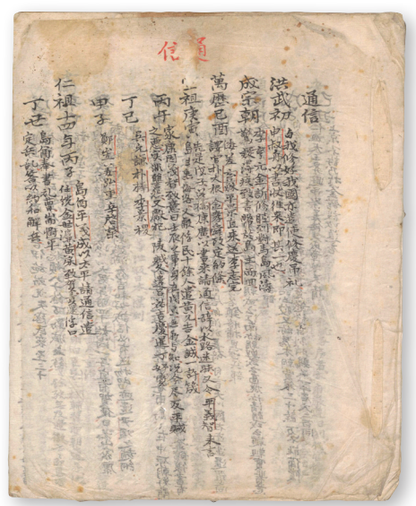

규정 사항	내용
통신사원액(通信使員額)	사(使), 부사(副使), 종사관(從事官), 당상역관(堂上訳官), 상통사(上通事) 등 통신사에 파견될 46개의 직렬의 인원을 선발하는 기준과 인원수에 대해 기재했다.
마문(馬文)	부사(副使), 당상역관(堂上訳官) 등이 이용할 역마(驛馬)의 수와 크기를 규정했다.
선척(船隻)	도해선(渡海船) 6척과 화물을 싣는 복선(卜船) 3척을 규정했다. 도해선은 통제영에서 건조했다.
선문(先文)	사신이 국내에서 이동하는 지역을 표기했다. 양촌(良村, 現 경기 김포시 양촌읍 일대)부터 동래(東萊, 現 부산 동래구 수안동 일대)까지 적혀있다.
우도(右道)	우도에서 이동하는 사신들의 경로를 표기했다. 문경(聞慶, 現 경북 문경시 일대)에서 동래(東萊, 現 부산 동래구 수안동 일대)까지 적혀있다.
수륙노정(水陸路程)	쓰시마 사스나우라(佐須奈浦)에서 에도(江戶)까지의 일본해역의 항해경로를 규정했다.
경외노자(京外路資)	호조에서 관례적으로 내려주는 의복과 노자로 통신사 이동을 위한 비용 등을 기록했다. 호조상부사(戶曹上副使), 수역(首訳), 군관서기(軍官書記), 마상재(馬上才), 이마(理馬), 삼사노자(三使奴子) 등으로 나누어 기술했다.
별반전(別盤纏) 사예단(私禮單) 수역사예단(首譯私禮單) 사도복정(四道卜定)	일본에 가는 통역관이 가져갔던 예물단자로 막부나 쓰시마측의 고위관료에게 전달한다. 인삼(人蔘), 어피(魚皮), 호피(虎皮), 백저포(白苧布, 흰 모시), 흑마포(黑麻布) 등을 가져가고, 항목에 따라 수량을 구체적으로 기재했다.
아경사연(我境賜宴)	국내에서의 연향(宴享)을 기술했다. 국내에서는 기존에는 충주, 안동, 경주, 부산에서 연회를 했으나, 사신이 민폐를 없애려고 하여 부산에서만 행하였다. 좌수사(左水使)가 찬구(饌具)를 제공하고 준비하였다.
피지연향(彼地宴享)	일본에서의 연향(宴享)을 기술했다. 쓰시마, 에도, 적간관(赤間關), 오사카성(大坂城), 왜경(倭京), 오와리(尾張), 스루가(駿河) 등에서 연회가 있었으며, 연회의 절차, 음식, 복식, 관직별 위치 등을 기술했다.
중로문안(中路問安)	조선의 사신단이 오카자키(岡崎)에 도착하면 관백(關白)이 사자를 보내 영접하고 문안을 하는 과정이다.
하정(下程)	일본이 손님을 대접하는 예절을 적은 것으로 처음 5일치의 양식으로 주고 5일이 지나면 또 주는 것을 기록했다. 일본 쓰시마, 이키도, 오사카성, 왜경(倭京), 에도 등에서 관직에 따라 반미(飯米)의 수량을 기재했다.
삼사신사예단 (三使臣私禮單)	3사신의 사사로운 예단으로 쓰시마 태수, 만송원(萬松院)[51], 이정암(以酊菴)[52] 등에 호피, 인삼, 백저포 등을 주었다.
회수예단(回受禮單)	사신단이 돌아올 때 받는 예단의 목록으로 은자(銀子), 설면자(雪綿子, 실을 켤 수 없는 허드레 고치를 삶아 늘여 만든 솜) 등이 관직에 따라 지급되었다.
국서(國書)	서계 및 회답서의 외 · 내면 양식, 증물(贈物)의 내역 등 전체적인 국서 양식에 대해 기술했다. 관진차비(關津差備), 국서(國書), 회답서(回答書), 서계(書契), 회답(回答), 국서식(國書式)으로 나누어 기술했다.
전명의(傳命儀)	임금의 명령을 전달하는 의식으로 조 · 일 사행단의 의례 모습, 범주 및 시각, 복장 등이 기술되어있다.
수회답의(受回答儀)	사신단이 사행을 끝내고 돌아올 때 행하는 것으로 일본의 회답서를 받는 의식을 기술했다.
치제의(致祭儀)	권현당(權現堂)[53], 대유원(大猷院)[54] 등에서 지내는 의례와 절차, 재물 등을 기록했다. 조선은 선조에 대한 일본 후손의 지극한 효성의 뜻을 칭송하고 명복을 기렸다. 이는 양국의 친목을 다지는데 목적이 있다.
사례(事例)	서계의 별폭(別幅), 선척 등을 연도에 따라 별도로 기재했다.

[표 10] 『통신사 사례 · 규정집』에 기재된 규정 사항

51) 대마도주 소 요시토시(平義智)의 명패를 모신 원찰(願刹). 임진왜란 당시 평화를 위하여 노력한 공로를 인성하여 사후 매년 1척의 무역선을 영구히 보내는 것을 허락했다.

52) 일본 승려 현소(玄蘇)의 암자로 현소는 조선에 공로가 있다고 하여 사후 1척의 무역선을 허락했다. 이에 조선과 일본의 연락을 맡은 사람이나 무역선의 별칭으로 사용되었다.

53) 에도 막부의 초대 쇼군인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의 사당이다.

54) 에도 막부의 3대 쇼군인 도쿠가와 이에미스(德川家光)의 무덤이다.



『통신사 사례 · 규정집』 중 통신사원액通信使員額



『통신사 사례 · 규정집』 중 선문先文 · 마문馬文



『통신사 사례 · 규정집』 중 별반전別盤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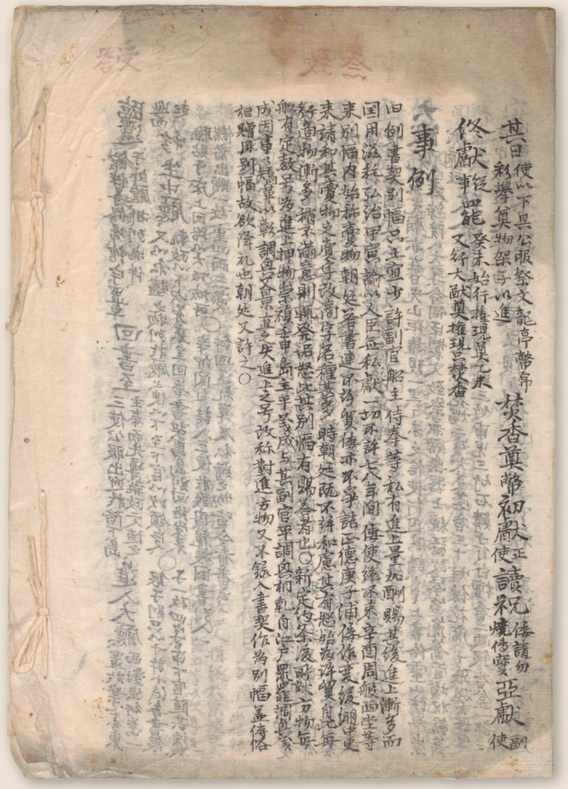

『통신사 사례 · 규정집』 중 사례事例

29. 역과보 譯科譜

- 조선 후기
- 고서古書 – 전기류傳記類
- 23.7 x 36.8
- 1책 82장

조선 후기 역과 합격자의 명단을 성씨별 · 가문별로 나누어 합격자의 8대조, 외조부, 처계를 기록한 중인의 족보이다. 팔세보八世譜 형식으로 가로 5칸, 세로 11단의 줄이 새겨진 용지에 횡橫으로 개별 인물을 적고, 인물의 자字, 생년, 역과 합격년도를 식년시式年試와 증광시增廣試로 구분해 한 칸에 적었다. 8대조 · 외조부 · 장인은 종縱으로 이름, 출신, 관직이나 품계를 적었다.

현재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과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에는 『역과보』와 유사한 『역등제보譯等第譜』와 『역과팔세보譯科八世譜』 등을 소장하고 있다.

『역과보』는 조선 후기 주요 역관 가문인 천녕 현씨川寧玄氏, 인동 장씨仁同張氏, 밀양 변씨密陽卞氏, 우봉 김씨牛峯金氏를 포함해 총 22개 성씨, 62개 본관, 296명이 수록되었다. 『역과보』에 수록된 성씨와 본관의 현황은 [표 11]과 같다.

역과보의 내용으로 역과 출신자와 8대조를 비교할 수 있어 역학의 가학家學 여부와 잡학雜學 내에서의 변동 상황을 알 수 있다. 또한, 외조부와 장인의 출신을 비교하여 역관을 비롯한 중인의 혼인 관계를 살펴볼 수 있다.

한편, 『역과보』와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소장 『역과팔세보』와 비교했을 때 발행 연도를 추정할 수 있다. 『역과보』와 『역과팔세보』는 전주 이씨全州李氏 이중집李重集[55], 강릉 이씨江陵李氏 이태선李台璿[56]까지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역과팔세보』는 강릉 이씨 이태선 이하로 7행 11단이 추가되었다. 이밖에도 전주 이씨, 경주 이씨慶州李氏 등의 역과 합격자가 약 5~7행 · 11~18단이 기재되어 있어 『역과보』는 1882년고종 19 이전에 편찬된 것으로 추정된다.

시대적으로는 조선 후기 중인의 족보가 간행된 것은 당시 새롭게 부상하는 중인층의 신분의식 강화 및 신분 상승 운동 등과 궤를 같이하고 있어 당시 사회적 분위기를 알 수 있어 서지적 · 내용적인 가치가 크다.



55) 이중집(李重集, 1844~?)은 1861년(철종 12) 식년시(式年試)에 급제했다.

56) 이태선(李台璿, 1854~?)은 1873년(고종 10) 식년시(式年試)에 급제했다.

연번	성씨	본관					총계(명)
		역과 합격자(명)					
1	이씨(李氏)	전주(全州)	금산(金山)	경주(慶州)	강음(江陰)	해주(海州)	74
		22	10	5	4	7	
		정읍(井邑)	태안(泰安)	남양(南陽)	안산(安山)	수원(水原)	
		3	6	4	6		
		정선(旌善)	임실(任實)	천안(天安)	금성(錦城)	1	
		2	2	1	1		
2	김씨(金氏)	경주(慶州)	우봉(牛峯)	김해(金海)	해주(海州)	고성(固城)	48
		2	9	2	3	3	
		설성(雪城)	전주(全州)	보령(保寧)			
		6	1	2	선산(善山)	청양(靑陽)	
		삼척(三陟)	개성(開城)	한양(漢陽)	2	10	
		4	3	1			
3	최씨(崔氏)	경주(慶州)	청주(淸州)	강릉(江陵)	직산(稷山)		18
		12	3	1	2		
4	안씨(安氏)	순흥(順興)					8
		8					
5	정씨(鄭氏)	경주(慶州)	온양(溫陽)	김포(金浦)			5
		2	2	1			
6	박씨(朴氏)	밀양(密陽)	영해(寧海)	무안(務安)	삭녕(朔寧)	이안(利安)	22
		6	9	5	1	1	
7	한씨(韓氏)	청주(淸州)	신평(新平)				11
		10	1				
8	홍씨(洪氏)	남양(南陽)					7
		7					
9	조씨(趙氏)	파평(坡平)	금산(錦山)	한산(漢山)	백천(白川)		6
		1	1	3	1		
10	윤씨(尹氏)	파평(坡平)	풍양(豐壤)				6
		3	3				
11	오씨(吳氏)	악안(樂安)	해주(海州)				17
		10	7				
12	장씨(張氏)	인동(仁同)	안동(安東)				3
		1	2				
13	현씨(玄氏)	천녕(川寧)					22
		22					
14	변씨(卞氏)	밀양(密陽)					11
		11					
15	방씨(方氏)	온양(溫陽)					6
		6					
16	진씨(秦氏)	풍기(豐基)					5
		5					
17	백씨(白氏)	임천(林川)					4
		4					
18	경씨(慶氏)	청주(淸州)					1
		1					
19	류씨(劉氏)	한양(漢陽)					8
		8					
20	고씨(高氏)	제주(濟州)					10
		10					
21	변씨(邊氏)	원주(原州)					3
		3					
22	전씨(田氏)	하음(河陰)					1
		1					
총 계		22개 성씨, 62개 본관					296

[표 11] 『역과보』 수록 역과 합격자 현황(수록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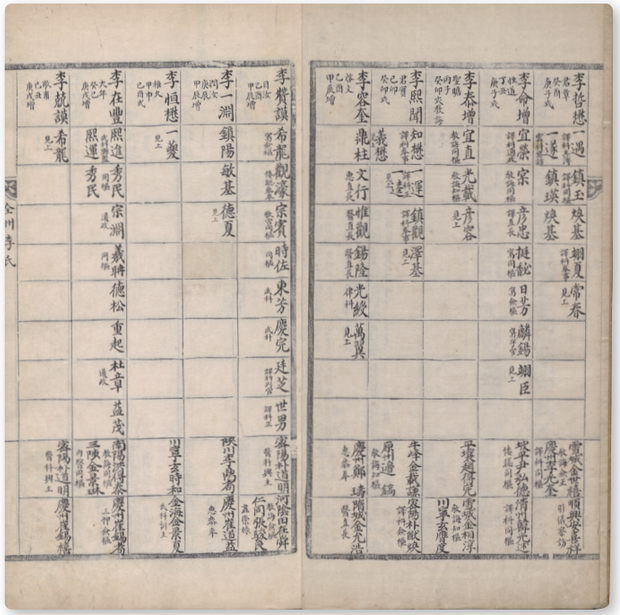

『역과보』 중 전주 이씨全州李氏 기재 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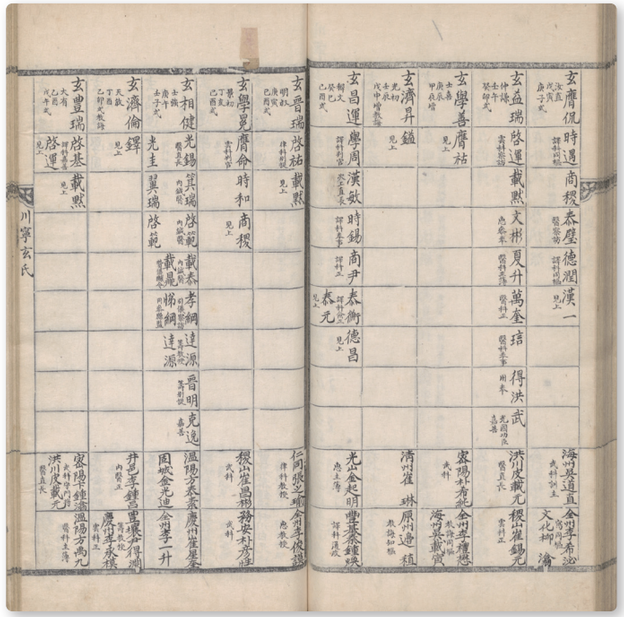

『역과보』 중 천녕 현씨川寧玄氏 기재 부분

30. 선석고 仙石稿

- 조선 후기
- 문집류文集類 – 문집文集
- 20.5 x 30.0
- 2책

조선 중기의 문인 선석仙石 신계영辛啓榮, 1577~1669의 시문을 모아놓은 문집이다. 신계영은 1619년광해군 11 문과에 급제해 병조좌랑, 나주목사, 호조참의, 공조참판 등의 관직을 지내다가 1624년인조 2 일본에 회답겸 쇄환사回答兼刷還使를 파견했을 때 종사관從事官으로 일본에 다녀왔다.

종사관은 통신사 삼사三使 중 한 명으로 정사正使와 부사副使를 보좌하고 사행 중에 생긴 일을 기록했다가 국왕에게 보고하는 일을 담당했다. 사행을 다녀온 이후에도 신계영은 17~18세기의 사회 모습과 풍경을 시로써 남겼다.

『선석고』는 신계영이 통신사 종사관으로서 일본을 방문할 때 쓴 기행시문이 다수 수록되어 있으며, 부사로 함께 일본에 갔던 강홍중姜弘重, 1577~1642의 작품과 1637년 병자호란 이후 신계영이 속환사贖還使로 심양瀋陽에 가면서 지은 시도 수록되었다.

표제는『선석고』로 되어있으며 시 형식에 따라 작품이 배열되어 있다. 책은 건권乾卷과 곤권坤卷으로 나뉜다. 건권에는「자충주향수교촌마상취음自忠州向水橋村馬上醉吟」을 비롯한 칠언율시七言律詩 200여 편이 수록되어 있다. 일본에 사신으로 가기 위해 동래로 가는 여정을 주제로 삼거나, 통신사 과정 중 지나간 쓰시마対馬島, 이키노시마壱岐島, 아이노시마藍島, 오사카大阪, 다이토쿠지大德寺 등의 풍경과 바다 위에서 느꼈던 감정을 주제로 시를 지었다.

오언장편시五言長篇詩는 대표적으로「노병중봉감무료老病中不堪無聊 약기평생사경계略記平生事梗槩 서여웅아書與雄兒 [늙어 병든 중에 무료함을 견디지 못하여 평생의 행적 대강을 기록하여]」,「한친翰薦」과「홍록弘錄」등이 있다. 주로 지나간 삶을 주제로 시를 지었다.

장편 시 수록 뒤에는「서사록筮仕錄」이라 하여 신계영의 관직 및 임명 시기를 정리하여 기록하였다. 부록에는 김좌명金佐明, 1616~1671, 남용익南龍翼, 1628~1692 등이 신계영의 명복을 빌며 지은 만장輓章이 수록되어 있다.

곤권에는「만음漫吟」을 비롯한 오언율시 50여 편, 칠언절구 60여 편, 오언절구 10여 편이 수록되어 있다. 장시長詩는「아이노시마藍島」,「오사카大阪」,「송임자정봉사일본送任子靜奉使日本」,「연촉귀원蓮燭歸園」등이 수록되었다. 신계영은 일본에 대한 경치와 문물에 대해 주로 이야기했으며, 군사시설, 상업시설, 도시의 모습을 시로 묘사했다.

『선석고』는『선석유고仙石遺稿』의 편찬을 위해 신계영의 시문을 필사한 필사본으로 초고본에 가까워 서지적 가치가 크며,『선석유고』에 수록되지 않은 시 10여 편이 수록되어 있어 국문학적 가치도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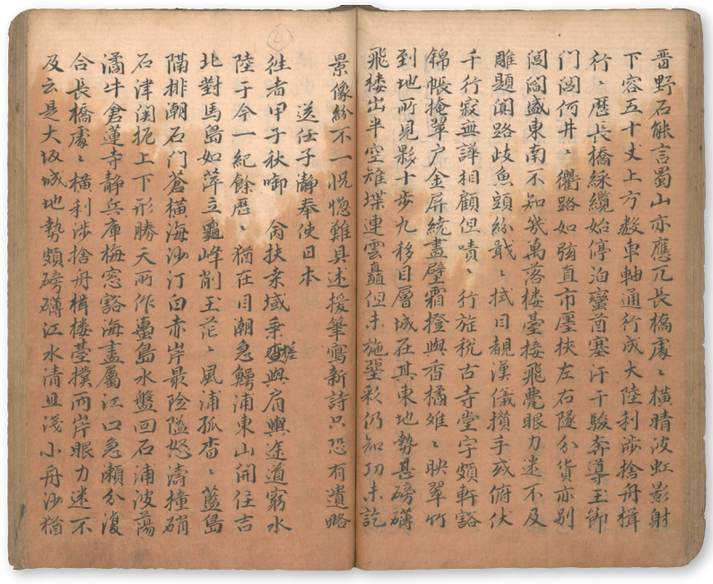

『선석고』 중「송임자정봉사일본」
1636년(인조 14) 일본에 사신으로 가는 임광任珖, 1579~1644을 배웅하며 지은 장시이다.

雨月物語

白峯

31. 동사록 東槎錄

- 1801년순조 1 이후
- 고서古書 – 전기류傳記類
- 20.3 x 32.5
- 1책 56장

『동사록』은 1636년인조 14 통신사 부사副使 김세렴金世濂, 1593~1646의 군관軍官인 김광립金光立, 1591~1646의 일본인 접관 기록과 행적 및 공로를 집대성한 서적이다.

표지에는 『동사록』이라는 제목과 '망헌공사적望軒公事蹟'이 적혀있다. 『동사록』은 주로 일본에 사신으로 파견되었던 인물들이 저술한 사행록使行錄에 많이 붙였던 제목 중 하나이다. 저자는 알 수 없으나 1802년순조 2 담양부사로 임명된 이동야李東野[57]가 1801년 이후 저술한 행장行狀을 통해 19세기에 발간한 것을 알 수 있다.

『동사록』에는 김광립이 황주판관黃州判官 시절 별차왜別差倭의 접위관接慰官[58]으로 참여한 기록, 정조 대 도회소都會所[59] 유생들이 예조로 상서上書한 행장行狀과 통문通文 등이 수록되어 있다.

별차왜 기록은 1636년 9월에서 1637년인조 15 3월까지의 문서가 수록되었다. 접왜사 명단, 동래부사치보東萊府使馳報[60], 부산치보釜山馳報, 왜정문답장계회화倭情問答狀啓回下, 통신사장계通信使狀啓, 관백회답서간關白回答書簡등이 수록되었다.

상서의 내용은 함풍향교咸豐鄕校와 도회소都會所에서 『호남절의록湖南節義錄』에 김광립을 포함하고 제향도 함께 올릴 수 있도록 예조판서 조관진趙寬鎭에게 올린 것이다.

57) 吏曺口傳政事, 以李東野爲潭陽府使, 以閔師宣爲保寧縣監, 以朴孝德爲新昌縣監, 戶曹正郎單尹光心仍任事, 承傳。『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1,852책(탈초본 98책), 순조 2년 5월 9일 무인.

58) 별차왜(別差倭)는 대차왜(大差倭)라고도 한다. 대마도 주의 이름으로 파견된 일본의 외교 실무자로 주로 막부나 통신사에 대한 사항을 취급하며 서계(書契)와 별폭(別幅)을 지참하였다. 접위관(接慰官)은 일본의 사신을 접대하기 위해 조선에서 임시로 임명하는 관직이다. 사절의 격에 따라 경관이 임명되는 경접위관(京接慰官)과 동래부 인근의 문관 수령이나 도사(都事)가 임명되는 향접위관(鄕接慰官)으로 나뉜다.

59) 도회소(都會所)는 지방 유생들의 교육과 과거시험을 위한 기구로 관찰사가 도내에서 우수한 유생들을 선발해 운영하던 곳이다.

60) 치보(馳報)는 일종의 첩보활동으로 지방에서 역마를 통해 중앙에 급하게 보고하던 일이다.

상서를 올린 결과 『호남절의록』 권 4中 갑자의적甲子義蹟 수훈제공사실樹勳諸公事實에서 김광립이 수록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병자호란 때 그는 동래수사東萊水使로서 관군을 이끌고 근왕勤王길에 올랐으나 청주에 이르렀을 때 청과의 강화가 이루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통곡하고서 돌아왔다고 한다. 행장은 김광립의 사후, 그를 기리기 위해 행적을 기록한 것이며 담양부사潭陽府使 이동야가 지었다. 제목은 통정대부 행갑산진수군병마절도사 김공행장通政大夫行甲山鎭水軍兵馬節度使金公行狀이다.

현재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소장 『별차왜등록別差倭謄錄』에는 통신사장계 등 1637년인조 15부터 1753년영조 29까지 차왜가 수행한 외교문서가 확인된다. 『동사록』과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은 1637년 3월 5일부터 11일까지의 통신사장계이다. 장계는 통신사 일행에 대한 접대에 관한 문서로 '임진왜란 포로와 함께 돌아온 통신사와 대마도 차왜의 접대에 대해 예조禮曹에서 지시해 주기 바란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동사록』에 수록된 대일 외교문서와 비교하면 17세기 대일 외교의 구체적인 양상을 알 수 있다.





『동사록』 중 「통신사장계通信使狀啓」



『동사록』 중 「왜정문답장계회화倭情問答狀啓回下」



『동사록』 중 「관백회답서간關白回答書簡」

조선 후기 역관가문 천녕 현씨

사역원司譯院은 어린 나이에 선발된 사역원 생도들의 통역 능력 향상에 주안점을 두고 한학漢學, 중국어, 몽학蒙學, 몽골어, 왜학倭學, 일본어, 여진학女眞學, 여진어 교육을 실시했다. 역관이 되기 위해서는 어려서부터 해당 외국어를 배워야 했기 때문에 자연히 역관직을 세습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등 크고 작은 외침을 겪으면서 중국 · 조선 · 일본의 삼각무역이 활기를 띄게 되었고, 이로 인해 각국과의 의사소통과 외교 실무를 위한 역관의 수요가 증가했다. 외교활동의 중심기관인 사역원의 중요 직책과 역할은 소수의 특정 가문에 집중되면서 인동 장씨仁同張氏, 밀양 변씨密陽卞氏, 우봉 김씨牛峯金氏, 천녕 현씨川寧玄氏 등이 주요 역관가문으로 성장했다.

천녕 현씨의 중인 가문은 현수겸玄壽謙, 1513~1585이라는 한 인물의 직계 후손들이다. 1616년광해군 8 처음 역관이 된 현욱부터 1885년고종 22 역관이 된 현정玄棖, 1870~?까지 근 300여 년 동안 잡과 합격자를 배출해 명문 중인 가문의 지위를 유지했다. 천녕 현씨는 총 213명이 조선시대의 잡직에 진출했는데 과목별로 보면 역과譯科에 105명, 의과醫科[61]에 46명, 운과雲科[62]에 13명, 율과律科[63]에 4명, 주학籌學[64]에 45명이다.[65] 이는 잡과 입격자만 보았을 때 단일 가계로 가장 많이 배출한 것이다.

천녕 현씨 가문 일기는 현수겸 가계 중 9세손 현계근의 가계에서 발간한 문서이다. 개인사를 정리할 목적과 더불어 후대에 의례 사례 등을 전승시키려는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따라서 기록물로서 복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현존하는 천녕 현씨 가문 일기는 대부분 필사본이며 후대에 의해 정리되어 대부분 19세기에 발간되었다.

천녕 현씨 가문의 일기는 『현계근일기玄啓根日記』를 시작으로 현재덕玄在德의 『엄산일기奄山日記』 – 현탁玄鐸의 『석번일기石樊日記』 – 현제복玄濟復의 『우당일기藕塘日記』 순으로 기록되었다. 일기의 내용 중 특이한 것은 현탁부터 아버지인 현재덕이 돌아가신 후 본인이 이어받아 일기를 기록한다고 기재한 것이다. 이는 현계근 대에 선대의 묘비를 건립하고 가보家譜 정리를 하는 등 일종의 가문적 기반을 확고히 하는 모습과 연결된다.[66] 따라서 이런 일기들은 조선 후기 중인 가문이 양반가로 발돋움하려는 신분 의식을 반영하는 기록이라 할 수 있다.

61) 의과(醫科)는 전의감(典醫監)에서 시험을 주관했다. 전의감(典醫監, 의학 교육 및 시험) · 내의원(內醫院, 왕실 의료) · 혜민서(惠民署, 의녀 교육) 소속의 의관을 뽑기 위해 시행되었다.

62) 운과(雲科)는 음양과(陰陽科)라고도 하며, 관상감(觀象監)에서 시험을 주관했다. 천문 · 지리 · 역수(曆數, 태양과 달의 운동을 관측하여 시간과 24절기를 정밀히 추산하는 역산법) · 점산(占算, 점술) · 각루(刻漏, 물로 시각을 측정하는 장치를 보고 시간을 관측할 수 있게 함) 등의 일을 담당하는 기술직을 뽑기 위해 시행한 시험이다.

63) 율과(律科)는 형조(刑曹)에서 시험을 주관했으며, 형률(刑律)에 밝은 사람을 뽑았다.

64) 주학과(籌學科)는 산학(算學)이라고도 하며, 호조(戶曹)에서 시험을 주관했다. 주로 재정과 회계화 관련한 일을 담당했다.

65) 김두헌, 2001, 「기술직 중인 신분 연구」, 전북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66) 이상규, 2004, 「조선 후기 川寧玄氏家의 譯官活動」, 『한일관계사연구』 제 20집, 한일연구사학회.

천녕 현씨 가문 일기 저자

대	인물	전공	주요 업적
시조	현맹인(玄孟仁, ?~?)	–	– 천녕 현씨의 시조. 여말선초의 문신
14대	현수겸(玄壽謙, 1513~1585)	–	– 現 경기 남양주시 별내동에 천녕 현씨 세거촌 형성 – 천녕 현씨의 잡과 입격자의 직계 선조
17대	현욱(玄頊, 1597~1658)	한학(漢學)	– 천녕 현씨 중 역관에 처음 진출(1616년(광해군 8) 증광시) – 1631년(인조 9), 1634년(인조 12) 명나라 사신을 맞이하는 영접사(迎接使) 차비역관(差備譯官) 임명[67] 평안도 가도(椵島)에 파견되어 명나라 관리의 횡포를 중재함 – 1637년(인조 15) 청나라 심양(瀋陽) 파견. 소현세자 곁에서 양국 외교업무 조정
18대	현덕우(玄德宇, 1617~1680)	한학(漢學)	– 1639년(인조 17) 식년시에 한학으로 입격 – 청나라 사신의 차비역관으로 임명 – 1653년(효종 4), 1655년(효종 6), 1674년(숙종 원년) 연행사(燕行使)의 당상역관(堂上譯官)[68]으로 파견
	현덕윤(玄德潤, 1676~1737)	왜학(倭學)	– 1705년(숙종 31) 증광시에 왜학으로 입격 – 천녕 현씨 가문 왜학역관의 효시 – 1719년(숙종 45) 통신사행에 상통사(上通事)로 참여 – 1734년(영조 10) 대마도에 보내는 세견미(歲遣米)를 100석 절감해 조정에서 공을 인정. 덕망이 높고 인품이 선량해 부산진 향인(鄕人)들이 송덕비 건립
	현덕연(玄德淵, 1694~1778)	왜학(倭學)	– 1714년(숙종 40) 식년시에 왜학으로 입격 – 1748년(영조 24) 통신사 당상역관으로 파견 – 1762년(영조 38) 문위행(問慰行) 당상역관으로 파견
21대	현계근(玄啓根, 1726~1799)	왜학(倭學)	– 1731년(영조 7) 5살에 왜학생도방에 입속 – 1748년(영조 24) 역과에 왜학으로 출사 – 1763년(영조 39) 통신사 제1선의 압물통사(押物通事)로 참가해 일본어 사전집 『왜어유해(倭語類解)』의 오류를 수정 – 1780년(정조 4) 대마도 문위행의 당상역관으로 파견
23대	현재덕(玄在德, 1771~1833)	의학(醫學)	– 1790년(정조 14) 의과 급제 – 글씨를 잘 써 정조로부터 벼루를 하사받음. 특히 초서체(草書體)가 뛰어남
24대	현탁(玄鐸, 1813~1887)	한학(漢學)	– 1831년(순조 31) 식년시에 한학으로 입격 – 청나라 외교 사행에 여러 번 역관으로 다녀옴
25대	현제복(玄濟復, 1845~?)	한학(漢學)	– 1874년(고종 11) 증광시에 한학으로 입격 – 1896년(고종 33) 독립협회 창립총회에서 간사원으로 선출
26대	현정(玄棖, 1870~?)	한학(漢學)	– 1885년(고종 22) 식년시에 한학으로 입격 – 현제복의 아들, 천녕 현씨 현수겸 직계의 마지막 역관

[표 11] 천녕 현씨 가문 주요 인물과 업적

67) 차비역관(差備譯官)은 특별한 일을 맡기 위해 임시로 임명된 역관이다.

68) 당상역관(堂上譯官)은 사행의 통역 및 실무를 담당하는 역관 중 우두머리 역관이다.



英宗大王二十年
川寧玄啓根日記 號東巖
啓根字晦伯初名敬躋字日升 英宗
二年丙午九月初五日寅時生於帽洞
外氏宅
甲子 乾隆九年 ○十九歲 甲子以前既有先考年譜不肖日記始自是
歲 ○五月初四日 先考通訓大夫行司
譯院判官府君考終于竹洞本第正寢享
年四十一不肖罪逆不自死滅攀擗叩吽
奔山日記
藕堂日記
尼樂日記

32. 현계근일기 玄啓根日記

- 1900년 전후
- 고서古書 – 일기日記
- 19.5 x 27.7
- 1책 37면

왜어역관倭語譯官 현계근1726~1799의 일기이다. 19세인 1744년영조 20부터 73세인 1799년정조 23까지 기록했다. 현계근의 초명初名은 현경제玄敬躋, 자字는 일승日昇이며, 호號는 동암東巖이다. 본관은 천녕川寧이다. 부친 현심玄深이 청학淸學, 여진학을 전공한 것과 달리 왜학倭學을 전공했다.

조선 후기 사역원에서는 역관을 양성하기 위해 5~6세부터 교육을 시작했다. 현계근은 사역원 동몽童蒙으로서 다섯 살 때 왜학에 입학했다. 열흘마다 시험을 치렀고, 외국어 연수 기관인 우어청偶語廳에 들어가면 해당 언어로만 말해야 했다. 5세에 사역원 생도로 입교한 것을 보아 조선시대 외국어 교육은 조기교육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현계근은 1747년영조 23 22세의 나이에 왜어를 전공으로 역과에 합격했다. 1763년 정사 조엄趙曮 · 부사 이인배李仁培 · 종사관 김상익金相翊 등 통신사 일행이 도쿠가와 이에하루德川家治의 습직襲職을 축하하기 위해 일방一房 소속 압물통사押物通事로서 사행에 참여했다. 사행 중 왜어倭語로 된 물명物名을 담당하여 잘못된 점을 바로잡기도 하고, 직접 사무를 맡아보는 장무관掌務官의 역할도 수행하였다. 이듬해 1764년 4월 오사카 객관에서 니야마 다이호新山退甫에게 관상을 보았고, 이때 나눈 필담이 『한객인상필화韓客人相筆話』에 수록되어 있다.

이 밖에도 1774년영조 50 이명회李命和 · 현상정玄商禎 · 변광수卞光秀 등과 함께 감동역관監董譯官으로서 왜관 서관 공사를 맡았다. 일본어 학습 교재 『첩해신어捷解新語』 개정 작업과 일본어 어휘집 『왜어유해倭語類解』 증보판 작업을 진행하고, 이에 대한 공적을 인정받아 정2품 지중추부사까지 올랐다.

『현계근일기』의 전체적인 구성과 내용은 한 인물의 일대기를 연월 순으로 정리하여 작성한 연보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본문에는 현계근이 1763년영조 39 계미통신사의 제술관製述官69)으로 일본을 방문한 내용, 대마도주의 습직 · 사망 · 출생과 경조사 등으로 조선에서 대마도로 파견되는 사절인 문위도해역관사로 간 내용이 포함된다.

『현계근일기』는 작성된 종이의 재질로 보아 1900년 전후에 전사傳寫한 것으로 추정된다. 내용적으로 현계근 개인 저서가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서 개인의 삶을 알 수 있고, 이에 관한 각종 역관에 대한 정보와 역관 신분으로서 집안의 활동, 관직 생활, 가족 및 친척의 관직 임명과 부고訃告 등 특별한 상황에 대해 기록했기 때문에 천녕 현씨 가문의 활동 전반을 파악하는데 유용하다. 일기의 내용 중에서 현계근이 통신사로 파견된 후 통신사행록을 별도로 남겼다는 기록이 확인되나 현재 이 책의 행방은 알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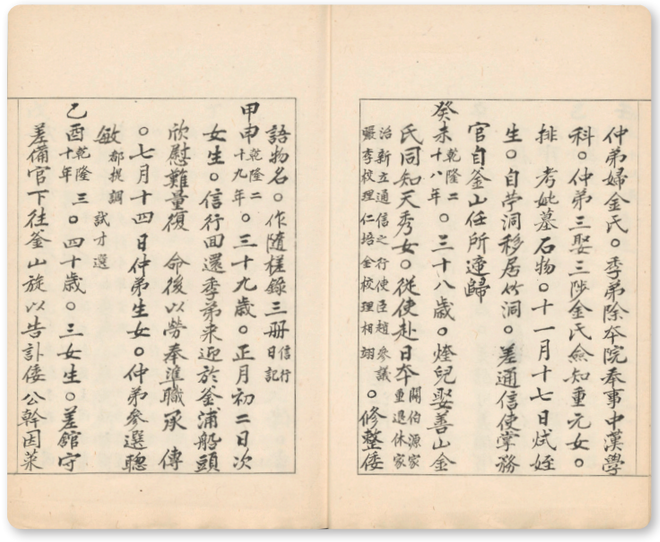

『현계근일기』 중 현계근이 38세에 통신사행에 참여한 내용

69) 제술관(製述官)은 외국에 사신을 파견할 때 동행하는 수행원 중 글재주가 있는 사람으로 전례문을 전담한다.

33. 엄산일기 奄山日記

- 19세기
- 고서古書 – 일기日記
- 18.5 x 29.9
- 1책 15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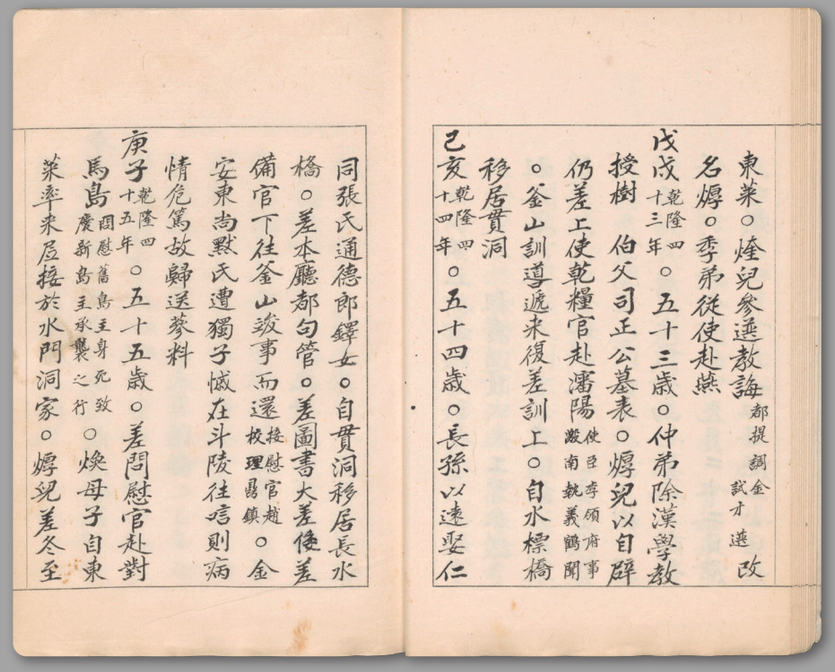

『현계근일기』 중 55세 때 현계근이 대마도 문위역관사에 파견된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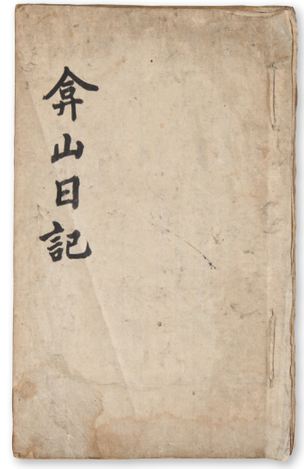

역관 천녕 현씨 가문의 현재덕玄在德, 1771~1833이 자신의 일상을 기술해 놓은 일기이다. 초명은 응원應遠, 자字는 사열士說, 호號는 엄산奄山이다. 부친 현후玄煦, 1749~?와 조부 현계근玄啓根, 1726~1799, 증조부 현심玄深은 모두 역관이다. 하지만 천녕 현씨는 역과 외에도 의과醫科에서도 46명의 합격자를 배출했고, 현재덕 역시 그중 한 명이다.

현재덕은 1789년정조 13 의과에 합격했으며, 내의원內醫院 의원으로서 활동했다. 글씨를 잘 써 한때 편액扁額과 비문碑文을 많이 썼다고 한다. 특히 초서에 뛰어났는데, 속도감이 넘치는 독특한 운필運筆로 일가를 이루었으며, 엄산체奄山體라 불렸다.

『엄산일기』의 내용은 49세인 1819년순조 19 63세인 1833년순조 33까지 기록이다. 관청으로 출근한 기록이나 왕실의 행사, 의관으로서 탕제를 올리는 공적인 업무내용 등이 기술되어 있다. 특히, 1821년순조 21에 전국에서 발생한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내용을 기술해 당대의 사회상을 알 수 있다.

사적인 내용으로 집안의 관혼상제와 주변 사람이 이사한 이야기 등이 확인된다. 특히, 계미통신사 이후 손자들끼리 회동하여 각자의 조부祖父와의 추억을 회상하는 이야기를 적어 통신사행 이후 후손들이 선조를 기억하는 방식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현재덕이 겪었던 당대의 사회상과 자신의 저술, 관직 생활, 개인적 친분과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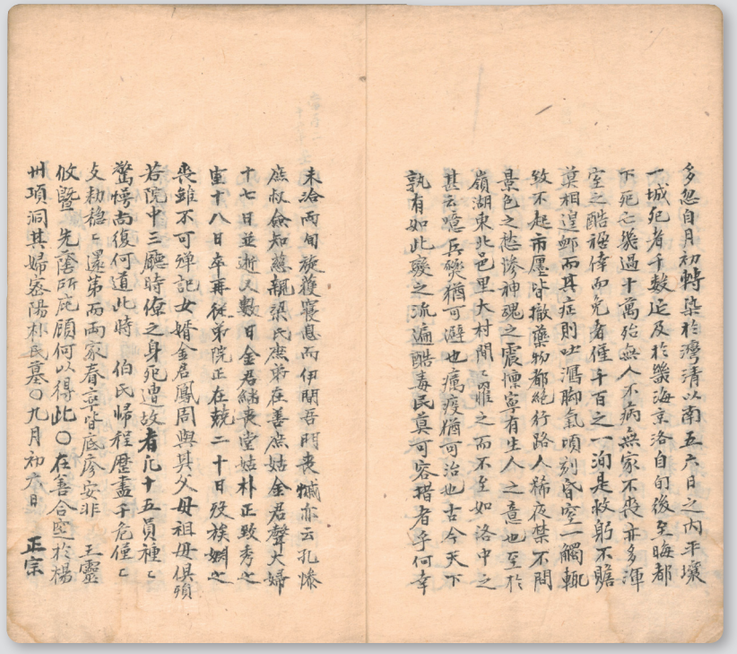

『엄산일기』 중 전염병 관련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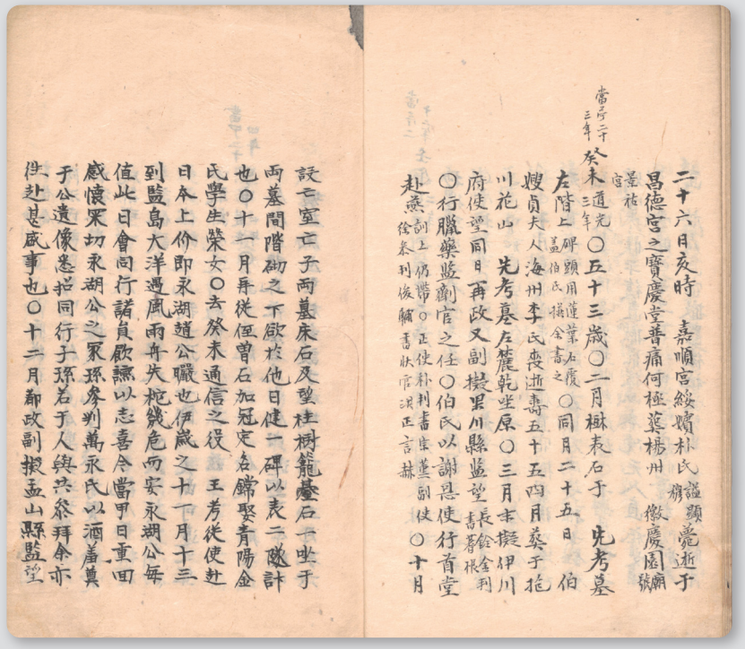

『엄산일기』 중 53세 때 현재덕이 계미통신사 사신의 손자들과 모임을 가진 기록

34. 우당일기 藕塘日記

- 1873년고종 10~1898년고종 35
- 고서古書 – 일기日記
- 20.0 x 28.2
- 1책 31면

천녕 현씨 가문의 한학漢學역관 현제복玄濟復, 1845~?의 일기이다. 현제복은 한학역관 석번石樊 현탁玄鐸, 1812~1887의 조카로 1845년헌종 11 1월 7일 생이다. 자字는 원례元禮, 호號는 우당藕塘이다. 1874년고종 11 증광시增廣試 역과譯科 3등으로 합격하였다.

책 초두에 '연주延州 현제복일기玄濟復日記'라는 내용을 먼저 기재하였다. 다음으로 현제복에 관한 정보와 그의 고조高祖 이하 조부에 대하여 기록하였고 당숙 현탁에 이어 일기를 기록함을 명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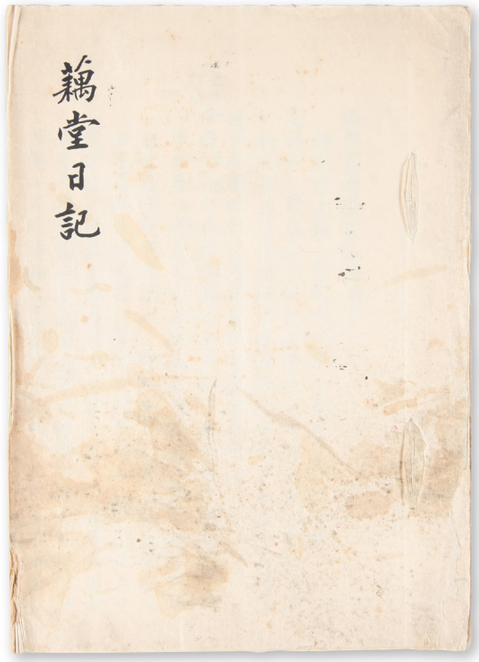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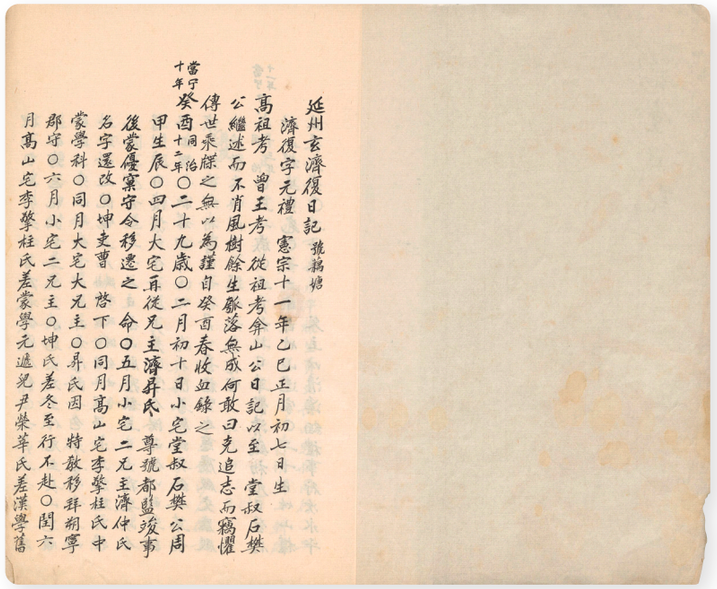

『우당일기』 중 가문약력 및 일기 기록 경위 소개

『우당일기』의 내용은 현제복이 29세인 1873년고종 10부터 시작하며, 53세인 1898년고종 35 4월까지 기록한다. 내용은 큰집大宅, 작은집小宅을 중심으로 천녕 현씨 가문에 있었던 일, 차례茶禮 등의 관혼상제, 일가 친족의 역관 진출 내용, 주변 인물들의 동정動靜 등 본인을 둘러싼 일과 역관으로 근무하면서 경험한 일이나 활동 등의 기록이 주를 이룬다.

특징적인 것은 조정의 대소사보다 천녕 현씨 가문의 이야기를 중점으로 서술한 것이다. 1887년고종 24 당숙인 현탁이 사망한 것은 기록했지만, 같은 해에 경복궁 내 건천궁에서 전등이 최초로 점화된 것은 기술하지 않았다. 또한, 아버지 현옥玄鈺과 아들 현제복이 역관으로 재직한 기간이 겹쳐 아버지의 역관 활동을 일기로 남겼다. 이는 다른 천녕 현씨 일기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밖에 일기에서 조정의 대소사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32세였던 1876년고종 13 일본이 강화도조약을 체결한 내용, 50세였던 1894년고종 31 창덕궁에서 전등이 점화된 것, 일본 군인이 궁궐에 들어온 일 등이다. 이밖에 개인적인 내용으로 집안의 출생과 경사, 풍수지리를 중심으로 무덤을 옮기거나 동지冬至 등 절기에 차례를 지낸 사실, 지인과의 교류 내용 등을 남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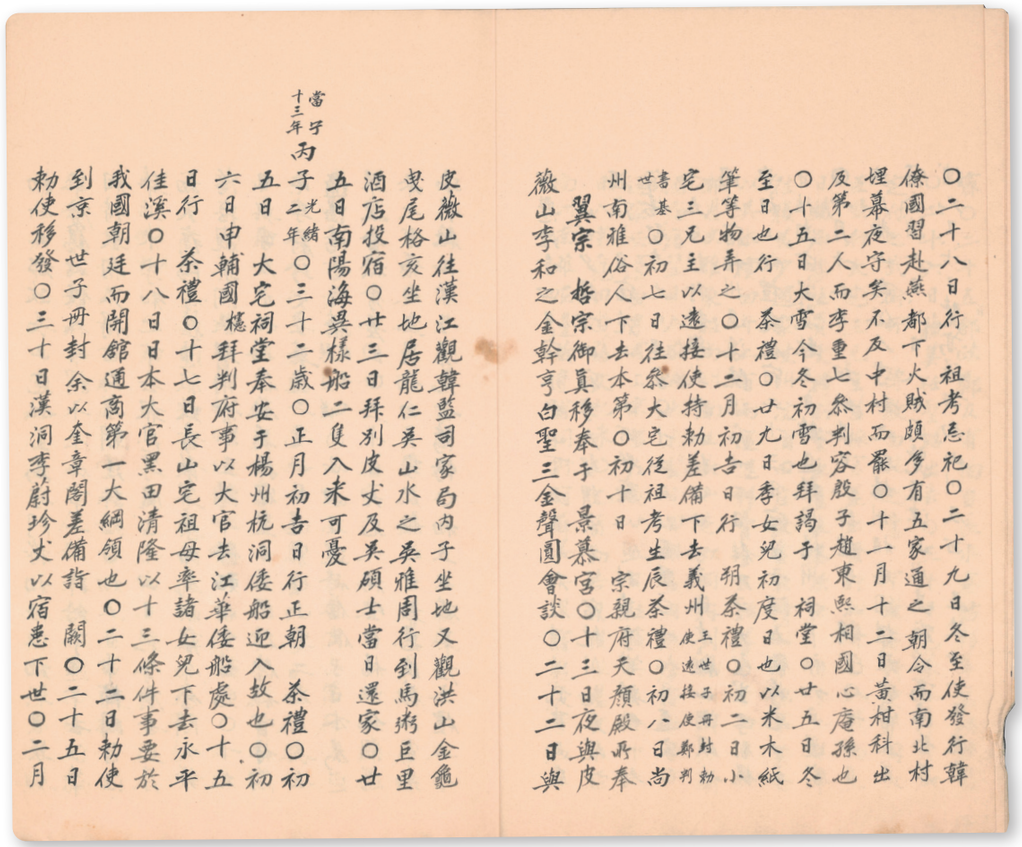

『우당일기』 중 구로다 기요타카黑田淸隆이 강화도조약을 체결한 내용

35. 석번일기 石樊日記

- 1833년순조 33~1887년고종 24
- 고서古書 – 일기日記
- 19.4 x 26.9
- 1책 20면

『석번일기』는 19세기 한학漢學 역관 현탁玄鐸, 1812~1887이 21세인 1833년 순조 33부터 75세인 1887년고종 24 2월까지 매년 간결하게 기록한 일기이다. 현탁은 1812년순조 12 2월 10일 생이며, 자字는 명여鳴汝, 호號는 석번石樊이다. 현탁의 아버지는 의관이자 『엄산일기奄山日記』의 저자인 현재덕玄在德, 1771~1833이다.

본문에는 '천녕川寧 현탁일기玄鐸日記'라는 내용을 가장 먼저 기재하고, 본인에 관한 정보로 자字, 생시生時, 출생지 등을 기록했다. 증조부曾祖父 이래로 『희와일기喜窩日記』, 『엄산일기』 등 조상들이 기록한 일기를 기재하며, 이를 본인이 이어받는다고 하였다.

마지막 면에는 '무인이월춘분일근편戊寅二月春分日謹編'이라 기재되어 있다. 무인년은 1878년고종 15 또는 1938년으로 추정되어 작성자가 현탁 본인인지 현탁이 적어 놓은 것을 후손이 정리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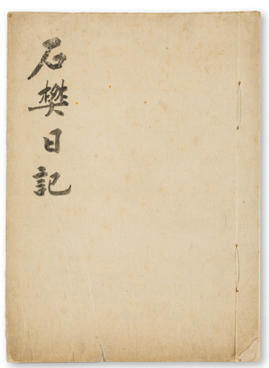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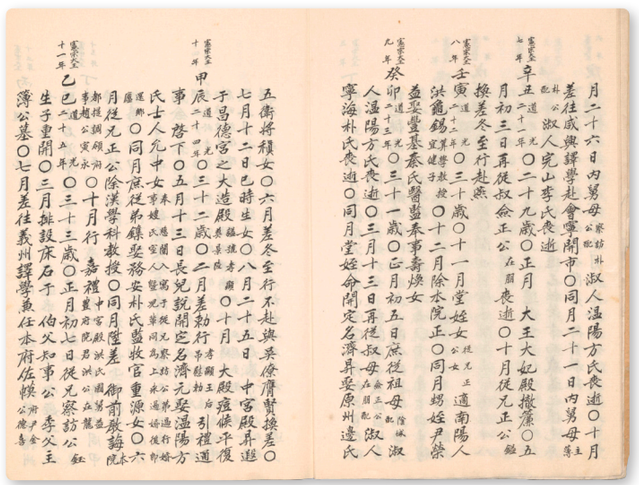

『석번일기』 중 사역원 정正에 제수된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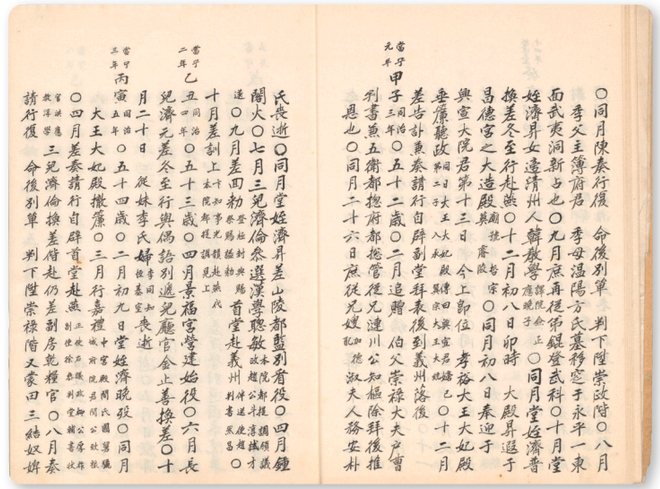

『석번일기』 중 사행 후 보상과 경복궁 중건 내용

일기는 가족과 일가 친족 및 주변 인물들의 동정動靜, 물품 구입 내역 등 본인을 둘러싼 주변 일과 역관으로 근무하면서 경험한 일이나 국가의 중대사 등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룬다.

한편, 『석번일기』와 함께 별지 1장이 함께 전하는데 『일성록日省錄』의 1866년 고종 3 8월 24일 기사를 베껴 놓은 것으로 현탁이 가자加資[70]를 받은 내용이 있다.

현탁은 천녕 현씨 중 수역首譯을 지낸 유일한 역관으로 근무하면서 부임한 관직 · 지방관을 기재하고 상부 관료를 기록했다. 북경에 수역 당상관 首譯堂上官으로 사행으로 다녀온 것, 사행 후 받은 보상 등을 기재했다. 국가의 큰일은 대개 왕실과 궁궐, 정치와 관련한 사항과 큰 화재를 간략하게 기록한다. 19세기는 여러 외세의 침입으로 격변의 시기였지만, 현탁은 간략한 기록방식을 고수해 국내외의 변화에 대한 자세한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

70) 가자(加資)는 관리들의 임기가 찼거나 근무 성적이 좋은 경우 급료나 품계를 올려주던 일이다.

4장

어촌 문서

어촌은 바다를 접한 인간의 생업 장소이다. 조선 후기 백성의 삶은 육지와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거친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는다는 것은 홀로 견딜 수 없는 일이었다.
어촌의 주민들은 공동으로 소유 · 노동 · 분배했고, 문서는 백성들의 생활 모습과 공간을 여과 없이
생생하게 보여줬다. 어촌으로 보내진 유배인과 표류인들은 이방인의 시선으로 문서와 문집을 남겼다.

36. 공옥 攻玉 – 김여휘등표해록 金麗輝等漂海錄

- 1633년인조 11
- 고서古書 – 문집文集
- 18.3 x 23.6
- 1책 17면

『공옥』은 여러 편의 산문을 엮어놓은 문집이다. 편저자는 미상이며 조선 후기에 필사된 것으로 추정된다. 표제인 '공옥'은 옥을 간다는 뜻으로 수양을 쌓고 덕을 닦음을 비유하고 있다. 서문은 따로 없으며 19편의 글이 수록되어 있다.[71]

『공옥』에 수록된 글의 성격은 통일적으로 연관시킬 만한 특별한 주제나 소재 등은 보이지 않는다. 「수성지愁城誌」, 「상사동전객기相思洞餞客記」 등의 한문 소설 작품, 병자호란의 실기류 기록인 「강도록江都錄」, 명나라 병부주사兵部主事 정응태丁應泰의 무고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이정구가 작성한 「변무주문辨誣奏文」 등이 대표적이다. 내용의 구성을 보았을 때 편자가 평소에 관심이 있던 글을 필사해 두고 엮은 것으로 추정된다.

「김여휘등표해록」은 3번째로 수록되었다. 제주목사 송정규宋廷奎가 1704년숙종 30부터 1706년숙종 32까지 표류 기록을 엮은 『해외문견록海外聞見錄』 등에도 확인된다. 송정규의 『해외문견록』과 비교하면 우리관 소장자료에서는 김여휘 일행이 제주도로 가게 된 이유, 전남 일대의 흉년 규모, 표류에서 생존하는 과정 등이 상세하게 적혀있다.



71) 수록순으로 임제(林悌)의 「수성지(愁城誌)」, 「강도록(江都錄)」, 「김여휘등표해록(金麗輝等漂海錄)」, 「상사동전객기(相思洞餞客記)」, 「유여매쟁춘설(柳與梅爭春說)」, 「유비자설(有非子說)」, 「의장량초사호서(擬張良招四皓書)」, 이정구(李廷龜)의 「변무주문(辨誣奏文)」, 「봉요동백김장군지(奉遼東伯金將軍誌)」, 「병자난후교유중외군민서(丙子亂後敎諭中外群民等書)」, 「정대마도교중외대소신료(征對馬島敎中外大小臣僚)」, 「기봉성졸문(寄鳳城倅文)」, 「전유좌찬성송시열(傳諭左贊成宋時烈)」, 「신명사기(神明舍記)」, 「송화산조우하향서(送華山曺友下鄕序)」, 「정언김치원계초(正言金致遠啓草)」, 「진어걸주소(陳言乞奏疏)」, 최경장(崔慶長)의 「삼오쟁장설(三傲爭長說)」, 「경경충전사도유생김달상소(慶京忠全四道儒生金達上疏)」가 있다.

「김여휘등표해록」의 내용은 미상의 저자가 전라도 해남 출신 선비 김여휘와 해남 사람 32명의 표류 기록을 적은 것이다. 문서에 의하면 김여휘 일행은 해남에 흉년이 들어 탐라에 들어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폭풍우를 만나 바다에 표류하게 되었다. 표류하는 동안 4명이 죽고, 생존한 28명이 해류를 따라 류큐流球의 아마미오시마奄美大島[72]까지 표류되었다가 조선에 송환되는 과정이 적혀있다. 김여휘 일행은 류큐 아마미오시마 – 사쓰마薩摩 – 나가사키長崎 – 쓰시마對馬島의 경로를 거쳐 1663년 7월 5일 차왜差倭의 인솔 하에 부산의 동래로 왔다. 이후 부산첨사釜山僉使와 동래부사東萊府使에게 인계되어 표류 과정에 대한 조사를 받은 후 7월 25일 해남으로 귀환했다.

표류 기록 중 주목할 만한 것은 김여휘는 류큐에서 껍질이 붉고 속살이 흰 마와 같은 음식을 먹었다고 기술한 부분이다. 글에서 묘사된 것을 보아 고구마로 추정된다. 김여휘가 먹은 것이 고구마라면 조엄이 1763년 11차 통신사에서 고구마를 들여오기 전에 조선인이 최초로 고구마를 먹은 기록이라 할 수 있다.

「김여휘등표해록」을 통해 당시 조선인 표류민이 일본 영토에 들어오면 처리하는 과정과 인계되는 과정, 표류민들이 지급받은 물품쌀 · 술 · 소금 · 술안주 · 채소 · 미소(味噌, 일본 된장) · 담배 및 의복 등, 일본에서 동래까지 인솔되는 과정 등을 알 수 있다. 어촌 사람들의 해상 활동과 해난海難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응을 가늠할 수 있어 내용적 가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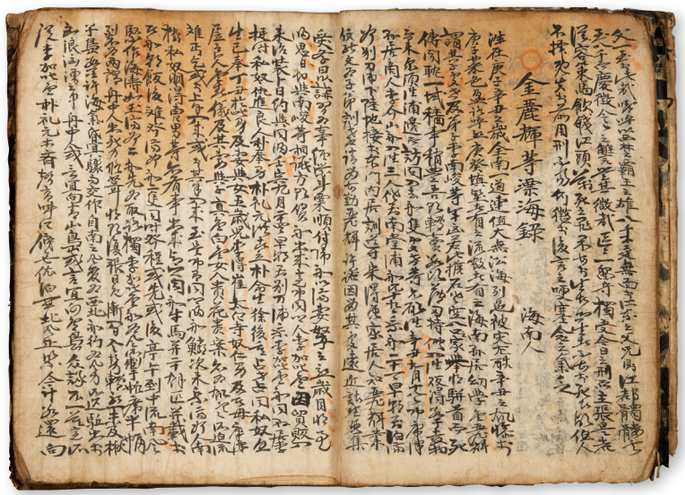

「김여휘등표해록」에서 확인되는 김여휘의 표류과정

72) 아마미오시마(奄美大島)는 현재 가고시마현에 속한 아마미 군도에 있는 섬으로 지리적으로는 규슈와 오키나와섬 사이에 있지만, 문화적으로는 규슈 본토보다 오키나와 현에 가까워 류큐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류큐은 현재의 오키나와현 일대에 있었던 왕국이다.

흑산 다물도



다물도 포구 전경
자료제공: 국립해양유산연구소

다물도多勿島는 전남 신안군 흑산면에 위치한 유인도有人島이다. 흑산도黑山島에서 북쪽으로 4㎞ 떨어진 곳에 있다. 해산물이 풍부하다 하여 다물도라 불리게 되었다고 하나 언제부터 사용되었는지 관련된 기록은 없다. 다물도의 크기는 흑산도 1/12 크기의 작은 섬이며, 섬의 형태는 장구 모양인데, 동서로 깊숙한 만이 형성되어 자연 방파제 역할을 해 사람이 살 수 있다.

다물도에 처음 사람이 거주한 것은 통일신라시대로 추정된다. 828년흥덕왕 3 장보고가 완도에 청해진淸海鎭을 설치하고 서해에 출몰하는 왜구를 막기 위해 흑산도에 상라산성上羅山城을 축조하면서 처음으로 사람들이 섬에 들어와 살았다고 한다. 그러나 인근의 대흑산도 패총, 진리 지석묘군 등이 남아있는 것을 보아 훨씬 이전부터 사람이 거주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본격적으로 섬에 사람이 상주한 것은 1650년효종 1 김씨가 처음으로 입도했거나 고려시대인 1350년충정왕 2 방씨가 최초로 입도했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고려시대부터 조선 중기까지의 기록이 확인되지 않아 정확한 입도 시기는 알 수 없다. 다물도에 대한 문헌자료는 조선시대부터 보이는데, 『일성록日省錄』 1816년 10월 8일자 기록에서 처음으로 확인된다.[73] 조선 후기 이후 입도가 시작되면서 김해 김씨金海金氏, 순흥 안씨純興安氏, 파평 윤씨坡平尹氏, 진주 강씨晉州姜氏, 경주 최씨慶州崔氏 등이 입도해 현재 여러 성씨가 살고 있다.

섬은 산지로 대부분 이루어져 있어 수산업과 양식업을 위주로 생업을 이루고 있고, 2021년 기준 마을의 거주인원은 282명으로 130세대가 거주한다.

73) "給多物島溳死人恤典, 全羅監司 金敎根以多物島居民十三名漁採次出海逢風溳死馳啓敎以聞甚矜惻元恤典外別加顧助如有生前身還布竝蕩減事廟堂分付." 『일성록(日省錄)』 385권, 0043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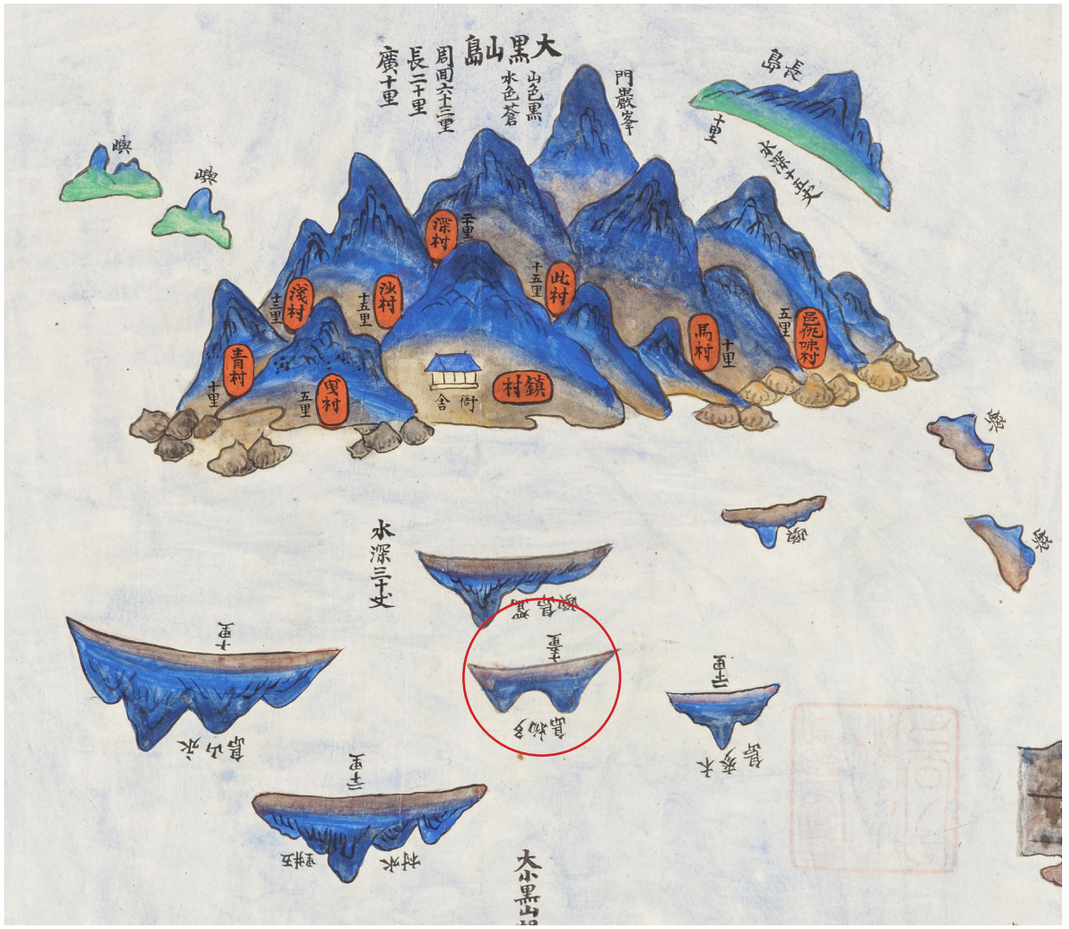

1872년 나주지방 흑산도 지도(○: 신안군 흑산면 다물도)
자료제공: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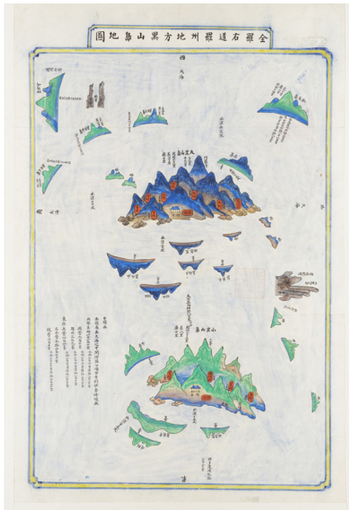

37. 흑산 다물도 문서 黑山多物島文書

- 1846년헌종 12 ~ 1900년고종 37
- 증빙류證憑類 – 수표手標, 준호구準戶口
- 치부 · 기록류置簿 · 記錄類 – 치부置簿
- 명문 · 문기류明文 · 文記類
  – 선척문기船隻文記, 토지문기土地文記
- 소 · 차 · 계 · 장류疏 · 箚 · 啓 · 狀類
  – 고소장告訴狀

조선 후기 무안현現 전남 신안군 일대의 부속 도서인 다물도에 거주하는 박씨와 강씨 가문의 문서 일괄이다. 촌락에서 확인되는 고문서는 조선 후기를 중심으로 마을에 오래 거주한 촌로村老들이 문서를 가지고 있거나 마을의 이장이 문서를 관리하는 경우가 많아 특정 성씨를 중심으로 전래된다.

촌락 문서는 명문 양반가의 고문서 전래양상에 비해 다양하지 않은 편이다. 설령 전래되더라도 각종 부세賦稅 관련 수취 문서와 촌락의 규칙을 기록한 절목節目, 촌락민의 호적戶籍과 군안軍案이 대부분이다.

그에 비해 흑산 다물도 문서는 다양한 형태의 촌락 문서가 확인된다. 또한 상중喪中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 문서를 작성하는 방식이나 생업 중에 타인과 갈등이 발생했을 때 대처하는 방식, 개인의 재산을 처분할 때 문서를 이용하는 방법 등 다른 지역의 촌락 문서에 비해 다양한 문서가 확인된다.

흑산 다물도 문서는 크게 증명을 위한 증빙류證憑類 문서와 장부帳簿 성격의 치부 · 기록류置簿 · 記錄類 문서, 곡물이나 토지 · 선박의 매매 혹은 증여와 관련한 계약 문서인 명문 · 문기류明文 · 文記類 문서, 관청에 소송과 판결 · 공증을 요청하는 소 · 차 · 계 · 장류疏 · 箚 · 啓 · 狀類 문서 등 총 4가지 종류로 구분된다.

증빙류 문서는 돈이나 물건을 빌려주거나 맡길 경우 주고받는 증서인 수표手標와 관청에서 개인 호적 사항을 증명한 문서인 준호구準戶口가 있다. 수표는 조선 후기 문서 작성 안내서인 『유서필지儒胥必知』의 양식을 충실하게 따라 작성되었다. 작성된 수표는 채무 관계 혹은 개인 간 거래 등 금전의 증빙자료로 사용되었다.

※ 본 원고는 국립해양박물관 소장 흑산 다물도 강씨문서 일괄과 무안 다물도 박씨문서 일괄을 1건으로 묶어 기술했다.

내용은 빌린 금액의 액수, 이자와 상환 날짜 등을 기재해 개인 간 거래를 증명하는 증빙자료로 사용되었다. 문서에는 기재한 약속을 어길 시 관청에서의 개입할 수 있는 것을 적었는데, 이를 통해 당시 관청의 개입 범위를 알 수 있다. 또한 문서의 증인 중 상喪을 당한 사람이 있으면 어떤 식으로 대처하는지 문서로 확인할 수 있다.

준호구는 호적 작성 과정에서 사용된 자료이다. 발급 일시, 발급자의 본관, 기타 호주戶主의 4조祖, 노비의 나이, 발급자의 수결手決, 정정訂正의 유무 표시, 답인踏印 등 호적과 관련하여 다양한 기록방식에 대해 확인할 수 있다.

치부 · 기록류는 어촌의 거래 장부가 확인된다. 예로부터 흑산면 다물도 일대는 홍어를 육지로 출납했는데, 이에 따라 물물교환으로 주고받은 품목과 금전 출납 상황을 증명한다. 연도에 따라 이름과 일자가 비교적 자세히 확인되어 어촌 생업을 확인할 수 있다.

명문 · 문기류 문서는 다양한 형태의 문기文記가 확인된다. 문기는 땅이나 집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증명하는 문서로 곡물문기穀物文記, 전당문기典當文記, 토지문기土地文記, 선척문기船隻文記 등이 확인된다.

곡물 문기의 경우 곡물의 구매와 분배한 내용을 담은 문서로 당시 흉년에 대비하는 면 단위 공동체에 대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토지 문기 · 선척 문기는 토지나 배를 담보로 개인 간 거래를 하는 모습과 서류로 개인의 재산을 매도하는 모습과 부녀자가 매도자로 참여할 때 서압의 모습, 슬하에 자식이 없을 때 생전에 재산을 정리하는 모습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선척매도명문船隻賣渡明文은 사례가 적어 가치가 있다. 매매 계약 후 거래 당사자 간에 계약 문서를 한 장만 작성하였고, 작성한 명문과 기존의 거래 목적물에 관련된 권리 문서를 거래하는 매수인에게 모두 넘겨주는 것이 관행이었다.

소 · 차 · 계 · 장류 문서는 소송에 관한 문서 중 고소장告訴狀이 확인된다. 어업 중 발생한 갈등으로 특정 인물이 마을의 주요 생계인 홍어 판매와 관련하여, 손해를 입힌 것에 대한 처분을 마을의 풍속을 감독하는 풍감風鑑에 요청하는 문서이다. 이에 대해 풍감은 처분 내용을 고소장에 함께 적어 갈등을 조정했다.

이는 조선 후기 무안 다물도의 생활상을 알 수 있는 유일본의 문서로 서지적 · 내용적 가치가 크다.

수표 手標

- 1846년헌종 12 12월
- 증빙류證憑類 – 수표手標
- 11.2 x 19.3
- 1면

1846년 12월 22일에 대기代技 이화익李和益이 다물도에 거주한 박씨에게 작성한 수표이다. 다음 달에 지급해야 할 결전의 액수가 나열되어 있다. 결전結錢은 조선 후기 전결田結에 대한 부가세인데, '결작전結作錢'이라고도 했다. 조선 영조 때 균역법을 시행하면서 군포가 두 필에서 한 필로 줄어듦에 따라 부족액이 발생했는데, 그것을 충당하기 위한 재원으로 토지 1결 당 다섯 돈五錢씩을 부과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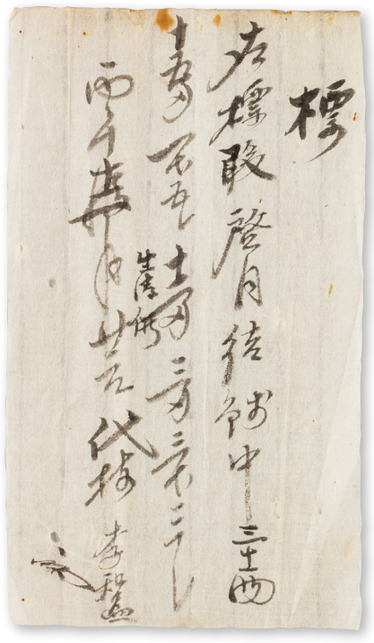

위의 수표는 다음 달 결전 가운데 15냥兩 1전錢 5푼分 11냥兩, 2냥兩 3전錢 3푼分.

생청가生淸價, 생꿀값

병오년丙午年 12월 22일 대기代技 이화익李和益【서압】

수표 手標

- 1877년고종 14 4월 초8일
- 증빙류證憑類 – 수표手標
- 27.2 x 20.5
- 1면

황달준黃達俊이 강중권姜仲權에게 돈을 빌리고 작성해 준 수표이다. 수표에는 빌린 돈의 액수, 이자, 이자 갚는 날짜, 원금 상환하는 날짜를 밝혔다. 수표대로 약속을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만약 이 약속을 어길 경우 작성된 수표를 증빙자료로 관아에 고발하라고 하였다. 문서의 작성자와 증인을 추가로 기록했으며, 문서를 적은 최익민은 상을 당해 서압하지 않았다.



정축년丁丑年 4월 초8일 강중권姜仲權 앞으로 작성한 수표
제가 긴요緊要하게 돈을 쓸 곳이 있어서 위 사람에게 돈 27냥兩 1전錢 5푼分을 얻어 쓰고, 매달 초하루에 1냥 당 3푼씩 이자利子를 구비具備하여 오는 9월 그믐 안에 수량대로 갚겠다는 뜻으로 이와 같이 수표를 작성하니, 앞으로 만일 어긋나는 단서端緖가 있으면 이 수표를 증빙하여 아뢸 것.

수표 手標

- 1865년고종 2 7월 8일
- 증빙류證憑類 – 수표手標
- 21.0 x 26.7
- 1면

을축년乙丑年 손한표孫漢表가 강대옥姜大玉에게 돈을 빌리고 작성해 준 수표이다. 문서 형식은 수표지만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주는 계약서 형식의 명문明文과 혼합하여 작성했다.

문서의 수취자인 강대옥은 1874년고종 10에 발급된 공명첩과 첩문의 피봉을 통해 흑산도에 거주하며 비장裨將과 소위장군昭威將軍 훈련원첨정訓鍊院僉正에 임명된 것을 알 수 있다.

문서를 종합할 때 공명첩을 구매할 수 있는 재력과 마을 주민에게 돈을 빌려줄 수 있는 것, 수취자인 강대옥의 이름 앞에 나이가 많거나 신분이 높을 때 쓰는 전前을 기록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보아 지역에서 강대옥의 사회적 위치를 추정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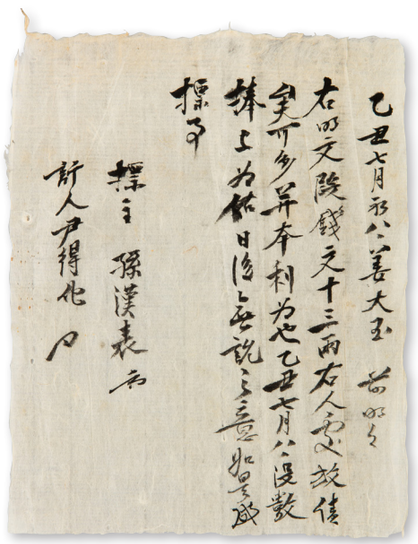

을축년 7월 초8일 강대옥 앞으로 작성한 명문

돈 13냥兩을 위 사람에게 빌렸다가 본전本錢과 이자利子를 더하여 을축년 7월 8일에 전부 바치겠으니, 앞으로 다른 말을 하는 일이 없도록 이와 같이 수표手標를 작성함.



1874년고종 10에 발급된 강대옥의 「첩문피봉帖文皮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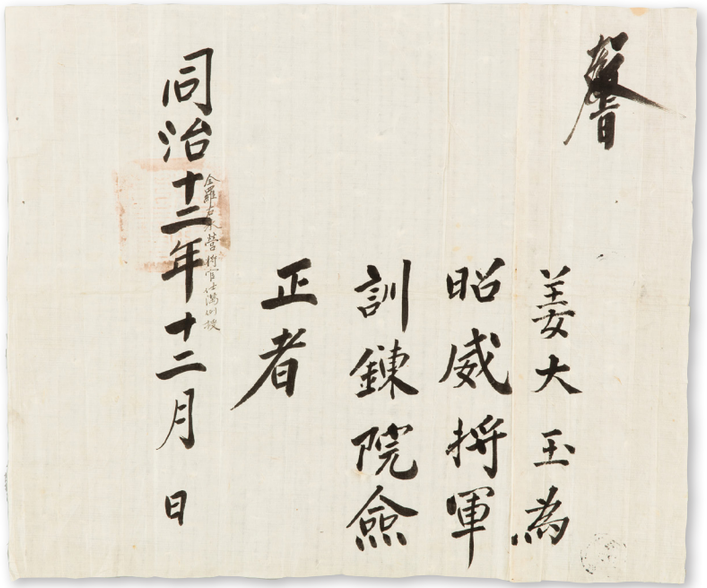

1874년고종 10에 발급된 강대옥의 「교지敎旨」

준호구 準戶口

- 1768년영조 44 8월
- 증빙류證憑類 – 준호구準戶口
- 58.8 x 34.8
- 1면

1768년에 작성한 무안현務安縣에 사는 유학幼學 박윤제朴潤梯의 준호구이다. 준호구는 신분 증명의 자료나 노비 소유, 소송 등 제반 증명이 필요한 경우 개인적으로 관에 발급신청을 하면 관청에서 장적帳籍에 준하여 발급해 주는 것이다. 관청에서는 붉은 먹으로 호적을 비교해 정정訂正의 유무를 표시했다.

준호구의 내용은 호적의 작성 연도, 호주의 주소 · 이름 · 신분 · 생년 · 본관, 부父 · 조祖 · 증조曾祖 · 외조外祖에 대한 정보와 아들과 아들의 처妻 대한 정보 순서로 작성되었다.

재산과 관련해서 노비에 대한 정보는 별도로 기재했다. 노비의 정보 외에 관청에서 호적대장과 준호구의 내용을 비교하고 이상이 없으면 날인하는 '주협무개인周挾無改印'이 확인된다. 문서의 좌측 상단에 발급자의 수결手決이 확인된다.



준호구 準戶口

- 1849년철종 1 8월
- 증빙류證憑類 – 준호구準戶口
- 39.7 x 29.2
- 1면

1849년에 나주목사羅州牧使가 흑산도 다물도多物島에 사는 한량閑良 강목태姜穆泰에게 발급한 준호구이다.

내용은 호적의 작성 연도, 호주戶主의 주소 · 이름 · 신분 · 발급 사유 · 호주인 봉선奉先과 처妻 경주 이씨慶州李氏의 4조祖 순서로 기록했다. 발급 사유는 38세로 죽은 아들 봉선을 대신하여 발급한다고 기재하였다. 이를 통해 호주가 사망하면 직계 존속이 문서를 대신 신청이 가능한 것을 알 수 있다.

문서의 중간에 관에서 붉은 먹으로 문서를 확인한 표시가 남아있다. 이는 관아에서 보관된 호적대장과 대조하면서 기재한 표식이다.



도광道光 29년 월 일 나주목羅州牧
기유년己酉年 월 일에 작성한 호구대장을 상고해 보면,
흑산黑山 다물도多物島에 사는 제 1통統 제5호戶
한량閑良 강목태姜穆泰는 사망한 아들 봉선奉先을 대신한다.
나이 38세, 임신년생, 본관本貫은 진주晉州이다.
부父는 한량閑良 목태穆泰, 조祖는 한량 일남一男, 증조曾祖는
한량 귀손貴孫, 외조外祖는 한량 임방통林方通,
본관은 금성錦城, 처妻는 이성李姓 34세, 병진생, 본관은 경주慶州.
부父는 한량閑良 지묵智默, 조祖는 한량 동원東園, 증조曾祖는 한량
춘신春新, 외조外祖는 한량 김광은金匡殷, 본관은 김해金海이다.
병오년 호구戶口에 준한다. 목사牧使【서압】

홍어 출납 장부 洪魚出納帳簿

- 1862년철종 13 11월 ~ 1863년철종 14
- 치부 · 기록류置簿 · 記錄類 – 치부置簿
- 26.3 x 25.9
- 6면

임술년壬戌年과 계해년癸亥年 두 해 사이에 동중洞中에서 홍어를 출납한 내역을 연도 · 일자순으로 기록한 거래장 성격의 문기文記이다. 기록방식은 한글과 한자를 혼용하여 사용했다. 문서의 내용에 따르면 생산자는 덕표德表와 양금良今 등이며, 구매자는 국파國葩, 덕찬德贊 등이다. 출납한 홍어의 양과 홍어의 값에 따라 주고받은 품목은 백미白米, 생生, 소금 등이 있으며 기타 금전 출납 상황 등도 기록했다.

홍어 출납 장부는 유일본으로 가치가 있으며, 장부의 구성을 통해 당시 홍어 생산량을 알 수 있다. 또한, 홍어 생산을 통한 생필품, 금전 출입 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어 어촌 생업 연구의 1차 사료로써 가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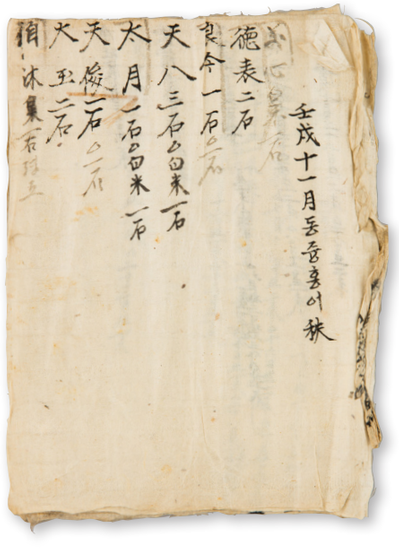

임술년壬戌年 11월 동중洞中의
홍어洪魚 목록

덕표德表 2섬石
양금良今 1섬
천팔天八 3섬 ○ 백미 1섬
태월太月 1섬 ○ 백미 1섬
천준天俊 1섬
대옥大玉 2섬
자목自沐 백미 1섬 정조

임술년壬戌年 동연 홍어 상고치
15냥 6전은 조租 3섬 가격, 계해년 2월 7냥 당當 쌀米 1섬 값, 또 24냥 7전,
또 철물값 2냥 5전, 임술년 9월 일.

계해년癸亥年
계해년 3냥 5전, 임술년 9월 일.
계해년 국범國範 6월 그믐날 생生 6속束 ○ 7월 초1일 생 4속
○ 24일 생 2속 ○ 26일 5속 ○ 28일 생 3속 5개 ○ 그믐날 생 3속
국파國葩에게 7월 14일 생 2속 ○ 28일 생 1속
덕찬德贊에게 7월 초9일 생 2속 ○ 14일 생 2속 ○ 22일 생 1속 ○ 그믐날 생 1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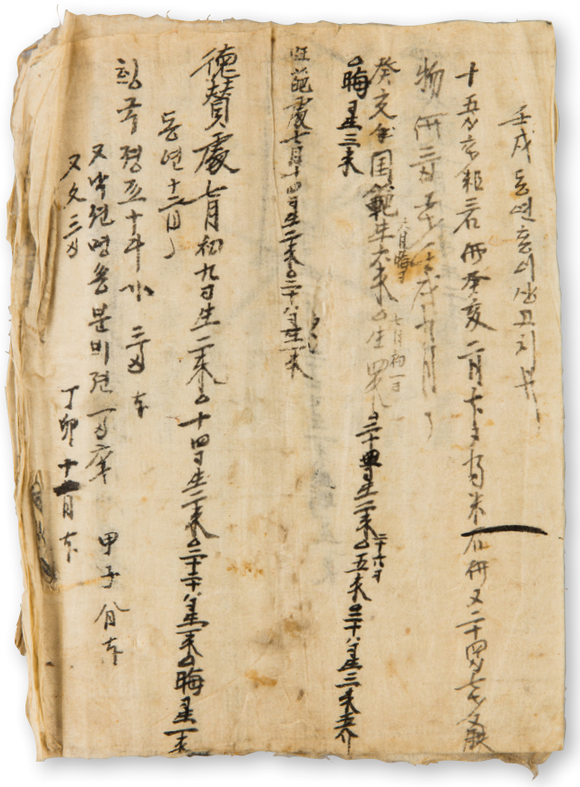

문기 文記

- 1900년고종 37 정월
- 명문 · 문기류明文 · 文記類 – 곡물문기穀物文記
- 20.3 x 22.1
- 1면

1900년 정월 초3일에 감진파원監賑派員[74]이 산내면山內面의 집강執綱과 풍헌風憲에 박朴영장營將[75]의 도조賭租 장항獐項 중황中黃에 소재한 60여 섬石을 이미 사들인 사람들에게 내어 주라는 문기이다. 집강과 풍헌은 조선시대 소규모 동약洞約 · 동계洞稧의 장長을 담당한 사람이다. 주로 주현州縣의 행정 명령을 백성에게 알리고 지휘 구실을 해 관청과 백성을 연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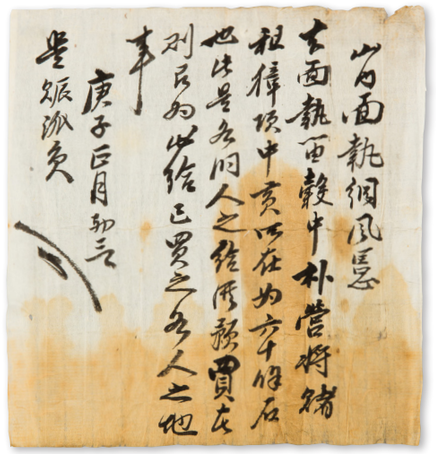

산내면 집강 풍헌

본면本面에서 잡아 유치하고 있는 곡물 가운데 박 영장의 도조
장항 중황에 소재한 것이 60여 섬石이다. 이는 각 동네 주민들이
값을 주고 미리 사들인 것이니 즉시 이미 사들인 사람들에게 내어 줄 것.
경자년庚子年정월 초 3일【감진파원 서압】

74) 감진파원(監賑派員)은 흉년으로 기근이 들었을 때 실태를 조사하고 백성을 구제하는 일을 감시 · 감독하던 일을 하기 위해 파견된 관원이다.

75) 영장(營將)은 각 도에 있는 지방 군대를 관할하기 위해 설치한 진(鎭)의 장관이다.

토지 전당 문기 土地典當文記

- 1872년고종 9 8월
- 명문 · 문기류明文 · 文記類 – 전당문기典當文記
- 32.5 x 19.6
- 1면

1872년 8월 28일 전주田主 김옥춘金玉春이 김근학金根學에게 7두락斗落 5부負 5속束인 곳의 가격을 20냥으로 정하여 전당典當할 때 작성한 문기이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 토지를 전당 잡히고 돈을 빌릴 때 작성한 문기인데, 당시의 어려운 상황을 엿볼 수 있다.

동치同治 11년 임신壬申 8월 28일 김근학金根學 앞으로 작성한 명문明文
내가 간절히 긴요하게 쓸 곳이 있는 까닭으로 나주 지역 흑산 다물도多物島
북산北山 아래에 있는 7두락 부수 5부 5속 인 곳의 가격을 20냥으로
정하여 위의 사람에게 전당한다.
내년 6월까지 갚겠다는 뜻으로 이와 같이 문기를 작성하니, 뒷날에
만일 기한을 넘기는 일이 있으면 이 문기로 영원히 방매放賣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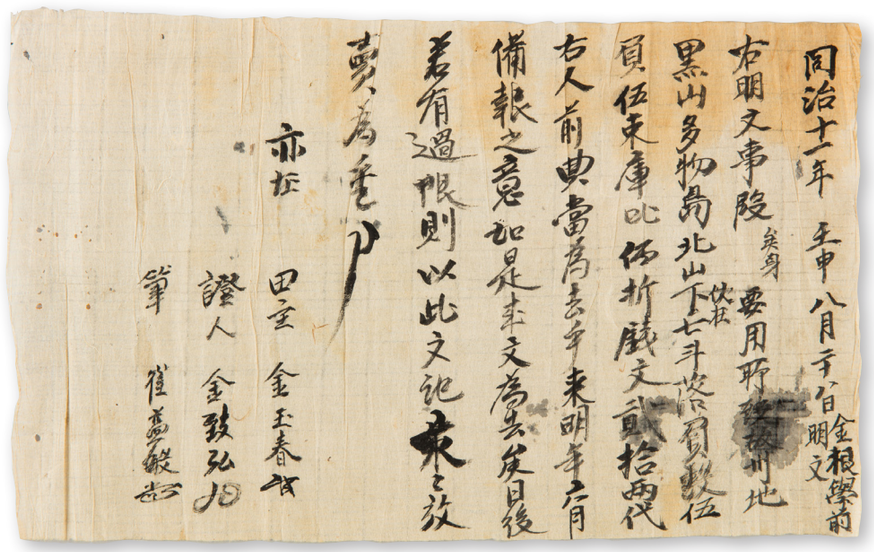

전답 매도 명문 田畓賣渡明文

- 1876년고종 13 8월
- 명문 · 문기류明文 · 文記類 – 토지문기土地文記
- 31.0 x 28.5
- 1면

1876년 8월 13일 가대家垈 전주田主 섬 숙모 김조이金召史가 의남義男 아우인 박상춘朴尙春 앞으로 작성한 전답 양도 명문이다. 부녀자는 인장과 서압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김조이金召史가 오른손을 인장 대신 그린 후 우수右手라 적었다.

가경嘉慶 13년 무진 8월 13일 박상춘朴尙春 앞으로 작성한 명문明文
아, 내가 박명薄命하여 나이 60이 되어 슬하膝下에 한 점 혈육血肉도 없으니 죽은 뒤 제사祭祀를 전할 곳이 없으므로 형편상 부득이 흑산黑山 다물도多物島 북촌北村 동편 들판 대전垈田 2마지기와 초가 4칸과 또 어굴於窟 안북산 아래 윗들上坪 보리밭 8마지기 부수負數를 훗날 죽은 날 상喪을 치른 빚과 장례 비용, 묘지기와 제위祭位 조목으로 의남 아우 박상춘에게 영구히 몫으로 주고 이처럼 문기를 작성하니, 의형제 자손 가운데 쓸데없는 말을 하는 폐단이 있으면 이 문기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변정卞呈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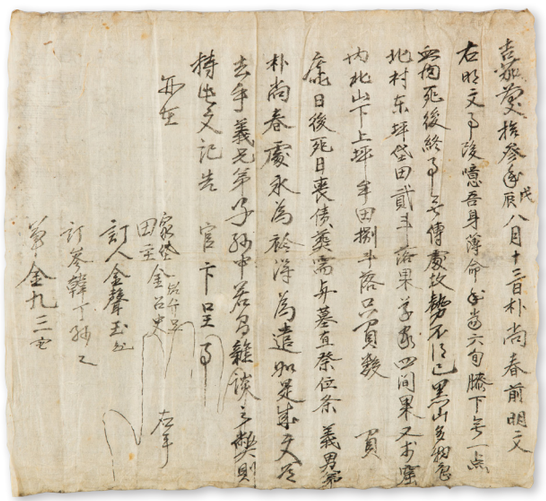

전답 매도 명문 田畓賣渡明文

- 1876년고종 13
- 명문 · 문기류明文 · 文記類 – 토지문기土地文記
- 27.3 x 42.3
- 1면

1876년 병자丙子 12월 29일 전주田主 임정숙林正叔이 강중권姜仲權 앞으로 작성한 전답 매도 명문이다. 임정숙은 조카 권조權祚와 함께 유산으로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가세家勢가 기울어 유산으로 받은 땅을 판매한다고 매도 사유를 작성했다. 문서에서 토지의 수량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는 공간을 비워 두고 매도 가격을 정한 뒤 명문을 작성한 것이 확인된다. 이를 보아 19세기 후반의 전답 매매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광서光緖 2년 병자丙子 12월 29일 강중권姜仲權 앞으로 작성한 명문明文
제가 가세家勢가 곤궁하고 능력이 쇠진하여 유산으로 전해온 나주 지역 흑산 다물도多物島 남산 위에 있는 □자전字田 6두락지斗落只 부負 수數 □속 곳의 가격을 13냥으로 정하여 교역交易하되 수량대로 받고 위의 사람에게 영원히 방매放賣한다.
뒷날에 만일 형제나 족속族屬 가운데 쓸데없는 말을 하는 폐단이 있으면 이 문기를 가지고 관아官衙에 고하여 바로 잡을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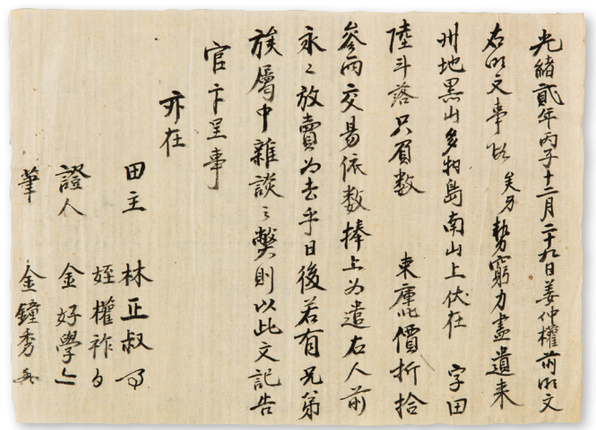

선척 매도 명문 船隻賣渡明文

- 1874년고종 11 5월 26일
- 명문 · 문기류明文 · 文記類 – 선척문기船隻文記
- 35.0 x 32.5
- 1면

1874년 5월 26일에 선주船主 최운서崔雲瑞가 나주 흑산도 강중건姜仲建에게 범선帆船 1척隻을 440냥에 매도할 때 작성해 준 문기文記이다. 선주가 매도 당시 상喪을 당했으므로 착압着押하지 않고 서명署名 아래 작은 글씨로 '상불차喪不着'라 적었다.

동치同治 13년 갑술甲戌 5월 26일 나주羅州 흑산黑山 강중건姜仲健 앞으로 작성한 명문明文 긴요하게 쓰기 위하여 내가 사용하던 세금 없는 두 돛짜리 범선 1척 가격을 440냥으로 정하여 수량대로 받고, 예전 문기文記는 잃어버렸으므로 새 문기 1장을 위 사람에게 〈작성하여 주고〉 영원히 방매放賣한다. 뒷날에 만일 어긋나는 폐단이 있으면 이 문기를 가지고 관아官衙에 고하여 바로 잡을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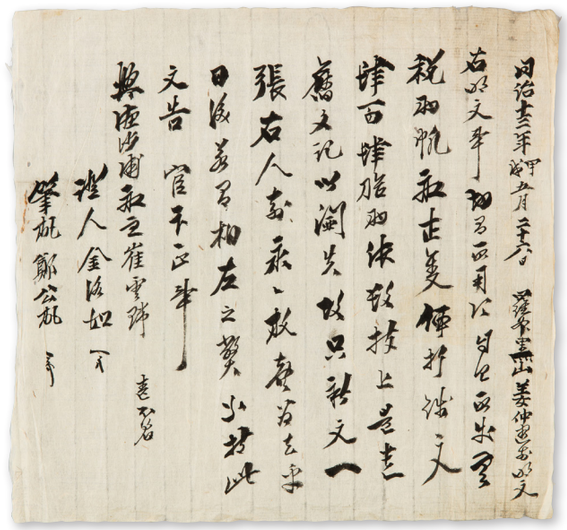

소장 訴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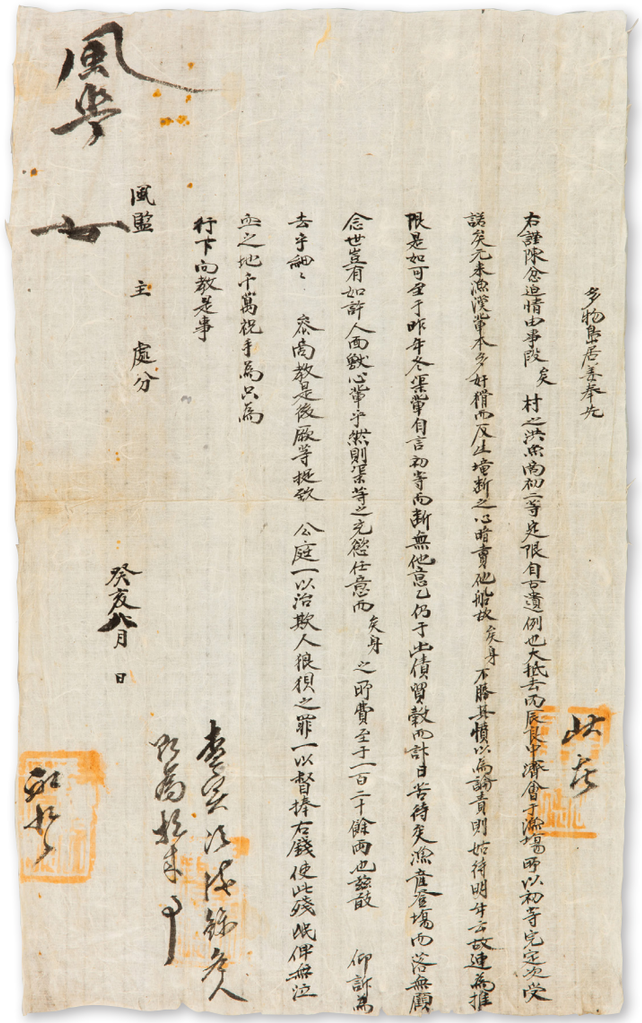

- 1863년철종 14 8월
- 소 · 차 · 계 · 장류疏 · 箚 · 啓 · 狀類 – 고소장告訴狀
- 38.5 x 64.3
- 1면

1863년 8월 일에 다물도多物島에 사는 홍어 장수 강봉선姜奉先이 올린 소장이다.

강봉선에 따르면 시장에 내놓을 홍어 가격은 어장漁場에서 어부들이 함께 등급과 일정 가격을 정하고 판매를 하는 것이 관례이다. 그러나 일부 어부들이 시장에 제값에 팔지 않고 값을 떨어트려 자신이 120여 냥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강봉선의 요청에 풍감은 실상을 조사하고 후록後錄한 사람들을 즉시 잡아들이라는 제사題辭를 적고 문서의 하단에 풍감의 방인方印을 날인했다. 하지만 후록한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다.

조선시대 문서 작성법

조선 후기에는 관청과 백성들이 상언上言 · 소지所志 · 의송議送 · 문권文券 등 공문서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문서를 작성할 때 『유서필지儒胥必知』를 지침서로 사용했다. 편찬자는 알 수 없지만 18세기 후반에 편찬되어 19세기 후반에 민관에 널리 보급된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관 소장 다물도 문서에서 대표적으로 수표手標와 명문明文은 『유서필지』의 양식을 충실히 따라 작성되었다.

수표는 개인 간 금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이다. 양식은 연월일순의 발급일자, 수취자, 문서명, 기두어, 작성목적, 결사어, 작성자의 형식을 가진다. 발급날짜의 중국의 연호를 기록한다고 되어있으나, 실제로는 간지干支만 기록한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수취자의 뒤에는 전前 혹은 처處로 맺음말을 사용하는데, 전前은 문서의 수취자가 발신자보다 나이가 많거나 신분이 높을 때, 처處는 반대의 경우에 썼다. 기두어는 '우수표사단右手標事段'을 기록하는데, 이는 문서명에 따라 달라진다. 문서의 작성자와 함께 증인과 문서를 대필한 사람도 기재하고 서압署押을 받았다.

명문은 매매 · 매도의 성격을 가진 문서이다. 양식은 연월일순의 발급일자, 매득인買得人 정보, 거래물의 소유 및 거래 이유, 지불수단, 결사어, 방매인放賣人의 이름을 기재하는 순서로 형식을 가진다. 거래물의 소유 및 거래 이유를 작성하는 것은 초기에는 소요 및 거래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했는데, 조선 후기로 갈수록 '긴히 쓸 곳이 있어서'라는 의미의 '요용소치要用所致', '절유용처切有用處' 등으로 간략히 기재하게 되었다. 조선 후기 매매 관행에는 방매인은 물건과 관련한 권리문서인 문기文記들을 모두 매득인에게 넘겨주어야 하는데, 문기를 넘겨줄 수 없는 경우에는 새로 발급하는 명문에 사유를 기재해야한다.

마지막으로, 문서의 말미에는 해당거래와 관련된 사람들이 차후에 본 거래에 대하여 이의나 분쟁을 제기할 경우 이 명문을 증빙문서로 삼아 관청에 신고하여 바로잡으라는 투식적인 문구가 있다. 이를 '추탈담보문언追奪擔保文言'이라고 한다. 문서에서는 "뒷날에 만일 어긋나는 폐단이 있으면 이 문기를 가지고 관아에 고하여 바로 잡을 것."이라고 기록하였다. 거래 참여자는 맨 마지막에 기재된다. 거래물의 주인인 방매인, 증인證人, 필집筆執 등에 대한 기록과 서명이 기재된다. 방매인은 거래물의 명칭에 따라 답주畓主, 전주田主, 선주船主, 노비주奴婢主, 재주財主, 가사주家舍主, 산지주山地主 등으로 기재된다.

명문은 법률적 효력을 발생시키는 계약증서이기 때문에 거래 당사자와 참여자는 본인임을 밝히는 서명을 해야 한다. 서명은 신분, 직위, 성별, 문맹 여부에 따라 방식을 다르게 했다. 특히, 노비 혹은 신분이 낮은 사람들은 수촌을 하기도 하였는데, 성별에 따라 남자는 좌촌左寸, 여자는 우촌右寸을 하기도 하였다. 이외에도 손바닥의 본을 떠서 그린 다음 그 안에 '우장右掌'이나 '좌장左掌'이라고 써넣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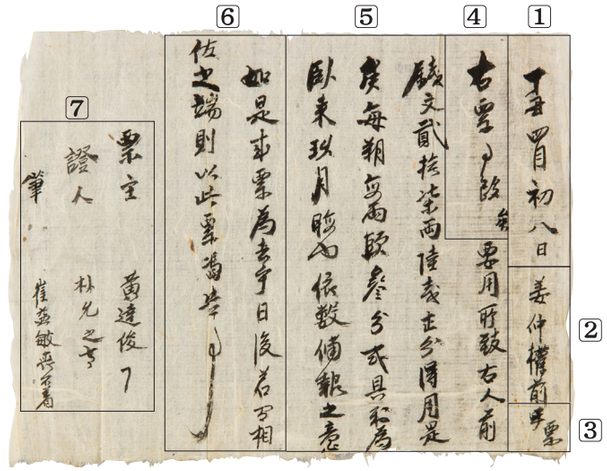

『수표』의 작성양식

1 발급날짜
2 수취자
3 문서명
4 기두어
5 작성목적
6 결사어
7 작성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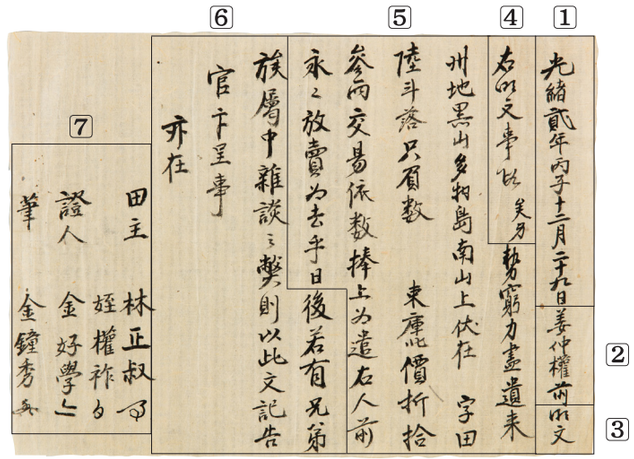

『명문』의 작성양식

1 발급날짜
2 수취자
3 문서명
4 기두어
5 작성목적
6 결사어
7 작성자

38. 고현면 도마산리 구폐절목
古縣面都馬山里救弊節目

- 1802년순조 2
- 교령류敎令類 — 절목節目
- 20.3 x 31.6
- 1책 16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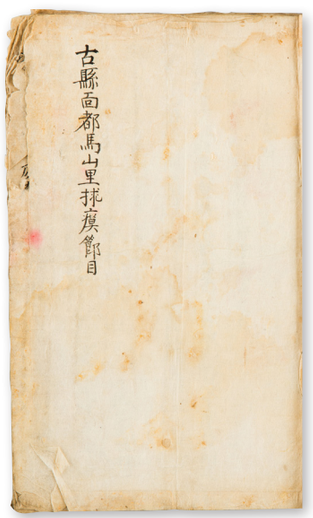
古縣面都馬山里救弊節目

『고현면 도마산리 구폐절목』은 1802년 7월 남해현령이 고현면의 집강執綱에게 보낸 법제서이다. 기존의 폐단을 바로잡기 위해 제정한 규칙을 기록한 것으로 고현면의 집강은 남해현령에게 구폐절목을 받아 각 리里에 전달했다. 그중에서 도마산리都馬山里, 現 경남 남해군 고현면 도마리 일대에 발급된 문서이다. 구폐절목의 제목을 시작으로 현령이 폐해를 바로잡는 뜻을 언급하였고, 폐단을 바로잡기 위한 절목 23가지를 기록했다.

1번째~8번째 절목은 사령使令 · 통인通引 · 도훈도都訓導 · 군관軍官 · 육군陸軍에 관해 규정하였다. 사령 · 통인 · 도훈도은 정원 외에는 선발하지 않을 것, 군관 가운데 군교자손, 죽은 자손 · 상중인 자 · 이청한 자移廳者에 대한 규정과 인징隣徵과 족징族徵의 폐단을 없애는 것을 규정하였다.

9번째~21번째 절목은 남해군 고현면의 식리殖利 방식을 규정해 두었다. 식리는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으로 일종의 사채지만 관아에서 재원을 마련하는 활동이기도 했다.

절목에는 관아에서 징수하는 생활 전반에 해당하는 다양한 식리방식을 규정했다. 포함된 규정에는 방공전防貢錢, 방어 · 남창전南倉錢, 창고 · 일수전日守錢, 지방 관아의 심부름하는 노비 · 지본전紙本錢, 종이 · 양우전洋牛錢, 염소와 소 · 목화전木花錢, 목화 · 승호전陞戶錢, 천민을 올려 양인으로 삼는 것 · 치계전雉鷄錢, 꿩과 닭 · 초가전草價錢, 짚 · 풀 · 사령전使令錢, 관아에서 심부름하던 사람을 기재하여 원금元金과 환속還屬 시 받아야 하는 금액, 이전利錢, 이자 등에 대해 규정했다. 이외에도 군보軍保에 관한 규정과 고현면의 본전本錢에 관한 기록이 확인된다.

마지막으로 남해현령이 고현면 집강에게 보낸 전령이 남아있고, 절목과 전령의 말미에는 남해현령이 서압한 후 우측부터 이방吏房, 좌수座首, 도감都監, 별감別監 순으로 서압했다. 『고현면 도마산리 구폐절목』을 통해 19세기 초 마을 단위 백성의 삶과 관청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救弊節目
國家所以置郡縣於外任守宰而治之者
九重深邃人情疑遠聲教未數赤子無告故也牧則守宰乃朝廷
之耳目也而反爲讎斂貽民之寧遠疾苦莫知爲何許事則是豈
對揚萬一之道也我官以不材濫叨
聖恩未守有里風夜夏歎思報涓埃未嘗一日而懈弛也牧嘯於心
者惠未能使斯民唱右橘令襲之讓化未能使斯民致父秀兩
岐之祥矣島邑處於窮裔之地 天門千里 聖化不需使華宰

『고현면 도마산리 구폐절목』의 발간 경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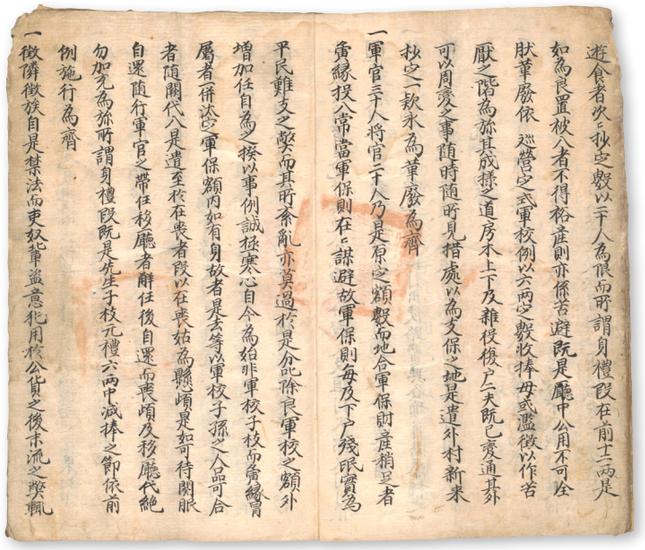
遊食者次之秋定數以千人爲限而所謂負禮段在前二兩是
如爲良置被人者不得格直則亦係苦避既是厲中公用不可除
肰革厥弊 巡營定式軍校例以六兩定數收捧毋或濫徵以作苦
厭之階爲弥其成規之道庶不上下及雜役復戶夫既已蠲通其弊
可以周溥之事隨時隨所見措處以爲支保之地是遣外村新來
秋定一款永爲革厥爲齊
一軍官三千人將官三千人乃是原定額數而地合軍保財産稍足者
當緣投入常當軍保則在亡謀避故軍保則每及下戶殘氓實爲
平民難支之弊而其所奈亂亦莫過於是分除良軍校之額外
增加任自爲之挨以事例誠極悉心自今爲始非軍校子枝而當緣冒
屬者毋論空軍保額內如有身故者是去等以軍校子孫之入品可合
者隨闕代入是遣至於在喪者段以在喪姑爲懸頃是旀待闕眼
自還退行軍官之帶任移廳者爵任後自還而喪頃及移廳代絶
勿加充爲弥所謂負禮段既是先生子枝元禮六兩中減捧之節依前
例施行爲齊
一徵隣徵族自是禁法而吏奴輩盜意作用積公貨之後未流之弊輒

『고현면 도마산리 구폐절목』 중
군관軍官과 인징隣徵에 대한 규정

39. 고가익 처 임씨 분재기
高可翼妻林氏分財記

- 1702년숙종 28
- 명문 · 문기류明文 · 文記類 – 분재기分財記
- 113.5 x 50.3
- 1면

1702년 제주도에 사는 고가익高可翼의 아내 임씨林氏가 자녀들에게 재산을 나누어주면서 발급한 분재기이다. 분재기는 조선시대 재산을 상속할 때 발급한 문서로 상속 사유와 상속인에 따른 상속 재산을 기재하고 문서 말미에 재주財主와 증인證人, 필집筆執의 이름을 적고 착명着名 또는 답인踏印한다.

문서의 내용에 따르면 고가익의 미망인인 임씨는 홀로 자녀들을 양육하였는데, 자녀들은 장성하였고 자신은 연로하여 이전부터 조금씩 분재해 주었던 재산을 문서로 만들기 위해서 분재기를 작성한다고 사유를 밝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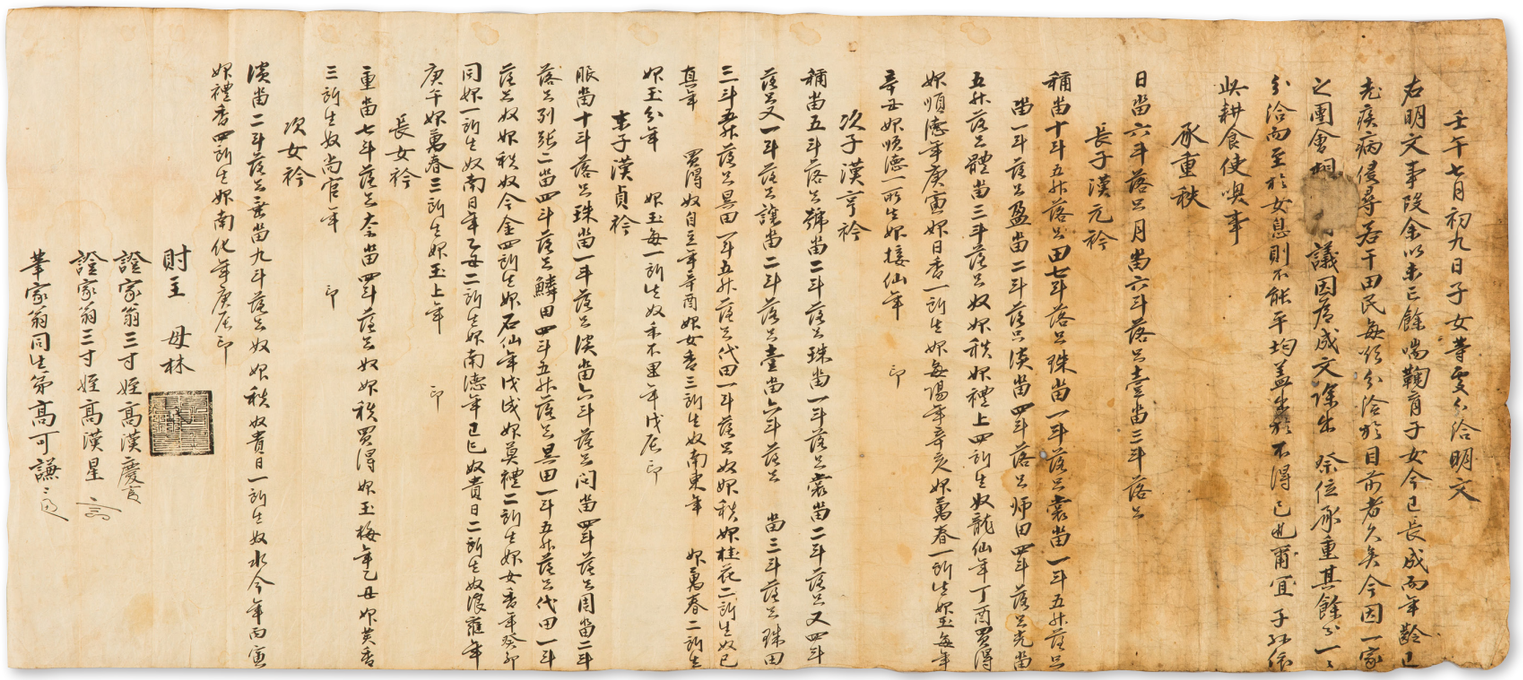

재산 가운데 제사를 지내기 위해 마련된 제위승중조祭位承重條는 제외하고 장자長子 한원漢元, 차자次子 한향漢享, 말자末子 한정漢貞에게 토지를 각각 똑같이 나누어 준다고 했다. 딸자식장녀와 차녀에게는 부득이하게 평균분집해 주지 못한다고 하였다.

이후 아들 세 사람한원, 한향, 한정과 딸 두 사람 몫의 상속분을 기재한 후 재주財主인 임씨가 도장을 찍었다. 도장을 찍은 것은 여자나 천인은 수결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이다. 증인으로 삼촌三寸 고한경高漢慶과 고한성高漢星, 필집筆執으로 아버지의 동생인 고가겸高可謙이 문서 작성에 참여하여 이름을 적고 착명着名하였다.

분재기는 상속의 시기와 방법에 따라 문기文記의 종류가 나눠지는데, 재주財主가 살아있을 때 자녀들에게 재산을 나누어주었기 때문에 분급문기分給文記에 해당한다. 분급문기는 대부분 한 통만 작성한다.

대체로 현재 전래하는 분재기는 16~17세기의 것이 80%이고, 18세기 이후에 발급된 분재기는 별급문기別給文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재산을 지급하는 문서가 대부분이다.[76] 그러나 이 자료는 18세기에 발급된 분급문기로 사례가 적어 서지적 가치가 있다. 또한 18세기 초 제주도의 상속 관행에 대해 알 수 있다.

한편, 조선시대의 재산상속 현황은 조선 전기에는 자녀 간에 균등하게 재산상속과 제사를 진행하고, 17세기 중후반을 기점으로 아들 간에 균분상속이 이루어진다.

하지만 동 시기에 본 문서와 같이 딸도 상속인 지위에 있는 분재기의 사례가 확인된다. 이는 조선시대 상속제의 관행에 대한 과도기적인 현상으로 인식할 수 있다. 과도기가 지난 18세기 이후는 장자 위주로 재산이 상속되는 것으로 정착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사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문서로 내용적 가치가 있다.

76) 문숙자, 2004, 『조선시대 재산상속과 가족』, 〈표 1-1〉 분석 대상 분재기의 시기별 · 종류별 분포, 경인문화사.

丁巳七月 日東中面訓長薦

梁聖浩

原

濟州鄉校

己亥九月 日東中面訓長望

梁在文

原

承重秩

日當六斗落只月當六斗落只壹當三斗落只

長子漢元衿

稱當十斗五升落只田七斗落只珠當一斗落只

當一斗落只盈當二斗落只淡當四斗落只囊當一

五升落只體當三斗落只奴奴秩奴禮上四所生奴龍仙年

奴順德年庚寅奴日香一所生奴每陽年辛亥奴萬春一所生

辛丑奴順德一所生奴接仙年

次子漢亨衿

稱當五斗落只

印

40. 망단자 · 차첩 望單子 · 差帖

- 1884년고종 21~1899년고종 36
- 첩 · 관 · 통보류牒 · 關 · 通報類
  – 망기望記, 첩帖
- 32.0 x 21.3 외
- 각 1면

제주향교濟州鄕校에서 방어사防禦使 · 찰리사察理使에게 올린 문서이다. 제주목사濟州牧使는 방어사 혹은 찰리사를 겸해 주로 무관이 파견되었으며, 평균 재임 기간은 대략 1년 10개월이다.

제주목사가 방어사나 찰리사를 겸한 것은 예로부터 제주에는 왜구의 침입이 잦고, 중앙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제주의 행정과 군사 통제권을 함께 부여하기 위함이었다. 이는 별도로 군비를 갖춘 것이 아니라 지방행정 체제를 중심으로 무관을 파견해 군사력을 강화했다.

문서는 향교의 실무자인 유사有司, 장의掌議 후보를 올린 망단자, 동중면東中面, 現 제주도 서귀포시 표선면 일대의 훈장訓長 후보의 망단자와 훈장을 임명하는 첩帖 문서가 있다.

문서 발급시기인 1884년고종 21 12월의 제주목사는 심현택沈賢澤, 재임 기간: 1883년 5월~1884년 12월 혹은 홍규洪圭, 재임 기간: 1884년 12월~1886년 5월, 1899년고종 36에는 박용원朴用元, 재임 기간: 1898년 3월~1899년 10월이다.[77] 박용원은 갑오개혁과 아관파천으로 제주도에 유배된 김윤식金允植, 1835~1922을 극진히 대우해 귤원시회橘園詩會[78]를 조직하는 데 도움을 줬다. 이는 제주도의 한문학 발달과 문화 교류에 도움이 되었다.

77)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문화재부, 2019, 「제주목사 일람표」.

78) 귤원시회(橘園詩會)는 1900년대를 전후하여 제주에 유배 온 개화파 김윤식(金允植, 1835~1922), 이승오(李承五), 서주보(徐周輔) 등을 중심으로 조직된 시회(詩會)이다. 제주판관 출신 김응빈(金膺斌)의 집에서 주로 활동이 이루어졌으며, 회원은 제주도에 유배된 문사(文士)들과 도내의 문인들로 구성되었다. 귤원시회의 활동을 통해 제주도의 한문학 발전을 크게 촉진시켰고, 중앙과 지방의 문화교류에 이바지하였다.

제주향교에서 발간한 망단자는 3인의 후보자를 적은 추천서로 어떤 직책에 합당한 인물을 위촉하는 문서이다. 보통 세 사람을 추천하지만 한 사람 혹은 두 사람을 추천하기도 한다. 우리관 소장 문서에서 확인되는 추천 후보는 양성호梁性昊, 진창원秦昌元, 강태욱姜泰旭, 오경숙吳慶淑, 양재문梁在文 등으로 양성호와 강태욱은 향교와 관련된 직책에 지속적인 추천을 받고 있어 지역의 유력한 유생으로 추정된다.

문서는 모든 인원을 나열한 다음 원原이라 기재해 끝을 표시했다. 문서를 통해 19세기 말 제주향교의 주요 인사의 임명 모습과 제주도 전역의 유생들을 관리하고 쓰임에 맞게 파견한 모습을 알 수 있다. 또한 과거제 폐지 이후에도 지속되는 향교의 역할과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어 문서적 가치가 있다.



망단자望單子[갑신년(甲申年, 1884년(고종 21)) 12월 발급]

갑신년 12월에 방어사防禦使에게 올린 향교유사鄕校有司 후보를 적은 망단자이다. 나열된 후보는 양성호, 진창원, 강태욱이다. 양성호를 향교유사로 낙점落點한 표시와 관인이 찍혀있다. 좌측 하단에 방어사의 서압이 있다.



차정첩差定帖 [광무(光武) 3년(1899년) 9월 발급]

찰리사察理使가 유학幼學 양재문梁在文을 동중면東中面, 現 제주도 서귀포시 표선면 소재 훈장으로 임명하는 차정첩이다. 차정첩에는 '임무를 보살피기를 가벼이하지 말아달라.'는 내용이 확인된다. 차정첩의 왼쪽에는 찰리사가 서압하고 첩인帖印이 찍혀있다.



망단자望單子 [기해년(己亥年, 1899년(고종 36)) 9월 발급]

기해년 9월에 찰리사에게 올린 동중면의 훈장 후보를 적은 망단자이다. 후보는 양재문 1명이다. 후보자 아래에 찰리사인을 날인하고, 좌측 하단에 찰리사가 서압하였다.



망단자望單子 [갑신년(甲申年, 1884년(고종 21)) 12월 발급]

갑신년 12월에 방어사防禦使에게 올린 향교장의鄕校掌議 후보를 적은 망단자이다. 후보는 양성호梁性昊, 오경숙吳慶淑, 강태욱姜佶伯 3명이다. 양성호를 향교 유사로 낙점落點한 표시와 관인이 찍혀있다. 좌측 하단에 방어사의 서압이 있다.

41. 담정유고 薝庭遺藁 – 우해이어보 牛海異魚譜

- 1882년고종 19
- 고서古書 – 문집文集
- 20.2 x 31.4
- 6책 12권우해이어보 58면

『담정유고』는 담정 김려薝庭 金鑢, 1766~1822의 시문집으로 김려 사후 동생 김선金鐥이 초고草稿를 편찬했다. 김려의 손자 김겸수金謙秀가 목판본으로 간행했는데, 김선이 발간한 초고에 손자 김기수金綺秀가 모은 『보유집補遺集』을 덧붙였다. 총 6책 12권으로 구성되었다.

그 중 『우해이어보』는 권 8에 수록되어있다. 김려가 진해현鎭海縣, 現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일대에서 유배 생활을 하던 중 남해에 서식하는 특이한 어류를 연구해 1803년순조 3에 발간한 우리나라 최초의 어류 연구서이다.

제목의 '우해牛海'는 진해를 우산牛山이라고도 하여 붙여진 진해 앞바다의 지명이다. 서문에 의하면 누구나 알고 있는 어류나 어류가 아닌 것, 잘 알 수 없는 것은 제외하고 이채로운 어종인 '이어異魚'만을 수록했다고 밝혔다.

본문에는 김려가 낚시로 직접 관찰한 볼락, 꽁치, 참치 등 53종의 어종과 조개 · 소라류의 이름, 형태, 성미性味, 산지, 어획법 등 대해 기록했다. 직접 관찰했기 때문에 어류에 대한 묘사와 설명이 사실적이다. 설명과 함께 어촌 지역에서 통용되는 어류활용법과 식용법, 진해지역 백성들의 생활상이나 풍속風俗도 기술했다. 설명과 함께 어류를 주제로 하여 「우산잡곡牛山雜曲」이라는 제목으로 칠언절구七言絕句의 한시漢詩를 수록했다. 말미에는 김려가 지은 「제우해이어권후題牛海異魚譜卷後」를 첨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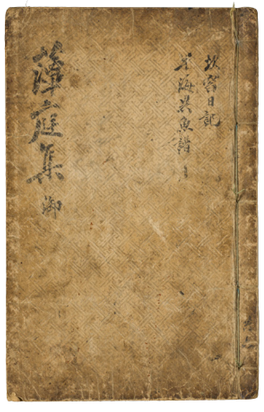

『우해이어보』의 내용은 비슷한 시기에 발간된 정약전丁若銓, 1758~1816의 『자산어보慈山漁譜』, 서유구徐有榘, 1764~1845의 『난호어목지蘭湖漁牧志』와 비교해 볼 때 관점과 내용상에서 차이가 있다.[79] 이는 우리나라 최초의 어류 연구서이면서 김려의 유배생활과 19세기 진해지역 어촌 생활에 대한 모습을 사실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어보와 풍속지風俗誌의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어 자료적 가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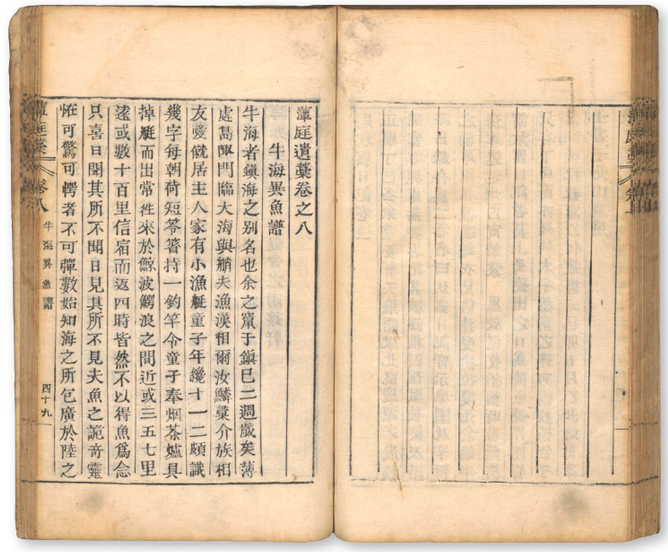
薝庭遺藁卷之八
牛海異魚譜
牛海者鎭海之別名也余之竄于鎭巳二週歲矣蒋
虛鴛鴦門臨大海與鮹夫漁漢俚爾波鱗臭介族相
友麼僦居主人家有小漁艇童子年纔十一二頗識
幾字每朝荷短箬箬持一釣竿令童子奉烟茶爐具
棹艇而出常往來於鰲波鰐浪之間近或三五七里
遠或數十百里信宿而返四時皆然不以得魚爲念
只喜日閱其所不聞日見其所不見夫魚之詭奇靈
惟可驚可愕者不可殫數始知海之所包廣於陸之
薝庭集卷八 牛海異魚譜 四十九

『담정유고』 중 『우해이어보』 서문

79) 정약전의 『자산어보(慈山漁譜)』는 1814년(순조 14)에 발간되었으며, 총 3권이다. 어류를 고증한 뒤 1권 인류(鱗類, 비늘이 있음), 2권 무린류(無鱗類, 비늘이 없음), 개류(介類, 딱딱한 껍질을 가짐), 3권 잡류(雜類, 물고기가 아니지만 물에 사는 생물)를 수록해 55류 226종으로 분류했다. 조선시대에 발간된 어보 중 가장 많은 종을 다루었으며 종합적인 체제와 전문적 지식을 갖추었다. 하지만, 어류의 설명을 지역 토착민인 장창대(張昌大)의 언급을 중심으로 기록하거나 정약용의 제자인 이청(李晴)의 문헌 고증에 대한 분량도 있어 저서에는 저자인 정약전의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게 반영되었다.
서유구의 『난호어목지(蘭湖漁牧志)』는 1820년(순조 20)에 발간되었으며, 총 1권이다. 어류를 분류하고 설명한 문헌으로 '어명고(魚名考)'라는 편명을 붙여 강어(江魚), 해어(海魚), 논해어미험(論海魚未驗), 논화산미견(論華産未見), 논동산미상(論東産未詳) 등으로 나눠 154종의 어류를 다룬다. 내용은 어류의 명칭과 형태, 습성 등을 서술한다. 바다 어류 외 민물고기를 포함하여 중국과 일본의 어류까지 폭넓게 다루고 있다. 어류 일반을 총 망라한 것에 중국과 한국에서 발간된 서적을 참조하고 고증한 뒤 종을 분류하고 설명해 종합적인 체계와 전문적 지식을 갖춘 어보의 성격을 가진다.

『우해이어보』 일부 해제

『우해이어보』 중 해제 감송鮒鯀, 감성돔의 설명과 식용법[80]

감송감성돔은 금빛 붕어와 비슷하나 약간 작다. 비늘은 온통 흰색인데 은비늘처럼 반짝인다. 눈은 불그스름하며 주둥이는 작아서 미끼를 삼키면 뱉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낚시꾼들은 백 번에 한 번도 놓치는 경우가 없다. 등지느러미는 강하고 날카로운 칼날과 같아서 낚아서 올릴 때 잘못 손을 대면 반드시 손에 상처를 입는다.

가을이 지난 뒤 이곳 사람들은 감송을 잡아 지느러미를 잘라내고 머리를 떼고 꼬리를 자른다. 또 내장과 고니 등을 긁어내고 깨끗이 씻은 뒤 두쪽으로 가른다. 대개 감송 이백 쪽을 준비하고 하얗게 찧은 멥쌀 한 되로 고두밥을 찐 뒤 잘 식혀서 소금 두 국자를 넣는다. 잘 뜬 누룩과 엿기름을 가늘게 갈아서 각각 한 국자씩 넣고 골고루 섞어 둔다. 작은 항아리를 이용해서 안에 먼저 고두밥을 펴고 다음으로 감성돔의 조각을 편다. 고두밥과 감성돔 조각을 층층이 놓아서 가득 채운다. 그리고 대나무 잎으로 그 위를 두텁게 덮고 항아리 입구를 단단히 봉한 뒤 깨끗한 곳에 놓아둔다. 푹 삭기를 기다려 꺼내서 먹는다. 그 감미로운 맛은 물고기 젓갈魚醢, 식해 중에서는 제일이다.



김려는 감송으로 식해食醢를 담그는 과정을 소개하는데, 김려가 소개한 방식은 바닷가에서 갓 잡은 생선을 삭히기 위한 방법으로, 바닷가와 멀리 떨어진 지방에서는 생선을 소금에 절이고 다시 소금물을 부어서 산패를 방지했던 방법과 차이가 있다. 즉, 김려는 진해지역 등 어촌 지역에서 널리 통용되는 독특한 음식문화를 『우해이어보』에서 소개한다.

80) 홍진옥, 2021, 「담정(藫庭) 김려(金鑢) 문학 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우해이어보』 중 공치魟鮬, 꽁치[81]

공치는 상비어象鼻魚인데 이곳 사람들은 곤치昆雉라고 부른다. 몸통은 가늘고 길며 옥빛을 띠고 주둥이가 있다. 위의 주둥이는 새의 부리처럼 길고 침처럼 단단하며 엷은 황색이다. 뾰족한 주둥이 끝에는 두 개의 가시가 있는데, 주사朱砂로 점을 찍어 놓은 것처럼 몹시 붉다. 아래 주둥이는 제비의 부리처럼 짧다. 머리와 눈 주변은 모두 녹색이다. 온몸의 비늘은 비단처럼 빛이 난다. 머리에서 주둥이 끝까지가 5촌이면 꼬리까지도 5촌이고 머리에서 꼬리까지가 한 자면 꼬리까지도 한 자이니, 머리는 몸 전체에서 5분의 1의 위치에 있다. 큰 것은 한 자를 넘고 작은 것은 3~4촌이다. 이 물고기는 비를 좋아하여 매번 가을비가 내릴 때마다 무리를 이루어 물 위에 떠올라 위아래로 몸을 구부려 얽히는데 꿈틀거리는 것은 마치 뱀장어가 엉키는 것과 같고, 주둥이를 하늘로 향하여 세우는 것은 마치 오리가 부리를 드는 것 같다. 회로 먹으면 매우 맛있다. 그러나 이 물고기는 물고기 품종 중에서 가장 비리다. 비슷하게 생긴 근연종 중에 교화공치가 있는데, 몸은 조금 기름지고 뾰족한 주둥이 끝은 마치 분가루에 담근 것 같이 희다.

내가 「우산잡곡牛山雜曲」에 이르기를,

樓船津上雨霏霏　나루의 다락배에 부슬부슬 비 내리는데
竹蕭槮護石機　높다란 대숲이 낚시바위 둘렀네
笋笠釣翁端的好　대삿갓 쓴 낚시하는 노인 몹시 좋았던지
蕎花昆雉荷肩歸　교화공치 어깨에 메고 출렁이며 돌아오네

81) 홍진옥, 2021, 앞의 논문.

42. 여도만호 관문 呂島萬戶關文

- 1865년고종 2
- 첩·관·통보류牒·關·通報類 – 관문關文
- 101.2 x 29.9
- 1면

1865년 10월 2일 여도진呂島鎭의 만호萬戶가 흥양현興陽縣으로 보낸 관문關文이다. 조선시대의 관문은 관문서로써 동등한 관아 사이에 명령하거나 상급 관아에서 하급 관아로 보내는 명령 문서를 일컫는다. 이 관문은 동등한 관아로 보내는 문서이다. 관문 등의 지방 관아의 문서는 일정 기한이 지나면 중요도에 따라 합철하거나 등서하여 특정 장소에 영구 보존하였다.

여도진은 전라좌수영이 관할하는 5포 중 한 곳으로 전라좌수영이 위치한 여수에서 가장 가까운 진영鎭營이자 중앙에 위치한 수군진이다. 고흥반도 일대는 바닷가로 접근이 용이해 예로부터 외적의 침입이 잦아 이를 방어하기 위해 조선 전기부터 진을 설치했다.

남쪽으로 팔영산八影山, 전방에 원주도元珠島, 북쪽에 내백일도內白日島, 우모도牛毛島, 계도鷄島, 동쪽으로 항도項島에 둘러싸여 있고 대부분이 바다와 접해있는 지형이다. 수군만호水軍萬戶가 주둔하고 있었으며, 현재 전남 고흥군 정암면 여호리 여호마을 일대에 여도진성이 잔존한다.

관문에 의하면 여도진의 백성들은 풍재風災로 인하여 농사지을 땅을 잃고 어살漁箭에 의지하여 살아가고 있었다. 그런데 권정달權廷達이라는 자가 물고기가 지나는 곳에 어살을 놓아 혼자서 독점하므로 진鎭의 백성들은 그에게 어살을 제거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권정달은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았고 불편을 느낀 사람들이 직접 그의 어살을 제거하였다. 권정달은 이에 반발하여 말을 지어내어 관아에 무고誣告하자 어살을 제거한 사람들은 여도만호에게 정장呈狀을 올려 자신들의 원통함을 바로잡아 달라고 한 것이다.

여도만호는 백성들의 말에 거짓이 없다고 판단하여 흥양현에 관문을 보내어 진위를 명백히 가려 백성들이 원통한 지경에 놓이지 않게 하라고 하였다. 여도만호가 흥양현으로 관문을 보낸 것은 권정달이 흥양현에 무고하였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문서에는 여도만호지인呂島萬戶之印이 7곳에 답인되어 있고, 관關인이 찍혀있다. 관문을 통해 여도진을 관할하는 여도만호의 역할을 알 수 있어 자료적 가치가 크다.


呂島萬戶爲相考事卽到權廷達
題擾弊鎭兵吏起送是乎矣卽接頃
居民等呈狀內節該矣等明珠浦漁
段三色稅納于本縣資業受生是乎
年風災之後旣失田農專望於漁箭
本面權廷達自初秋防箭於魚路故
之語屢及不聽惟有臆說乙仍于彼
順無路往撤其箭而葉索竹株一無
擾東任置於幕主矣今爲構捏呈訴
本縣推捉兵吏是如乎遽以洞事及
吏者果是惶悚是乎矣疾痛至迫之
訴無處略陳寃枉是如乎上項權民之
不覺其言虛忘也箭稍破傷之說及
初 題拒逆更訴之端莫非誣訴是乎
西海浦稅憑於明珠浦者是豈言乎
基稅非獨一權民則浦稅有名者皆於
於珠浦乎於斯於彼無非一吐二訖是如
此意文移本縣使此鎭民歇歲資生
有如乎鎭民之狀辭旣盡無爲權民
訴一無可擾則恐有鎭民之誣陷玆以
爲去乎重加明辨毋至鎭民切寃之地
爲合行移關請
照驗施行須至關者
右 關
興陽縣
同治四年十月初二日

43. 보길도 완의책 甫吉島完議冊

- 1882년고종 19
- 증빙류證憑類 – 완의完議
- 27.3 x 45.5
- 1책 8면

완의는 사회집단 내부나 다른 집단 간의 일에 관해 구성원이 합의한 사항을 지킬 수 있도록 의사결정 방식을 거쳐 합의된 결과를 반영하는 문서이다. 주로 관청, 고을, 면, 서원, 향교, 가문, 마을 계 등의 사회 집단을 운영하기 위해 조직된 기구에서 생산된다. 공적인 성격을 가지지만 관문서가 아니므로 동일한 문서 양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

문서에는 자발적으로 함께 지켜야 할 규범을 적고 이를 근거로 구성원들의 행위를 제약하고자 했다. 문서의 형태는 여러 장의 종이를 하나로 묶어 기록한 성책成册 형태이다. 표지의 좌측에 보길도 완의책이라 기재하고 발간 연도인 임오壬午 정월일正月日을 우측에 쓴 후 관인을 날인했다.

내용은 전남 완도군 보길도 인근에서 상인 간에 육지와 섬의 경계를 침범해 몰래 장사하는 것이 몇 년 동안 이어지자 계稧[82]에서 문제점을 인지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완의의 형태로 기록한 것이다. 공동체의 구성원 간에 서로 영역을 침범하지 말자는 것을 합의하고 합의에 동참한 인원들이 모두 서명했다.

서명한 이는 반수班首 강영신姜永信, 영수領首 탁수일卓守一, 공원公員 강양진姜良珍, 집사執事 맹명신孟明信, 동몽대방童蒙大坊[83] 최귀동崔貴東, 공원公員 김정운金正運, 집사執事 김정록金正祿 순으로 서명했다. 각 면마다 문서에 관인官人을 날인했으며, 간인間印이 확인된다.

서명한 이의 직책을 통해 보부상 조직 혹은 동중계洞中稧의 임원들이 논의한 안건에 대해 알 수 있고, 당시 어촌에서의 분쟁이나 서로 간에 불평등한 일이 생겨 사적인 이득을 취하려는 사람이 생기면 공동체 차원에서 어떻게 해결하는지 알 수 있는 문서이다.



82) 계(契)의 이체자이다.

83) 동몽대방(童蒙大坊)은 지역에서 청소년의 교양 교육에 대해 일을 맡아보던 사람 중 우두머리로 추정된다.


完議
右完議事惟我陸畓行商之
人姓雖異同詛若兄弟故有
喪聞則故往臨難不避水火
矣挽逃以來不敢之人間武
有之而逃避他境稍以收錢

『보길도 완의책』의 작성 경위

5장

논고

담양 전씨 가문의 전개와 해골선 개발
(해군사관학교 인문학과 송기중)

담양 전씨 가문의 전개와 해골선 개발

송기중 (해군사관학교 인문학과)

1. 머리말
2. 담양 전씨가의 가계와 사환
3. 전운상의 해골선 개발과 그 의미
   1) 해골선 개발의 배경
   2) 전운상의 해골선 개발
4. 맺음말

1. 머리말

담양 전씨는 조선 후기 유력 무반 가문으로 오랫동안 충청도에 세거하였다. 이들은 19세기까지 대대손손 무반 관직을 역임하면서 조선의 군사 방어 체제에 일익을 담당하였다. 더욱이 이 집안 출신 중 한 명인 전운상은 해골선이라는 새로운 군선을 개발하였다. 그러므로 조선 후기 군사사 혹은 수군사에서 이 집안이 가지는 위상은 높다고 할 수 있다.

담양 전씨가의 고문서는 이미 충남대학교 충청문화연구소에서 한 차례 조사하여 고문서집 형태로 정리된 바 있다. 필자는 이 사업에 보조연구원으로 참여하여 담양 전씨 종가를 방문한 바 있다. 종가에는 당시 364건의 문건을 수집해서 이 중에 일부를 사진, 원문, 해제를 출판하였다.[1)]

국립해양박물관에도 담양 전씨가 유물이 일부 소장되었다. 비록 담양 전씨 종가에 소장된 유물에 비해서 그 숫자는 부족하지만, 의미 있는 자료가 상당수 존재한다. 이 글에서는 기존에 조사된 담양 전씨 관련 내용을 참고하고, 새롭게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담양 전씨가의 가계와 소장 고문서의 의미, 그리고 담양 전씨가의 최대의 치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해골선 제작까지 다루어보고자 한다.

2. 담양 전씨가의 가계

담양 전씨의 시조는 전득시田得時로 알려져 있다. 전득시는 담양에서 태어나 고려 의종毅宗 연간 현량과에 천거되어서 문과에 급제하였다. 이후 참지정사와 좌복야를 역임했고, 담양군에 봉해졌다. 이때부터 전득시의 후손들은 한동안 담양과 경기도 고양 등에 거주하였다. 이들 지역에는 담양 전씨와 관련된 유적이 많이 있다.

이 가문이 번창하기 시작한 것은 6세 희경 대이다. 그는 세 아들을 두었다. 첫째 아들은 전녹생田祿生, 둘째는 전귀생全貴生, 셋째는 전조생田祖生이다. 이 세 명은 당시 새로운 학풍인 성리학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이곡李穀, 이제현李齊賢 등 당대 유학자들과 교류하면서 명성을 쌓았다. 특히 이들 형제 중에 업적이 두드러진 인물은 전녹생과 전조생이었다. 전녹생은 충혜왕이 재위한 연간 과거에 급제해서 홍건적이 침입했을 때 국왕을 호종하여 2등 공신이 되었다. 전조생은 1336년충숙왕 복위 5에 문과에 급제해 벼슬길에 나갔다. 그는 1351년공민왕 즉위에 충정왕이 강화도에서 손위를 하자 호종하였고, 그 후 출사하지 않았다. 이후 그는 재야에 은거하면서 계자시誡子時 등을 비롯한 많은 시문을 남겼으며 성리학을 강의하기도 했다. 이 세 형제를 지칭해 '삼은三隱 선생' 혹은 '삼은 전선생'이라고 하였다.

이 세 형제를 기점으로 담양 전씨는 야은공파野隱公派, 뇌은공파牢隱公派, 경은공파耕隱公派 등 세 계파로 나뉘었다. 이 계파 중에서 현재 국립해양박물관에 소장된 문서들은 대부분 경은공파의 것이다. 전귀생의 아들 전엄은 충청도 부여와 홍성 일대로 들어와 삶의 터전을 잡았다. 그는 보령 현감을 역임하였으며 공주 이씨와 혼인하였다. 또한 이후 전엄의 후손은 대부분 충청도 일대에 삶의 터전을 마련했다. 전엄의 묘는 부여夫餘, 9세 전윤수田允穗의 묘는 홍주洪州, 10세 전실田實의 묘는 홍주, 11세 승주承澍의 묘는 결성結城에 있다는 점은 이들이 충청도에 완전히 정착했음을 의미한다.

이들은 이곳에 살면서 많은 고문서를 생산했다. 국립해양박물관 소장 고문서와 관계된 담양 전씨가 가계를 도표화한 것이 [그림 1]이다.

[그림 1] 담양 전씨가 세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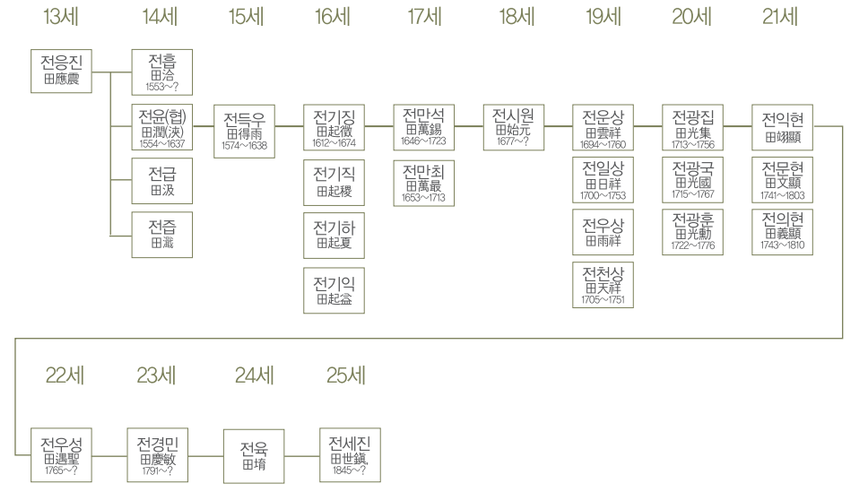

1) 성봉현, 「홍성 담양 전씨가 소장 고문서의 성격」, 『홍성 담양전씨가 고문서』, 충남대학교충청문화연구소, 2013.

국립해양박물관 소장 고문서는 13세 전응진田應震부터 25세 전세진田世鎭까지 약 12대에 걸쳐 생산된 것이다. 생산 기간은 약 16세기부터 19세기까지 300년 정도 되었다. 고문서에서 처음 확인되는 인물은 전응진이다. 생몰연대는 알 수 없다. 다만 그의 자식들의 연배가 16세기 중엽임을 고려하면, 16세기 전반에 태어난 것으로 보인다. 그는 1583년선조 16에 음서로 관직에 진출해서 남부 참봉과 돈령부 참봉을 역임하였다. 『경국대전』에 따르면 돈령부와 한성부 산하 남부에는 참봉을 모두 종 9품 관직으로 두 명을 임명하는 것이 원칙이었다.[2] 그에 대한 기록은 전반적으로 부족하나 고문서에 담긴 사실로 미루어 추측해보면 그가 높은 벼슬을 역임했다고 보긴 어렵다.

전응진은 전흡, 전윤[전협], 전급, 전즙 등 네 아들을 두었다. 이 네 아들 중 전윤은 이 가문을 크게 발전시킨 인물이다. 그의 초명은 협이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근력이 탁월했던 것 같다. 그는 일찍이 금군에 선발되어 겸사복을 역임하였다. 그가 과거에 급제한 것은 선조 16년1583이었다. 이 해 무과로 500명이 뽑혔는데 그중 206위를 차지하였다.[3] 이후 그는 선공감 주부, 울진현령, 장수현감 등 다양한 관직을 역임했다.

그가 조정에 공을 세운 것은 임진왜란 당시였다. 탄금대 전투 이후 일본군이 한양까지 올라오자, 선조는 바로 몽진을 결정하였다. 몽진이 시작되자 전윤은 호위장으로 왕의 가마와 궁인들을 안전하게 장단까지 호송하였다. 이 과정에서 왕이 굶었을 때 반찬과 국을 마련해서 바쳤다고 한다. 그는 이러한 공적을 인정받아 호성원종공신 1등에 책봉되었다. 이러한 공적에 따라 그의 아버지 전응진도 호조참판겸동지의금부사戶曹參判兼同知義禁府事에 추존되는 영광을 얻었다.[4] 전윤은 임진왜란 이후인 선조 36년1603 충청도 병마 우후에 임명되었으며, 광해군 12년1620 오위도총부 부총관에까지 이르렀다. 그의 아들 전득우도 임진왜란에서 공을 세우기는 마찬가지였다. 전득우는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관군을 모아 한양으로 진격하였다. 이후 그는 임진왜란에서 여러 가지 공을 세웠고, 호성원종공신에 아버지와 같이 임명되었다. 전득우는 광해 1년1609 전라우도 수군 우후에 임명된 데 이허 광해 5년1613에는 청하현감에 임명되었다.[5]

이 시기 전윤과 전득우는 북인이었던 것 같다. 우의정 한효순이 당시 폐모론廢母論을 주장했을 때, 전윤은 여기에 동참한 바 있다.[6] 전득우는 이이첨의 심복인 것 같다.[7] 이에 따라 이들은 인조반정 이후 모두 처벌을 받는다. 인조 1년1623 전윤은 폐모를 주장하는 상소를 올렸다는 이유로 사헌부와 사간원의 탄핵을 받았다.[8] 같은 해 사간원은 전득우에 대해 '무부로 이이첨의 심복이 된 뒤 음모와 흉계에 참여하지 않은 적이 없어 여러 역적들과 서로 표리가 되었다. 그런데도 아직 목숨을 부지하며 집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라며

2) 『經國大典』 卷1, 京官職.

3) 『萬曆十一年癸未九月初三日別試榜目』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4) 성봉현 편, 앞의 책, 33쪽 「전응진호조참판겸동지의금부사고신」.

5) 성봉현 편, 앞의 책, 78~79쪽 「전득우전라우도수군우후교신」; 「전득우청하현감고신」.

6) 『光海君日記(중초본)』 卷123, 10年 1月 4日 甲子.

7) 『仁祖實錄』 卷1, 1年 4月 25日 甲申.

8) 『仁祖實錄』 卷1, 1年 4月 29日 戊子.

그를 변방에 안치하라는 건의를 올린 바 있다.[9]

북인이 인조반정으로 몰락하였음에도 담양 전씨가는 살아남은 것 같다. 전득우는 전기징, 전기직, 전기하, 전기익 등 네 명의 아들을 두었다. 네 아들 중 전기징에 대한 기록이 주로 발견된다. 그는 인조 23년1645 무과에 급제한 후 효종 1년1649 선전관에 임명되었다.[10] 그는 선전관이 되어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했던 것 같다. 하지만 이 업무 수행 중에 그는 여러 문제를 일으켰다. 전기징이 봉수를 감찰摘奸하는 일로 왕명을 받아 함경도北關에 파견되었다. 이곳에서 전기징은 봉졸烽卒을 죽이거나 뇌물을 받는 등 여러 문제로 조선 정부의 논란이 되었다. 결국, 그는 처벌을 받아 함경도 정평定平으로 귀향갔다.

그가 상당 기간 자료에 등장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귀향 기간은 꽤 길었던 것 같다. 그는 현종 7년1666 유원진 첨사로 임명되었다. 유원진은 중국과 국경이 있는 평안도에 있는 육군진이다. 현종 7년1666 9월 7일 집의 정계주鄭繼胄, 장령 최일崔逸, 장령 민광숙閔光熽, 지평 조성보趙聖輔 등은 과거의 봉군 사건을 언급하면서 그의 태거를 요청하였다. 하지만 이와 같은 요청에도 불구하고 현종은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11] 그후 그는 다시 무신겸선전관武臣兼宣傳官이 되었으며, 충청도 마량진의 수군첨절제사로 재임하기도 했다.[12]

전기징은 전만석과 전만최이라는 아들을 두었음을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중 전만석은 연대기 자료에서 이름이 나오지 않는 데 비해, 전만최는 무과의 감시관으로 활약했으며 칠원현감, 훈련원주부 등을 역임했다는 기록이 있다.[13] 전만석의 아들은 전시원이다. 그는 본래 전만최의 아들이었는데, 전만석에게 입양되었다. 그러므로 전시원의 생부는 전만최, 계부는 전만석이라 할 수 있다.

전시원이 무과에 급제한 것은 숙종 3년1677이었다. 그는 88명을 뽑는 무과에서 62위에 선발되었다.[14] 하지만 그가 연대기에서 이름이 등장한 것은 20여 년이 지난 숙종 30년1704으로 그는 이 해에 선전관에 임명되었다. 이후 그는 운총만호雲寵萬戶, 보성군수, 전라좌수영 우후, 충청병영 우후, 홍양영장[15] 등을 역임하였다.

전시원은 전운상, 전일상, 전우상, 전천상 등 아들 네 명을 두었다. 이중 전우상을 제외한 세 아들의 관력이 연대기에 보인다. 전운상은 숙종 43년1717에 무과 급제하고 2년 후인 숙종 45년1719 선전관에 임명되었다.[16] 이후 훈련원주부, 훈련판관, 비변사무낭청, 도총부도사, 도총부경력 신광첨사, 정평부사, 내금위장, 리산부사, 통진부사, 우림위장,

9) 『仁祖實錄』 卷1, 1年 4月 25日 甲申.

10) 성봉현 편, 앞의 책, 87쪽 「전기징 유원진병마첨절제사고신」.

11) 『承政院日記』 197册, 顯宗 7年 9月 7日. "柔遠僉使田起徵 曾爲宣傳官 以烽燧摘事 奉命北關 責徵賂物於烽軍 還歸之際 杖殺烽卒 □謫于定平 到配之後 多行不義之事 侵暴居民 □莫不怨苦而唾罵 如此悖惡之人 不可付以邊鎭之任 請柔遠僉使田起徵汰去 答曰 依啓 南天漢 先罷後推 田起徵事 不允".

12) 성봉현 편, 앞의 책, 88~89쪽 「전기징선전관고신」; 「전기징마량진수군첨절제사고신」

13) 『承政院日記』 420册, 肅宗 30年 9月 12日; 『承政院日記』 423册, 肅宗 31年 2月 28日.

14) 『壬午式年文武科殿試榜目』,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소장.

15) 『承政院日記』 430册, 肅宗 32年 5月 20日; 성봉현 편, 앞의 책, 101쪽 「전시원 보성군수고신」; 『承政院日記』 455册, 肅宗 36年 7月 6日; 『承政院日記』 510册, 肅宗 44年 9月 2日; 성봉현 편, 앞의 책, 102쪽 「전시원 홍양영장고신」.

16) 『承政院日記』 519册, 肅宗 45年 11月 6日.

해미현감2회, 선천부사, 겸사복장, 충청수사[공홍수사], 선전관, 전라좌수사, 장단부사, 강화중군2회, 겸내승, 경상좌병사, 죽산부사, 춘천부사, 어영청별장, 경기수사, 남양부사, 회령부사, 금위영중군, 황해병사, 금군별장용호장, 회령부사를 역임했다.[17] 회령부사를 역임하던 영조 36년1760에 그는 임지에서 사망하였다.

그는 변방의 지방관이나 주요 무관직을 두루 거쳤다. 그는 강원도 춘천부사로 재임할 때 보삼고補參庫를 설치해서 춘천에서 바치는 삼공蔘貢의 폐단을 완화했다고 한다. 보삼고는 당시 군현에서 자주 설치된 민고의 한 부류로 생각된다. 정평부사로 재임할 때도 병자와 백성을 잘 돌봐서 흉년을 잘 극복하기도 했다. 또한 그는 전라좌수사로 재임할 때 해골선을 개발하여 실제로 건조하기도 하였다. 이 부분에서는 다음 장에서 본격적으로 다루겠다. 이 결과 그는 여러 관직에 재임하면서 주변 동료나 상관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함경감사 유숭俞崇은 정평부사 전운상에 대해 백성에 대한 선정이 이미 드러났으니 교체되어 돌아가는 것이 안타깝다고 평한 바 있다.[18] 또한 홍봉한도 전운상을 사람됨이 치밀하다는 평가를 한 바 있다.[19]

전일상은 경종 원년1721 무과에 급제하였고, 2년 후인 경종 3년1723 선전관에 임명되었다.[20] 이후 그는 고령첨사, 단천부사, 나주영장, 귀성부사, 삼척영장, 거창부사, 경원부사, 창원부사2회, 칠곡부사, 삼화부사, 무산부사, 겸사복장, 전라우수사, 대성산성중군, 죽산부사, 우림위장, 여주부사 등을 역임하였다.[21] 그는 임기 중에 상당수를 목민관으로 활약했다. 하지만 그가 파견된 군현은 군사적으로 중요한 요충지가 많았다.

그는 무예가 뛰어났다. 이는 그가 경종 3년1723 내시사內試射에 참여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는 점을 통해 알 수 있다. 하지만 목민관으로서 그에 대한 평가는 엇갈렸다. 김시형金始炯은 함경도 어사로 전일상을 만나 본 후에 '나이는 어리나 나랏일에 근면하여 농사를

17) 『承政院日記』 538冊, 景宗 2年 3月 26日; 『承政院日記』 547冊, 景宗 2年 11月 17日; 『承政院日記』 553冊, 景宗 3年 4月 12日; 『承政院日記』 555冊, 景宗 3年 6月 29日; 『承政院日記』 574冊, 英祖 卽位年 9月 26日; 『承政院日記』 713冊, 英祖 6年 11月 5日; 『承政院日記』 718冊 英祖 7年 2月 8日; 『承政院日記』 773冊, 英祖 10年 2月 10日; 『承政院日記』 802冊, 英祖 11年 6月 13日; 『承政院日記』 813冊, 英祖 11年 11月 18日; 『承政院日記』 830冊, 英祖 12年 7月 16日; 『承政院日記』 855冊 英祖 13年 8月 18日; 『承政院日記』 858冊, 英祖 13年 閏9月 10日; 『承政院日記』 878冊, 英祖 14年 9月 16日; 『承政院日記』 888冊, 英祖 15年 3月 16日; 『承政院日記』 904冊, 英祖 15年 12月 17日; 『承政院日記』 938冊, 英祖 17年 11月 1日; 『承政院日記』 976冊, 英祖 20年 8月 30日; 『承政院日記』 994冊, 英祖 21年 11月 9日; 『承政院日記』 996冊, 英祖 22年 1月 29日; 『承政院日記』 1024冊, 英祖 23年 12月 17日; 『承政院日記』 1048冊, 英祖 25年 9月 16日; 『承政院日記』 1055冊, 英祖 26年 4月 18日; 『承政院日記』 1091冊, 英祖 29年 2月 25日; 『承政院日記』 1097冊, 英祖 29年 8月 13日; 『承政院日記』 1110冊, 英祖 30年 8月 20日; 『承政院日記』 1142冊, 英祖 33年 3月 12日; 『承政院日記』 1146冊, 英祖 33年 7月 27日; 『承政院日記』 1147冊, 英祖 33年 8月 20日; 『承政院日記』 1158冊, 英祖 34年 7月 27日; 『承政院日記』 1176冊, 英祖 35年 12月 9日.

18) 『承政院日記』 605冊, 英祖 1年 11月 27日. "定平府使田雲祥 已著善治之績 遞歸可惜".

19) 『承政院日記』 1095冊, 英祖 29年 6月 14日.

20) 『承政院日記』 549冊, 景宗 3年 1月 18日.

21) 『承政院日記』 553冊, 景宗 3年 4月 12日; 『承政院日記』 607冊, 英祖 1年 12月 28日; 『承政院日記』 637冊, 英祖 3年 4月 18日; 『承政院日記』 665冊, 英祖 4年 7月 8日; 『承政院日記』 681冊, 英祖 5年 3月 17日; 『承政院日記』 728冊, 英祖 7年 8月 10日; 『承政院日記』 775冊, 英祖 10年 3月 13日; 『承政院日記』 801冊, 英祖 11年 5月 18日; 『承政院日記』 821冊, 英祖 12年 3月 12日; 『承政院日記』 949冊, 英祖 18年 9月 20日; 『承政院日記』 982冊, 英祖 21年 1月 28日; 『承政院日記』 1013冊, 英祖 23年 2月 27日; 『承政院日記』 1016冊, 英祖 23年 5月 29日; 『承政院日記』 1041冊, 英祖 25年 3月 13日; 『承政院日記』 1046冊, 英祖 25年 7月 25日; 『承政院日記』 1059冊, 英祖 26年 8月 16日; 『承政院日記』 1084冊, 英祖 28年 7月 18日.

권장하고 백성을 진휼하였다. 그런 까닭으로 진 사람들 모두 그를 칭송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였다.[22] 이에 비해 어사로 파견되었던 한광조韓光肇는 '나랏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 것은 아니나 병통이 실로 많다. 군정과 민정에서 백성의 원망이 적지 않고, 형벌을 과도하게 하니 파직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한 것이다.[23]

전천상이 무과에 합격한 것은 영조 2년1726이다. 그는 선발인원 총 198명 중에서 86위를 차지했다.[24] 이후 그는 다른 형제와 마찬가지로 영조 4년1728 선전관에 임명되는 것으로 관료 생활을 시작했던 것 같다.[25] 이후 훈련판관, 수안군수, 명천부사, 하동부사, 나주영장, 겸사복장, 서산군수, 여주목사 등을 역임했다.[26] 그는 다른 형제에 비해 수명이 짧아 일찍 사망했다. 전천상은 다른 형제에 비해 수령으로서 역할을 잘했던 것 같다. 영조는 그를 본디 치성治聲이 있다고 평가했다. 치성은 통치를 잘해서 생기는 명망을 의미한다.[27]

이렇듯 전시원의 아들 네 명 중 세 명이 무과 급제를 하여 무인으로 생활을 이어갔다. 그의 무반가문의 위상은 전운상의 아들들이 이어가게 된다. 전운상의 아들로는 전광집, 전광국, 전광훈 등이 확인된다. 이 세 아들 중 가장 유명한 사람은 바로 전광훈이다. 그는 영조 26년1750 식년시에 합격하여 생원이 되었고 영조 50년1774에 무과에 합격하였다.

그는 영조 30년1754 선전관이 되었다.[28] 그는 젊어서 무예에 뛰어났다. 시사에서 화살을 네 번 명중해서 국왕 영조에게 뛰어나다는 평가를 들을 정도였다.[29] 그는 아직 과거에 급제하지 않았으면서 영조 31년1755 이천부사에 임용되었다.[30] 이후 백령첨사, 우림위장, 선천부사, 전라감영 중군, 창원부사, 전라우수사, 풍천부사, 경상우병사, 충청수사, 어영청권무장, 부총관, 황해병사 등의 벼슬을 역임했다.[31]

전운상의 첫째 아들 전광집은 영조 19년1743 무과에 급제해 훈련원주부, 도총도사, 선전관,

22) 『承政院日記』 668冊, 英祖 4年 8月 11日. "始炯曰 小臣爲北路御史時 田日祥爲高嶺僉使 路次相逢 見其年少氣勇 廉問至高嶺 則年雖少而勤於國事 且勸農恤民 故一鎭 莫不讚頌矣".

23) 『承政院日記』 1095冊, 英祖 29年 6월 14日. "光肇曰 驪州牧使田日祥 非無做國事之心 而病痛實多 軍政田政 民怨不少 刑杖亦且過濫 罷職 何如".

24) 『丙午式年文武科榜目』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25) 『承政院日記』 668冊, 英祖 4年 8月 6日.

26) 『承政院日記』 873冊, 英祖 14年 6月 25日; 『承政院日記』 874冊, 英祖 14年 7月 3日; 『承政院日記』 976冊, 英祖 20年 8月 19日; 『承政院日記』 1030冊, 英祖 24年 6月 1日; 『承政院日記』 1034冊, 英祖 24年 9月 17日; 『承政院日記』 1053冊, 英祖 26年 2月 24日.

27) 『承政院日記』 1017冊, 英祖 23年 6月 15日 "上曰 金就寶陋矣 不足數 而田天祥 則素有治聲矣".

28) 『承政院日記』 1103冊, 英祖 30年 2月 25日.

29) 『承政院日記』 1110冊, 英祖 30年 8月 19日. "上曰 田光勳四中而躍立 多氣矣 四中爲加資乎 彼必知之而然矣".

30) 『承政院日記』 1117冊, 英祖 31年 3月 10日.

31) 『承政院日記』 1131冊, 英祖 32年 5月 17日; 『承政院日記』 1148冊, 英祖 33年 9月 12日; 『承政院日記』 1172冊, 英祖 35年 8月 23日; 『承政院日記』 1207冊, 英祖 38年 6月 24日; 『承政院日記』 1255冊, 英祖 42年 5月 21日; 『承政院日記』 1281冊, 英祖 44年 6月 28日; 『承政院日記』 1292冊, 英祖 45年 5月 20日; 『承政院日記』 1293冊, 英祖 45年 6月 25日; 『承政院日記』 1313冊, 英祖 47年 1月 11日; 『承政院日記』 1352冊, 英祖 50年 6月 12日; 『承政院日記』 1353冊, 英祖 50年 7月 19日.

훈련원부정, 영원군수, 순천영장, 내금위장, 대흥산성중군 등을 역임했다.[32] 전광국은 영조 16년[1740]에 무과에 급제해서 선전관, 훈련원주부, 도총도사, 도총경력, 훈련원부정, 함종부사, 삼척영장, 내금위장, 전주영장, 부산첨사, 영종첨사, 어영청천총, 칠원현감, 충청수사, 통진부사 등을 역임했다.[33]

전광집은 전익현, 전문현, 전의현 등 세 아들을 두었다. 전익현은 영조 35년[1759] 무과에 급제했고, 바로 선전관에 임명되었다.[34] 이후 사옹원 주부, 어영청 파총, 해미현감, 안변부사, 법성첨사, 장단부사, 장연현감, 죽산부사, 우림위장, 부령부사, 오위장[2회], 금위영기사장, 철원부사, 훈련도감 천총, 어영청 천총, 준천사 낭청, 곡산 부사, 황해수사 등을 역임했다.[35] 전문현은 영조 41년[1765] 과거에 합격해서 그해 선전관에 임명되었다.[36] 이후 그는 훈련원주부, 훈련원판관, 함경북도참군, 선전관[6회], 감찰, 함종부사, 다대포첨사, 금위영 천총, 창성부사, 수어청좌별장, 통진부사, 훈련도감 천총, 황해수사, 충청병사, 첨지중추부사, 풍덕부사, 회령부사, 훈련도감 별장, 영변부사 등을 역임했다.[37] 전의현은 정조 6년[1782]에 무과 급제를 해서 정조 8년[1784]에 선전관에 임명되었다.[38] 이후 훈련원 주부, 도총도사, 삼수부사, 내금위장, 양덕현감, 겸사복장, 남양부사, 횡성현감, 위원군수, 내금위장, 어영청천총 등을 역임했다.[39]

전우성의 생부는 전문현이고, 계부는 전익현이다. 그는 정조 8년[1784] 무과에 급제해서

32) 『承政院日記』 1021冊, 英祖 23年 9月 28日, 『承政院日記』 1041冊, 英祖 25年 3月 16日; 『承政院日記』 1047冊, 英祖 25年 8月 10日; 『承政院日記』 1052冊, 英祖 26年 1月 26日; 『承政院日記』 1110冊, 英祖 30年 8月 8日; 『承政院日記』 1127冊, 英祖 32年 1月 27日; 『承政院日記』 1131冊, 英祖 32年 5月 7日 ; 성봉현, 앞의 책, 294쪽 「전광집 홍패」.

33) 『承政院日記』 1016冊, 英祖 23年 5月 29日; 『承政院日記』 1062冊, 英祖 26年 11月 25日; 『承政院日記』 1065冊, 英祖 27年 2月 2日; 『承政院日記』 1071冊, 英祖 27年 7月 26日; 『承政院日記』 1093冊, 英祖 29年 4月 28日; 『承政院日記』 1099冊, 英祖 29年 10月 27日; 『承政院日記』 1132冊, 英祖 32年 6月 25日; 『承政院日記』 1142冊, 英祖 33年 3月 8日; 『承政院日記』 1154冊, 英祖 34年 3月 18日; 『承政院日記』 1171冊, 英祖 35年 7月 19日; 『承政院日記』 1208冊, 英祖 38年 7月 17日; 『承政院日記』 1213冊, 英祖 38年 12月 4日; 『承政院日記』 1224冊, 英祖 39年 11月 25日; 『承政院日記』 1251冊, 英祖 42年 1月 14日.

34) 성봉현, 앞의 책, 297쪽 「전익현 홍패」; 『承政院日記』 1173冊, 英祖 35年 9月 27日.

35) 『承政院日記』 1231冊, 英祖 40年 6月 30日; 『承政院日記』 1242冊, 英祖 41年 4月 14日; 『承政院日記』 1256冊, 英祖 42年 6月 18日; 『承政院日記』 1292冊, 英祖 45年 5月 25日; 『承政院日記』 1299冊, 英祖 45年 12月 18日; 『承政院日記』 1317冊, 英祖 47年 5月 3日; 『承政院日記』 1320冊, 英祖 47年 8月 21日; 『承政院日記』 1349冊, 英祖 50年 3月 21日; 『承政院日記』 1401冊, 正祖 1年 7月 11日; 『承政院日記』 1437冊, 正祖 3年 3月 3日; 『承政院日記』 1447冊, 正祖 3年 8月 27日; 『承政院日記』 1484冊, 正祖 5年 5月 25日; 『承政院日記』 1490冊, 正祖 5年 7月 30日 ; 『承政院日記』 1491冊, 正祖 5年 8月 1日; 『承政院日記』 1509冊, 正祖 6年 5月 10日; 『承政院日記』 1548冊, 正祖 8年 1月 6日; 『承政院日記』 1588冊, 正祖 9年 8月 16日.

36) 성봉현, 앞의 책, 296쪽, 「전문현 홍패」; 『承政院日記』 1250冊, 英祖 41年 12月 22日.

37) 『承政院日記』 1262冊, 英祖 42年 12月 17일; 『承政院日記』 1267冊, 英祖 43年 5月 29日; 『承政院日記』 1297冊, 英祖 45年 10月 5日 ; 『承政院日記』 1311冊, 英祖 46年 11月 26日; 『承政院日記』 1325冊, 英祖 48年 1月 5日; 『承政院日記』 1329冊, 英祖 48年 7月 29日; 『承政院日記』 1389冊, 正祖 즉위年 9月 17日; 『承政院日記』 1401冊, 正祖 1年 7月 5日; 『承政院日記』 1404冊, 正祖 1年 8月 19日; 『承政院日記』 1408冊, 正祖 1年 10月 4日; 『承政院日記』 1440冊, 正祖 3年 4月 22日; 『承政院日記』 1446冊, 正祖 3年 8月 14日; 『承政院日記』 1459冊, 正祖 4年 2月 27日; 『承政院日記』 1469冊, 正祖 4年 8月 16日 ; 『承政院日記』 1500冊, 正祖 5年 12月 27日; 『承政院日記』 1506冊, 正祖 6年 3月 21日; 『承政院日記』 1540冊, 正祖 7年 9月 13日; 『承政院日記』 1542冊, 正祖 7年 10月 7日; 『承政院日記』 1589冊, 正祖 9年 9月 2日; 『承政院日記』 1589冊, 正祖 9年 9月 5日; 『承政院日記』 1592冊, 正祖 9年 12月 29日

38) 성봉현, 앞의 책, 298쪽, 「전의현 홍패」; 『承政院日記』 1565冊, 正祖 8年 8月 28일

39) 『承政院日記』 1590冊, 正祖 9年 10月 10일 등.

정조 15년[1791]에 선전관에 임명되었다.[40] 이후 그는 훈련원판관, 어면만호, 도총경력, 선전관, 신광첨사, 고원군수, 금위영파총, 훈련도감파총, 경주영장, 겸사복장, 우림위장을 역임했다.[41] 그의 아들 전경민은 무과에 급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육은 무과에 급제했다는 기록은 있으나, 그 이후 관로官路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42] 아마 이들은 관로에 진입하지 못했거나, 관직에서 활동이 미미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생각된다. 전육의 아들 전세진은 고종 14년[1877] 무과에 급제했다.[43] 이후 별군직, 훈련원주부, 훈련원첨정, 남해현령, 선전관, 함종부사, 창성부사, 친군별영기사장, 교동부사, 총어영천총, 내금위장을 역임했다.[44]

이처럼 담양 전씨가는 대대로 무과에 급제해서 여러 무관직을 수행했다. 이들의 관력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 것 같다. 첫째, 중앙의 무관직이다. 훈련도감, 어영청, 금위영 등 중앙 군문의 관직이거나 선전관과 같은 직책이 여기에 해당할 것이다. 둘째, 지방의 무관직이다. 첨사, 만호 등이 이에 해당된다. 셋째, 지방 수령직이다. 현감, 부사 등이 해당한다. 그런데 무관들이 가는 지방 수령직은 회령, 종성 등 함경도나 평안도 등 북방에 있거나 수령이 영장을 겸직하는 곳 등 무관의 자질이 필요한 곳이었다. 이렇듯 담양 전씨가는 대를 이어 무관직을 수행하면서 조선의 관료 체제의 한 축을 담당했다.

3. 전운상의 해골선 개발과 그 의미

1) 해골선 개발의 배경

담양 전씨가 19세손 전운상은 여러 벼슬을 하면서 관직 경험을 쌓았다. 그는 여러 가지 업적이 있지만,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이 해골선의 건조라고 할 수 있다. 이 배는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이 개발한 거북선 이후 250여 년 만에 개발해 배치된 군선으로 의미가 남다르다. 그러므로 전운상이 이 배를 개발하게 된 배경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먼저 조선 수군이 18세기 처한 상황에 대해 먼저 설명할 필요가 있다.

명종 10년[1555] 경에 개발된 것으로 보이는 판옥선은 오랫동안 조선의 주력 전투함으로 지위를 가졌다. 이 배는 전투를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 만들어진 전투 전용 군선이었다. 판옥선이 개발되기 이전에 조선의 주력 전투함이었던 맹선은 짐배로의 전용이 가능한 배였다. 이에 맹선을 조운으로 활용했다는 기록이 연대기에서 종종 발견된다. 이에 비해 판옥선은 내부 구조를 크게 변경하지 않는 한 짐배로 활용이 어렵다. 판옥선은 조운으로

40) 성봉현, 앞의 책, 299쪽 「전우성 홍패」; 『承政院日記』 1697冊, 正祖 15年 12月 22日.

41) 『承政院日記』 1763冊, 正祖 20年 5月 6日 등

42) 성봉현, 앞의 책, 300쪽 「전육 홍패」.

43) 성봉현, 301쪽 「전세진 홍패」.

44) 『承政院日記』 2837冊, 高宗 14年 4月 25일; 『承政院日記』 2865冊, 高宗 16年 7月 6日; 『承政院日記』 2877冊, 高宗 17年 7月 29日; 『承政院日記』 2877冊, 高宗 17年 7月 29日; 『承政院日記』 2889冊, 高宗 18年 7月 25日; 『承政院日記』 2941冊, 高宗 22年 10月 29日; 『承政院日記』 2962冊, 高宗 24年 6月 29日; 『承政院日記』 2964冊, 高宗 24年 8月 10日; 『承政院日記』 2981冊, 高宗 26年 1月 30日; 『承政院日記』 3000冊, 高宗 27年 8月 4日.

활용을 상정하지 않고 설계되었기 때문에 맹선보다 구조적으로 전투에 적합했다.

전투 적합 구조로 거론된 것이 바로 판옥선의 이중 갑판 구조이다. 조운을 상정해서 배 구조를 설계하게 되면 단일 갑판 구조로 설계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는 조운할 때는 갑판을 떼었다가 전투용으로 쓸 때는 다시 갑판을 붙여야 했기 때문이다. 갑판이 하나가 있는 것이 두 개가 있는 것보다 분리하기 쉽고 붙이기도 쉽다.

하지만 전투만을 목적으로 군선을 설계했다면 단일갑판보다는 이중갑판 구조로 설계하는 것이 더 좋다. 단일갑판 구조 안에서는 비전투요원인 격군과 전투 요원인 포수, 화포수, 사부 등이 한 갑판에 있어서 이들의 활동이 서로 제약이 있다. 이에 비해 이중갑판 구조에서는 이들의 공간적인 분리가 가능하다. 즉 아래 갑판에서는 동력을 담당하는 격군이 있고, 위의 갑판에는 전투를 담당하는 포수, 화포수, 사부 등이 배치되는 것이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전투 인원과 비전투 인원의 활동이 좀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판옥선은 기존 군선에 비해 구조적으로 전투에 적합한 배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새로운 군선의 개발은 이순신이 개발한 거북선과 함께 임진왜란 당시 조선 수군의 승리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판옥선의 성능에 대한 확신을 가진 조선 정부는 이후 판옥선의 배치를 확대하고 체계화하였다. 이에 따라 임진왜란 직후 판옥선 중심의 군선 배치 체계는 더욱 확고해졌다.

구분	등급	판옥선	거북선	합계
진	통영	4	1	5
	수영	3	1	4
	첨사	2~1	·	2~1
	만호	2~1	·	2~1
	권관/별장	2~1	·	2~1
군현	읍전선	2~1	·	2~1

[표 1] 군선 배치 현황

당시 군선은 전투 선박과 전투지원 선박 등 두 부류로 구분되는 것 같다. 전투 선박으로는 판옥선, 거북선, 방패선 등 세 종류가 있고, 전투지원 선박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것으로는 병선과 사후선이 있다. 이중 군선 배치 기준을 알 수 있는 것은 판옥선과 거북선이다. 판옥선은 통제영은 4척, 수영은 3척, 첨사 · 만호 · 권관진과 군현은 모두 2척이나 1척이 배치되었다. 판옥선과 거북선보다 규모가 적은 방패선은 배치 규정이 명확히 정해진 것 같지 않다. 방패선은 아마 지형 등 여러 이유로 판옥선과 거북선이 배치되기 어려운 지역에 배치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싶다.

나머지 군선은 모두 전투선박을 기준으로 배치된 것으로 보인다. 판옥선과 거북선 1척에는 병선 1척과 사후선 2척을 배치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병선이 보통 짐배로도 활용

된다는 것을 고려해보면 이 배는 판옥선이나 거북선에 군량이나 군수물을 공급하기 위해 전투 선박에 배치된 것으로 보인다. 사후선은 판옥선이나 거북선의 초계나 항해상에 보조, 연락 등을 목적으로 배치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전투지원 선박이 전투 선박을 기준으로 배치된 것은 이들이 전투 선박의 작전을 돕기 위한 용도로 배치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하다.

위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조선 정부는 판옥선을 중심으로 군선을 배치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렇게 판옥선을 전면에 내세운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조선 정부가 17세기 일본의 재침 위협을 염두에 두고 수군 전력을 재건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대외 정세는 18세기 접어들면서 변화하기 시작했다. 17세기 후반부터는 일본과 청과 같은 주변국과의 관계는 안정되었지만, 황당선이라 불리는 어채선漁採船이 서해안에 출몰하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 판옥선 중심의 군선 배치 방식으로는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웠다. 판옥선보다는 규모가 작고 빠르지만, 전투력이 강한 배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실제로 다양한 배들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윤선이다.[45]

윤선은 바퀴가 달린 배였다. 이 바퀴를 동력으로 달리는 것이었다. 이 배는 숙종 25년1699에 강화도 사람 권탁이 이 배의 건조를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윤선은 실제로 건조된 것 같다. 하지만 당시 호조판서 김구는 윤선의 성능을 확신하지 못했다. 배의 규모가 너무 작아서 배를 제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구는 이 배를 갑자기 전투용으로 사용하기 어렵고 통영과 전라도 수영에서 좀 더 크게 만들어보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46] 이러한 조정에서 논의한 것 외에도 숙종 27년1701 경에 황해도에서도 윤선의 건조가 있었다. 황해감사 유집일이 윤선을 건조한 것이다. 정상기나 송규빈 같은 실학자도 윤선을 제안했다.

비선飛船의 건조도 논의되었다. 영조 36년1760 동지중추부사 이성구는 비선을 건조하자고 제안했다. 그가 제안한 비선은 본판이 3입, 길이가 7파 정도 되는 규모였다. 또한 선상에는 판옥을 만들고, 판옥 안에 10개의 노를 설치하고 10명이 앉아서 노를 젓게 하였다. 고물에 대포를 설치하고 드문드문 문을 만들어서 개폐하여 방포하자고 하였다. 그는 자신이 제안한 비선이 가볍고 빨라서 큰 바다에 들어가면 바람과 파도가 거세다고 하더

45) 성봉현, 「홍성 담양 전씨가 소장 고문서의 성격」, 『홍성 담양전씨가 고문서』, 충남대학교충청문화연구소, 2013. 18세기 군선의 새로운 건조 경향에 대해서는 송기중, 「17세기 중엽~18세기 중엽 황당선의 출몰과 수군 방위 태세의 조정」, 『조선 후기 수군 연구』, 역사비평사, 2019, 196쪽.

46) 『承政院日記』 392册, 肅宗 26年 7月 25日. "戶曹判書金構所啓 上年仍江華人權倬陳疏 備局覆啓 水車輪船 令江華留守 試爲造作 看審啓稟矣 頃自江都造送 故臣以漕船檢飭 往見之 則體小不足以盡其制 而猶與一葉船 爭先捷疾 若使稍大 則似當依水車之法 載於利瑪竇書中 故依其法爲之 而制造不精 然俄頃之間 激水甚多 實爲農家備旱之良器也 臣頃自戶曹 亦得體木一株 草草造成 以觀可用與否 而與江華所送者 其制大同而小異 激水上之 幾至一丈 激水高下 在於車之長短矣 輪船則不可倉猝用行 故還送江華 而水車則姑置於別營矣 旣已備局覆啓 取來看審 故敢達 左議政李世白曰 臣曾爲忠淸道按覈御史時 忠州牧使沈楫新造水車 臣適得見之 問其法 尹就五 往日本得來云 而激水頗多 未及復命之前 以廣布中外之意 狀聞矣 頃聞水車 自戶曹造成 取來見之 則極爲輕便 勝於忠州所見權倬所送 亦略如戶曹所造云矣 輪船則多入物力 未及審究利害 似難倉猝造行 而水車則造成不難 雖試而不便 棄之無妨 若得其力 則別效不貲矣 各以一件分送各道監司 使之試用於各邑 似好矣 上曰 頒送各道 試用於各邑 可也 金構曰 輪船之制 雖不可倉猝移用於戰船 而兵家有正奇 若令稍大其體 以爲乘便出奇之用 則亦無不可 前頭船路相通時 自江華下送于統營 或全羅水營 依造作稍大之船 以試之 似可矣 上曰 此亦下送 使之造作 以試之 可也.

라도 비사飛梭처럼 빠르다고, 좌우로 출몰하여 뒤집히는 근심이 없다고 하였다. 또한 수심이 2척尺이 되지 않은 바다나 호수에서도 출동할 수 있다고 하였다.[47] 이처럼 이 시기에는 대외 정세의 변화, 판옥선의 성능에 대한 비판 등장 등으로 인해 다양한 형태의 군선이 논의되었다. 하지만 이 시기 논의된 군선들은 모두 실전 배치에 실패하였다.

2) 전운상의 해골선 개발

전운상이 살던 시기는 조선의 주력 전투함인 판옥선의 기동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시점이었다. 이에 따라 새로운 군선에 대한 개발 분위기가 무르익는 시점이었다. 이런 분위기는 전운상도 잘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경상 병사로 있을 때 독륜전차獨輪戰車를 제작했다고 하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그는 각종 기구 제작에 관심이 많았던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운상은 수사가 되어 군선 건조를 주도하는 입장이 되자 본격적으로 군선 개발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국조보감』에 따르면 해골선의 개발 이유는 다음과 같다.

당초 우리나라의 전선戰船은 모두 3층의 판옥板屋과 4면의 순창楯窓을 설치하여 몸체가 커 둔하기 때문에 바람을 만나면 파선하기 쉬웠다. 이때 이르러 전라 좌수사 전운상田雲祥이 『무경절요武經節要』를 상고하여 해골선을 처음 만들었다. 그 제도는 앞이 크고 뒤가 작아 송골매의 모양과 같고, 뱃전의 좌우에 부판浮板을 설치하여 송골매의 양쪽 날개 모양을 나타냈다. 이에 바람을 두려워할 것이 없는데다 또 매우 가볍고 빨랐다. 안에서는 밖을 엿볼 수 있지만 밖에서는 안을 엿볼 수 없어 노군櫓軍과 사수射手가 모두 몸을 숨기고서 노를 젓고 총포를 쏠 수 있었다. 이에 연유를 갖추어 계문啓聞하니, 상이 따르고 마침내 각 수영에서도 따라 행하도록 명한 것이다.[48]

이 글은 해골선이 개발된 이유를 기존 군선의 문제점에서 찾았다. 이에 따라 전운상은 『무경절요』를 참고해서 해골선을 제작했다고 한다. 이 해골선은 속력이 빠르며, 부판이 달려있어서 전복될 위험도 적었다. 또한 이 배는 상부에 개판을 두어 노군과 사수가 적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 이 배는 당시 주력 전투함인 전선의 운용 경험을 토대로 이와 같은 배를 고안한 것이다.

47) 『承政院日記』 1177册, 英祖 36年 1月 22日. "又宜別造飛船 而本板三立 長則七把 挾板加五都里 船上立柱上樑作板屋 屋中造置十櫓行船 則十人坐而挽櫓 載大砲于高勿 又間間作門 以爲開閉放砲之地 則此船極輕且疾 納之大洋雖風濤接天 疾如飛梭 左右出沒 萬無傾覆之患 雖値淺水 水深二尺許 則足以運行 無窒礙之患".

48) 『國朝寶鑑』 卷62, 英祖 16年. "初我國戰船 皆設三層板屋 四周楯窓 體大質鈍 遇風易敗 至是全羅左水使田雲祥考武經節要書 造捌海鶻船 其制前大後小 如鶻形 舷上左右置浮板 象鶻之兩翼 旣不畏風 又甚輕疾 內能窺外 外不能窺內 櫓軍射手 皆可隱身 搖櫓射放 仍具由啓聞 上從之 遂命推行於諸水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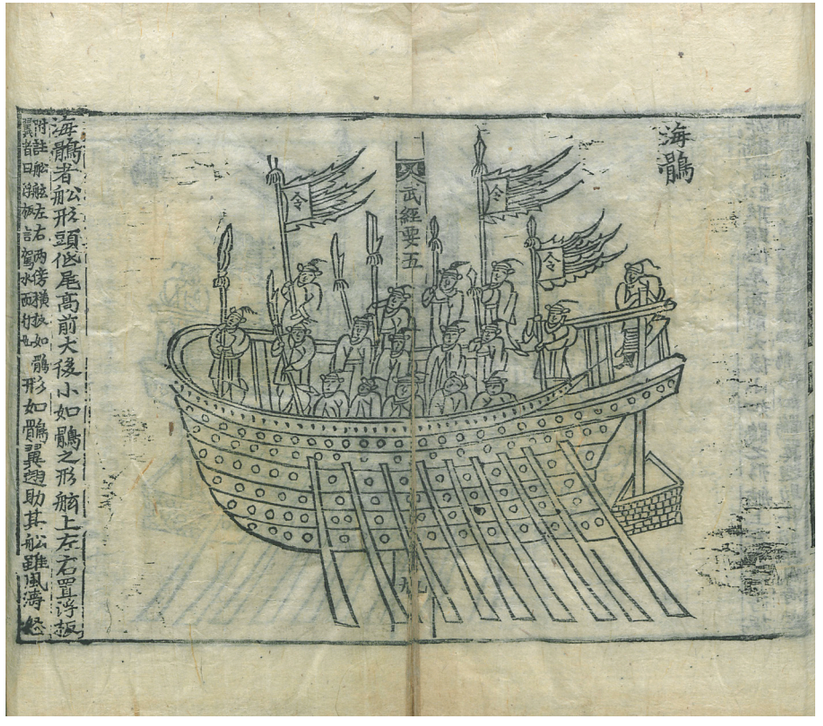

[그림 2] 『무경절요』에 수록된 해골선(海鶻船)
자료제공: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해골선이 개발되었다는 사실은 바로 조선 정부에 보고 되었다. 전운상은 자신이 건조한 해골선이 그 선체가 적고 가볍고 빠르며 바람을 두려워하는 근심이 없다고 하면서 통제영과 여러 수영이 보유한 병선의 선령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절반을 해골선으로 건조하자고 보고 하였다. 이에 대해 재상 김재로는 그 모양을 보니 좋은 배인 것 같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도 통영과 각도 수영 소속 병선의 선령이 차기를 기다려 한 척씩 건조하고, 그 성능이 좋으면 더 건조해도 무방하다고 언급하였다.[49] 다른 배들에 비해 해골선에 대한 대신들의 반응은 긍정적이었다. 그 이유는 시험평가에서 이 배가 만족할 만한 성능을 보였기 때문이다.

이 배는 판옥선이나 거북선보다 규모가 작았다. 이는 승선 인원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보통 판옥선이나 거북선은 최소 120명 이상의 인원이 탑승하는 데 비해, 이 배는 선장 1명, 사부 및 포수 20명, 격군 34명 등 총 56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50] 규모에 따라 개조가改造價도 판옥선보다 적게 책정되었다. 개조가는 군선을 개조하는 데 드는 비용

49) 『承政院日記』 915册, 英祖 16年 潤6月 18日. "在魯曰 此卽全羅左水使田雲祥狀啓也 以新造海鶻船 體小而輕疾 無畏風之慮 使統營及諸道水營兵船 隨其限滿 以此船樣 折半措置事爲請矣 觀其制樣 似爲便益 令統營及諸道水營待其兵船限滿 各先造一隻以試之 果爲便好 則加造亦無妨 以此分付 何如 上曰 田雲祥爲國事之意可嘉 令統營及諸水營 各造一隻 試之 可也".

50) 김재근, 「각종 군선」, 『한국의 배』, 서울대학교출판부, 2002, 334쪽.

이다. 당시 전라도 우수영 소속 판옥선의 개조가는 미 267석 10두 8승이었다. 이에 비해 해골선의 개조미는 80석 6두 5홉으로 책정되었다.[51]

연대	장소	선척	자료
영조 22년(1746)	전라우수영	1	『續大典』, 卷4, 兵典 諸道兵船
정조 10년(1786)	전라도	1	『典律通補』 별편, 各道戰船
순조 8년(1808)	전라우수영	1	『萬機要覽』 軍政4, 全羅右水營
순조연간 추정	전라우수영	1	『湖南廳事例』 戰兵船
헌종 10년(1844)	경상좌수영	1	『慶尙左水營啓錄』 憲宗 10年 5月 11日
고종 2년(1865)	전라우수영	1	『大典會通』 卷4, 兵船
고종 3년(1866)	경상좌수영	1	『慶尙左水營關牒』 高宗 3年 12月 19日
고종 10년(1880)	전라좌수영	1	『湖南啓錄』 10月
고종 27년(1890)	황해수영	1	『黃海水軍啓牒』 4, 1月 6日
고종 32년(1895)	전라좌수영	1	『湖南營誌』 水軍

[표 2] 해골선 배치 현황

국왕 영조는 수영마다 만들어서 배치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이러한 배치 방식은 여러 논의를 거쳐 축소된 것으로 보인다. 영조 22년1746 발간된 『속대전』에 따르면, 해골선은 전라우수영에 1척 배치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후 이러한 상황은 19세기 전반까지는 유지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19세기 중후반이 되면 배치 양상이 일부 바뀌는 것 같다. 『경상좌수영계록』에 따르면 헌종 10년1844 경상좌수영에 해골선이 배치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 자료보다 후대에 만들어진 자료인 『대전통편』에서는 경상좌수영에 해골선이 배치되었다는 기록이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1년 후 자료인 『경상좌수영관첩』에는 경상좌수영에 해골선이 있다고 기록된 것으로 보아서는 경상좌수영이이 해골선을 보유했는데, 법전인 『대전통편』에는 수록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전라좌수영에 해골선을 배치했다는 기록도 19세기 후반에 종종 발견된다. 19세기 후반에는 황해수영에도 한동안 배치되었던 것 같다.

이러한 각종 자료를 검토해보면 해골선은 개발된 이후 계속 유지된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배치 지역은 자료마다 다르다. 관련 자료를 시기별로 자료를 배열해보면 해골선은 19세기 전반까지는 전라우수영에 배치되었다가 이후 배치 장소가 다양해진 것으로 결론낼 수 있을 것이다.`

51) 『湖南廳事例』, 諸道兵船.

맺음말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담양 전씨가는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성장하여 오랫동안 무반 가문으로 지속하였다. 이들은 대를 이어서 무과에 응시했다. 합격 이후 이들은 주로 중앙 군영의 무반직, 지방의 무반직, 그리고 지방의 수령을 역임하며 관직생활을 이어나갔다. 하지만 이들 중에는 정승이나 판서 등 조선의 요직이라고 할 수 있는 관직에는 임용되지 못하였다. 그 이유는 이들이 문과 출신이 아니라는 한계 때문이라 생각된다. 그렇지만 이들이 무반으로써 국가 방어의 일익을 담당했다는 사실은 분명해 보인다.

담양 전씨가 사람들이 무반을 역임하면서 많은 업적을 남겼지만, 그 중에서도 해골선의 개발은 빼놓을 수 없는 것이다. 이 해골선은 당시 조선 군선에 대한 여러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된 것이다. 임진왜란 이후 조선 정부는 판옥선 중심의 군선 배치 방식을 고수했다. 그 이유는 판옥선이 전투 전용 선박으로 개발되어 임진왜란 당시 놀라운 활약을 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판옥선은 18세기 접어들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체구가 커서 속력이 느리고 쉽게 전복되었다.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윤선이나 비선과 같은 배들이 논의되었으나 실전에서의 활용은 어려웠다.

이에 비해 전운상이 개발한 해골선은 실전에 배치되었다. 이 배는 거북선 개발 이후 200여 년 만에 새롭게 개발되어 배치된 군선이다. 이 배는 가볍고 빠르며, 전투력이 좋았다. 밖에서 안을 보기는 어려운 데 비해, 안에서는 밖을 볼 수 있었다. 전운상이 개발한 해골선에 대해 당시 사람들의 반응은 나쁘지 않았다. 하지만 전라우수영에 한 척 배치되어서 명맥만을 유지하는 형편이었다.

참고문헌

김재근, 『한국의 배』, 서울대학교출판부, 2002.
김용국 · 전영수, 『자천공 전운상과 해골선』,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1981.
송기중, 『조선 후기 수군 연구』, 역사비평사, 2019.
성봉현, 『홍성 담양전씨가 고문서』, 충남대학교충청문화연구소, 2013.

6장

부록

- 고문서II 수록 관문서의 관인
- 고문서II 수록 자료 목록
- 참고문헌

고문서 II 수록 관문서의 관인

박지연 (국립해양박물관)

조선 왕조의 행정 절차를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한 기반은 관문서에 있다. 관문서에 사용되는 인장印章[1]은 어보御寶와 관인官印이 있으며, 관인은 크게 관청인官廳印과 관직인官職印으로 나눌 수 있다. 조선 왕조는 관문서에 공신력과 신뢰성을 부여하기 위해 관청의 인장을 찍었는데, 어보를 찍는 행위는 안보安寶라고 하였고, 관인의 경우에는 답인踏印이라 구분하였다. 관인은 공신문서나 중요한 문서에 사실임을 확인하는 목적으로 의사 결정에 대한 확인의 표시이다. 이는 중요한 국가 제도 중 하나이므로 엄격히 관리 · 운영되었다. 관인은 관문서의 발행일이나 글자를 고친 곳, 종이를 덧댄 곳, 종이와 종이 사이 등 훗날 수정될 위험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날인했다.

관인의 위조는 대체로 신분이나 재산상의 이득을 위해 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위조는 국가 운영에 직접적으로 혼란을 줄 수 있었기 때문에 엄격하게 처벌했다. 『경국대전經國大典』「형전刑典」에는 인장 위조에 대한 법률을 적용해 처벌하는 조항이 확인된다.

"관인을 위조한 자는 관인의 글자가 비록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참형斬刑에 처하며, 그 처자妻子는 여러 고을의 노비로 삼는다. 체포하거나 고발한 자에게는 범인의 재산을 준다."고 기록되어있다.[2] 또한, 위조를 방지하기 위해 1731년영조 7 중앙과 지방의 인장을 모두 조사해 마모된 인장은 필요할 경우 개주改鑄하도록 하였다.

성종 대 완성된 『경국대전』에는 관인의 제작과 크기, 재질, 사용자를 명시하였다. 이는 관청이나 관직의 품계에 따라 관인의 크기를 다르게 규정한다. 관인을 제작하는 전반적인 업무는 예조禮曹의 계제사稽制司에서 담당했으며, 제작된 관인은 모두 『인신등록印信謄錄』을 통해서 관인을 날짜별로 기록했다.[3] 관인의 글자는 전서篆書가 주종을 이루며, 새겨지는

1) 인장(印章)은 인(印)과 장(章)이 결합된 합성어이며, 관인(官印)과 사인(私印)을 포괄하는 용어이다.

2) 經國大典卷之五 刑典, 【僞造】僞造印信者印文雖未成處斬妻子永屬諸邑奴婢捕告者給犯人財産 ○僞造楮貨者絞捕告者官賞正布二百五十匹都給平分仍給犯人財産, 『경국대전(經國大典) 8면

3) 『인신등록(印信謄錄)』은 1679년(숙종 5) 1월부터 1870년(고종 7) 12월까지 약 192년간 관인을 관장한 예조의 계제사(稽制司)에서 경외관서(京外官署)의 요청에 따라 관인을 주조하였을 때 기록을 남긴 것이다.

글자 수는 '지之'자를 융통성 있게 사용하여 짝수로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예외적으로 '전라도병마절도사全羅道兵馬節度使'와 같이 관직 · 관청명이 8자인 경우 9자로 배치한 사례가 확인된다.

관인의 종류는 사용지역과 용도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사용 지역에 따라, 중앙관청에서 사용하는 경관인京官印과 지방관청에서 사용하는 외관인外官印으로 나눌 수 있다. 경관인은 육조六曹의 관인과 육조 이외의 중앙부처의 관인으로 나눌 수 있다. 외관인은 지방 관청에서 사용하는 관인의 일체이며 각 지방관의 품계별 관인을 포함한다. 관청에서는 문서 좌측에 연호年號가 있는 곳에 결재하는 관원의 직함을 기재하고 그 아래에 담당 관원이 서명한 후 문서를 발급하는 관인官印을 날인한다.

이번 총서에서 관인이 확인된 문서는 총 20건이나 식별이 가능한 것은 12건이다. 상세 현황은 [표 1]과 같다.

수록 장	자료명	인장 종류	세부 종류
1장	정조 하선장(正祖下膳狀)	관인(官印)	봉사지인(奉使之印)
	유서(諭書)	어보(御寶)	유서지보(諭書之寶)
	계본(啓本)	관인(官印)	계(啓)
			전라도병마절도사인 (全羅道兵馬節度使印)
	평신진지(平薪鎭誌)	관인(官印)	평신진첨사지인 (平薪鎭僉使之印)
	보령군 염분 어전 선척 구별 성책 (保寧郡鹽盆漁箭船隻區別成册)	관인(官印)	보령군인(保寧郡印)
			보령군수지장 (保寧郡守之章)
	병학지남(兵學指南)	어보(御寶)	규장지보(奎章之寶)
		장서인(藏書印)	
	수군 관련 문서(水軍關聯文書)	관인(官印)	첩(帖)
	황해수영 우후 송종대 문서 – 자문(尺文) (黃海水營虞侯宋鍾大文書)	관인(官印)	종친부인(宗親府印), 형조지인(刑曹之印), 한림원인(翰林院印) 등
	담양 전씨 문서(潭陽田氏文書)	어보(御寶)	시명지보(施命之寶)
			유서지보(諭書之寶)
2장	임명장 · 차첩(任命狀 · 差帖)	관인(官印)	곤양군인(昆陽郡印) 남해군인(南海郡印)
			곤양군수지장(昆陽郡守之章) 남해군수지장(南海郡守之章)
4장	망단자 · 차첩(望單子 · 差帖)	관인(官印)	찰리사인(察理使印)
			첩(帖)
	여도만호 관문(呂島萬戶關文)	관인(官印)	관(關)
			여도만호지인 (呂島萬戶之印)

[표 1] 고문서 II 수록 관문서 중 식별 가능한 관인 현황

이번에 수록된 우리관 소장 관문서 중 인장을 식별할 수 있는 것은 크게 어보御寶와 관인官印으로 나눌 수 있다. 어보는 국왕을 포함한 왕실의 공식 인장으로 주요 사용처로는 외교 문서 · 행정 문서 · 의례용 · 국왕의 개인적인 용도 등 여러 가지로 사용되었다. 우리가 문서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모두 행정용 어보이다. 행정용 어보는 국왕의 승하와 무관하게 인문印文이 닳지 않는 한 계속적으로 대를 거듭하여 사용한다. 어보를 찍는 문서는 크게 과거科擧와 관련된 문서와 임명 문서인 교지敎旨 등이 있다. 『대전회통大典會通』에서 어보와 국새國璽의 종류와 사용에 대한 규정이 수록되어있다.

관문서에서 확인된 어보는 시명지보施命之寶와 유서지보諭書之寶, 규장지보奎章之寶가 있다. 『대전회통』에서 시명지보는 교명敎命, 교서敎書, 교지敎旨에 안보安寶하는 것으로 국왕의 재가裁可를 의미한다고 기록되었다. 재질은 주석에 도금했으며, 성종 대 이후 활발하게 사용되었다. 시명지보가 안보되는 문서에는 국왕이나 관원의 서명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문관은 이조吏曹에서 무관은 병조兵曹에서 각각 이조지인吏曹之印과 병조지인兵曹之印을 답인했다.

유서지보는 유서諭書에 안보하는 것으로 유서는 조선시대 국왕이 군사권을 가진 관원에게 내렸던 문서이다. 각 지방으로 부임하는 관찰사, 절도사, 방어사, 유수 등에게 왕과 해당관원만이 아는 밀부를 내리면서 함께 발급하는 명령서이다. 세조 대 처음 동제 도금으로 제작했으며 연산군 대 처음 사용되었다.

규장지보는 임금이 내려준 책인 반사본頒賜本 혹은 내사본內賜本에서 확인되는 국새 중 하나이다. 이는 1776년정조 1 규장각이 설치되면서 주로 사용되었다. 임금의 하사품이기 때문에 책의 지질이나 장정, 인쇄상태가 양호하고 본문의 교정이 철저해 오탈자가 거의 없다. 임금이 조상에게 내려준 하사품이라는 의미로 후손은 명예로 여겨 오늘날까지 간직해 잔존한 경우가 많다.



시명지보(施命之寶)



유서지보(諭書之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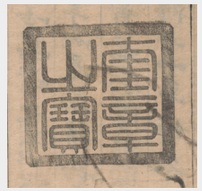

규장지보(奎章之寶)

관인은 관청에서 작성하는 행정문서에 날인하는 것으로 관원의 서명과 함께 사용된다. 재질은 동 재질로 제작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었다. 확인된 관인 중 경관인京官印은 봉사지인奉使之印, 종친부인宗親府印, 형조지인刑曹之印, 한림원인翰林院印 등이 있다. 지방관청에서 답인한 외관인外官印은 기관을 대표하는 관인인 남해군인南海郡印, 보령군인保寧郡印 등을 비롯하여 해당 관직을 제수 받은 관직인官職印인 여도만호지인呂島萬戶之印, 평신첨사지인平薪鎭僉使之印, 전라도병마절도사인全羅道兵馬節度使印, 남해군수지장南海郡守之章, 보령군수지장保寧郡守之章등이 있다.

봉사지인은 '봉명사신奉命使臣의 관인'으로 특수한 임무 또는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일이나 관청에서 합당한 관인이 없을 때 사용하였다. 예조에서는 다량의 봉사지인을 보관하고 있다가 예기치 못한 일들이 발생할 때 탄력적으로 대응해 국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대표적으로 외교를 위해 파견되는 사신이나 국가의 행사를 주관하기 위한 임시기관인 도감都監의 관원, 각 진鎭의 병마절도사 등에게 지급되어 적절한 시기에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관청인官廳印 및 관직인은 중앙관청에서 내려 받았으며, 관인을 사용할 수 있는 직급과 찍는 위치가 규정되어 있었다. 『경국대전』에 의하면 각 관청의 관인은 정3품 이상의 당상관이 있는 기관은 당상관은 그 이하는 하급 기관의 장이 사용하였다. 만약 기관의 장에게 신변의 문제가 생기면 기관장의 다음 직급의 관리가 사용하였다. 관인은 지방관이 새로 부임할 때 서로 주고받는 교귀交龜의식을 치룬 후 사용할 수 있었는데, 문서에서 확인되는 절도사 · 첨절제사 · 만호는 진문鎭門에서 전임자와 후임자가 대면하여 주고받았다.

국왕의 결재여부와 관문서의 종류를 나타내는 관인은 문서의 좌측 상단에 낙인烙印되며, '계啓'자인, '관關'자인, '첩帖'자인 등이 있다. '계'자인은 국왕에게 보고하는 문서에 사용하며, '관'자인은 관청 간에 주고받는 문서에 사용하며, 같은 급의 관청이거나 하급 관청에 내리는 문서에 사용한다. '첩'자인은 상위관청에서 7품 이하의 관원 혹은 관청의 기관장이 소속 관원에게 내리는 임명장과 발령장에 찍었다.

이처럼 관문서에는 다양한 관인이 날인되어 있다. 관인은 국정을 운영하기 위해 문서를 생산하고 정당성을 부여하는 도구일 뿐만 아니라, 제도사 연구와 편년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연구 자료이다. 또한, 관인을 통해 본 문서의 검토와 결재 과정은 오늘날 행정 문서의 처리과정과 유사한 형태임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조선이 '문서의 나라'였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해준다.

관문서와 관인을 통해 수군 운영 및 어촌 생활상을 확인할 수 있으며, 향후 관련 연구자들의 연구에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되기를 기대한다.



봉사지인(奉使之印)



한림원인(翰林院印)



전라도병마절도사인
(全羅道兵馬節度使印)



여도만호지인
(呂島萬戶之印)



보령군인(保寧郡印) ·
보령군수지장
(保寧郡守之章)



남해군인(南海郡印) ·
남해군수지장
(南海郡守之章)



첩(帖)



관(關)

[표 2] 고문서II 수록 주요 관문서 관인 현황

고문서 II 수록 자료 목록

1장 관문서 官文書



1
정조 하선장
正祖下膳狀
1784~1792
교령류(敎令類) – 하선장(下膳狀)
33.6 x 36.0



2
첩정
牒呈
1880
첩 · 관 · 통보류(牒 · 關 · 通報類) – 첩정(牒呈)
42.1 x 34.5 외



3
보령군 염분 어전 선척 구별 성책
保寧郡鹽盆漁箭船隻區別成冊
1899
치부 · 기록류(置簿 · 記錄類) – 추수기(秋收記)
8.5 x 18.6



4
담양 전씨 문서
潭陽田氏文書
1589~1885
교령류(敎令類) – 교지(敎旨), 유서(諭書)
첩 · 관 · 통보류(牒 · 關 · 通報類) – 전령(傳令) / 증빙류(證憑類) – 호구단자(戶口單子)
61.2 x 50.0 외



5
수군 관련 문서
水軍關聯文書
1869~1892
첩 · 관 · 통보류(牒 · 關 · 通報類) – 전령(傳令), 차첩(差帖)
56.6 x 49.8 외



6
군병부
軍兵簿
조선 후기
기타 – 군안(軍案)
26.2 x 37.4



7
충청도 병마절도사 제사
忠淸道兵馬節度使題辭
1871
증빙류(證憑類) – 제사(題辭)
36.4 x 69.7



8
계본
啓本
1874
소 · 차 · 계 · 장류(疏 · 箚 · 啓 · 狀類) – 계본(啓本)
44.8 x 70.0



9
유서
諭書
1873
교령류(敎令類) – 유서(諭書)
92.0 x 56.1



10
경상우수영 수조홀기
慶尙右水營水藻笏記
조선 후기
치부 · 기록류(置簿 · 記錄類) – 홀기(笏記)
62.0 x 12.5



11
황해수영 우후 송종대 문서
黃海水營虞侯宋鍾大文書
1891
치부 · 기록류(置簿 · 記錄類) – 일기(日記), 하기(下記), 노정기(路程記)
소 · 차 · 계 · 장류(疏 · 箚 · 啓 · 狀類) – 도임장(到任狀), 포폄단자(褒貶單子) / 증빙류(證憑類) – 자문(咨文)
21.2 x 22.0 외



12
백헌총요
百憲總要
영조 연간
고서(古書) – 법전(法典)
20.4 x 25.3



13
평신진지
平薪鎭誌
1836
고서(古書) – 지리지(地理誌)
17.1 x 29.8



14
병학지남
兵學指南
1798
고서(古書) – 병서(兵書)
23.0 x 3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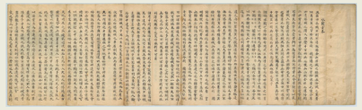

15
수전방략
水戰方略
1871
고서(古書) – 병서(兵書)
129.0 x 37.1

2장 의병문서와 전쟁문학



16
정응성 연보
鄭應聖年譜
1612
치부 · 기록류(置簿 · 記錄類) – 연보(年譜)
15.0 x 30.5



17
통제사 조공 행장
統制使趙公行狀
1789
시문류(詩文類) – 행장(行狀)
24.6 x 38.1



18
호남절의록
湖南節義錄
1799
고서(古書) – 전기류(傳記類)
20.8 x 31.3



19
흥덕현 보초
興德縣報草
1821
첩 · 관 · 통보류(牒 · 關 · 通報類) – 보초(報草)
20.5 x 30.8



20
은봉선생 문집
隱峯先生文集
1864
고서(古書) – 문집(文集)
20.8 x 31.5



21
만력동노문무열전
萬曆東勞文武列傳
17세기 이후
고서(古書) – 전기류(傳記類)
18.7 x 28.0



22
차첩
差帖
1903 · 1907
첩 · 관 · 통보류(牒 · 關 · 通報類) – 첩(帖)
43.6 x 40.0 외



23
조선군기대전
朝鮮軍記大全
1705
고서(古書) – 화고서(和古書)
18.1 x 26.1
일본(江戶幕府)



24
조선태평기
朝鮮太平期
1705
고서(古書) – 화고서(和古書)
18.5 x 26.3
일본(江戶幕府)



25
조선인난파지몽
朝鮮人難波之夢
1827
시문류 – 소설(小說)
17.6 x 27.2
일본(江戶幕府)

3장 외교문서와 역관문서



26
통신사 일본 조선인 봉행
通信使日本朝鮮人奉行
1747, 1748
기타 – 봉투(封套)
17.4 x 16.0
일본(江戶幕府)



27
조선잡록
朝鮮雜錄
1748
외교 · 문서류(外交 · 文書類) – 한국대일본 외교문서(韓國對日本外交文書)
16.1 x 23.2
일본(江戶幕府)



28
통신사 사례 · 규정집
通信使事例 · 規定集
1687 이후
외교 · 문서류(外交 · 文書類) – 한국대일본 외교문서(韓國對日本外交文書)
19.3 x 27.5



29
역과보
譯科譜
조선 후기
고서(古書) – 전기류(傳記類)
23.7 x 36.8



30
선석고
仙石稿

조선 후기
문집류(文集類) – 문집(文集)
20.5 x 30.0



31
동사록
東槎錄

1801년 이후
고서(古書) – 전기류(傳記類)
20.3 x 32.5



32
현계근일기
玄啓根日記

1900년 전후
고서(古書) – 일기(日記)
19.5 x 27.7



33
엄산일기
奔山日記

19세기
고서(古書) – 일기(日記)
18.5 x 29.9



34
우당일기
藕塘日記

1873~1898
고서(古書) – 일기(日記)
20.0 x 28.2



35
석번일기
石樊日記

1833~1887
고서(古書) – 일기(日記)
19.4 x 26.9

4장 어촌 문서



36
공옥 – 김여휘등표해록
攻玉 – 金麗輝等漂海錄

1633
고서(古書) – 문집(文集)
18.3 x 23.6



37
흑산 다물도 문서 黑山多物島文書

1846~1900
증빙류(證憑類) – 수표(手標), 준호구(準戶口) / 치부 · 기록류(置簿 · 記錄類) – 치부(置簿)
명문 · 문기류(明文 · 文記類) – 선척문기(船隻文記), 토지문기(土地文記)
소 · 차 · 계 · 장류(疏 · 箚 · 啓 · 狀類) – 고소장(告訴狀)
27.2 x 20.5 외



38
고현면 도마산리 구폐절목
古縣面都馬山里救弊節目

1802
교령류(敎令類) – 절목(節目)
20.3 x 31.6



39
고가익 처 임씨 분재기
高可翼妻林氏分財記

1702
명문 · 문기류(明文 · 文記類) – 분재기(分財記)
113.5 x 50.3



40
망단자 · 차첩
望單子 · 差帖

1884~1899
첩 · 관 · 통보류(牒 · 關 · 通報類) – 망기(望記), 첩(帖)
32.0 x 21.3 외



41
담정유고 – 우해이어보
薝庭遺藁 – 牛海異魚譜

1882
고서(古書) – 문집(文集)
20.2 x 31.4



42
여도만호 관문
呂島萬戶關文

1865
첩 · 관 · 통보류(牒 · 關 · 通報類) – 관문(關文)
101.2 x 2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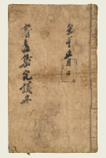

43
보길도 완의책
甫吉島完議冊

1882
증빙류(證憑類) – 완의(完議)
27.3 x 45.5

참고문헌

사이트

고려대학교 해외한국학자료센터 〈http://kostma.korea.ac.kr/〉

국가유산청 GIS통합인트라넷시스템 〈https://intranet.gis-heritage.go.kr/〉

국립중앙박물관 e뮤지엄 〈https://www.emuseum.go.kr/〉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s://db.history.go.kr/〉

국토정보지리원 국토정보플랫폼〈https://map.ngii.go.kr/〉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https://kyu.snu.ac.kr/〉

한국공예 · 디자인문화진흥원 전통문화포털 〈https://www.kculture.or.kr/〉

한국학중앙연구원 디지털 장서각 〈https://jsg.aks.ac.kr/〉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고문서자료관 〈https://archive.aks.ac.kr/〉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시스템 〈http://people.aks.ac.kr〉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 디지털 아카이브 〈http://yoksa.aks.ac.kr/〉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자료통합플랫폼 〈https://kdp.aks.ac.kr/〉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자료포털 〈https://kostma.aks.ac.kr/〉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종합정보서비스 〈http://rinks.aks.ac.kr/〉

고문서

『1872년 지방지도(一八七二年地方地圖)』

『대동방여전도(大東方輿全圖)』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

『무경절요(武經節要)』

『별차왜등록(別差倭謄錄)』

『서산군산천도(瑞山郡山川圖)』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역과방목(譯科榜目)』

『의과방목(醫科榜目)』

『일성록(日省錄)』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조선지도(朝鮮地圖)』

『지도군읍지성책(智島郡邑誌成冊)』

『청구도(靑邱圖)』

『충청남도읍지(忠淸南道邑誌)』

『호서읍지(湖西邑誌)』

『호서지도(湖西地圖)』

단행본

(재)한국학호남진흥원, 2018, 『고문서를 통해 본 호남인의 사유와 경제생활』, 2018 (재)한국학호남진흥원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공동학술회의.

, 2023, 『은봉 안방준 사상과 은봉종가 자료의 학술적 가치』, 2023 국학자료 조사 · 수집 공동학술대회.

구지현, 2011, 『(1763)계미 통신사 사행문학 연구』, 보고사.

국립고궁박물관, 2006, 『조선왕실의 인장』.

, 2009, 『조선왕조의 관인도록』.

국립문화재연구원, 2015, 『조선시대 개인일기 1 대구 · 경북』.

, 2016, 『조선시대 개인일기 2 인천 · 경기』.

, 2017, 『조선시대 개인일기 3 서울』.

, 2018, 『조선시대 개인일기 4 충청 · 강원 · 전라 · 경남』.

국립조세박물관, 2010, 『작은 문서로 옛 세상을 엿보다』, 조세박물관 개관 8주년 기념 옛 영수증 자문(尺文) 특별전 전시도록.

국립전주박물관, 2003, 『대한제국기 고문서(大韓帝國期 古文書)』.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14, 『조선시대 수군진조사 2 전라좌수영(全羅左水營) 편』.

, 2015, 『해양문화유산조사 보고서 12 다물도』.

, 2016, 『조선시대 수군진조사 3 경상우수영(慶尙右水營) 편』.

, 2022, 『임진왜란 해전지 탐사 보고서』.

국립해양박물관, 2017, 『통신사 선단의 항로와 항해』.

국사편찬위원회, 2017, 『2017년도 국사편찬위원회 전북 전주시 송기변씨(宋基燮氏) 소장 송요철가(宋堯哲家) 자료 조사 · 수집 최종보고서』.

, 2021, 『한국 고문서 입문 Ⅰ · Ⅱ』.

김동수 역, 2010,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연구총서 13 (교감 · 역주) 호남절의록』, 경인문화사.

김시덕, 2014, 『그림이 된 임진왜란: 근세 일본 고문헌의 삽화로 보는 7년 전쟁』, 학고재.

김준배, 2022, 『일본 문헌 속의 이순신 표상』, 민속원.

김지남 · 김경문 공저, 1998, 『(국역)통문관지 1-4』, 세종대왕기념사업회.

나카오 히로시(仲尾宏) 외, 2012, 『조선통신사 한일교류의 여러 양상』, 보고사.

남옥 저, 김보경 역, 이혜순 감수, 2006, 『붓끝으로 부사산 바람을 가르다(일관기(日觀記))』, 소명출판.

동북아역사재단 편, 2020,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총서 114 동아시아사 입문』.

, 2022, 『동북아역사재단 교양총서 23 조선통신사 평화외교의 길을 가다』.

동북아역사재단 한국외교사편찬위원회, 2018,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총서 77 한국의 대외관계와 외교사 – 조선편 –』.

박용한 외, 2022, 『해양과 인문학』, 글로벌콘텐츠.

박준호, 2009, 『예(禮)의 패턴: 조선시대 문서 행정의 역사』, 소와당.

박찬기, 2001, 『조선통신사와 일본근세문학』, 보고사.

부산박물관, 2015, 『(조선시대)통신사와 부산』.

, 2023, 『조선의 외교관, 역관: 2023 부산박물관 특별기획전 도록』.

성봉현 편, 2012, 『충청문화연구소 자료총서 11 홍성 담양전씨가 고문서』, 충남대학교 충청문화연구소.

송기중, 2019, 『조선 후기 수군 연구: 정책, 재정, 훈련에 관하여』, 역사비평사.

성인근, 2013, 『한국인장사(韓國印章史)』, 다운샘.

심민정, 2023, 『조선 후기 통신사, 일본을 오감하다』, 세창출판사(세창미디어).

윤덕진, 2002, 『선석 신계영 연구』, 국학자료원.

윤유숙 편, 2018,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총서 78, 조선 후기 왜관과 왜학역관』, 동북아역사재단.
, 2019, 『동북아역사 자료총서 45 근세 한일관계 사료집Ⅲ 1607 · 1624년 조선통신사 기록』, 동북아역사재단.
, 2020, 『동북아역사 자료총서 45 근세 한일관계 사료집Ⅳ 1764년 조선통신사 기록 조선인내빙기 보력(朝鮮人來聘記 寶曆)』, 동북아역사재단.
, 2020,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총서 116 전통시대 사행으로 본 동아시아 국제관계』, 동북아역사재단.
의병박물관 · 국립진주박물관, 2021, 『임진왜란의 반전, 의병 – 의령에서 시작되다 –: 의병박물관 의병유물전시실 전시도록』.
이남희, 2009, 『역학팔세보(譯醫八世譜) DB구축과 활용 –『譯科八世譜』, 『譯登第譜』, 『譯科譜』, 『譯譜』를 중심으로 –』, 한국연구재단 연구결과보고서.
이상각, 2011, 『조선역관열전 : 입은 천 개의 칼을 지녔다』, 서해문집.
이재인, 2012, 『한국의 인장문화』, 창작세계.
일본사학회, 2011, 『아틀라스 일본사』, 사계절.
정광, 2014, 『조선시대의 외국어 교육』, 김영사.
정광 외, 2014, 『연행사(燕行使)와 통신사(通信使) : 연행(燕行) · 통신사행(通信使行)에 관한 한중일(韓中日) 삼국(三國)의 국제(國際)워크숍』, 박문사.
정성일, 2013, 『전라도와 일본: 조선시대 해난사고 분석』, 경인문화사.
정은주, 2014, 『조선시대 사행기록화: 옛 그림으로 읽는 한중관계사』, 사회평론.
정호완 역, 2013, 『(역주)병학지남』,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조엄 저, 박진형 · 김태주 역, 2018, 『해사일기』, 논형.
청양군, 2016, 『청양군지(靑陽郡誌)』, 청양군지편찬위원회.
최관 · 김시덕 공저, 2010, 『임진왜란 관련 일본 문헌 해제: 근세편』, 문.
최승희, 1989, 『증보판(增補版) 한국고문서연구(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충청남도, 2012, 『대산읍지(大山邑誌)』, 대산읍지발간 추진위원회.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2021, 『고신(告身): 조선시대의 임명문서 읽기』,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한양대학교박물관, 2011, 『印, 한국인과 인장 : 한양대학교 개교 72주년 기념 특별전 도록』.
한일문화교류기금, 2019, 『임진왜란에서 조선통신사의 길로』, 경인문화사.
해양수산부, 2019, 『해양수산부 해양문화연구총서 3 동아시아의 표류』.
, 2020, 『해양수산부 해양문화연구총서 3 섬과 바다의 전통지식』.
, 2020, 『해양수산부 해양문화연구총서 4 어촌사람들의 삶과 생활』.
, 2021, 『해양수산부 해양문화연구총서 5 갯바위를 둘러싼 공동체와 어업기술』.
, 2021, 『해양수산부 해양문화연구총서 6 갯벌의 어민생활과 어로활동』.
현충사관리소, 2015, 『조선시대 수군 이야기: 충무공 탄신 470주년 기념 특별전 도록』, 문화재청 현충사관리소.
홍경해 외, 2018, 『수사일록』, 보고사.

논문

강문식, 2010, 「규장각 소재 의궤의 현황과 특징」, 『규장각』제37호,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강석화, 2006, 「조선후기 황해도 연안 방위체계」, 『한국문화』제38호,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구지현, 2016, 「1748년 조선의 통신사와 동아시아의 지식 유통 양상 – 일본 학파에 따른 교류양상을 중심으로 –」, 『열상고전연구』제53호, 열상고전연구회.
, 2022, 「담와 홍계희의 일본에서의 활동과 일본 사행시 검토」, 『역사교육논집』제79집, 역사교육학회.
권기석, 2021, 「조선후기 의관 가문의 인원구성과 계보적 연계 – 의역주팔세보 수록 인원분석을 중심으로–」, 『의사학』제30호, 대한의사학회.
권내현, 2018, 「17~19세기 조선의 재산 상속 관행 – 종법과 경제력 변동을 중심으로 –」, 『고려사학보』제70호, 고려사학회.
권혁래, 2017, 「조선후기 전란 제재 소설에 그려진 북부지방의 표상」, 『고전문학연구』제52호, 한국고전문학회.
김덕진, 2005, 「1763년 통신사(通信使) 사행비(使行費)의 규모(規模)와 그 의의(意義)」, 『역사학연구』제25호, 호남사학회.
김두헌, 2001, 「기술직(技術職) 중인(中人) 신분(身分) 연구(硏究)」, 전북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008, 「18~19세기 중인 사회의 적서 차별과 공존 – 천녕현씨 현계근 가문의 사례」, 『국학연구』제12집, 한국국학진흥원.

, 2013, 「조선 후기 통신사행 및 문위행 참여 역관의 가계와 혼인」, 『동북아역사논총』제41호, 동북아역사논총.
김명래, 2019, 「충청수군영진(營鎭)과 연해군현(郡縣)의 선소(船所)연구」, 『해양문화재』제12호,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김병구, 2021, 「조선 후기 조운선(漕運船) 치패(致敗)의 보고와 처리 – 1867년 공충도수군절도사(公忠道水軍節度使) 이지정(李志鼎) 계본(啓本)을 중심으로 –」, 『고문서연구』제58호, 한국고문서학회.
김병륜, 2014, 「조선 후기 수군의 무기 보유 양상과 그 특징」, 『이순신연구논총』제21호, 순천향대학교 이순신연구소.
김상기, 2014, 「조선후기 전라도 부안현 위도어전(蝟島漁箭)의 구관분규(句管紛糾)와 수세문제(收稅問題)」, 서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 선, 2022, 「전라좌수영[湖左營] 수조홀기의 특징」, 『이순신연구논총』제37호, 순천향대학교 이순신연구소.
김성진, 2011, 「계미사행단(癸未使行團)의 오사카체류기록(大阪滯留記錄)과 대전선사(大典禪師) 축상(竺常)」, 『동아시아문화연구』제49집, 한양대학교 동아시아문화연구소.
김수진 외, 2016, 「규장각 소장 집부 도서에 대한 조사와 그 결과(2) – 장서인 조사를 중심으로 –」, 『규장각』제49호,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 2018, 「규장각 소장 집부 도서에 대한 조사와 그 결과(3) – 선본문집총서를 중심으로 –」, 『규장각』제52호,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김양수, 2003, 「서울 중인(中人)의 19세기 생활 – 천녕현씨(川寧玄氏) 역관(譯官) 탁(鐸)의 일기를 중심으로 –」, 『인문과학논집』제26집, 청주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김우진, 2012, 「18세기 경상좌수영 군례악 연구(1) –규장각 소장 수조홀기(水操笏記)에 기하여–」, 『한국음악사학보』제49호, 한국음악사학회.
김윤아, 2017, 「국립해양박물관 소장 통신사 자료」, 『항도부산』제33호,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김준배, 2013, 「근세 일본 작품군에 나타난 임진왜란 「해전」」, 고려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016, 「근세 일본 임진왜란 관련 작품 속 해전 · 조선수군 · 수군전술의 변화」, 『이순신연구논총』제26호, 순천향대학교 이순신연구소.
김진태, 2017, 「국립해양박물관 소장 수군조련도병(水軍操鍊圖屛)을 통해 본 조선 후기 수군의 대규모 해상 기동훈련」, 『박물관학보』제33호, 한국박물관학회.
모정 · 박현규, 2017, 「중국에서의 이순신(李舜臣) 접촉과 전파」, 『이순신연구논총』제27호, 순천향대학교 이순신연구소.
문숙자, 2019, 「조선후기 균분상속의 균열과 그 이후의 상속관행」, 『국학연구』제39집, 한국국학진흥원.
민덕기, 2004, 「조선 후기 통신사행(通信使行)의 대마도 인식 – 최천종 사건과 관련하여 –」, 『한일관계사연구』제21호, 한일관계사학회.
민장원, 2017, 「정조의 '충신(忠臣)' · '충가(忠家)' 현창사업과 이순신(李舜臣)에 대한 기억의 재구성」, 고려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금수, 2013, 「조선후기(朝鮮後期) 진법(陣法)과 무예(武藝)의 훈련(訓練)에 관한 연구 – 훈련도감(訓鍊都監)을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박순우, 2023, 「임진왜란기 대씨 · 태씨(조선시대 발해인)들의 활동 연구 –『난중일기(亂中日記)』와『호남절의록(湖南節義錄)』을 중심으로」, 『동북아역사논총』제79호, 동북아역사논총.
박준호, 2007, 「고려후기와 조선초기의 인사 문서 연구」, 『고문서연구』제31호, 한국고문서학회.
박진철, 2009, 「고문서(古文書)로 본 17세기 조선(朝鮮) 수군(水軍) 전선(戰船)의 무기체계(武器體系)」, 『영남학』제16호,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박찬기, 2005, 「조선통신사와 도진고로시 (唐人殺し)의 세계」, 『조선통신사연구』창간호, 조선통신사학회.
박철민, 2021, 「장서각(藏書閣) 소장(所藏) 의관(醫官) 현재덕(玄在德)의 『엄산일기(奄山日記)』에 대하여」, 『장서각』제46집, 한국학중앙연구원.
방기철, 2020, 「조선시대 대일사신의 전명의(傳命儀) 연구」, 『조선시대사학보』93호, 조선시대사학회.
백승호, 2022, 「존재(存齋) 박윤묵(朴允默) 한시연구 – 정조의 문치와 19세기 여항문학의 흥기–」, 『한국학논집』제87집,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백승호 · 김영진 · 박철상, 2015, 「규장각(奎章閣) 소장(所藏) 중국본(中國本)에 압인된 정조(正祖) 장서인(藏書印) 고찰」, 『한국한문학연구』제60집, 한국한문학회.
서태원, 2011, 「조선후기 충청도 평신진 연구(朝鮮後期 忠淸道 平薪鎭 硏究)」, 『중앙사론』제34호, 중앙사학연구회.
송기중, 2016, 「조선후기 수군제도의 운영과 변화(朝鮮後期 水軍制度의 運營과 變化)」, 충남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017, 「조선 후기 수조(水操)의 추이와 변화」, 『충무공 이순신과 한국 해양』제4호, 해군사관학교 해양연구소.
, 2018, 「홍성지역 담양 전씨家의 사환과 업적」, 『충청학과 충청문화』제24권,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 2018, 「18세기 전반 충청 수군의 위상과 운영 실태」, 『군사』제106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신윤호, 2018, 「임진왜란 시기 경상우수군의 편제 및 운용 연구」, 『충무공 이순신과 한국 해양』제5호, 해군사관학교 해양연구소.

, 2019, 「임진왜란 시기 삼도수군(三道水軍) 연구」, 경상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안대수, 2010, 「『조선인난파지몽(朝鮮人難波之夢)』와 『보력물어(寶曆物語)』의 비교」, 『일어일문학연구』제75호, 한국일어일문학회.

, 2012, 「경상대학교본『조선인난파지몽(朝鮮人難波之)』: 해제와 탈초」, 『일본학논집』제28호, 경희대학교대학원 일어일문학과.

, 2013,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조선인난파지몽(朝鮮人難波之)』 – 해제와 번각(飜刻) –」, 『일본학논집』제29호, 경희대학교대학원 일어일문학과.

, 2013, 「최천종(崔天宗) 살해사건(殺害事件)을 소재로 한 실록체(實錄體) 소설(小說) 연구」, 경희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안대회, 2023, 「담정그룹의 문학세계와 상업도시 한양의 도회지 문화」, 『민족문화연구』제98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양흥숙, 2020, 「1763년 계미통신사가 경험한 시공간의 변화와 생활상」, 『한국한문학연구』제78집, 한국한문학회.

우승하, 2023, 「통신사의 수륙노정(水陸路程)에 관한 연구 – 1607년 회답겸쇄환사를 중심으로 – 」, 『지방사와 지방문화』26권 2호, 역사문화학회.

유지영, 2007, 「조선시대 임명관련 교지(敎旨)의 문서형식」, 「고문서연구」제30호, 한국고문서학회.

유　현, 2023, 「천녕 현씨 왜학역관 가문의 부산 정착과 이동」, 『박물관연구논집』제29집, 부산시립박물관.

윤유숙, 2023, 「18세기 일본의 조선통신사 기록에 수록된 삽화 검토 – 『조선신사내빙기록』, 『조선인내빙기』를 중심으로 –」, 『비교일본학』제58호, 한양대학교 일본학국제비교연구소.

윤지혜, 2013, 「아이노시마(후쿠오카번)의 통신사 접대」, 『조선통신사연구』제16호, 조선통신사학회.

이남희, 2010, 「조선후기 의과팔세보의 자료적 특성과 의미 – 현전 자료와 그 수록 년대를 중심으로 –」, 『조선시대사학보』제52호, 조선시대사학회.

이노우에 야스시(井上泰至), 2017, 「일본에서 이순신이 주목받는 때」, 『이순신연구논총』제27호, 순천향대학교 이순신연구소.

이대화, 2022, 「역사인물 현창사업의 근대적 변화 과정에 대한 연구 – 하동지역 충의공 정기룡의 사례를 중심으로」, 『역사민속학』제62호, 한국역사민속학회.

이상규, 2004, 「조선후기 천녕현씨가(川寧玄氏家)의 역관활동(譯官活動)」, 『한일관계사연구』제20집, 한일관계사학회.

, 2011, 「역관 가계 형성의 사례 검토」, 『한국계보연구』제2호, 한국계보연구회.

, 2013, 「한학역관 홍순언(洪純彦) 가계의 신분 변화」, 『한국계보연구』제4호, 한국계보연구회.

, 2016, 「17세기 조일관계의 변화와 왜학역관」, 『조선사연구』제25호, 조선사연구회.

, 2017, 「17세기 왜학역관(倭學譯官)의 제도 정비와 위상」, 『조선시대사학보』제83호, 조선시대사학회.

, 2017, 「『천녕현씨세보(川寧玄氏世譜)』(1867년) 해제」, 『한국계보연구』제7호, 한국계보연구회.

, 2018, 「사대교린 외교의 중개자, 역관」, 『조선사연구』제27호, 조선사연구회.

, 2020, 「16세기 역관(譯官)의 세전 실태에 대한 검토 –『종친록(宗親錄)』을 중심으로 –」, 『청계사학』제22권, 청계사학회.

이선희, 2006, 「조선후기 황해도 수영(水營)의 운영」, 『한국문화』제38호,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이재훈, 2017, 「기해사행(己亥使行)의 당상역관(堂上譯官) – 대마도 종가문서(宗家文書)에서 등장양상을 중심으로 –」, 『한일관계사연구』제57집, 한일관계사학회.

이홍식, 2011, 「1763 계미통신사행과 한일 관계의 변화 탐색 – 충돌과 갈등 양상을 중심으로 –」, 『동아시아문화연구』제49집, 한양대학교 동아시아문화연구소.

임영현, 2020, 「조선 후기 통신사행(通信使行) 문서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021, 「조선 후기 통신사행 준비 단계 문서를 통해 본 1811년 사행준비」, 『한일관계사연구』제72집, 한일관계사학회.

장순순, 2015, 「18세기 조선 지식인의 대일담론(對日談論)으로서 울릉도 · 독도」, 『한일관계사연구』제51집, 한일관계사학회.

, 2017, 「조선전기 통신사행과 대일외교(對日外交)의 특징」, 『한일관계사연구』제56집, 한일관계사학회.

, 2018, 「조선후기 한일 양국의 역관기록(譯官記錄)과 왜관(倭館)」, 『한일관계사연구』제59집, 한일관계사학회.

, 2020, 「16세기 후반 조일관계와 대일사행의 파견」, 『한일관계사연구』제68집, 한일관계사학회.

, 2022, 「통신사의 사행록을 통해서 본 조선 지식인의 대마도 인식과 그 추이(推移)」, 『한일관계사연구』제75집, 한일관계사학회.

장원주, 2012, 「17세기 조선(朝鮮)의 해방체제(海防體制)와 수조운용(水操運用)」, 중앙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014, 「17세기 조선(朝鮮) 수군조련(水軍操鍊)의 특성(特性)」, 『역사민속학』제46호, 한국역사민속학회.

장원주 · 최형국, 2011, 「18세기 末 전라도 수군전법(水軍戰法) 변화(變化)의 특성 – 전라우수영 『전지도첩(戰陣圖帖)』과 전라좌수영 『수조홀(水操笏)』을 중심으로」, 『용인대학교 무도연구소지』제22집 제1호, 용인대학교 무도연구소.

장을연, 2009, 「규장각(藏書閣) 소장 책문석인본(冊文拓印本)의 현황과 특징」, 『장서각』제22집,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준호, 2018, 「『징비록(懲毖錄)』이 후대에 미친 영향(影響)」, 『서강인문논총』제52호,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장혜진, 2007, 「17세기 중반 조선의 일광동조궁(日光東照宮) 인식 – 조선후기 외교사료를 중심으로 –」, 『일본문화학보』제36집, 한국일본문화학회.

정구복, 1996, 「조선조(朝鮮朝)의 고신(告身)(사령장(辭令狀)) 검토(檢討)」, 『고문서연구』제9호, 한국고문서학회.

, 1998, 「조선시대 자문(척문(尺文))에 대한 연구 – 수령이 새로 임용될 때의 비용 –」, 『고문서연구』제11호, 한국고문서학회.

정성일, 2012, 「해남 선비 김여휘의 유구 표류와 송환 경로(1662~1663년)」, 『한일관계사연구』제43집, 한일관계사학회.

, 2018, 「19세기 중엽 조선 역관의 무역 활동」, 『한일관계사연구』제60집, 한일관계사학회.

, 2019, 「국서(國書)와 서계(書契)로 본 조선후기(朝鮮後期)(1600–1870) 대일외교(對日外交)」, 『명청사연구』제52호, 명청사학회.

, 2022, 「한 · 일 간 표류민 송환과 해난구조의 법제화(1860~1960년대)」, 『한일관계사연구』제75집, 한일관계사학회.

정은주, 2011, 「일본(日本) 에서 제작된 계미(癸未) (1763) 통신사행(通信使行) 관련 회화(繪畵) – 빈례(賓禮) 관련 기록화(記錄畵)와 통신사절의 인물화(人物畵)를 중심으로 – 」, 『동아시아문화연구』 제49집, 한양대학교 동아시아문화연구소.

정진술, 2015, 「이순신을 도운 전라좌 · 우수영 사람들」, 『이순신연구논총』제23호, 순천향대학교 이순신연구소.

정해은, 2021, 「『징비록』의 서술 중점과 후대 영향력」, 『국학연구』제46집, 한국국학진흥원.

정환국, 2023, 「조선 후기 전란을 기억하는 몇 가지 방식: 전란 소재 야담의 양상에 주목하여」, 『민족문학사연구』제83호, 민족문학사연구소.

조영준, 2012, 「조선시대 문헌의 신장(身長) 정보와 척도(尺度) 문제 –군적(軍籍)과 검안(檢案)을 중심으로–」, 「고문서연구」제41호, 한국고문서학회.

지두환, 2010, 「조선 임진왜란 충신 열사에 대한 현창정책」, 『사학연구』제100호, 한국사학회.

최차호, 2014, 「조선 후기 왜학역관 현덕윤 연구」, 『조선통신사연구』제18호, 조선통신사학회.

다사카 마사노리(田阪正則), 2022, 「무진년 조선통신사 「연향신사기록(延享信使記錄)」과 「신사집서(信使集書)」」, 『한일관계사연구』제77집, 한일관계사학회.

한국계보연구회, 2016, 「자료 소개 『천녕현씨세보(川寧玄氏世譜)』(1867년, 亨)」, 『한국계보연구』제6호, 한국계보연구회.

, 2017, 「자료 소개 『川寧玄氏世譜』(1867년, 利)」, 『한국계보연구』제7호, 한국계보연구회.

, 2018, 「자료 소개 『川寧玄氏世譜』(1867년, 貞)」, 『한국계보연구』제8호, 한국계보연구회.

한미경, 2006, 「역과보(譯科譜)에 대한 서지적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제40권 2호, 한국문헌정보학회.

, 2018, 「조선시대 의과 입격자 기록물의 계보적 연구」, 『서지학연구』제75집, 한국서지학회.

한정호, 2017, 「김려의 창원 유배생활과 저술활동」, 『한국지역문학연구』제6권 2호, 한국지역문학회.

홍진옥, 2018, 「『심씨를 위해 지은 시』의 보조적 인물 '장 파총' 고찰」, 『국문학연구』제37호, 국문학회.

, 2021, 「담정(藫庭) 김려(金鑢) 문학 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황은영, 2020, 「18세기 중반 이후 통신사행 회화 자료의 특성」, 『한일관계사연구』제70집, 한일관계사학회.

국립해양박물관
총서 / 학술
20240302

ANCIENT
DOCUMENTS

고문서 II

총괄 김종해
기획 김희영·서영남·권유리
진행 박지연
정리·해제 정우봉(고려대학교)
백승옥·임영현·김선
교정 및 교열 권유리·김재휘·박지연·김소정·김현주
촬영 유수
제작 교육과비전

발행일 2024년 9월 27일
발행처 국립해양박물관 www.mmk.or.kr / 051-309-1900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45
발간등록번호 11-B553496-000046-01
ISBN 979-11-88805-58-7(93910)

비매품/무료
93910
9 791188 805587
ISBN 979-11-88805-58-7

© 국립해양박물관(Korea National Maritime Museum), 2024
이 도서의 저작권은 국립해양박물관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도서의 모든 내용에 대하여 동의 없이는 어떠한 형태나 의미로든 재생산하거나 재활용할 수 없습니다.
All right reserved. No part of this book may be reproduced or utilized in any form or by any means without permission in writing from Korea National Maritime Museum.

MMK
국립해양박물관